

KiRi Weekly 이슈 모음집 2014

1

보험경영

| | | |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 박선영 전용식 | 3 |
|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과 시사점 | 조용운 오승연 | 13 |
| FY2013 생명보험 동향 및 시사점 | 김세중 | 23 |
| FY2013 손해보험산업 동향과 시사점 | 최 원 | 34 |
|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시장 성장의 시사점 | 최창희 김혜란 | 44 |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타당성 검토 | 조용운 | 59 |
|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지출 현황 및 시사점 | 김세중 최 원 | 68 |

2

고령화

| | | |
|------------------------------|-------------|-----|
|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 강성호 정원석 | 79 |
| 장수리스크 도입 논의와 시사점 | 김세중 | 93 |
|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 김세중 김혜란 | 101 |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 111 |

이슈 _Contents

3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 | 김석영 김해식 조재린 | 125 |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 송윤아 | 131 |
|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 영향 | 이기형 정인영 | 144 |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 | 김해식 조재린 김혜란 | 155 |
| 국민건강보험 후자가 민영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 이창우 | 162 |
| 부부 이혼시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 | 이상우 김동겸 | 171 |
|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시급 | 송윤아 | 182 |
|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제도개선의 향후 논의방향 | 송윤아 | 194 |
|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과 검토 방향 | 이상우 | 205 |
|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대한 소고 | 기승도 | 217 |
|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 | 김경환 박정희 | 228 |

4

거시금융 및 기타

| | | |
|------------------------------------|---------|-----|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 | 동향분석실 | 245 |
| 미국 MMF 규제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 263 |
| 복합점포 활성화의 득과 실 | 전용식 황진태 | 275 |
| 중국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혁 (C-ROSS) 영향과 전망 | 김해식 이경아 | 284 |

1. 보험경영

- | | |
|--|---------|
|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 박선영 전용식 |
| 2.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과 시사점 | 조용운 오승연 |
| 3. FY2013 생명보험 동향 및 시사점 | 김세중 |
| 4. FY2013 손해보험산업 동향과 시사점 | 최 원 |
| 5.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시장 성장의 시사점 | 최창희 김혜란 |
| 6.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타당성 검토 | 조용운 |
| 7.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 김세중 최 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 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자금증개기능 확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유럽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유동성·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신용공급 여력이 위축되었음.
 - 기업들의 자금조달에서 은행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신용공급 및 대출확대를 장려하고 있고 보험회사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음.
 - 보험업권의 자금증개기능 확대는 보험업권의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신용위험을 확대시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기업대출을 줄이고 해외채권 및 해외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기업대출에 수반되는 신용평가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신용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 기업대출 감소의 원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예대율 규제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증가세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2% 수준으로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1.7%에 비해 상당히 높음.
 - 2013년 보험권의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41조 원이나 2008년 23조 원 수준에 비해 18조 원이 증가하였음.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반해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 비중은 감소세를 보임.
-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은 저금리 상황에서 대안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물경제 발전의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보험업의 본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경제여건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예금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은행의 자금증개기능 위축세가 지속될 수 있어 보험업권에 대해 자금증개기능 제고 요구가 늘어날 수 있음.
 - 그러나 기업의 높은 부채수준과 이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 위험관리 등이 기업대출 확대에 앞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1. 검토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고, 연기금과 보험회사의 자금증개기능 제고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경우 담보가치 하락과 기업의 부채조정 등으로 신용시장 위축이 진행되었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음.¹⁾
 - 그리스 중소기업의 38%, 스페인 중소기업의 25%, 아일랜드 중소기업의 24%가 신용시장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반해 영국의 L&G, 프루덴셜, 프랑스 AXA, 소시에떼 제네랄 등 보험업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고 OECD도 보험회사, 연기금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이들은 정부의 요구 이외에도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는 측면이 있음.
- 경기회복의 불확실성과 보험업계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속에서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증가는 리스크 확대 요인일 수 있으나 자금증개기능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에 미치는 보험업권의 역할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음.
 - 기업의 은행차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필요자금 조달의 75~80%)의 경우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필요자금 조달의 25% 정도만을 은행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²⁾
 - 기업의 대출수요가 미미한 일본의 경우 보험산업의 대출 비중은 높지 않음.
- 본고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확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IMF(2013, 9),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 Gert Wehinger(2012), Bank deleveraging, the move from bank to market-base financing, and SME financing, pp. 3 인용함.

- 보험회사의 기업대출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점검해보고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보험 산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함.

2. 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



- 은행의 신용공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비(非)은행 기관투자자들의 기업대출 증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유럽의 일부 연금 및 보험회사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음.
 - OECD는 지난 2012년 4월 “OECD Financial Roundtable”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대출 시장(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이하 SME)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저금리 시대에 자산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보험회사들이 낮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대출시장(SME)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전통적으로 기업들의 은행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와 신용공여를 장려해왔음.
 - 기업들의 은행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에서는 2012년부터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업권의 기업대출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왔음.
 - 로이터 통신(2013년 7월 10일자)³⁾은 프랑스 정부가 보험회사들의 중소기업대출 관련 규제 완화 등 SME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풀릴 유동성이 최대 9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프랑스 최대 보험사인 AXA는 소시에떼 제네랄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기업대출시장에 진출, 이미 5억 유로를 프랑스 및 유럽의 중소기업들에 대출함.
 - 영국에서도 연기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SME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2014년 2월 23일자)⁴⁾에 따르면 영국 최대의 연기금 투자자인 Legal & General(이하 L&G)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영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 2,000만 파운드 이상, 10년 이상 대출에 나서기로 함.

3) 로이터 통신(2013년 7월 10일자), “France looks to insurers to fill lending gap left by banks.” 인용함.

4) 파이낸셜타임스(2014년 2월 23일자), “L&G plans to begin lending to larger SMEs.”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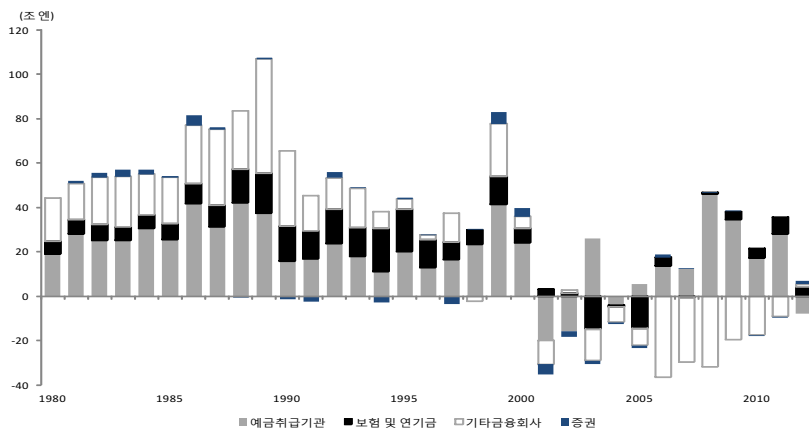
■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보험산업의 경우 버블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보험회사의 기업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2000년대 들어 크게 감소하였음.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은 1980년대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은행들의 거래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리스회사 등 은행 자회사가 주된 대상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ALM 등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확대되었음.
 - 대규모 용자조건에 의해 리스회사가 동일 계열의 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모두 대출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대출이 증가하였음.
- 기업의 부채조정이 본격화된 2000년대부터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ALM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은 줄어들었음.

■ 일본의 경우 기업의 신용도 평가 등 대출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회수 기간이 길어져 자산운용처로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임.

- 일본의 경우 대출 운용기간이 5~6년인데 비해 부채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듀레이션 미스매치로 인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업대출은 자산운용처로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됨.
- 기업대출보다는 해외채권, 해외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해외사무소 설치와 해외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음.
 - 최근에는 신디케이트론에 보험회사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은행이 신디케이트론을 주관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음.

〈그림 1〉 일본 기업의 금융업권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일본은행.

■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에 보험회사, 연기금 등 비은행계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들이 장기투자 이외에도 실물경제 활성화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⁵⁾

- OECD는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악화에 따른 신용경색이 중소기업에 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음.
 - 지난 2011년 G20 정상들은 중소기업금융포럼(SMEFF)을 발족기로 합의하고 중소기업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들을 교환하기로 함.
 - 지난 2012년 4월 “OECD Financial Roundtable”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국제적으로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함.

3. 국내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

■ 국내 민간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730조 9,320억 원이며 그 중 보험산업 대출금 비중은 5.6% 수준임.

-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민간기업의 보험산업의 대출금 잔액은 2002년 10조 4천억 원 수준에서 2013년 4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도 3.4%에서 5.6%로 높아졌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보험산업 대출 잔액 연평균 증가율은 12.0%로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1.7%보다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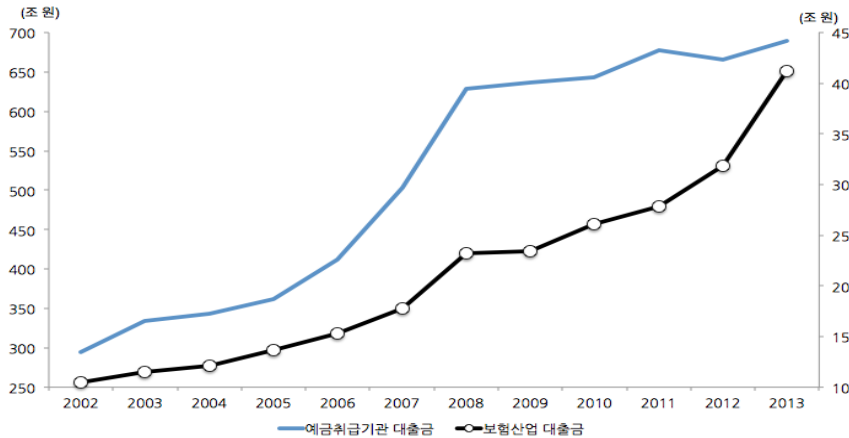
■ 보험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산업의 기업대출이 증가하여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기업대출 비중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운용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08년 7.3%(4조 1,706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8.5%(10조 604억 원)를 차지했음.

5) 장기투자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인프라투자과 부동산 투자 수요가 2030년까지 각각 4조, 5조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저축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수요 충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OECD는 보험회사, 연기금 등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상위원칙(High Level Principles)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 반면에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운용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08년 6.7%(15조 9,606억 원)에서 2012년에는 5.1%(21조 9,530억 원)로 하락세를 보였음.
 - 개인대출의 경우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모두 운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음.

〈그림 2〉 민간기업의 예금취급기관과 보험회사로부터의 대출 잔액 추이



자료: 자금순환(2013).

〈표 1〉 국내 보험업권 운용자산 대비 개인대출과 기업대출 비중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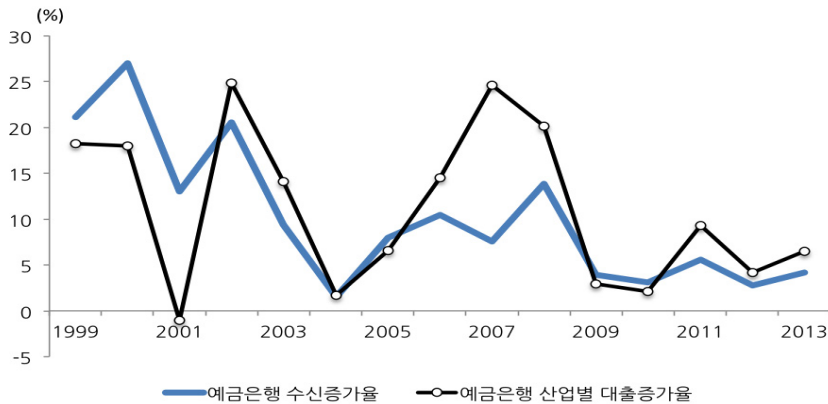
| 구 분 | 생명보험 | | | | 손해보험 | | | |
|------|--------|------|--------|-----|--------|------|--------|-----|
| | 개인대출 | 비중 | 기업대출 | 비중 | 개인대출 | 비중 | 기업대출 | 비중 |
| 2008 | 46,776 | 19.6 | 15,961 | 6.7 | 8,982 | 15.7 | 4,171 | 7.3 |
| 2009 | 47,569 | 17.8 | 16,417 | 6.2 | 9,935 | 15.0 | 4,964 | 7.5 |
| 2010 | 48,288 | 15.9 | 18,044 | 5.9 | 11,137 | 14.0 | 6,184 | 7.8 |
| 2011 | 52,283 | 15.5 | 17,713 | 5.3 | 14,455 | 15.2 | 7,854 | 8.3 |
| 2012 | 57,645 | 13.4 | 21,953 | 5.1 | 16,564 | 13.9 | 10,060 | 8.5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예금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행태가 크게 달라진 점도 은행권의 기업대출 둔화세의 원인이며 향후 바젤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동성규제가 도입될 경우 은행권의 기업대출 둔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원화예수금(시장성 수신 제외)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2009년 12월에 도입되었음.

- 2007년 12월 122.2% 수준이었던 예대율은 2010년 8월 99.9%, 2012년 5월 96.0%로 하락하였음.⁶⁾
- 예대율 규제 도입 이전 시장성 수신 비중이 높아 국내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유동성 관리 수단임.
- 바젤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동성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대율 도입과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예금은행의 수신 증가율과 산업별 대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 증가율은 2008년 20.1%에서 2009년 2.9%로 크게 둔화되었고 이후 소폭 회복되어 2013년 말 6.5%를 기록하였는데, 월 평균 증가액은 약 5조 원 내외임.
 - 예금은행 수신 증가율의 경우도 2008년 13.9%에서 2009년 3.9%로 둔화되었고 저금리 장기화로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지며 은행 수신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림 3〉 국내 예금은행 수신증가율과 산업별 대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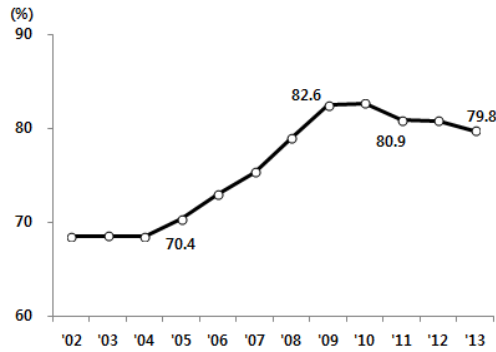
주: 예금은행 수신은 말잔 기준 원화예금임.
 자료: 한국은행.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기업부채 수준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의 부채조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향후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임.
- 국내 기업들은 2005년 이후 회사채발행,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기업부채를 크게 늘렸고 부채위 기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조정이 미진한 상황임.

6) 예대율 규제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농협, 외은지점 포함)에 적용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 특수은행은 적용에서 제외됨. 금융감독원(2011. 9월), 한국은행(2012.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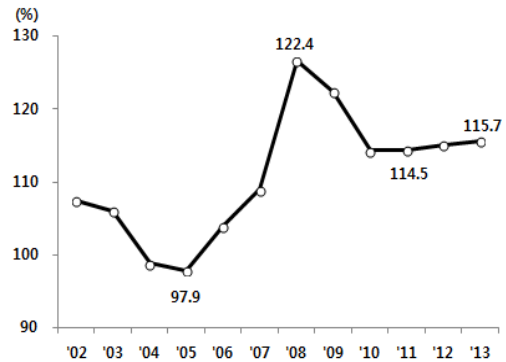
- 국내 민간기업의 GDP대비 부채 비율 2008년 122.4%에서 2013년 말 115.7%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소폭 증가하고 있음.

〈그림 4〉 유로존 GDP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추이



주: 2013년은 1/4~3/4분기까지의 평균임.
자료: E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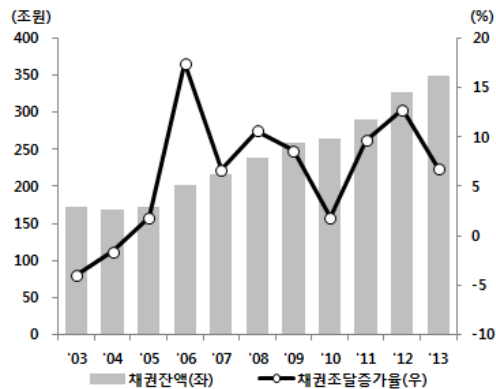
〈그림 5〉 한국 GDP대비 기업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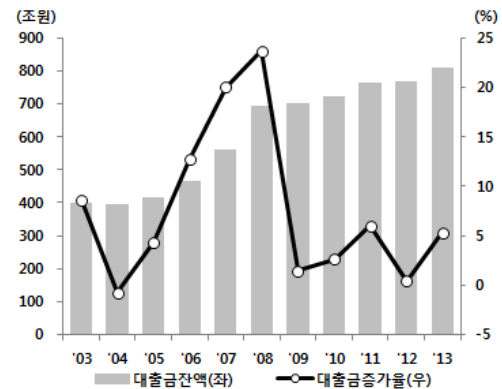
- 국내 기업의 신용리스크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데, 기업의 금융부채가 회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한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6〉 한국 기업의 회사채 발행 현황



주: 기업은 비금융 민간법인.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한국 기업의 대출규모와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2013년 GDP 대비 민간기업 부채비율 115.7%는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하는 위기발생의 임계치 80%를 크게 웃돌고 있고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유럽의 경우 기업 부채조정이 임계치인 80% 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어 신용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을 장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경우 정부의 장려책과 맞물려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보험회사들의 자금중개기능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 발전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바젤 III 등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징 효과가 불러온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 위축을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이 채워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은행권의 예대출 규제 도입으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증가세는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보험산업의 기업대출 확대는 보험회사의 자금중개기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기업대출, 인프라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실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더불어 새로운 자산운용처가 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신용공급 위축으로 자금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수준이 높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어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확대는 관련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예금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은행의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 그러나 기업부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유럽과는 달리 신용위험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우리나라 보험업권의 자금중개기능 역할 제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회수 기간이 길고 회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수준의 기업 신용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인프라가 미흡함.
 - 더욱이 높은 기업부채 수준으로 기업의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금중개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은 이해되나 보험업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위험관리이며 자금중개기능은 보험업의 부수적인 역할과 기능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함.
 - 보험업의 본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커버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며, 개인과 기업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임. **kiri**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과 시사점

조용운 연구위원,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는 만성질병 유병률과 의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흡연, 신체활동 부족, 불량한 식습관, 음주와 같은 건강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건강생활습관 개선은 만성질병 유병률을 낮추어 의료비 지출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현재 정부는 건강생활습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런 가운데 민영의료보험은 가입 시에 계약적부심사를 통해 높은 건강위험도를 보유한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한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건강증진 효과 혹은 의료비 증가추세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단체계약의 경우는 개인별 계약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나, 개인계약의 경우는 제기될 수 있는 주장임.
- 동일 소득수준에서 민영의료보험 비가입자보다는 가입자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계약적부심사 효과와 가입자의 위험회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도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계약적부심사 후 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 역시 매우 높아 동 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
- 더욱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비가입자보다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더 크다는 것은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함.
 - 건강생활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가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수요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 검토배경



■ 세계보건기구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흡연, 신체활동 부족, 불량한 식습관,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이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¹⁾ 질병예방을 위해서 이들의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는 위의 4가지 건강생활습관이 암, 심혈관질환, 당뇨, 비만, 고혈압 등 대부분의 비감염질환(non-communicable disease)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함.
- 이들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임.

■ 우리나라 역시 만성질환 유병률과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생활습관의 개선을 지원하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 만19세 이상 비만율은 2001년부터 9년 간 29.2%에서 31.3%, 만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8.6%에서 9.6%, 고혈압은 28.6%에서 30.3%로 증가하였음.²⁾
- 2002년부터 10여 년간 1인당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이 미국 1.6%, 일본 2.6%, 호주 1.0%에 비해 우리나라는 4.6%에 이름.³⁾
- 현재 정부에서도 동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은 가입 시에 계약적부심사를 통해 높은 건강위험도를 보유한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피보험자에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단체계약의 경우는 계약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나, 개인 계약의 경우는 제기될 수 있는 주장임.

■ 본고에서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인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를 살펴봄으로써 가입자의 동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WHO(2012), "Global Health Observatory: Risk Factors".

2) 유재성·김기향·임달오·박종숙·장현숙·박조원(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자료: OECD(2013), Health Data 2013.

2.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개요



■ 건강생활관리서비스란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획, 상담·교육,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함.

- 체육관에서 운동지도자가 운동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실천적 서비스가 아님.
- 흡연, 신체활동, 영양, 음주, 스트레스 등에 관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말함.

■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대개 6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첫 번째 단계, 본인 및 가족 등이 제공한 정보, 진료기록, 보험금 청구기록, 상담기록 등을 이용하여 선별검사(biometrics screening tests)를 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를 독려함.
 -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혹은 제도에 따라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함.
- 두 번째 단계, 선별검사 결과, 온라인·설문·면담 등을 통한 생체정보⁴⁾ 등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위험도를 평가함.
- 세 번째 단계, 건강위험도 평가결과와 수집된 정보를 예측모형에 적용하여 개인을 건강위험수준별로 계층화함.
 - 국가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체군, 건강위험군, 건강고위험군, 만성질환군, 급성질환군으로 분류되며,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건강체군, 건강위험군,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관리에 집중함.
- 네 번째 단계, 각 위험계층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동기부여 혹은 건강생활습관 개입)함.
 - 예를 들어, 적극적 상담군(고건강위험군)에 속한 사람에게 문자서비스를 주 1회 제공하고 3개월마다 재검진을 하여 생활습관개선 정도 및 건강상태를 평가함.
- 다섯 번째 단계, 효과를 측정함.
- 여섯 번째 단계, 건강위험도를 재평가 하고 과정을 반복함.

■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공·사 의료보험자들이 보험가입자들의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임.

4) 생체정보는 신장, 체중, BMI, 허리둘레,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관상동맥 위험률, 중성지방 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대규모 의료보험회사들은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고, 자가보험자나 중소의료보험회사들은 외부 공급자와 위탁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공적 보험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의 건강위험도를 평가한 후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부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피보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최근 10여 년 간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5년에서 2006년에 많은 일반기업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서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공급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은 2000년 대 중반에 공적 보험자가 건강생활관리서비스(특정보건지도)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보험회사를 포함한 많은 공급기관이 등장하였음.

3. 일반적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가. 개인 특성별 건강상태

■ 제 6차 한국의료패널⁵⁾ 자료를 이용해 주관적 건강상태⁶⁾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최하위 소득계층(소득 하위 20%) 가운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음⁷⁾으로 대답한 사람의 비중이 31.8%인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은 절반 정도(52%)가 좋다고 대답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성인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4.1%였던 것이 70세 이상에서는 31.2%로 나타남.

5) 한국의료패널은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6)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설문지 질문은 “귀하께서는 동년배 분과 비교하여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며, 응답은 1~5까지 척도로 각각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대답함.
 7) “매우 좋음”과 “좋음”을 포함.

〈표 1〉 소득수준별, 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 구분 | 소득수준별 | | | | | 연령대별 | | | | | |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18~19세 | 2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
| 좋음 | 31.8 | 39.8 | 45.2 | 48.9 | 52.0 | 62.5 | 52.9 | 47.8 | 41.6 | 37.3 | 32.0 |
| 보통 | 37.9 | 41.5 | 43.5 | 40.4 | 40.8 | 33.3 | 40.5 | 43.4 | 43.5 | 41.0 | 36.8 |
| 나쁨 | 30.4 | 18.7 | 11.3 | 10.7 | 7.2 | 4.1 | 6.6 | 8.8 | 14.9 | 21.7 | 31.2 |
| 합(명) | 1,568 | 1,960 | 2,180 | 2,311 | 2,320 | 267 | 2,986 | 2,371 | 1,991 | 1,813 | 1,6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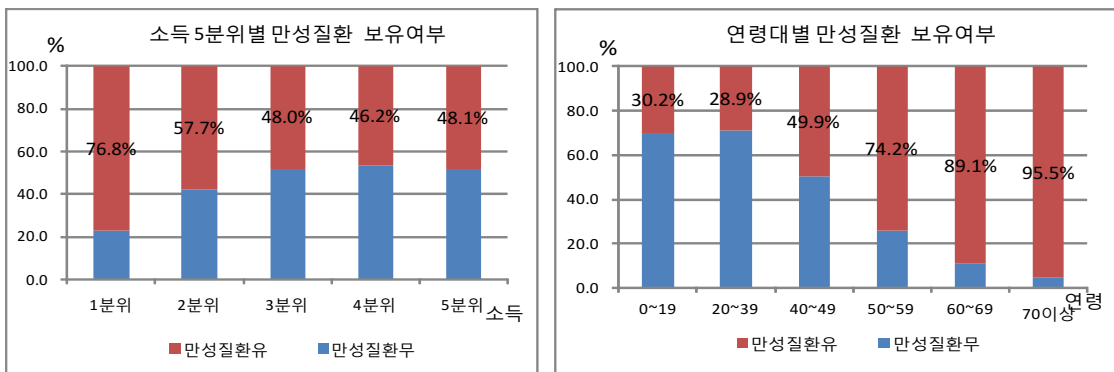
자료: 제6차 한국의료패널, 저자 계산.

■ 객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만성질환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보유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각 연령대별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40세 이후로 만성질환 보유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생활관리는 40세 이후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연령대별로 만성질환 보유자 비중은 20~39세는 28.9%, 40~49세는 49.9%, 50~59세는 74.2%, 60~69세는 89.1%, 70세 이상은 95.5%로 나타남.

〈그림 1〉 소득 및 연령별 만성질환 보유여부



주: 소득수준 응답자 전체(15,966명) 중 만성질환 보유자는 8,500명이며, 나이 응답자 전체(17,035명) 중 만성질환 보유자는 9,067명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여성이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생활관리는 여성에게 보다 필요함을 시사함.

- 남성 가운데 49.5%, 여성은 40.2% 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함.
- 만성질환의 경우도 여성 가운데 57.8%가 보유한 반면, 남성은 48.4%가 보유함.

〈표 2〉 성별 주관적·객관적 건강상태

(단위: %)

| 구분 | 주관적 건강상태 | | | | 객관적 건강상태(만성질환) |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합명 | 유 | 무 | 인원 |
| 남 | 49.5 | 39.8 | 10.7 | 4,961 | 48.4 | 51.6 | 8,301 |
| 여 | 40.2 | 42.1 | 17.7 | 6,072 | 57.8 | 42.2 | 8,734 |

자료: 제6차 한국의료패널, 저자 계산.

나. 건강생활습관

■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건강생활습관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생활습관을 나타내는 지표로 신체활동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3.2%가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1주일에 1~2일,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각각 12.6%와 14.3%였음.

■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최저 소득층에서는 88%에 이르는 반면, 최상위 소득층에서는 65.9%임.
- 여성의 81.2%가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64.0%가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8) 건강생활습관을 나타내는 지표로 “격렬한 신체활동”을 활용함. 질문 내용은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심장박동이 많이 증가하는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임. 여기 신체활동에는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힘이 많이 드는 직업 활동도 포함함.

〈표 3〉 소득수준별, 의료보장형태별, 성별 건강생활습관(신체활동)

(단위: %)

| 구분 | 전체 | 소득수준별 | | | | | 성별 | |
|-------|--------|-------|-------|-------|-------|-------|-------|-------|
|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남 | 여 |
| 전혀 안함 | 73.2 | 88.0 | 77.5 | 73.0 | 67.1 | 65.9 | 64.0 | 81.2 |
| 1~2일 | 12.6 | 5.3 | 9.2 | 12.2 | 16.0 | 16.8 | 16.8 | 8.9 |
| 3일 이상 | 14.3 | 6.7 | 13.3 | 14.8 | 17.0 | 17.3 | 19.3 | 10.0 |
| 합(명) | 11,891 | 1,667 | 2,101 | 2,361 | 2,483 | 2,521 | 5,540 | 6,351 |

주: 신체활동관련 질문의 전체 응답자는 11,891명이며, 그 가운데 소득수준 응답자는 11,133명임.
 자료: 제6차 한국의료패널,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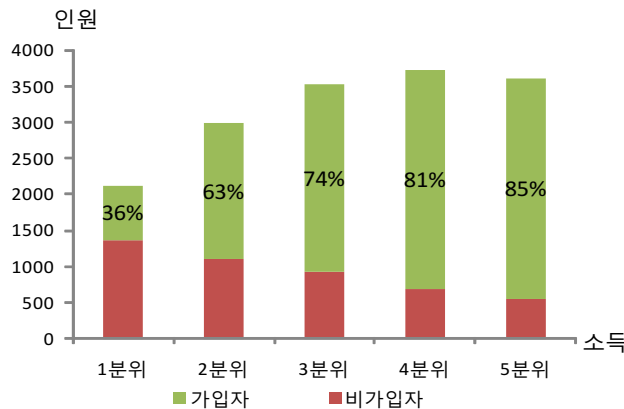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이 양호하지 않아 건강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계층과 여성은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4.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최하위 소득자 중 36%가 가입한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85%가 가입하고 있음.

〈그림 2〉 소득에 따른 민영의료보험(실손+정액) 가입여부



자료: 제6차 한국의료패널.

■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볼 때, 민영의료보험(실손+정액)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주관적·객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최하 소득층(소득 1분위)에서 민영의료보험 비가입자 중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의 비중은 81.9%인 반면, 가입자의 경우는 67.6%임.
- 최상위 소득층(소득 5분위)을 보면 민영의료보험 비가입자 가운데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의 비중은 65.8%, 가입자중 만성질환 보유자의 비중은 47.9%임.
- 이는 보험가입 시의 계약적부심사 효과와 가입자의 위험회피성향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계약적부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 역시 건강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소득1분위(하위 20%)에 있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67.6%, 소득5분위(상위 20%)에 있는 가입자중 47.9%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1분위(하위 20%)에 있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83.6%, 소득5분위(상위 20%)에 있는 가입자중 64.7%가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소득수준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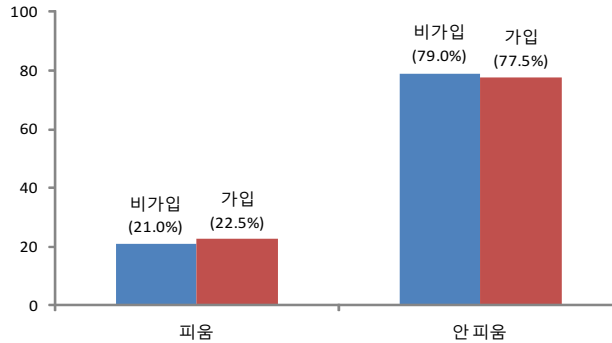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 | 소득1분위(하위 20%) | | 소득5분위(상위 20%) | |
|----------------------|-------|---------------|------|---------------|-------|
| | | 비가입 | 가입 | 비가입 | 가입 |
|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 30.6 | 34.2 | 36.0 | 46.5 |
| | 보통 | 36.2 | 41.4 | 40.0 | 42.9 |
| | 나쁨 | 33.2 | 24.5 | 24.0 | 10.6 |
| | 합(명) | 1,053 | 515 | 200 | 490 |
| 객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 유 | 81.9 | 67.6 | 65.8 | 47.9 |
| | 무 | 18.1 | 32.4 | 34.2 | 52.1 |
| | 합(명) | 1,369 | 756 | 298 | 766 |
| 건강생활습관 (격렬한 신체활동) | 전혀 안함 | 90.1 | 83.6 | 71.9 | 64.7 |
| | 1~2일 | 4.1 | 7.7 | 15.9 | 17.0 |
| | 3일 이상 | 5.8 | 8.7 | 12.2 | 18.3 |
| | 합(명) | 1,124 | 543 | 409 | 2,112 |

자료: 제6차 한국의료패널, 저자 계산.

■ 흡연⁹⁾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그림 3〉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별 흡연 현황



주: 1) 가입자 7,555명 중 흡연자는 1,699명, 비흡연자는 5,856명임.
 2) 비가입자 3,578명 중 흡연자는 753명, 비흡연자는 2,825명임.
 자료: 제6차 한국의료패널.

■ 전체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생활 습관이 비가입자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만성질환 보유상태 및 신체활동수준을 보았을 때 건강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5. 시사점



■ 개인들의 건강상태와 건강생활습관을 조사해 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객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건강 생활습관이 일관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평균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건강상태도 양 호하고 건강위험요인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건강생활습관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 크 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적 기관이 이들에게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것임.

9) 미국 HERO(Health Enhancement Research Organization)는 흡연, 신체활동 부족, 불량한 식습관, 비만으로 인하여 의 료비의 25%가 지출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신체활동 부족(32%)과 흡연(31%)이 가장 큰 건강위험요인임을 밝히고 있음.

-
- 저소득층은 민영의료보험 가입률도 낮아 이를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도 적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함.
 - 동일 소득수준에서 민영의료보험 비가입자보다는 가입자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평균적으로 다소 양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계약적부심사 효과와 가입자의 위험회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도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계약적부심사를 한 후 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 역시 매우 높고 비가입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더욱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비가입자보다 높을 것으로 보임.
 - 보험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더 크다는 것은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함.
 - 건강생활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정책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이러한 수요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신체활동이 보험가입여부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과 달리 흡연은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미미하므로 특정 층을 타겟으로 하기보다 흡연자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kiri



FY2013 생명보험 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인해 8.0% 감소하였으나 제도 개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세제개편에 따른 즉시연금 수입보험료 급증 이후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32.0% 감소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세제개편 기저효과로 9.0% 감소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0.3% 감소한데 이어 FY2013에도 0.9%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반면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암보험, 질병보험 신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3.8%의 양호한 증가를 기록하였고,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2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종목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신성장 동력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일반저축성보험 수요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변액보험 또한 주가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수요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망보험의 성장성 회복이 나타나고 있으나 암보험, 질병보험의 경우 과거 생명보험회사들이 손실을 경험한 바 있어 고성장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신규시장인 고령시장의 경우 경험 데이터 부족과 높은 위험률 등으로 시장 확대가 여의치 않음.
-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 점은 성장성과 수익성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보험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장수위험 및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층의 보험상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위험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소셜 미디어의 확산,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증가 등 정보통신(IT)기술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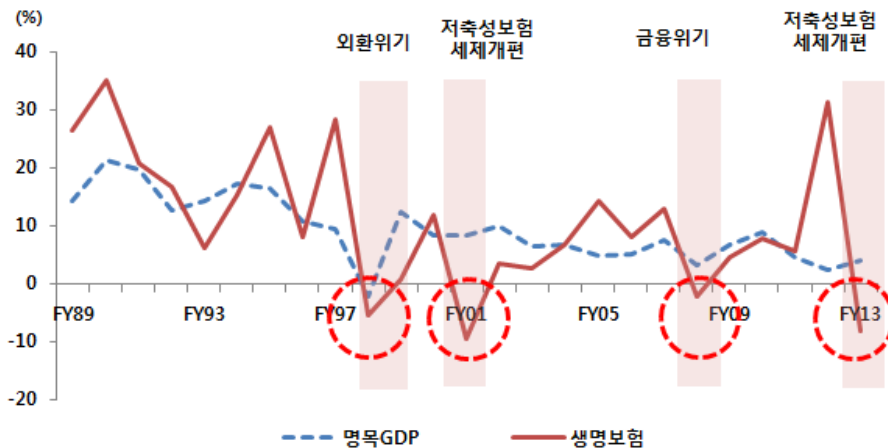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한 기저효과로 인해 8.0% 감소함.

- 2012년 8월 세제개편 발표 이후 즉시연금을 중심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급증세를 이어 갔으나 2013년 2월 15일 개정세법 발효 이후 수입보험료가 급감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는 FY1998, FY2001, FY2008 이후 네 번째인데, FY1997, FY2008에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때문이었으나 FY2001과 FY2013은 제도 개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됨.
 - FY2001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및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5년→7년)에 따라 FY2000 제도 변경 전 일반저축성보험 가입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보험연구원¹⁾에 따르면 2014년 수입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명목경제성장률



주: FY2013은 2013년 4월~12월 실적이며,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한국은행 ECOS,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보험연구원(2013), 『201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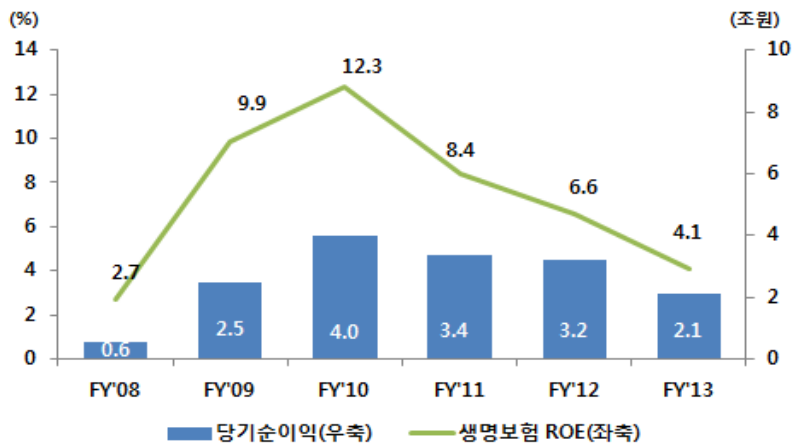
■ FY2013 수입보험료 감소는 일반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가운데 보장성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종목 간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가 나타난 이후 수요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모습임.
-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과 함께 주식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저축성보험도 주식시장의 정세 속에서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반면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신상품 출시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생명보험산업 성장을 주도함.
- 생명보험 중 개인보험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사망보험 저성장, 저축성보험 고성장 구조가 사망보험 완만한 성장, 저축성보험 성장 둔화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FY2013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5.4% 감소한 약 2.1조 원을 기록하는 등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은 FY2011 이후 악화되고 있음.

〈그림 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및 ROE 추이



주: FY2013은 2013년 4월~12월 실적이며,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 산업이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RBC제도 강화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성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은 수익성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FY2013 생명보험 동향을 살펴보고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FY2013 생명보험 종목별 성장률 및 특징



■ FY201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과 단체보험만이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변액보험 또한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 종신보험, 질병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풀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신상품 출시 노력이 계속되면서 암보험 등 질병보험을 중심으로 3.8%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냄.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세계개편에 따른 즉시연금 수입보험료 급증 이후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32.0% 감소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세계개편 기저효과로 9.0% 감소함.
-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0.9% 감소하면서 FY2012에 이어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2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표 1〉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 구 분 | FY'08 | FY'09 | FY'10 | FY'11 | FY'12 | FY'13 |
|------|--------|-------|-------|-------|-------|--------|
| 생존보험 | -0.5% | 8.8% | 11.6% | 5.0% | 87.6% | -32.0% |
| 사망보험 | -1.1% | -1.7% | -0.8% | 0.0% | 7.4% | 3.8% |
| 생사혼합 | 0.5% | 23.6% | 28.2% | 16.3% | 81.1% | -9.0% |
| 변액보험 | 1.2% | -2.3% | 12.9% | 9.7% | -0.3% | -0.9% |
| 단체보험 | -19.2% | 25.7% | -0.5% | 5.3% | -3.1% | 27.5% |

주: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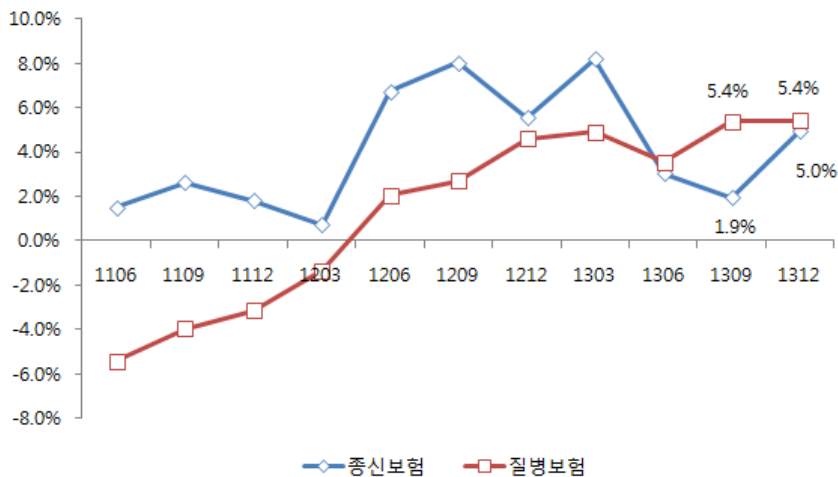
■ ■ 종신보험, C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등으로 구성된 사망보험은 2000년대 초반 종신보험의 고성장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FY2008 이후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의 부진한 모습을 지속한 후 FY2012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시장의 신수요 창출 어려움과 암보험, 질병보험 등의 소극적인 판매 등으로 FY2008 1.1% 감소한 이후 FY2009, FY2010에도 각각 1.7%, 0.8% 감소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반저축성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축성보험 풀림현상 해소를 위해 보장성보험 신상품 판매를 확대함.
- 사망보험은 FY2012 7.4% 증가(농협생명 포함)하면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으며, FY2013에도 3.8%의 성장을 지속함.

■ ■ FY2013 사망보험은 그동안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암보험, 질병보험 신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함.

-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은 과거 손해를 악화로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했던 암보험, 질병보험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건강리스크에 대한 관심 확대와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3〉 사망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주: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회사들은 통합형보험 위주로 종신보험 공급확대에 나섰으나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 저성장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됨.

■ 한편 사망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시장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FY2013 3.8% 성장에 그치는 등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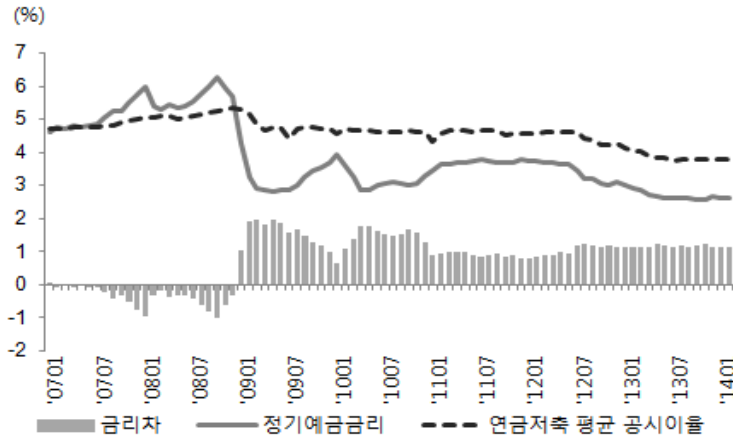
- 종신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고가이고 가입률이 높다는 점이 신규수요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와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저출산 등은 장기적인 종신보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암보험, 질병보험의 경우에도 과거 생명보험회사들이 손실을 경험하고 소극적인 판매에 나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성장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신규시장인 고령시장의 경우 경험 데이터 부족과 높은 위험률 등으로 시장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생명보험 회사들은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위험률차익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보장성보험이 생명보험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2) 저축성보험,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 큰 폭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서 예·적금 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이 부각된 생명보험 회사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FY2012까지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음.

- 금융위기 이후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장기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는 생명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저축성보험(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은 시중금리 대비 상대적인 고금리를 나타냈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얻게 되는 세제혜택도 부각되면서 고성장을 지속함.
- 특히 일반저축성보험은 방키슈랑스를 통한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은행 창구를 통해 예·적금 상품과 일반저축성보험 상품의 비교가 용이해졌고 세제혜택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부각될 수 있었기 때문임.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FY2001 이후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해 왔으나 FY2008부터 FY2012까지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그림 4〉 시중예금금리와 연금저축 공시이율 차 추이



주: 연금저축 평균 공시이율은 월별 금리연동형 연금저축 공시이율의 단순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ECOS,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

■ FY2012에는 2012년 8월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가 발표되면서 제도변경 이전에 가입하려는 수요 증가로 종신연금을 중심으로 생존보험 수입보험료가 기록적인 급증세를 나타냈으며, 생사혼합보험 또한 수입보험료가 급증함.

- 이전까지는 즉시연금 가입 직후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종신형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형 연금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함.²⁾
- 생사혼합보험은 비과세 인정 기간인 10년 이내 중도인출 시 일정 부분 비과세가 적용되던 점을 개선하여 연간 200만 원 이상 중도인출 시 과세하도록 함.²⁾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세법개정이 발표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도변경 전 가입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FY2013 각각 87.6%, 81.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³⁾

■ FY2013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 현상에 대한 기저효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2) 2013년 1월 발표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는 종신형 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 상속형 연금(보험료 2억 원 이상)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 시 과세안도 삭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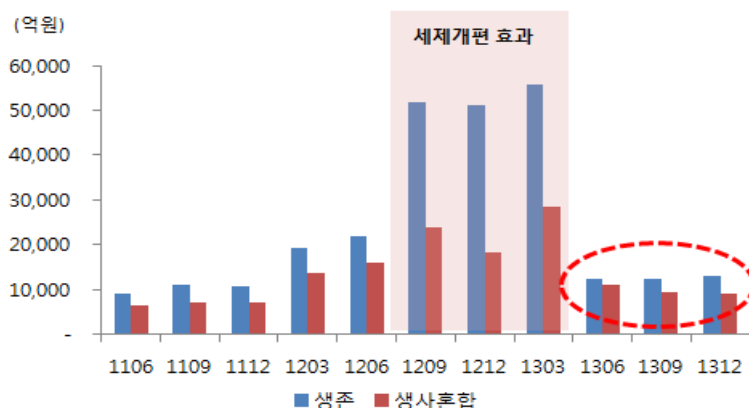
3) 농협보험 신규진입 효과도 반영됨.

- FY2013에는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각각 32.0%, 9.0%의 수입보험료 감소가 나타났으며, 초회보험료의 경우 각각 69.7%, 49.4% 감소함.
- FY2001에도 전년도 세계개편에 따른 기저효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각각 31.7%, 22.8%의 수입보험료 감소를 기록하였고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또한 9.5%의 감소를 기록한 바 있음.
 -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및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5년→7년)가 예정되면서 FY2000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함.

■ 한편 수입보험료 급증 효과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FY2013 들어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환경과 경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저축성보험의 고성장세 회복은 무리가 있어 보임.

-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세계개편 효과가 발생하기 전인 2012년 1월~6월 사이의 분기 초회보험료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FY2013 이후 초회보험료가 전분기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5〉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주: FY2012 이후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세계혜택 축소는 저축성보험 수요에 구조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강점이 계속해서 부각되기는 어려워 보임.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확대를 통한 규모 확대 경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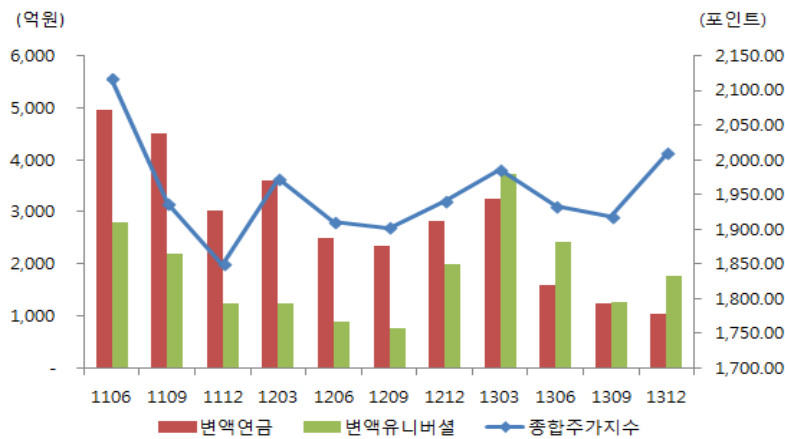
벌어왔던 점도 일반저축성보험 고성장의 한 요인이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와 RBC제도 강화 등에 따라 과도한 경쟁도 자제됨.

3)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지속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0.3% 감소한데 이어 FY2013에도 0.9%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이는 변액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변액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임.

-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주식시장이 2000 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했음에도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변액유니버설보험 초회보험료는 증가하고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저금리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변액저축성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기대보다 낮은 수익률 등으로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임.

3. 시사점



■ FY2013 수입보험료는 제도변화의 영향으로 이례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명목경제성장을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종목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일반 저축성보험 수요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변액보험 또한 추가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수요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사망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암보험, 질병보험 신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수입보험료가 양호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저성장, 저축성보험 고성장 구조에서 사망보험 완만한 성장, 저축성보험 성장 둔화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신성장 동력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새로운 종목이 출현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대적 고금리와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일반저축성보험이 부각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함.
- 그러나 현재는 상품 포트폴리오가 선진화됨에 따라 신상품 출현을 통한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세제혜택 축소, 저금리 환경 지속 한계 등에 따라 저축성보험을 통한 고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최근 사망보험의 성장성 회복이 나타나고 있으나 암보험, 질병보험의 경우 과거 생명보험회사들이 손실을 경험한 바 있어 고성장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신규시장인 고령시장의 경우 경험 데이터 부족과 높은 위험률 등으로 시장 확대가 여의치 않아 보임.

■ 다양한 건전성 규제제도 변화와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생명보험산업에 있어 성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은 성장성과 수익성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계획되어 있는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RBC제도 강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은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심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도 직면해 있으며, 보험상품의 주 소비층인 30~40대

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리스크 증가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임.

- 이러한 가운데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 점은 성장성과 수익성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임.

■ **생명보험회사들은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보험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장수위험 및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층의 보험상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위험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위와 같은 상품들은 생명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위험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소셜 미디어의 확산,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증가에 따른 모바일화, 대량의 데이터 집적과 활용 등 정보통신(IT)기술 변화를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마케팅 등 생명보험상품 판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또한 보험소비자의 신뢰도 약화는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여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들도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보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임.
 - 생명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와 이해가 용이하도록 비교공시를 강화해야 할 것임. [kiri](#)



FY2013¹⁾ 손해보험산업 동향과 시사점

최 원 선임연구원

요약

-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FY2013 들어 명목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등의 고성장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FY2013에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함.
 -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과거와 같은 높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FY2013 종목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저성장을 나타냈으며,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세계개편안에 대한 기저효과로 장기 저축성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여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5.6%로 둔화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로 0.4%의 저성장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둔화로 화재, 해상, 보증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특종보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어 전체 1.5% 증가에 그침.
 -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400만 원 상향조정 효과가 약화되어 3.1% 증가에 그쳤으며,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 소진 이후 신규수요 창출이 어려워 12.1% 감소함.
- FY2013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 및 당기순이익과 관련한 특징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다른 종목들도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높은 손해율 지속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나, 자동차 보험료가 서민 경제와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인상에 어려움이 있어 논란이 됨.

1) FY2013은 회계연도 개편으로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제시된 FY2013 수치는 2013년 4~12월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 수익성 측면에서도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부진한 당기순이익 실적을 나타냄.

■ 앞서 언급된 FY2013 손해보험산업과 관련한 특징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음.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과 함께 손해보험회사들이 처하고 있는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위험 대비 경영체제가 필요함.
-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영업 부문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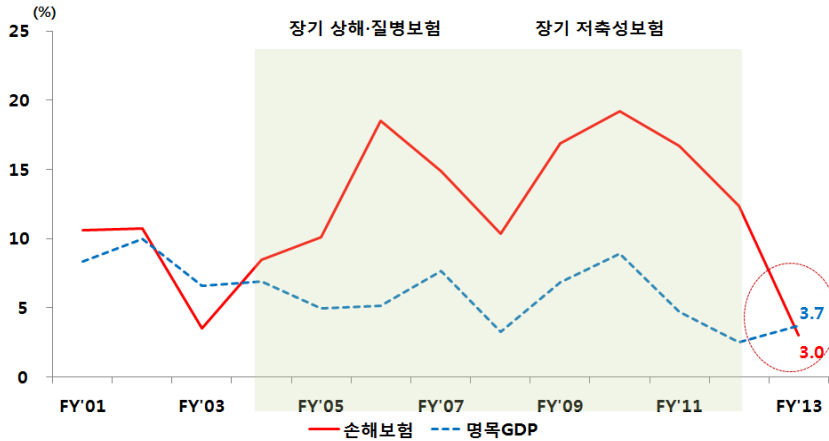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04부터 FY2012까지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FY2013(4월~12월) 들어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하회함.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기 상해·질병보험이 손해보험 고성장을 이끌었고, 이와 같은 고성장 흐름은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등으로 이어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함.
- 이와 같은 원수보험료 증가율 하락은 세계개편과 개인연금 제도변화에 의한 기저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원수보험료가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과 명목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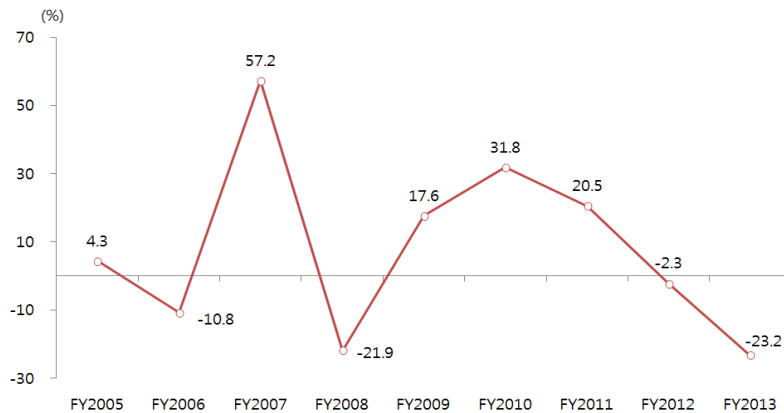


주: 2013년 명목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속보치를 사용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보험료 수입 증가세 둔화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당기순이익은 FY2012에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FY2013에는 23.2% 줄어듦.
- 자동차보험 경영실적 악화로 보험영업이익 적자폭이 확대되고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투자영업이익 증가세도 둔화됨.

〈그림 2〉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감률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에 보고는 FY2013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 및 당기순이익과 관련한 특징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FY2013 손해보험산업 동향



가. 원수보험료

- FY2013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²⁾는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저성장을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에 그친 53조 1,354억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5.6%로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가 포함된 2012년 8월 세계개편안³⁾에 대한 기저효과로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로 0.4%의 저성장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둔화로 화재, 해상, 보증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특종보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어 전체 1.5% 증가에 그침.
-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400만 원 상향조정 효과가 약화되어 3.1% 증가에 그쳤으며,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 소진 이후 신규수요 창출이 어려워 12.1% 감소함.

- FY201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5.6% 증가에 그친 31조 5,47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두 자릿수의 고성장 흐름이 한 자릿수로 둔화됨.

- 비중이 큰 장기 저축성보험⁴⁾의 경우 FY2012에는 2012년 8월 발표된 세계개편안의 영향으로 고성장을 나타냈으나 FY2013에는 이와 같은 세계개편안의 기저효과 등으로 4.3% 감소함.

2) 손해보험은 크게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그리고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2012년 8월 발표된 세계개편안에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편안 발표 이후 제도 변경 이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였음.
 4) FY2013 기준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이며,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 질병보험이 각각 25.7%와 19.4%를 차지함.

-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으로 늘어났던 신규가입 계약⁵⁾의 계속보험료가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16.1% 증가함.
 - 단, 초회보험료의 경우 FY2013 장기 질병보험 초회보험료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장기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세를 기록하여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냄.

■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3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친 저성장을 지속함.

- 경기둔화로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였던 자동차 등록대수의 경우 2013년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름.
- 대당보험료의 경우 사고자 특별 할증률 인하, 주행거리 연동특약 및 블랙박스 할인특약 확대 등 할인형 상품 확대에 감소함.

■ FY201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 해상,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특종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1.5%의 저성장을 기록함.

- 화재보험은 의무가입 수요 확대⁶⁾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 종합보험과 장기 재물보험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건설경기 침체도 계속되어 2.9% 감소함.
- 해상보험의 경우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전체 10.7% 감소함.
-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하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 저성장과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증가세 둔화로 4.8% 감소함.
- 특종보험의 경우 경기둔화 등으로 기술보험과 상해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어 2.4% 증가에 그친 저성장을 나타냄.

■ FY2013 개인연금⁷⁾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에 그치고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도 12.1% 감소하여 전체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4.2% 감소함.

5)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FY2012에는 제도개선이 반영되기 이전의 상품에 가입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한 바 있음.

6)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3년 8월 22일까지 해당 법률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의 가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함.

7) 손해보험회사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을 판매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FY2011과 FY201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크게 늘어났으나, 이와 같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조정 효과가 줄어들면서 FY2013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3.1% 증가에 그침.
-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⁸⁾되어 도입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을 통하여 신규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금융업권 간 경쟁도 심화되어 FY2013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12.1% 감소함.

〈표 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단위: 억 원, %)

| 구 분 | | FY2009 | FY2010 | FY2011 | FY2012 ¹⁾ | 2012년 12월 말 | FY2013 ²⁾ |
|--------------------|-----|---------|---------|---------|----------------------|-------------|----------------------|
| 손해보험 전체 | 보험료 | 438,323 | 522,444 | 609,648 | 685,422 | 515,854 | 531,354 |
| | 증가율 | 16.9 | 19.2 | 16.7 | 12.4 | 14.9 | 3.0 |
| 장기손해보험 | 보험료 | 232,988 | 281,813 | 341,432 | 401,896 | 298,782 | 315,478 |
| | 증가율 | 23.4 | 21.0 | 21.2 | 17.7 | 22.0 | 5.6 |
| 자동차보험 | 보험료 | 112,224 | 124,133 | 130,415 | 128,416 | 97,040 | 97,435 |
| | 증가율 | 2.6 | 10.6 | 5.1 | -1.5 | -0.9 | 0.4 |
| 일반손해보험 | 보험료 | 58,470 | 62,901 | 70,901 | 80,773 | 60,792 | 61,679 |
| | 증가율 | 8.7 | 7.6 | 12.7 | 13.9 | 14.1 | 1.5 |
| 연금부문 ³⁾ | 보험료 | 34,641 | 53,598 | 66,900 | 74,337 | 59,240 | 56,762 |
| | 증가율 | 50.7 | 54.7 | 24.8 | 11.1 | 12.2 | -4.2 |

주: 1)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

2)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3)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당기순이익

■ FY2013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4,919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23.2% 감소함.

-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경과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보험료 적립금, 순사업비, 발생손해액 등이 늘어나 1조 5,777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에 비하여 적자규모가 확대됨.

8)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5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86.5%로 추정되었으며,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이자수익 증가와 외화환산손실 감소 등으로 3조 7,518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5.0%에 그치면서 둔화됨.

〈표 2〉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및 증가율

(단위: 억 원, %)

| 구 분 | | FY2009 | FY2010 | FY2011 | FY2012 ²⁾ | 2012년 12월 말 | FY2013 ³⁾ |
|--------|-------------------|--------|--------|--------|----------------------|-------------|----------------------|
| 당기순이익 | 금 액 | 15,413 | 20,314 | 24,469 | 23,915 | 19,453 | 14,919 |
| | 증가율 | 17.6 | 31.8 | 20.5 | -2.3 | -6.5 | -23.2 |
| 보험영업이익 | 금 액 | -9,365 | -9,879 | -5,685 | -15,515 | -9,335 | -15,777 |
| | 증가율 ³⁾ | 10.3 | 5.5 | -42.5 | 172.9 | 1,414.6 | 69.0 |
| 투자영업이익 | 금 액 | 31,413 | 37,345 | 40,569 | 47,869 | 35,741 | 37,518 |
| | 증가율 | 19.4 | 18.9 | 8.6 | 18.0 | 20.1 | 5.0 |

주: 1)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

2)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3) 마이너스 수치 사이의 증가율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FY2013 손해보험산업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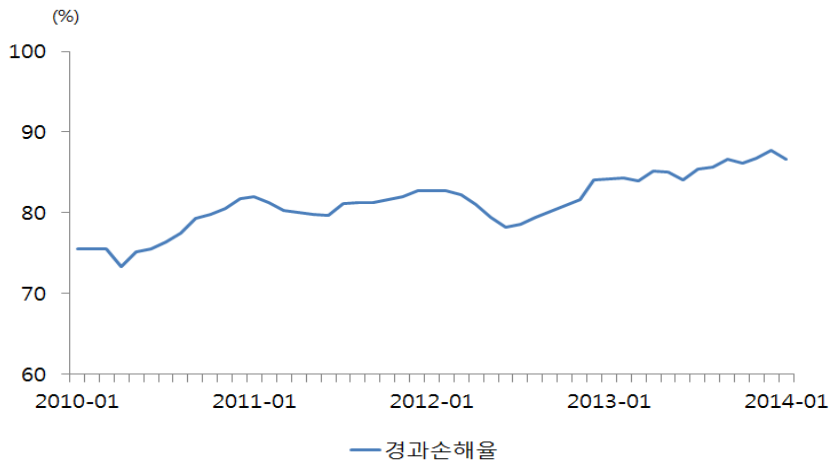
■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다른 종목들도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시중금리 대비 상대적인 높은 금리를 나타내고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각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0%를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를 포함한 2013년 8월 세계개편안의 기저효과로 장기 저축성보험 신규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음.
- 개인연금도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세제적격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되면서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이와 같은 세제혜택에 대한 효과가 약화되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FY2012에는 -1.5%, FY2013에는 0.4%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도 FY2013 1.5%의 저성장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높은 수준의 손해율이 지속되어 실적이 악화되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서민 경제와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인상에 어려움이 있어 논란이 되었음.

-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자기부담 정률제 도입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85%를 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높은 손해율로 지속으로 2013년 자동차보험산업 적자규모는 약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전체 손해보험산업 경영성과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 손해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경영성과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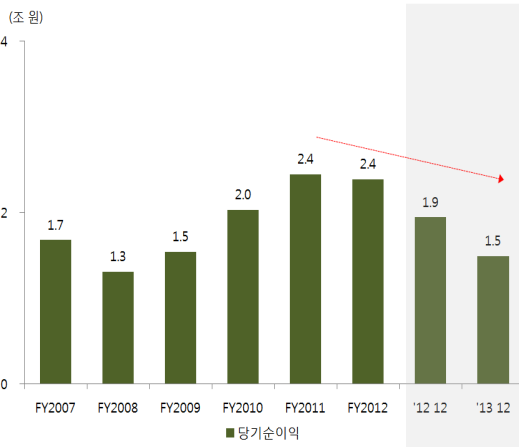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통계포털서비스.

■ 당기순이익 흑자 규모가 FY2011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영업 부문 누적적자 규모는 이미 FY2012 전체 4분기 누적적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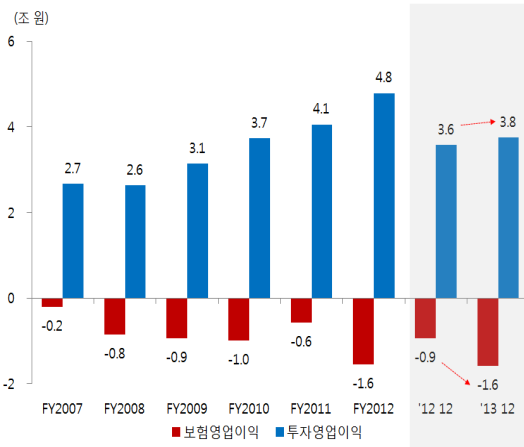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에 따른 보험영업이익 적자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FY2012 -2.3%, FY2013 -23.2%을 기록하여 둔화됨.
- FY2012 전체 보험영업이익 적자규모가 1조 5,515억 원인데 반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3분기 누적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이미 1조 5,777억 원을 나타냄.

〈그림 4〉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주: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5〉 손해보험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주: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시사점



■ 향후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과 함께 손해보험회사들이 처하고 있는 원수보험료 성장성 둔화와 경영실적 악화 등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위험 대비 경영체제가 요구됨.

- 신규 수익원 창출이 요구되는데,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반으로 진출 시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직접적인 해외시장 진입 또는 M&A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하여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으로 인한 장기적인 위험을 줄여 나가야 하며, 다양한 위험 보장 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 상품에 대한 효율, 손해율, 사업비 등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고령층을 위한 위험 보장서비스 제공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 제공 등으로 손해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계약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손해율 개선,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RBC 비율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손해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데에는 자동차보험 저성장과 경영실적 악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소비자 이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여론과 자동차보험을 민영보험으로 바라보는 자동차 보험제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해결방안의 하나로 의무 가입이 필요한 책임담보의 경우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기타담보는 자유화의 폭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는 이원적 운영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⁹⁾

■ 보험영업 부문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됨.

- 투자이익의 경우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 확보가 필요함.
- 특히, 보험영업 부문 적자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자산운용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kiri**

9) 기승도·김혜란(2013),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정책세미나.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시장 성장의 시사점

최창희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사이버 리스크에 의한 전 세계 연간 최대 손해액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액의 5배 규모이며 전산 시스템과 휴대용 전자기기 보급 확대로 손해액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만에서 수억 건의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 유출 사건 수와 유출 정보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사고는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대재해와 유사한 형태의 손해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급속한 정보화의 진행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의 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을 사이버 리스크 평가·관리 컨설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과 함께 제공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의 사이버 배상책임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최근 들어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이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언더라이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컨설팅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 IT 시스템 관련 전문 지식, 사이버 리스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수행 능력, 사이버 리스크 관리 체계에 관한 이해, 다양한 CLI 담보에 대한 평가 능력
- 또한 손해보험회사들은 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다양한 담보를 포함한 관련 상품 개발, 외국 회사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한 사업 영역 확대,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사이버 리스크에 의한 전 세계 연간 최대 손해액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액의 5배 규모이며, 전산 시스템과 휴대용 전자기기 보급 확대로 손해액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McAfee(2013)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이버 범죄에 의하여 매년 발생하는 비용은 3,000억에서 1조 달러 규모이며 매년 손해액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¹⁾

-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 이하 CLI)은 e-business, 인터넷 네트워크 및 정보 자산 등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하여 계약자와 제3자의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임.
 - CLI는 정보자산의 유실·훼손·유출에 의한 소득 손실 또는 운영비용 증가, 시스템·정보 복구 중 발생한 비용 및 사업 중단 비용, 사이버 갈취²⁾, 명성 손상 비용, 법적 대응 비용 등의 계약 당사자 리스크를 담보함.
 - CLI가 담보하는 제3자 리스크는 고객정보 유실·훼손·유출에 대한 배상·보상 비용³⁾, 금융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 보상 비용, 조사 비용, 정보 유출 통지비용, 정보 유출 대중매체 공지 비용, 제3자 정보의 손실, 벌금 및 과징금 비용, 소송 비용, 카드 재발급 비용 등임.⁴⁾
 -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외국에서는 CLI가 제3자 리스크와 당사자 리스크를 모두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됨.

- 윈헨 재보험은 향후 7년간 CLI가 현재의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윈헨 재보험은 현재 2013년에 13억 달러 규모인 CLI 시장이 7년 안에 5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CLI를 제공하는 손해보험회사는 2002년 4개에서 2013년 40여 개로 10배 증가하였음.⁵⁾

1) <http://www.mcafee.com/sg/resources/reports/rp-economic-impact-cybercrime.pdf>
 Biener, Eling, Wirfs(2014), Insurability of Cyber Risk: An Empirical Analysis, IIS 50th Annual Seminar.
 2) 미국에서는 해커가 기업으로부터 빼낸 정보를 담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3) 배상은 법적 책임이고 보상은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임.
 4) 일부 CLI는 시스템 정지 및 오작동으로 인한 상해를 담보로 하고 있음.
 5) Asia Cyber Liability Insurance Conference, <http://www.asiainsurancereview.com/aircyber>

- 외국 보험회사들은 CLI와 함께 사이버 리스크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 보험회사들의 CLI 관련 보험 실적은 미미한 편임.⁶⁾
 -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리스크 관리 컨설팅과 CLI를 함께 판매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음.
 - 현재 국내에 출시된 CLI에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배상책임보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간 241억 원 정도임.
- 본고는 사이버 리스크 현황 및 국내외 CLI 시장과 상품 비교를 통해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2. 세계 사이버 리스크 현황



- 2014년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 Top 10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IT 시스템 고장·산업 스파이 활동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이버 상의 손해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함.⁷⁾
 - 알리안츠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IT 시스템 고장, 해킹 등에 의한 피해는 전체 경영 리스크의 12%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⁸⁾
-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만에서 수억 건의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 유출 건수와 유출된 정보 수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⁹⁾
 - 2013년에 정보 유출 사고 건수와 유출된 정보의 수는 각각 619건과 8,790만 건으로서 2012년도에 비해 각각 38%, 403% 증가하였음.

6) http://www.thebell.co.kr/front/news_print_free.asp?key=201402170100026030001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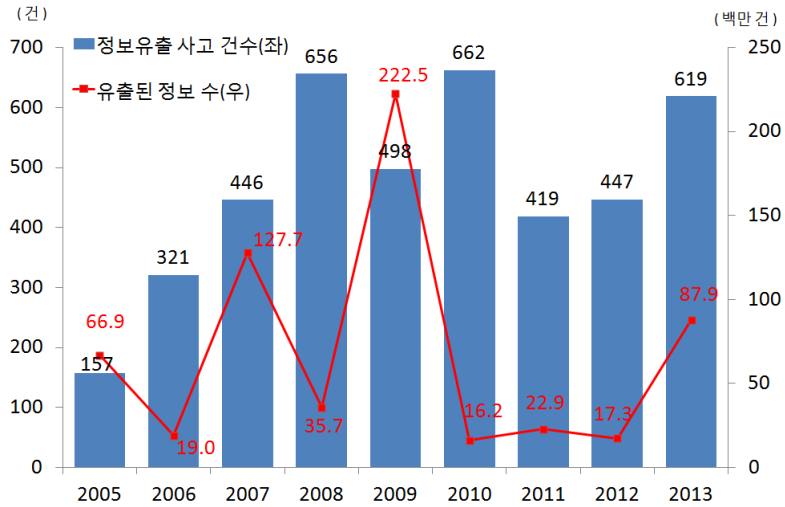
7) Allianz Risk Barometer survey.

8)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ity 보고서.

9) <http://www.datalossdb.org> 참조.

- 정보 유출의 평균비용은 188달러이고 병원의 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어 다른 자료유출에 비해 비용이 큼.

(그림 1) 정보 유출 건수와 정보 유출에 따른 비용



주: 2013년 자료는 2014년 1월 1일 자료로서 2014년 1월에 공개된 3천만 건의 유출된 정보 수를 포함, 왼쪽 축은 사고 건수, 오른쪽 축은 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건수.
 자료: Identify Theft Resource Center.

■ 정보는 다양한 피해 대상과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과거에는 금융기관, 정부 그리고 일반 대기업 등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는 기관·기업이 공격 대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항공우주, 전기, 가스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24%), 금융기관(19%), 비전통적 서비스(17%) 그리고 정부(12%)가 50% 이상을 차지
- 과거 해커들은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해킹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웹, 이메일, 바이러스, 스키밍¹⁰⁾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 유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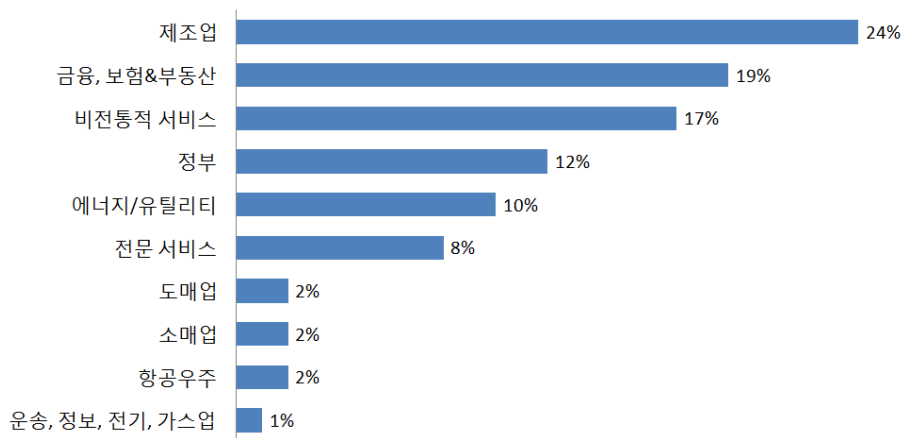
■ 사이버 리스크는 정확한 정보 유출 위치 및 피해액을 파악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음.

- 전통적인 사이버 리스크는 일반대중을 목표로, 한 번 발생함으로써 그 발생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

10) 스키밍(skimming)이란 카드 소지자의 동의 없이 카드상의 정보를 몰래 전자적으로 복사하는 행위임.

- 최근 들어 사이버 리스크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직원의 고의 및 실수, 회사 파일 및 노트북의 분실 등 새롭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함.
- 또한 다국적 기업 등에 의해 정보가 세계 각국에 산재하여 있어 어느 곳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사이버 리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손실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함.

〈그림 2〉 정보 유출 대상(2013년)



자료: Symantec: Internet Security Report 2013.

〈표 1〉 정보 유출 경로 유형

(단위: %)

| 구분 | 비중 | 구분 | 비중 |
|----------|----|---------|----|
| 해킹 | 57 | 컴퓨터 도난 | 2 |
| 사기 | 9 | 이메일 | 2 |
| 컴퓨터 도난 | 5 | 바이러스 | 1 |
| 웹 | 5 | 드라이브 도난 | 1 |
| 폐기문서 | 3 | 드라이브 분실 | 1 |
| 서류 도난 | 3 | 스키밍 | 1 |
| 재래식 우편제도 | 2 | 문서 분실 | 2 |

자료: GUY CARPENTER.

■ 오늘날 기업환경의 특성상 사이버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고, 한번 정보 유출이 되면 해당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관심 및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보유한 정보의 양도 방대해지고 있음.
- 따라서 양질의 개인정보를 가진 금융기관, 보험회사, 보건기관, 정부기관 그리고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주요 공격대상이 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영향이 심각함.
- 정보 유출 후 기업은 중요 데이터 손실, 시장점유율 하락, 순이익 감소 그리고 온라인 기업의 경우 서비스 정지 시 고객 이탈 등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 정보 유출 후 소비자의 71%는 해당 기업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사이버 리스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사이버 리스크는 발생 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큼.
- 사이버 상의 해킹 사고는 새로운 해킹 기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전에 발생한 유례가 없는 형태의 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움.
- 사이버 사고 관련 소송은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
- 사이버 리스크는 전산 시스템 보안 수준과 관리 인력의 교육 및 운영 체계 등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자 간 사이버 리스크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존재함.

3. 국내외 CLI 시장 비교



<규모 비교>

■ 2013년 해외 CLI 시장의 보험료는 약 13억 달러 정도이며 40개의 보험회사에서 CLI를 판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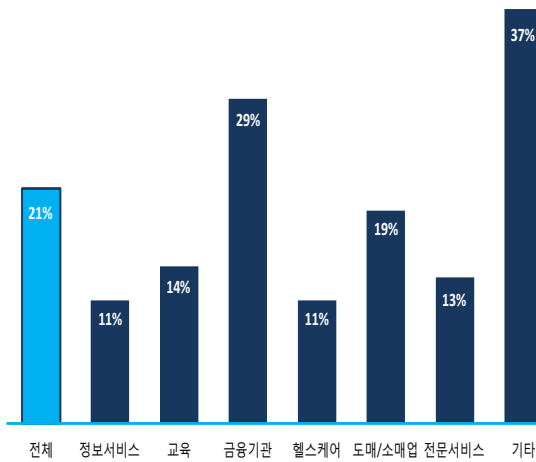
- 미국의 경우 2013년 현재 CLI가 손해보험시장의 약 2% 정도를 차지함.
 - 2013년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총보험료는 7,260억¹¹⁾ 달러임.

- CLI의 전형적인 담보액은 5백만 달러에서 2천5백만 달러임.
- 시장에서 상위 6개사(A사~F사)가 시장의 5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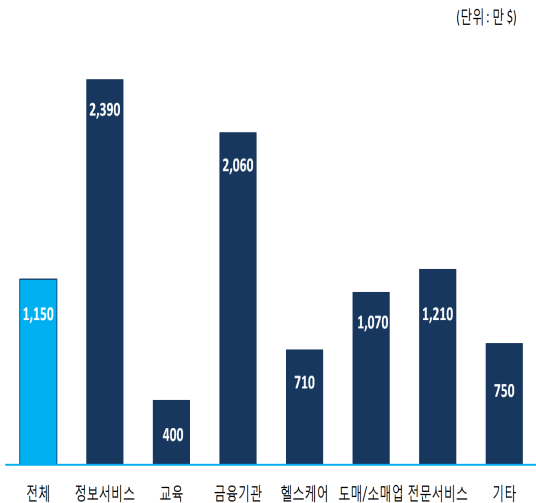
■ 산업 전체에서 CLI 보험가입이 2012년 대비 2013년에 21%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전체 산업이 구매한 CLI의 평균한도는 1,150만 달러임.

- 산업전반에서 전년도 대비 보험가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증가가 두드러짐.
- 산업별 구매한도 평균은 정보서비스가 2,390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이 2,06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음.

<그림 3> 전년도 대비 산업별 보험구매 증가율(2013년)



<그림 4> 산업별 평균 구매 한도(2013년)



자료: GUY CARPENTER.

■ 국내 CLI는 대부분 의무보험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미미

- FY2010년 기준 CLI 보험료는 78.8억 원으로 손해보험 전체 보험료 51.4조 원의 0.015% 수준에 불과함.
 - 의무보험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54.4억 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배상책임보험 1.8억 원이며, 임의보험인 개인정보 유출배상책임 4.3억 원, e-Biz 배상책임보험은 8.3억 원임.¹²⁾

11) Swiss re, sigma(2014. 3).

12) 보험개발원(2012. 12),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 CEO Report.

- 2013년 53개의 금융회사가 납부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 보험료는 약 43억 원 수준임.
- 김소연 외(2014)¹³⁾는 CLI 시장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음.
 - 약관에 다양한 면책사유 포함, 법원의 친기업적 판결로 인한 손해 발생 사례 부족, 낮은 위자료 판결 액수 그리고 담보하는 리스크의 다양성 부족

〈표 2〉 금융회사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 은행* (9개사) | 생명보험 (12개사) | 손해보험 (15개사) | 여신전문회사 (4개사) | 증권사* (13개사) | 합계 |
|------|--------------|----------------|----------------|-----------------|----------------|-------|
| 총납입액 | 12.39 | 5.72 | 9.99 | 2.19 | 12.61 | 42.90 |

주: 연간보험료 납입 현황으로 2013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증권사의 경우 특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 계산이 시간상 어려운 회사 5개에 대해서는 전체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산함.

자료: 금융회사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

〈표 3〉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구 분 | 조사대상 수 | 가입 수 | 미가입 수 |
|--------|--------|------|-------|
| 은행 | 17 | 9 | 8 |
| 생명보험 | 25 | 12 | 13 |
| 손해보험 | 15 | 15 | 0 |
| 여신전문회사 | 58 | 4 | 4 |
| 증권사 | 13 | 13 | 0 |
| 합계 | 78 | 53 | 25 |

자료: 금융회사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

〈담보 비교〉

■ 미국의 CLI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관련 비용을 기본으로 컴퓨터 관련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주업체 직원 제3자의 과실, 고의적인 유출까지도 담보하는 상품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관련 보험은 제3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을 주 담보로 제공함(〈표 4〉와 〈표 5〉 참조).

13) 김소연·차윤주·김창기·최양호(2014), 『국내 사이버 위험과 사이버 보험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 하계 학술대회.

〈표 4〉 한국, 미국, 일본 CI의 담보 비교

| 국가별 CI의 담보 내용 | | | |
|--|----|----|----|
| 특약의 내용 | 미국 | 일본 | 한국 |
| 데이터 재건, 대체 비용 | ○ | ○ | ○ |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 ○ | ○ | ○ |
| 네트워크 안전 확보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 ○ | ○ | ○ |
| 도난당한 정보가 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손해배상 비용 | ○ | ○ | ○ |
| 해킹, 바이러스 관련 손해배상 비용 | ○ | ○ | ○ |
| 사이버 범죄 유죄 판결 시의 위자료 비용 | ○ | ○ | ○ |
| 기술적인 오류나 부주의로 일어난 손해배상 비용 | ○ | ○ | ○ |
| 도난당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협박처리 비용 | ○ | | |
| 정보 유출 시 그 정보의 소유자에게 고지하라는 법률 비용 | ○ | | |
|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외부비용과 수입 감소분 | ○ | ○ | |
|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외부 비용과 수입 감소분 | ○ | ○ | |
| 정보도난, 유출에 대한 위기관리 비용 | ○ | ○ | |
| 정보도난 처리 비용 | ○ | ○ | |
| 벌금 | ○ | | |
| 기업평판 관련 비용 | ○ | | |
| 사이버 공공기물 파손 시 처리 비용 | ○ | ○ | |
| 네트워크 파괴 및 침입 시 대처 비용 | ○ | ○ | |
|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비용 | ○ | | |
| 포괄적인 접근에 대한 보호 비용(오프라인 매개체 포함) | ○ | ○ | |
|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보상 | ○ | ○ | |
|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유출 | | ○ | |
| 개인정보 위탁처의 사업자의 누설로 인한 피해보상 시 구상권 ¹⁾ 불행사 | | ○ | |
| 피보험자의 부주의, 실수로 인해 생긴 데이터 손실 보상 | | ○ | |
|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사이버보험 보장 제공 | | ○ | |

주: 1) 구상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금으로 대납하고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료: 김소연 외(2014) 참조.

〈표 5〉 한국과 미국의 CLI 비교

| 구분 | 국내 개인정보 유출관련 배상책임보험 | | 미국 CLI |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종 및 인터넷 개발업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관련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금융, 제조, 통신, 기술 등 다양한 기업 |
| 보상하는 손해 | 개인 정보 유출 | 기본 담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 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률비용 정보 유출통지 비용 및 신용모니터링 비용 등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비용 전자적으로 저장된 기업 자산의 복원, 업데이트, 교체와 관련된 비용 사업 중단 및 보안 또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추가 비용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또는 인쇄 매체를 통한 타인의 명예훼손, 비방, 저작권 침해 등 평판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사이버 테러 연관 비용 결제오류, 응급의료치료를 위한 규제 준수 연관 비용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내부직원 또는 제3자의 과실, 태만, 고의적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기업 평판 회복 비용 등 |
| | | 선택 담보 | |
| | e - Biz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위험을 전문적으로 담보하여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으로 기인한 제3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법률 비용 |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개인 정보 유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 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 배상청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누출로 기인한 손해 배상청구 | 서비스 제공 |
| | e - Biz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바이러스 유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

자료: 배병환 외 1인(2013. 7), 『국내 정보보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 Internet & Security, 수정 인용; NAIC (2014. 1. 21), Cyber Risk,

〈제도 비교〉

■ 정보보호법의 역사는 25년이 되었지만, 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유출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47개 주(州)는 민간 또는 정부 기업이 개인정보유출이 되면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법을 제정

- 연방정부는 은행, 신용조합, 보험,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산업에 대해서 개인정보유출통지 요구
- 유럽은 정보보호지침(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의해 국가마다 서로 다른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략 2016년에는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에 의해 일원화될 것으로 기대됨.
 - 덴마크: 개인 또는 감독자에게 정보유출통지 의무가 없음.
 - 프랑스: 전자통신서비스 공급자에 한하여 개인정보유출통지 의무 존재
 - 독일: 정보의 종류 및 유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을 통지해야 함.
 - 그리스: 전자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유출통지 의무가 없음.
 - 영국: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금융서비스 및 공공기관은 정보유출통지가 요구되며, 공공전자통신서비스법이 존재
- 아시아도 일관된 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음.
 - 인도: 개인 및 감독자에게 정보유출을 통지할 필요 없음.
 - 일본: 법적인 의무 없으나 산업부분별 지침에 의해 요구될 수 있음.
 - 중국: 일반적인 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부산업은 감독당국에 정보유출을 알릴 의무가 존재함.

■ 우리나라는 2011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여 개인정보유출사실 통지를 의무화하였으며, 최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실행으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항목, 시점과 그 경위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동법의 적용 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임.
- 국내법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가 많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¹⁴⁾과 징벌적 손해배상¹⁵⁾을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손해로 보아야 한다¹⁶⁾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14) http://www.ytn.co.kr/_ln/0101_201401311059285507

1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31/2014073102653.html

16) http://www.thebell.co.kr/front/news_print_free.asp?key=201402170100026030001584

- 2014년 도입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징벌적·법적 손해배상 강화, 범죄이익 몰수·추징,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KT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손해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¹⁷⁾
- 현재 이동통신사에만 적용되는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제가 전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과징금 부과 건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4. 해외 보험회사의 CLI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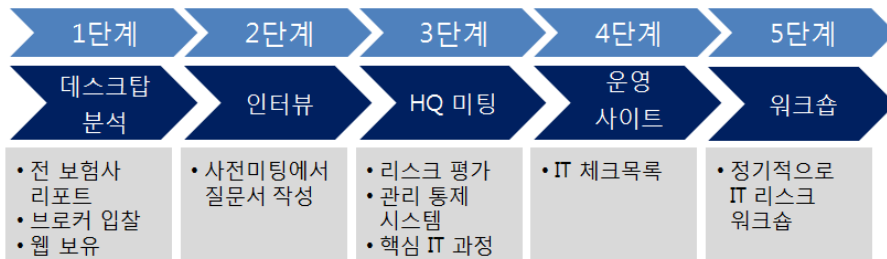


〈알리안츠〉

■ 알리안츠는 CLI의 언더라이팅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사이버 리스크 관리 컨설팅을 CLI와 함께 제공함.

- 알리안츠의 사이버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3개의 상품으로 구성됨.
 - 표준: 다양한 담보를 포함하는 CLI
 - 프리미엄: 표준 상품에 확장형 휴지보험¹⁸⁾과 사이버 리스크 평가 컨설팅 제공
 - 플러스: 외부 파트너가 참여하는 사이버 리스크 컨설팅과 맞춤형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

〈그림 5〉 알리안츠의 사이버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자료: Allianz.

1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82281931>

18) Business Interruption.

● 알리안츠 CLI의 담보는 다음과 같음.

- 제3자 배상책임: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보안 문제에 따른 배상책임, 대중매체 비용, 정보유출 사실 통보 비용
- 계약자: 휴지 보상, 복구 비용, 손해평가 비용, 해킹 손해 복구, 해커 협박 대응 비용
- 규제관련 비용: 법률비용, 과징금 및 벌금

■ 알리안츠는 표준화된 평가서를 이용하여 CLI 보험의 언더라이팅을 효율화함.

● 알리안츠는 1) 사이버 리스크 지속 경영, 2) 산업 표준 사이버 리스크 관리 시스템, 3) 관리 인력 평가, 4) 자료/보고체계/사이버 리스크 관리 방침, 5)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6) 서버/저장소, 7) 네트워크, 8) 물리적 보호 체계의 8개 부분으로 나누어진 표준화된 평가서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하고 언더라이팅을 효율화하고 있음.

<AIG>

■ AIG는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 CyberEdge를 이용하여 사이버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¹⁹⁾

- CyberEdge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계약자에 대한 사이버 리스크 노하우와 전문 지식
 - 솔루션을 통한 보험금 청구 및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문
 - 과거 사이버 사고/범죄 사례,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신기술, 해커와 해커티비스트 관련 정보, 관련 정부 발표 등의 정보
- CyberEdge 보험은 정보 유출로 인한 제3자 손해,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휴업 손해, 사이버 갈취 손해, 명예 손실 및 저작권 침해 등을 담보함.
- CyberEdge 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사이버 사고에 의한 상해를 담보한다는 것임.²⁰⁾
- AIG는 RiskAnalytics, IBM 등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

19) http://www.aig.com/CyberEdge_3171_417963.html, CyberEdge는 상품명으로도 사용됨.

20) <http://www.ft.com/cms/s/0/07f85b78-cae5-11e3-9c6a-00144feabdc0.html#axzz3AAyAPgSH>

〈그림 6〉 AIG의 CyberEdge 솔루션

| 손해 예방 | 보험 담보 | 사고 관리 팀 |
|--|--|---|
|  관련 지식 |  제3자 손해 배상 |  24시간 지원 서비스(IBM) |
|  연수 및 교육 <small>RiskAnalytics</small> |  계약자 손해 보상 |  법률 지원 |
|  정보보안 평가 서비스(IBM) |  휴업 복구 비용 |  휴업 복구 비용 |
|  사이버 리스크 관리 컨설팅 |  해커 협박 비용 |  대중매체 전문가 지원 |
|  사이버 리스크 예방 서비스 <small>RiskAnalytics</small> |  명성 피해 및 저작권 침해 |  15년간의 사고 관리 지식 공유 |

5.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국내 보험회사는 장래에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CLI 상품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리스크 관련 전문 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이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담보를 포함한 CLI상품 개발
 - 또한 손해보험회사는 CLI의 언더라이팅, 고객 지원 및 컨설팅,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IT 시스템에 관한 전문 지식, 사이버 리스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수행 능력, 사이버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 다양한 CLI 담보에 대한 평가 능력
 - 특히 재보험회사들은 원수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역량을 기반으로 CLI의 재보험 수재 여부와 요율을 결정하므로 손해보험회사의 CLI 언더라이팅 능력은 CLI 보험의 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미침.
 - 사이버 리스크는 대재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가 CLI 보험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임.

■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 평가 및 컨설팅 등 부수업무로 사업 영역 확대

- 외국의 우수 손해보험회사들은 CLI를 리스크 평가·관리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의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전략을 통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도 이러한 사업 모델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에 적극적인 CLI 마케팅 수행

- CLI의 특성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은 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위하여 국내에서 CLI 상품을 구매해야하는 유인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들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CLI 상품을 개발하고 CLI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타당성 검토

조용운 연구위원

요약

- 2013년 6월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보장을 강화해 왔으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비급여진료비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음.
 - 결과적으로 비급여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최근 4년간 누적적자가 1.4조 원에 이룸.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의료시장의 행동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의 비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률의 변화는 소비자 행동 변화는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이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더라도 의료공급자의 이윤극대화 행동으로 인하여 총액 기준 비급여진료비는 변화하지 않을 수 있음.
 - 4대 중증질환의 보장강화는 급여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보장강화 이후 의료공급자는 규제 없는 타 질환의 비급여진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의료공급자는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항목을 신규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독일, 미국 사례에서 부분적 규제가 해당 의료비를 낮출 수 있지만 의료공급자의 이윤극대화 행동 때문에 전체 의료비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의료공급자는 특정질환의 비급여 범위 축소로 인한 이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외의 질병을 대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므로 실손의료보험료를 조정할 때 특정질환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존과 같이 종합적 시장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특정질환의 보장강화에 따른 비급여 감소액을 산출하여 별도로 실손의료보험료에 반영하는 방법은 시장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1. 검토배경



- 2013년 6월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¹⁾한 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보장성 강화계획은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MRI, PET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임.
 - 그리고 3대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보장을 강화하여 중증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장강화에 따른 보장률 변화 및 시장 행태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보장강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상승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할 유인이 발생함.
 - 보장대상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보장강화는 가격과 양이 규제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공급자의 행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본고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과 의료공급시장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특정질병의 보장강화를 실손의료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함.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6. 26).

2. 국민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지급률 현황



가. 국민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본인일부부담률을 조정하면서 보장을 강화해 왔음.

- 입원의 경우 2005년 이후 중증환자의 본인일부부담을 낮추어 보장을 강화해 왔음.
 - 입원본인일부부담률은 1979년부터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20%²⁾임.

〈표 1〉 입원본인일부부담률 예외

| 시행일 | 내용 | 본인부담 | 비고 |
|-----------|---------------------------------|------|--------------------|
| 2005.1.1 | 자연분만,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자 | 면제 | 출산장려 |
| 2005.9.1 |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 2009.12.1 | 암환자 | 5% | |
| 2010.1.1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5% | |
| 2006.1.1 | 6세 미만 소아 |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의료비용 경감 |
| 2008.1.1 | | 10% | 도덕적 해이로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
| 2009.7.1 | 희귀난치질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 2010.7.1 | 중증화상 환자 | 5% | 중증환자 의료비부담 경감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외래의 경우에도 2005년 이후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이 낮게 산정되도록 하고 있음.
 - 외래본인일부부담률은 모든 환자에게 요양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동지역에서 본인부담금이 크게 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의원급은 모든 지역에서 30%임.
 - 병원급은 동지역 40%, 읍면지역 35%임.
 - 종합병원급은 동지역 50%, 읍면지역 45%임.
 -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지역에서 ‘진찰료+(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0.6’ 임.

2)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하여 30%임.

〈표 2〉 외래본인일부부담률 예외

| 시행일 | 내용 | 본인부담 | 비고 |
|-----------|---|------|---|
| 1983.10 | 인공신장투석 또는 복막관류술 본인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산정특례제도 시작 | 20% | 이후 2010년 1월까지 총 163개 질환으로 증가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 2009.7.1 | 희귀난치질환자 | 10% | |
| 2005.9.1 | 암환자 | 10% | |
| 2009.12.1 | 암환자 | 5% | |
| 2010.7.1 | 중증화상환자 | 5%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국민건강보험은 보장하지 않던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음.

-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2013년 후반부터 2016년까지 급여대상화 할 계획임.
-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임.

〈표 3〉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분류

| 구 분 | 개요 | 예 |
|------|--|---|
| 필수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 본인일부부담금은 5~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 •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
| 선별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 •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예:50~80%)을 본인 이 부담(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 •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 • 신의료기술은 심사 후 급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
| 비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성형 등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6. 26).

■ 국민건강보험은 2014년 하반기부터 3대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계획임.

〈표 4〉 3대 비급여 보장강화 계획

| 선택진료 | 상급병실 | 간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줄임 20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됨 2015~2016년에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하반기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33개 공공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2015~2017년 지방, 공공병원 중심으로 확대함 2018년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확대함 201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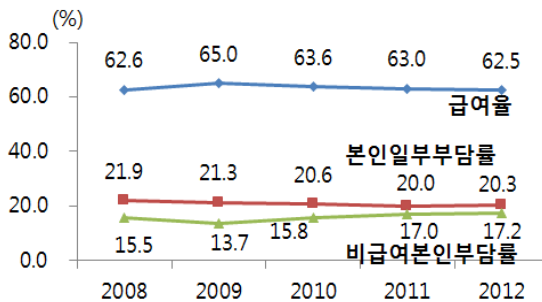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2. 10).

나. 국민건강보험 급여율 및 실손의료보험 지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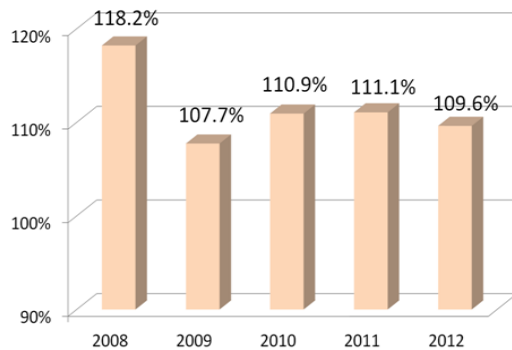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보장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 급여÷(급여+본인일부부담+비급여))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 부분의 진료비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음.

- 2012년 급여율은 62.5%로 2008년과 차이가 없음.
- 2012년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7.2%로 2008년 15.5%보다 상승하였음.

〈그림 1〉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 추이³⁾



〈그림 2〉 실손의료보험 지급률 추이⁴⁾



3) 서남규·이옥희·강태욱·태윤희·서수라·안수지·이혜정(2013),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4) 여기서 지급률=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 자료: 조용운(2014), 『보험동향 - 봄호』, 보험연구원.

■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비급여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보험금 지급률은 109.6%로 나타나 수입보다 지급이 약 10% 많게 발생하였음.
-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지난 4년간 총 실손의료보험에서 약 1.4조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였음.

〈표 5〉 손해보험산업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차 손해 현황(FY기준)

(단위: 억 원)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
| △1,696 | △3,035 | △4,436 | △5,239 | △14,406 |

자료: 손해보험협회.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료 산출 시 전년도 보험금 지급률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와 의료시장의 행동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나 비급여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3. 비급여 증가 원인 및 해외사례



가. 비급여 증가 원인

■ 비급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산정의 자율성에 기인하는 면이 있음.

-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기관이 신고한 가격으로 결정(일반수가제)되고 있어 규제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 가격은 요양기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갑상선초음파검사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한 요양기관과 가장 낮은 요양기관의 가격 차이가 5.9배에 이룸.⁵⁾

5) 한국소비자원(2011),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시행실태 및 소비자 활용도 조사』.

■ 이와 함께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임.

-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의료행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늘릴 수 있고, 비급여대상 고가의 신약 및 치료재료, 신의료기술을 과잉공급할 가능성이 있음.
- 요양기관은 급여대상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음.

■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 양 및 가격 규제에만 치중하고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윤극대화 행동이 용이한 대상인 비급여진료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을 강화하더라도 비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장률은 상승하지 않고 있음.
-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을 강화하더라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됨.

나. 해외사례

■ 일본은 공적 보험의 가격규제로 1980~1993년 동안 의약품 가격이 60%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의약품 지출은 59% 증가하였음.⁶⁾

- 이는 처방전 발행 수 및 규제되지 않는 고가 의약품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임.

■ 독일의 공적 보험 의약품 가격 및 예산 규제는 의약품 지출을 감소시켰으나 전문의 진료 및 병원 입원을 10% 증가시켰음.

- 의료공급자들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수입원을 전환한 것임.

■ 미국의 New Hampshire Medicaid Program의 경우 환자당 의약품 월 처방전 수가 3개로 제한(배급제)된 이후 의약품 사용이 35% 감소하였으나 요양병원 입원은 두 배로 증가되었고, 의약품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는 요양병원 입원이 줄어들었음.

6) William Orzechowski and Robert C. Walker(2000), "Dose of Reality: How Drug Price Controls Would Hurt Americans", Policy Paper, No. 125,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 특정 부분의 의료서비스 배급제로 인해 총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여부분의 통제로 인해 규제없는 비급여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총의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임.

●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대한 보장강화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었다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공급자는 이윤극대화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됨.

● 의료공급자는 그 외의 부분에서 이윤을 보전하려 할 것이므로 총 비급여진료비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4. 시사점



■ 의료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의료공급자들이 이윤에 따라 행동하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실손의료보험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의료공급자들이 비급여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행동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행동임.

● 이러한 합리적 행동은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속될 것임.

– 실제로 이윤극대화 행동이 용이한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더라도 의료공급자의 이윤극대화 행동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비급여진료비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료에 대한 영향은 불투명함.

● 4대 중증질환의 보장강화는 해당부분의 규제강화를 의미하므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강화 이후 규제가 없는 타 질환의 비급여진료비가 증가할 수 있음.

● 의료공급자는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항목을 신규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음.

–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 항목이 된 이후(2012. 7월), 요양기관이 급여대상인 일반렌즈 대신 비급여대상인 다초점 렌즈로 시술함.

- 의료공급자의 이윤극대화 행동은 전체 상해 및 질병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므로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할 때 특정질병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법과 같이 시장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특정질병의 보장강화에 따른 비급여 감소액을 산출하여 별도로 실손의료보험료에 반영하는 방법은 시장의 행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kiri**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최 원 선임연구원

요약

- 최근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나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신규판매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주 판매 권역인 보험업권의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 신규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2년 말 현재 보험업권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적립금 비중은 75.6%로 매우 높으나 보험업권, 특히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사 수수료 및 세제혜택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됨.
 - FY2011 이후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감소폭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설계사 수수료 제도 변화에 따른 설계사 판매 유인 감소와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수요 확대요인 부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감소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보험회사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확대를 위해 온라인 등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이 부족한 계층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제고와 투명한 정보 공시를 통해 기가입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개인 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88년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요 선진국들과 유사한 3층형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함.
 -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고 연금제정의 조기 고갈이 우려되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짐.
 -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76.3%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입률은 1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적연금 중에서도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주 판매 권역인 보험업권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신규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본 고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업권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등도 판매하고 있으나 보험업권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최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2.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저축 현황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1994년 도입되었고 이후 2001년 개인연금저축이 연금저축으로 대체되었으며, 2006년과 2011년 세제혜택이 강화됨.

- 1994년 5월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 원 한도로 연간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며, 2001년 1월 연금저축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판매 중지됨.
- 2001년 도입 당시 연금저축은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이 4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었고 연 24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짐.
-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2006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011년에는 300만 원으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자산운용사)도 취급하고 있으나 2012년 말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한 보험업권의 적립금 비중이 75.6%로 대다수를 차지함.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우체국, 수협, 신협 등의 기관에서도 판매하고 있음.
- 2012년 말 현재 세제적격 연금저축 총 적립금 중 생명보험의 비중은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21.0%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세제적격 연금저축 적립금은 보험회사의 비중이 절대적임.
- 한편 연금저축신탁을 판매하는 은행은 15.5%를 차지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은 6.2%, 기타 2.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2012년 말 권역별 연금저축 적립금 및 비중

| 구 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은행 | 증권(자산운용사) | 기타 |
|----------|------|------|------|-----------|-----|
| 적립금(조 원) | 43.0 | 16.5 | 12.2 | 4.8 | 2.2 |
| 비중(%) | 54.6 | 21.0 | 15.5 | 6.2 |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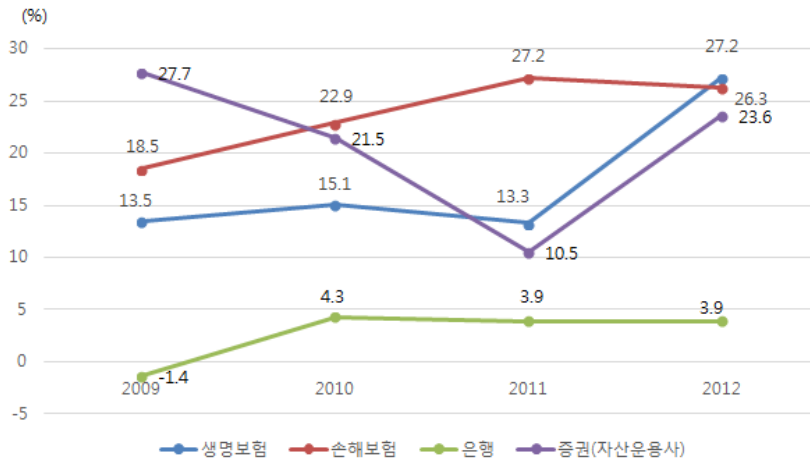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2013. 8),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업권별 세제적격 연금저축 적립금 증감률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생명보험 적립금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10%대의 증가율을 나타낸 후 2012년 27.2%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 적립금은 2009년 18.5% 증가한 이후 2012년까지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한편 증권(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2011년을 제외하고 20%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은행은 한자리 수의 낮은 증가율을 유지함.

(그림 1) 업권별 연금저축 적립금 증감률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2013. 8),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중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각각 4.3%, 5.9%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FY2013기준 전체 수입보험료 중 세제적격 연금저축 비중은 4.3%로 세제비적격 연금의 19.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¹⁾
- 손해보험의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세제적격 연금저축 비중은 전체 원수보험료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손해보험 중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장기성보험 중 세제적격 연금저축 비중은 8.4%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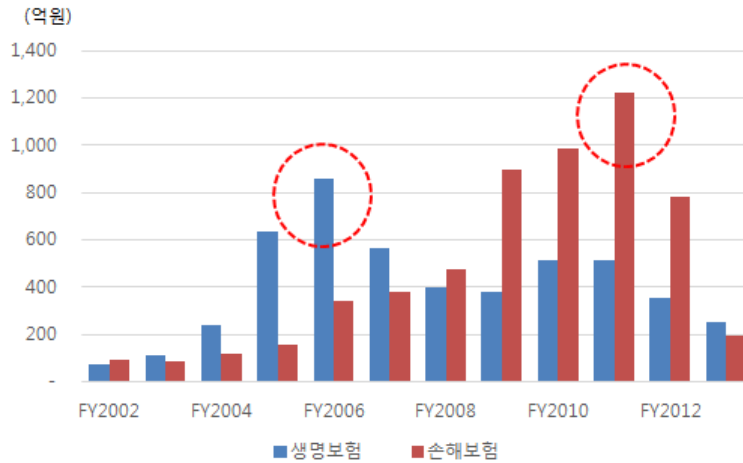
■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FY2006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FY2011까지 고성장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 생명보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FY2006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시 급증한 이후 FY2008부터 300~500억 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1) 생명보험은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 이외에도 세제비적격 연금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세제비적격 연금은 FY2012 세제혜택 변경으로 급성장 한 후 FY2013에는 기저효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손해보험의 경우 FY2008 이전까지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회보험료 규모가 작았으나 FY2009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하여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있었던 FY2011 급증한 후 둔화되는 모습임.

〈그림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연도별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각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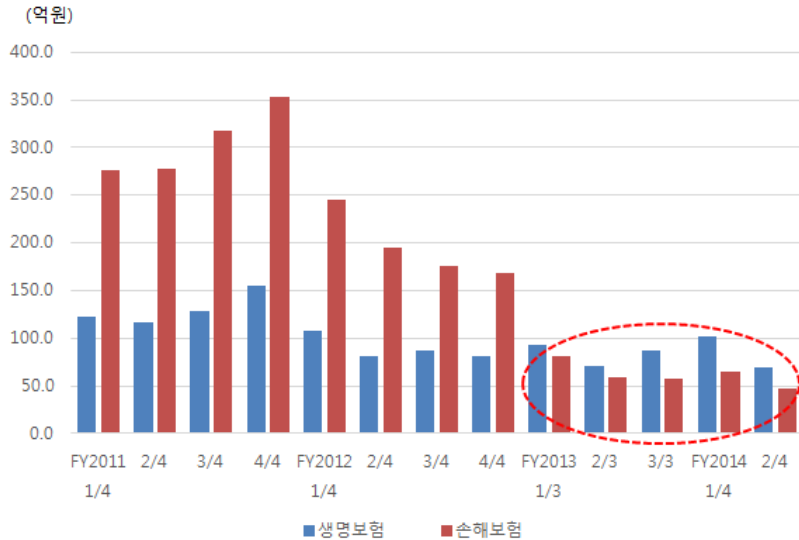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고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은 주로 세제비적격 연금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세제비적격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은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비해 세제비적격 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금리와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등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수요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흡수함으로써 성장함.
-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 활용함.
-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수요는 세제혜택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여 왔으며, 2011년 소득공제 혜택 확대와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확대 전략이 맞물리면서 손해보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크게 증가함.

- 그러나 FY2011 이후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감소폭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FY2012 기저효과로 인해 30~40%의 감소세를 보인 후 FY2013 이후에도 FY2014 1/4분기를 제외하고 10%~20%대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손해보험은 FY2013 이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6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기별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각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설계사 수수료 제도 변화에 따른 설계사 판매 유인 감소와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수요 확대요인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2013년 1월 보험업권은 손해보험의 연금저축 예정신계약비를 생명보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 8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의 설계사에 대한 분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함.
 - 2013년 1월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낮은 수익률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함.
 - 보험업권의 경우 2013년 1/4분기 중 대면채널(설계사 등)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예정신계약비를 월납보험료 대비 생보사 300%, 손보사 500% 수준에서 생·손보사 모두 300% 이하로 인하하기로 함.
 - 2013년 8월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하도록 함.

- 이러한 수수료 제도 변화는 설계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유인을 약화시킨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손해보험 설계사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는 손해보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 급감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판매채널별 세제적격 연금저축 비중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 비중이 43.2%로 나타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 비중이 78.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의 비중은 43.2%(초회보험료 기준)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53.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 때문에 설계사의 판매 유인 감소 효과가 일정부분 상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 비중은 78.2%(원수보험료 기준)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12.7%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 때문에 설계사 판매 유인 감소가 실제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채널별 비중

(단위: %)

| 구 분 |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 방카슈랑스 | 기타 |
|------|-----|------|------|-----|-------|-----|
| 생명보험 | 1.5 | 34.9 | 8.3 | 0.0 | 53.2 | 2.1 |
| 손해보험 | 9.1 | 37.7 | 40.5 | 0.0 | 12.7 | 0.0 |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기준이고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각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한편 세제적격 연금저축 수요는 세제혜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 공제로 전환되고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제적격 연금저축 수요 확대요인도 부재한 상황임.

- 세제적격 연금저축 수요는 세제혜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확대될 때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그러나 2014년 납입보험료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세제혜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없이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만을 300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함.

3. 시사점



- 우리나라는 3층형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은퇴자의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공조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성 제고가 필요함.
 - 공적부문인 국민연금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의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소득대체율 또한 40% 수준에 불과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 세제적격 연금저축 적립금은 보험권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최근 보험권의 연금저축 판매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사 수수료 및 세제혜택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전체 세제적격 연금저축 적립금의 75.6%를 차지할 정도로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를 주도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세제적격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권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신규판매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2013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감소는 2013년 이후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체계 변화로 설계사 판매 유인이 감소하고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활성화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감소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포함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3대 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심화에 대비하여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 보험회사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확대를 위해 온라인 등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는 의료비, 학자금 등 특정 자금수요 발생 시 연금적립액의 자유 인출을 허용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연금상품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또한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이 부족한 계층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와 투명한 정보 공시를 통해 기가입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kiri**

2. 고령화

- | | |
|---------------------------------|-------------|
| 1.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 강성호 정원석 |
| 2. 장수리스크 도입 논의와 시사점 | 김세중 |
| 3.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 김세중 김혜란 |
| 4.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강성호 연구위원,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최근의 60세 이상으로의 정년무화 조치는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와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라는 양면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고령화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및 소득보장에 필요한 비용분석이 주요 관심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결과 도출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각 연령대별 추정 조기퇴직자 비율과 분석가정을 바탕으로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한 결과, 54~59세 근로자들 중 약 12만 2,000명이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의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
 - 이들 모두에게 정년연장을 적용할 경우, 54~59세 대상자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8,534억 원(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 대상자 1인당 추가 퇴직급여로 환산하면, 54~59세 대상자 1인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950만 원(연간 214만 원)으로 추정됨.
 - 임금피크제 적용에 의한 임금감소액을 최종 소득의 70~90%로 하여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퇴직급여액을 산출하면, 5,974억 원~7,681억 원으로 추정됨(연령대별 임금감소율 고려 시 7,728억 원).
- 기업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 부담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업종별(생산직, 관리직 등) 다를 수 있는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어야 함.
 - 추가적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 제공 시 재무상태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많고 임금수준도 낮은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60세 이상으로의 의무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의 추가적인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때, 기업에 대한 일정 추가 부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안전망의 역할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정년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의에 의한 임의제도였으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고령노동의 가치를 새로이 평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60세’ 조항이 의무화됨.
 -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됨.

- 정년연장의 법제화로 개인의 노동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에도 기업에서 정한 퇴직연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그 이유로는 그 동안 정년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수행되는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었을 뿐 아니라 정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현실과 규정간의 운영상 괴리가 컸기 때문임.¹⁾
 - 실제 주된 사업장에서의 퇴직연령은 ‘53²⁾~54세³⁾’라는 측면에서 3~4세의 현실과 규정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60세 이상으로 정년 의무화(이하 60세 정년 의무화) 조치는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와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라는 양면성을 초래하게 될 것임.
 - 그 동안 정년제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소득(은퇴자산), 기업측면에서의 비용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60세 정년 의무화 이전의 상황을 고려한 것들이고,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분석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움.
 - 특히, 고령화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 및 비용분석측면에서 구체적인 추정결과 도출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1) 이승길(2013), 『고령자의 정년연장과 규제완화』, 노동법논총.

2) <http://nie.chosun.com/information/information01.asp?mode=view&pidx=6000&pdepth=0&pageNow=10&schk=&skey=>

3) 방하남 외(2012),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5.

- 이와 관련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자 규모 혹은 사회비용⁴⁾을 추정할 사례는 발견되거나 퇴직급여를 추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또한 이들 기존연구들은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 혹은 54세 이후의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를 언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년연장⁵⁾ 대상자가 과대 추정되거나 이로 인해 기업부담이 과대평가 될 여지가 있음.⁶⁾
- 이에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퇴직급여 추가부담을 추정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내용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정년연장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퇴직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임금피크 적용에 따라 사업주 추가부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 정년연장에 대한 고려사항을 비롯한 주요 정책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우리나라 사업장 및 정년 현황



- 우리나라 퇴직급여 대상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1,687,000개소가 존재하고 총 종사자는 14,743,000명으로 조사됨.
 - 사업체 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수는 0.17% 수준이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체 수는 95.9%였음.

4) 전용일 외(2013)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자규모 및 기업의 추가인건비, 그리고 사회보험부담을 추계하고 있음.
 5) 실질적 정년연장 대상자는 자발적 퇴직을 제외한 정년연장 대상자를 의미함. 즉, 정년연령 대상자 중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비자발적 퇴직자를 대상으로 추정해야 함.
 6) 금재호 (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월간노동리뷰, pp. 61~75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년연장 대상자나 기업 부담을 추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이비부머 연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효과를 논하고 있음.

〈표 1〉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2년 기준)

(단위: 천 개소, 천 명, %)

| 사업장 규모 | 사업체 수 | 총종사자 수 | 상용근로자 | 기타 종사자 수 |
|-----------|---------------|----------------|-----------------|---------------|
| 30인 미만 | 1,618(95.87) | 7,989(54.19) | 4,993(48.15) | 2,996(68.51) |
| 30인~99인 | 56(3.29) | 2,757(18.70) | 2,049(19.76) | 708(16.19) |
| 100인~299인 | 11(0.67) | 1,786(12.12) | 1,457(14.05) | 329(7.53) |
| 300인~999인 | 2(0.14) | 1,143(7.75) | 926(8.93) | 217(4.96) |
| 1,000인 이상 | 0(0.03) | 1,067(7.24) | 945(9.11) | 122(2.80) |
| 전체 | 1,687(100.00) | 14,743(100.00) | 10,370 (100.00) | 4,373(100.00) |

주: 1) '기타 종사자 수'에는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2) ()안은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통계포털, 전국, 산업별, 성별,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종사자지위별)).

- 총 종사자 수와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은 각각 15.0%, 18.0%였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각각 54.2%, 48.2%였음.
- 따라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특히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 운영비율이 높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년제에 의한 퇴직급여 보장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96%가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30~299인 사업장은 74.1%,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22.1%만이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정년제가 운영되고 있음.
- 정년제도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단일정년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다소 높음.

〈표 2〉 사업장 규모별 정년도입 현황과 유형

(단위: 개 소, %)

| 사업장 규모 | 정년제운영 | 단일정년 | 직급별정년 | 직종별정년 | 혼합정년 |
|-----------------|-------------|------------|----------|----------|----------|
| 30인 미만(12,438)* | 22.1(100.0) | 19.4(87.8) | 1.8(8.1) | 0.6(2.7) | 0.4(1.8) |
| 30~299인(4,264)* | 74.1(100.0) | 62.0(83.7) | 5.6(7.6) | 4.4(5.9) | 2.1(2.8) |
| 300인 이상(2,887)* | 96.0(100.0) | 73.1(76.1) | 6.9(7.2) | 9.5(9.9) | 6.5(6.8) |

주: 1) 300인 이상 정년 현황은 전수조사 기준이며, 300인 미만 정년 현황은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 기준임.

2) ()*안은 사업장 수를 의미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표본이므로 전체 규모를 산출하지 않음.

3) ()안은 정년제 운영하는 사업장 중 정년유형별 비율임.

자료: 전용일(2013)을 재구성함.

■ 단일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정년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55세, 58세, 60세 순으로 정년을 도입하는 비율이 높음.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5세 정년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으며, 58세 21.8%, 60세 17.9%로 나타나고 있음.
- 30인 미만 사업장과 30~299인 사업장에서도 55세 정년 비율이 각각 33.9%, 30.9%로 가장 높았으며, 58세 24.8%, 25.4%, 60세 17.9%, 23.1%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고려한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⁷⁾로 조사되어 의무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약 3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 일본은 1998년에 60세 정년의무화 이후 2013년 65세로 연장, 영국·미국 등에서는 정년을 설정하는 것을 고령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년 제도를 금지하는 추세임.⁸⁾
 - ※ 공무원의 정년은 2008년 6월 공무원법 개정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2013년 이후 60세로 통일되었고, 공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57-58세가 정년임.⁹⁾

7) 전용일 외(2013),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8) <http://nie.chosun.com/information/information01.asp?mode=view&pid=6000&pdepth=0&pageNow=10&schk=&skey=>

9) 이승길(2013), 『고령자의 정년연장과 규제완화』, 노동법논총.

〈표 3〉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정년연령 분포

(단위: 개 소, %)

| 사업장 규모 | 54세 이하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이상 | 전체 |
|-----------------|--------|------|-----|-----|------|-----|------|--------|-------|
| 30인 미만(2,643)* | 0.9 | 33.9 | 6.4 | 8.7 | 24.8 | 2.2 | 17.9 | 5.2 | 100.0 |
| 30~299인(2,409)* | 0.7 | 30.9 | 3.1 | 5.5 | 25.4 | 2.0 | 23.1 | 9.3 | 100.0 |
| 300인 이상(2,112)* | 0.5 | 34.3 | 4.3 | 9.7 | 21.8 | 3.0 | 20.6 | 5.8 | 100.0 |

주: 1) 300인 이상 정년 현황은 전수조사 기준이며, 300인 미만 정년 현황은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 기준임.

2) ()*안은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수를 의미함.

3) ()안은 단일정년제 운영하는 사업장 중 정년연령 비율임.

자료: 전용일(2013).

■ 우리나라의 정년제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평균 정년규정이 57.6세¹⁰⁾로 추정되나, 노동현장에서의 주된 일자리에에서의 퇴직은 이 보다 3~4세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이후 제2의 근로생애 기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다음 〈표 4〉는 2008년 기준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기업정년 등에 대한 결과인데, 주된 일자리에에서의 퇴직연령은 54.1세, 규정상 기업의 정년은 56세로 약 2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 우리나라 근로자의 규정 및 실제상 정년연령 비교

(단위: 세, 년)

| 구 분 | 주된 일자리에에서의 퇴직연령 | 조사된 기업의 정년 | 제2의 근로생애 기간 | 최종 은퇴연령 |
|-----|-----------------|------------|-------------|---------|
| 전체 | 54.1 | 56 | 14.0 | 68.1 |
| 남성 | 54.4 | 56 | 12.9 | 67.3 |
| 여성 | 53.8 | 56 | 14.5 | 68.3 |

자료: KLIPS(제6차);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고용노동부(2008); 방하남 외(2012) 재인용.

● 또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제2의 근로기간을 약 14년 정도 갖은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68.1세로 조사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제2의 근로기간 동안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할 것이므로 주된 일자리로 부터의 조기퇴직은 퇴직급여 보장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임.

10) 전용일 외(2013),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 직장이동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젊은 층의 경우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고용형태(정규직)로 전환 되는 비율이 높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

- 특히,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직장 이동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규직으로의 이직률은 낮아지고 비 정규직으로의 이직률은 높아지므로, 50대 이후 정년 이전의 조기퇴직은 노후소득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음.

〈표 5〉 직장 이동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1998~2007년)

(단위: %)

|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 | | 새 직장의 고용형태 | | |
|-------------|------|------------|------|------|
| | |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업 |
| 30대 | 정규직 | 63.9 | 16.6 | 19.5 |
| | 비정규직 | 34.2 | 45.3 | 20.5 |
| 40대 | 정규직 | 51.8 | 19.9 | 28.3 |
| | 비정규직 | 25.2 | 56.9 | 17.9 |
| 50대 | 정규직 | 50.4 | 27.7 | 21.9 |
| | 비정규직 | 20.2 | 67.6 | 12.2 |
| 60대 | 정규직 | 46.6 | 37.2 | 16.2 |
| | 비정규직 | 14.2 | 75.5 | 10.3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금재호(2011) 재인용.

■ 재취업으로 인한 임금 변화를 보더라도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감소를 경험하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7년 동안 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직장을 이동한 개인을 대상으로 임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30, 40대는 각각 13.0만 원, 3.9만 원 증가한 반면, 50대, 60대는 각각 3.1만 원, 4.4만 원 감소함.¹¹⁾

■ 연령대별 임금소득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40대 중·후반에서 임금피크를 경험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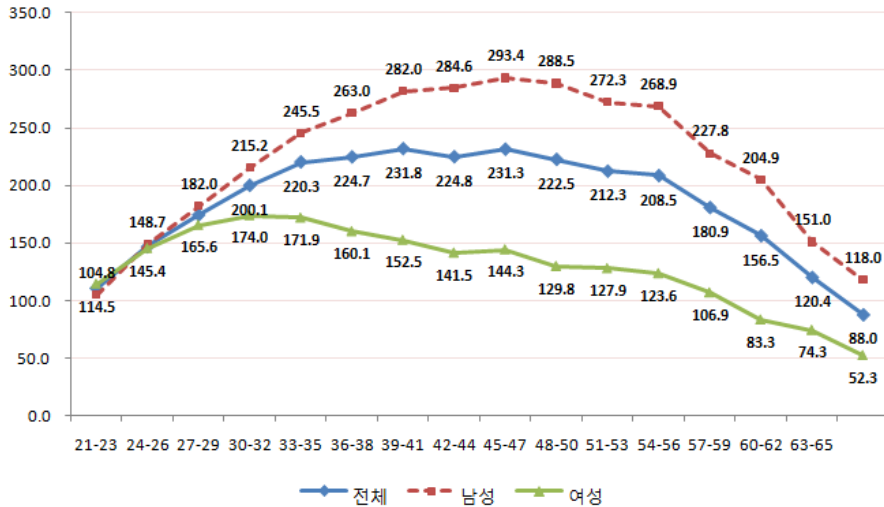
- 2010년 8월 기준 남성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45~47세에 정점에 다다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56세 이후 현저하게 낮아지나, 여성 임금의 경우는 이미 30대 초에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

11) 증감액은 개인별 증감액을 평균한 값이며 연도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2005년도를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임금을 조정한 것이며,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금재호(2011)를 재인용함.

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남.

- 특히, 정년을 전후한 연령인 54~56세와 57~59세 사이에 남성의 임금은 15.3%, 여성은 13.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2010년 8월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금재호(2011).

3.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 분석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 분석대상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54~59세의 피용자로 하되, 연령대별 분석을 위해 통계청 인구현황 및 국민연금통계연보상 사업장가입자 현황 자료를 활용함.

- 퇴직급여 적용대상이 되는 피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으나, 동 대상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개념적으로 일치하므로 연령별 임금소득수준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국민연금통계연보 상 연령별 가입자 수는 5세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연령별 정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5세 단위 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주어야 하므로 통계청의 50대 모집단 인구비례를 활용하여 54~59세의 연령별 대상자 수를 산출함.

- 대상연령은 최초 54세부터 퇴직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정년연령과 최대 법정 정년연령인 54~59세를 대상으로 하였음.
 - 60세는 법정퇴직연령이므로 정년효과에 의한 추가적인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59세까지로 설정함.

〈표 6〉 인구비중을 활용한 연령별 정년 대상자 수 추정

(단위: 천 명)

| 연령 | 인구 수 | 5세 구간 인구비중(A) ¹⁾ | 5세 구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B) | 추정 근로자 수(A×B) ²⁾ | 퇴직비율 | |
|-----|-------|-----------------------------|-------------------------|-----------------------------|-----------------------|-----------------------|
| | | | | | 정년퇴직 비율 ³⁾ | 조정퇴직 비율 ⁴⁾ |
| 54세 | 714 | 17.4% | 1,351 (50~54세) | 234 | 0.04% | 8.8% |
| 55세 | 739 | 25.0% | 813 (55~59세) | 203 | 2.52% | 12.5% |
| 56세 | 630 | 21.3% | | 173 | | |
| 57세 | 545 | 18.4% | | 150 | | |
| 58세 | 602 | 20.4% | | 166 | | |
| 59세 | 440 | 14.9% | | 121 | | |
| 전체 | 3,670 | - | 2,164 (50~59세) | 1,047 | 1.00% | 10.2% |

주: 1) 54세의 경우 50~5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55~59세의 경우는 55~59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5세 구간 인구비중(A) × 5세 단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B)로 산출함.

3) 고용보험통계연보상(2012년 기준)의 5세 구간별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대비 정년퇴직자 수의 비율로 산출하되, 여기서의 퇴직은 '60세 이전의 비자발성 조기퇴직'을 의미함(조정퇴직도 동일).

4) 고용보험통계연보상(2012년 기준)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는 8개 항목 중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변동',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정년퇴직과 같이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는 60세 이전에 퇴직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전체 인구); 국민연금통계연보(2013); 2012 고용보험통계연보.

■ 정년의무화조치로 정년연장 효과가 발생하게 될 집단은 현재 60세 이전에 조기퇴직하게 되는 임금근로자일 것이므로 〈표 6〉에서 추정근로자 중에서 정년퇴직을 경험하게 될 비율(정년퇴직비율, 조정퇴직비율)로 산출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고용보험통계연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행 정년제 하에서 정년퇴직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4세는 0.04%, 55~59세는 2.25%이며, 조정퇴직비율 기준으로는 각각 8.8%, 12.5%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추정 근로자 중 정년퇴직비율(혹은 조정퇴직비율) 만큼은 정년의무화 조치이후 근로가 연장되는 경우로 추가적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대상자라고 할 수 있으며, 동 추정을 위해 조정퇴직비율을 활용하고자 함.

■ 임금소득 수준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구간을 활용하여 2012년 기준 최저 월소득 235만 원에서 최고 월소득 389만 원을 적용함.

- 임금피크제도는 사업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금소득의 70%, 80%, 90%¹²⁾가 정년 연장기간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분석함.
- 또한, <그림 1>의 연령별 임금소득 수준이 51~53세(212.3만 원)와 54~56세(208.5만 원) 사이에 1.8%하락, 54~56세와 57~59세(180.9만 원) 사이에 13.2%하락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함.¹³⁾

■ 추가적인 퇴직급여 증가효과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감소하는 정년퇴직자 수(대상자수)와 이들에게 지급 될 평균적 퇴직급여액의 곱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주의할 사항으로 기업의 퇴직급여 추가부담은 추가적 퇴직급여에서 생산성을 뺀 효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직접비용인 추가적 퇴직급여로 한정함.
 -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급여 추가부담 = 평균퇴직급여액 × 변화된 퇴직자 수
 - ※ 변화된 퇴직자 수 = 근로자 수 × (정년연장 전 정년퇴직비율 - 정년연장 후 정년퇴직비율)
- 새로운 정년연장제도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나 실적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 분석에서는 2012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추가부담 추정>

■ 각 연령별 조기퇴직비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한 결과, 54~59세 근로자들 중 122,000명이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의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

- 54세의 경우 211,000천 명이 최고 6년까지 추가근로가 가능하며, 중복근수 기준으로는 102,000 명이 대상자로 추정됨.
- 59세의 경우는 15,000명이고 최고 1년까지 추가근로가 가능하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대상자 수가 적고 정년연장 효과도 적을 것으로 추정됨.

12) KEPCO(한전) 95%~60%, 신용보증기금 75%~35%, 전용일 외(2013) 80%의 임금피크제를 고려하고 있고, 직장이동에 따른 소득수준 감소정도가 남성 15.3%, 여성 13.5% 정도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

13) 유의할 사항으로 국민연금적용소득의 상한선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상한소득으로 하여 추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과소 추정될 여지는 있음.

〈표 7〉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급여 연간 적용대상자 추정

(단위: 천 명)

| 연령 ('12년 기준)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전체 |
|-----------------|------|------|------|------|------|------|-----|
| 54세 | 21 | 19 | 17 | 16 | 15 | 14 | 102 |
| 55세 | 25 | 23 | 22 | 20 | 18 | 0 | 108 |
| 56세 | 22 | 20 | 18 | 17 | 0 | 0 | 77 |
| 57세 | 19 | 17 | 16 | 0 | 0 | 0 | 52 |
| 58세 | 21 | 19 | 0 | 0 | 0 | 0 | 40 |
| 59세 | 15 | 0 | 0 | 0 | 0 | 0 | 15 |
| 전체 | 122 | 99 | 73 | 53 | 33 | 14 | 394 |

주: 1) 54세~59세 중 정년연장 대상자 1,047,000명(〈표 6〉 참조)에서 조정퇴직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함.
 2) 전체는 연령별로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간 혜택 효과가 다를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누적 합산한 수치임.

■ 정년연장 대상자 394,000명(중복대상자 기준) 모두 정년연장 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54~59세 대상자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8,534억 원(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됨.

- 54세의 경우 6년 추가 근로에 따른 효과는 2,344억 원(연간 391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함.
- 유의할 점으로, 동 분석에서는 제도 시행 첫 해(13년으로 가정)에서는 122,000명이 수혜자로 추정되나, 이를 베이비부머 혹은 54세~59세 임금근로자 전체가 대상자가 된다는 가정에서는 〈표 6〉에서와 같이 1,047,000명이 대상으로 되어 약 8.6배 과대 추정될 여지가 있음.
- 한편,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자들 대부분이 숙련 근로자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성¹⁴⁾을 고려한다면, 동 추정방법에 의한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정년연장 대상자 1인당 추가 퇴직급여로 환산한 결과, 54~59세 대상자 1인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950만 원(연간 214만 원)으로 추정됨.

- 이는 월평균 임금소득이 214만 원 근로자가 정년연장으로 인해 약 4.4년(950만 원/214만 원)의 근로기간이 증대하여 추가적인 퇴직급여가 95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4) 동 분석에서는 연구내용을 제약으로 생산성에 대한 추정은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함.

〈표 8〉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추가부담 추정(연령별 효과)

| 연령 ('12년 기준) | 추가 퇴직급여 총액 | | 1인당 추가 퇴직급여액 | |
|------------------|------------|------------|--------------|-----------|
| | 총효과(백만 원) | 연간효과(백만 원) | 총효과(천 원) | 연간효과(천 원) |
| 54세 | 234,392 | 39,065 | 13,840 | 2,307 |
| 55세 | 229,828 | 45,966 | 10,604 | 2,121 |
| 56세 | 162,897 | 40,724 | 8,483 | 2,121 |
| 57세 | 109,905 | 36,635 | 6,362 | 2,121 |
| 58세 | 84,328 | 42,164 | 4,242 | 2,121 |
| 59세 | 32,093 | 32,093 | 2,121 | 2,121 |
| 전체 | 853,443 | 192,651 | 9,498 | 2,144 |

주: 1) 총효과는 연차별로 발생하는 연령별 1인당 효과에서 대상자수를 곱하여 산출한 후 합산함.
 2) 연간효과는 총효과에서 각 연령별 최대 추가근로가능 기간(1~6년)을 나누어 연간 효과로 환산함.
 3) 추정금액은 2012년 현재로 환산하여 산출된 것임.

〈임금피크 적용 시 고려사항 및 기업의 퇴직급여 추가부담〉

■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¹⁵⁾ 적용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면이 있으나 또 다른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있음.

-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적용하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임금피크와 퇴직급여간 유기적 관계 검토가 필요함.
- 정년연장은 기존의 장년 노동공급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증가한 만큼 사업체에서 신규고용을 줄이게 된다면 청년고용(신규고용)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의 대체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⁶⁾

■ 임금피크제 적용에 의한 임금감소액을 최종 소득의 70~90%로 하여 추가적 퇴직급여액을 산출하면, 5,974억 원~7,681억 원으로 추정됨.

- 실태조사에서의 연령대별 임금감소율(생산성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7,728억 원으로 추정되어, 최종소득의 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는 것보다 다소 상회함.

15)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09년 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2%에 불과함(안주엽(2011), 『세대간 고용 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6) 지은정(2012), 정원석(2013)에 의하면 대체관계와 보완관계에 의해 이들 노동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았으며, 대체적으로 보완관계를 지지하는 층이 다소 많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대간 일자리의 보완성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표 9〉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추가부담 추정 (연령별 총효과)

(단위: 백만 원)

| 연령(12년 기준) | 임금피크 70% | 임금피크 80% | 임금피크 90% | 임금피크 실태반영 | |
|------------|----------|-----------|-----------|-----------|-----------|
| 54세 | 164,074 | 187,513 | 210,953 | 218,466 | |
| 55세 | 160,880 | 183,863 | 206,845 | 211,289 | |
| 56세 | 114,028 | 130,318 | 146,607 | 146,630 | |
| 57세 | 76,933 | 87,924 | 98,914 | 95,397 | |
| 58세 | 59,030 | 67,463 | 75,896 | 73,197 | |
| 59세 | 22,465 | 25,674 | 28,883 | 27,856 | |
| 전체 | 총효과 | 597,410 | 682,754 | 768,099 | 772,836 |
| | (연간효과) | (134,856) | (154,121) | (173,386) | (174,455) |

주: 1) 연령별 총효과, 연간효과는 앞에서 산출한 방식과 동일함.
 2) 54세~56세는 1.8%, 57세~59세는 13.2%씩 매년 평균적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하여 추정함.

- 한편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추가적 퇴직급여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퇴직급여 부담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는 업종 및 사업체 특성에 맞도록 적용될 필요 있음.

4. 시사점 및 정년연장 정책 방향

- 정년연장에 따라 기업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부담 정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년연령과 법정 60세간의 격차(1년~6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임.
 - 추정결과에 의하면, 54세~59세 피용자 중 약 12%인 122,000명(누적 건수 기준 394,000천 명)이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대상자이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총 퇴직급여 부담은 8,534억 원(연간 1,927억 원), 1인당 추가 부담은 950만 원(연간 214만 원)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늘어날 기업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자의 생산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정년대상 연령의 임금감소율이 기존 임금의 90% 이상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표 9〉 참조) 특히, 업종별(생산직, 관리직 등) 다를 수 있는 생산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인해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¹⁷⁾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신중히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기업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퇴직급여 부담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무상태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많고 이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지원¹⁸⁾할 목적이라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어야 할 것임.¹⁹⁾
- 기존의 고령자 고용제도인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등에 대한 재평가와 제도간 조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²⁰⁾

■ 60세 의무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의 추가적인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때 기업에 대한 일정 추가 부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안전망의 역할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정년의무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신규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정책 수립 시 기업의 부담은 퇴직급여에만 있지 않다는 점에서 총 기업 부담이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환경 및 사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간 합리적 합의에 의해 임금피크제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kiri](#)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NEWSLETTER 2014년 5.14(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18) 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임금감액분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고령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하여 왔음(안주엽 2011).

19) 박성준(2006),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 박성준(2006),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장수리스크 도입 논의와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최근 감독당국이 장수리스크의 요구자본 반영을 추진하고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시안)” 설명회를 통해 2018년부터 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 반영하기로 함.
-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 감독당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고령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와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확대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아직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보험의 유지율과 종신연금 전환율이 높지 않으며, 연금부채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의 비중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음.
- 그러나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핵가족화의 진전,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종신연급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회사들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장수리스크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장수리스크 측정을 위하여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여 적절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수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헤지(natural hedge)를 위한 적절한 상품 포트폴리오 유지가 필요할 것임.

1. 검토배경



- 2014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시안)” 설명회를 통해 2018년부터 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 반영하기로 함.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로드맵은 RBC 요구자본의 신뢰수준을 99%로 상향함에 따라 RBC 비율 권고 수준을 120~130%로 하향조정하고 RBC규제 강화와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수리스크는 평균수명 증가와 연금보험 수요 증가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 RBC 요구자본에 도입 검토 후 2018년 시행한다는 내용이 제시됨.

-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망률의 빠른 개선과 생명보험회사 및 연금사업자의 연금부채 증가 등으로 지급여력제도 상에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유럽의 새로운 보험감독제도 Solvency II는 생명보험 리스크를 사망리스크(mortality risk),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장애/질병리스크(disability/morbidity risk) 등 담보별로 구분하고 있음.
 - 한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도 생명보험 보험리스크를 담보별로 세분화하면서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반영 추진을 계기로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제고와 측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연금보험의 유지율과 종신연금 전환율이 낮은 편이고 생명보험회사 부채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에 분산되어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임.
 - 그러나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연금보험의 비중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본고는 우리나라 장수리스크 현황을 진단하고 장수리스크 측정 및 관리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생명보험회사 장수리스크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장수리스크 진단



-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연금계약자의 생존확률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우리나라 과거 경험생명표를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사망률 개선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경험생명표 남성 사망률 개선율과 실제 연평균 개선을 비교

| 구 분 | 4회 경험생명표 (1997년 기준) | | | 5회 경험생명표 (2001년 기준) | | |
|--------|---------------------|--------------------|-------|---------------------|--------------------|-------|
| | 경험생명표 사망률 개선율 | 1997~2012년 사망률 개선율 | 오차 | 경험생명표 사망률 개선율 | 2001~2012년 사망률 개선율 | 오차 |
| 60~64세 | 2.88% | 4.51% | 1.63% | 3.24% | 4.84% | 1.59% |
| 65~69세 | 2.62% | 4.46% | 1.84% | 3.02% | 4.80% | 1.77% |
| 70~74세 | 2.01% | 3.70% | 1.69% | 2.51% | 3.95% | 1.43% |
| 75~79세 | 1.93% | 2.82% | 0.89% | 2.09% | 3.16% | 1.07% |

| 구 분 | 6회 경험생명표 (2004년 기준) | | | 7회 경험생명표 (2007년 기준) | | |
|--------|---------------------|--------------------|-------|---------------------|--------------------|--------|
| | 경험생명표 사망률 개선율 | 2004~2012년 사망률 개선율 | 오차 | 경험생명표 사망률 개선율 | 2007~2012년 사망률 개선율 | 오차 |
| 60~64세 | 3.68% | 4.59% | 0.92% | 3.98% | 3.44% | -0.53% |
| 65~69세 | 3.36% | 4.96% | 1.61% | 3.59% | 4.87% | 1.29% |
| 70~74세 | 2.87% | 3.86% | 0.99% | 3.07% | 3.33% | 0.26% |
| 75~79세 | 2.28% | 3.10% | 0.82% | 2.59% | 2.87% | 0.28% |

주: 1) 경험생명표 사망률 개선율은 통계청의 간이생명표(5세 간격별)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계산함.

2) 오차=실제 사망률 개선율-경험생명표 사망률 개선율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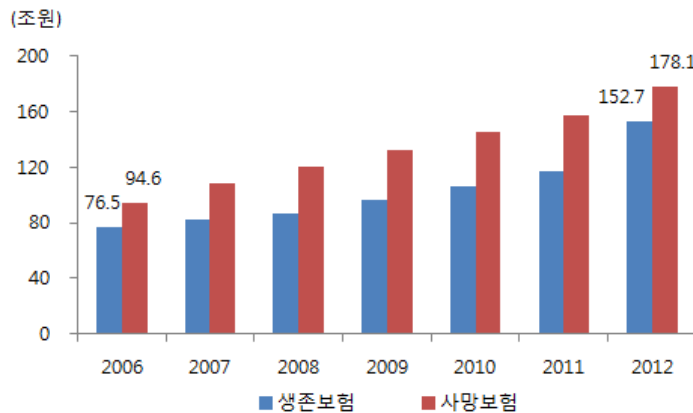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계산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경험생명표는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경험통계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며, 1988년 제1회 경험생명표가 발표된 이후 2011년에는 제7회 경험생명표가 발표됨.
- 연금사망률은 최근 3년간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기준 사망률을 산정하고 사망률 개선율 및 개선 기간을 반영한 후 3단계에 걸친 보정을 통해 최종 산출되며, 연금사망률에 적용되는 개선율은 경험생명표 작성 시점 이전 20년간의 국민생명표 자료를 기초로 계산됨.

- <표 1>의 결과를 보면 경험생명표에 사용하는 과거 20년 평균 남성사망률 개선율이 실제 사망률 개선율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사망률 개선에 대한 예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과소평가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연금보험의 유지율이 낮고 제1보험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종신연금 전환율도 낮으며, 연금부채의 비중이 사망보험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음.

- 황진태·이경희¹⁾에 따르면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유지율은 7년 비과세 혜택 요건을 충족시키는 7년 유지율이 30.0%로 급감하면서 9년 유지율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생존보험과 사망보험 책임준비금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 이경희²⁾는 세계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연금전환율이 78.9%로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1997년 이전 낮은 사망률과 높은 이자율의 적용을 받던 계약의 영향이 크며,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가입한 경우의 전환율은 59.3%로 낮아진다고 설명함.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비중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품 포트폴리오가 사망률 개선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황진태·이경희(2010),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보험연구원.

2) 이경희(2013), 「세계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 분석」, 보험금융연구.

■ 그러나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핵가족화의 진전,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비해 이를 부양할 근로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1955년생부터 시작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가속으로 인한 종신연금 수요 확대도 예상됨.
- 또한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가족을 통한 장수리스크 분담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1~2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저성장 저금리 환경의 지속으로 종신연금 이외의 노후소득 확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임대 수입과 금융자산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사망률의 상호보조 효과³⁾가 있는 종신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음.

3. 장수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방안

■ 장수리스크의 측정방법은 유럽 신감독제도 Solvency II에서 각각 내부모형과 표준모형에 사용되는 VaR 방식과 시나리오 방식⁴⁾등이 있으며, 연금보험 리스크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계수(factor)방식이 있음.

- Solvency II의 VaR 방식은 확률적 시나리오 생성을 통해 보유기간 1년, 신뢰수준 99.5%의 VaR로 계산한 연금부채 증가분으로 측정하며, 시나리오 방식은 모든 연령의 사망률이 기대값보다 20% 개선 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부채 증가분으로 측정함.⁵⁾
- 계수방식의 경우 장수리스크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연금보험 준비금에 사전에 계산된 위험계수를 곱함으로써 측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RBC 제도가 리스크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가 요구자본에 포함될 경우 감독당국이 제시한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계수방식으로 측정할 것으로 예상됨.

3) 연금가입자 집단 중 조기 사망한 가입자의 잔여재원을 생존해 있는 가입자의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는 효과를 말함(이경희 2013 참조).

4) 시나리오 방식은 충격방식(shock approach)라고도 함.

5) 김세중(2013), 「장수리스크 측정방식에 관한 비교 연구」, 보험금융연구.

- 한편 생명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을 계산하거나 향후 도입될 수 있는 내부모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장수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수리스크 관리방법으로 해외에서는 장수 스왑(longevity swap), 장수채권(longevity bond)과 같은 장수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장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품거래가 전무하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 포트폴리오 유지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임.

- 장수리스크 관리 방법 중 바이아웃은 주로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연금계약과 관련한 부채와 함께 그에 해당하는 자산을 모두 타 법인에 이전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제거하는 장수리스크 관리 방법임.
- 장수 파생상품 중 하나인 장수스왑은 연금사업자가 재보험사 또는 투자은행과 고정현금흐름과 생존지수에 연동하는 변동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2008년 JP Morgan과 영국 바이아웃 회사 Lucida 간의 거래 이후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장수채권은 채권의 쿠폰이 생존지수에 연동되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방법이지만 영국과 칠레에서의 발행 시도가 모두 실패⁶⁾하는 등 실제 발행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⁷⁾
- 우리나라의 경우 장수리스크 관리 상품이 미비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적절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인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임.

〈표 2〉 최근 대규모 장수 스왑 거래 사례

| 날 짜 | 리스크 전가 주체 | 리스크 전가 대상 | 금액 |
|----------|-------------|---------------------------|---------|
| 2013. 2 | BAE systems | Legal and General | £ 3,2bn |
| 2013. 12 | Carillion | Deutsche Bank | £ 1,0bn |
| 2013. 12 | AstraZeneca | Deutsche Bank | £ 2,5bn |
| 2013. 12 | BAE systems | Legal and General | £ 1,7bn |
| 2014. 3 | Aviva | Swiss Re, Munich Re, SCOR | £ 5,0bn |

자료: 각 신문기사 참조.

6) 장수채권 발행 실패 이유로는 과도한 헤지 비용, 모델링 및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짧은 만기, 제한적인 생존지표, 장수리스크 헤지 인센티브 부재 등이 지적됨.

7) 2010년 Swiss Re의 장수채권 발행사례가 알려져 있으나 장수스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되는⁸⁾ 등 장수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 해외에서도 장수채권의 발행 성공사례가 없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수리스크가 자본시장을 통해 거래된 적이 없으나 선제적으로 장수리스크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됨.
- 장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은 장수리스크 확대에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또는 소극적인 상품 개발로 종신연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장수 파생상품이 도입될 경우 사망률 데이터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생존확률 예측 방법, 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수지수의 개발,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통계청이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망자수 데이터는 1983년 이후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이 30여 년에 불과하며, 인구데이터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 79세를 최고 연령으로 함으로써 고연령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임.
 - 보험개발원에서 경험생명표 작성을 위해 집적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사망률 데이터 또한 집적 기간이 단기에 불과함.
- 장수 파생상품 도입에 있어 미래 생존확률을 예측하는 통일된 방법론이 부재하고 장수 파생상품의 가격결정방법 또한 정형화된 모형이 없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바, 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장수 파생상품 도입에 앞서 장수지수(longevity index)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보험계약자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장수 파생상품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려는 보험회사의 헤지 효과가 달라질 것임.
- 마지막으로 장수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요구자본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장수 파생상품의 생존확률 측정 대상 집단과 보험회사의 계약자 집단의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베이스 리스크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8) 금융위원회(2013),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4. 시사점



- 최근 감독당국이 장수리스크의 요구자본 반영을 추진하고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 등 장수리스크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와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유럽의 신감독제도 Solvency II는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Solvency II의 생명보험 리스크를 구성하는 하위 리스크 중 장수리스크와 해약 리스크를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음.⁹⁾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핵가족화의 진전,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종신연금 부채 확대가 예상되며, 장수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장수리스크를 인식,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회사는 아직까지 장수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장수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적절한 측정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직까지 종신연금 부채 비중이 크지 않고 연금계약의 유지율과 종신연금 전환율이 낮은 편이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부채 비중은 확대가 예상되며 연금계약자의 행태 변화도 장수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장수리스크 측정을 위해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여 적절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수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헤지(natural hedge)를 위한 적정한 상품 포트폴리오 유지가 필요할 것임. **kiri**

9) EIOPA(2011), "Report on the fifth Quantitative Impact Study(QIS5) for Solvency II", pp. 77.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됨에 따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보험회사의 고연령 보장 제3보험 시장 진입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보험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인구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최근 생명보험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되는 가운데 뚜렷한 신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빠르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신상품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 제3보험 상품은 보장내용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지만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 배당유무 등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고연령까지 보장하는 경우 대부분 갱신형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실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본의 제3보험은 다양한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으로 고연령층 가입이 용이하고 고연령에 충분한 보장을 제공함.
 - 현재 일본은 안전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감독규제가 거의 없으며, 감독당국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감독당국은 2006년 보험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3보험 분야의 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출시 상당히 보수적인 안전할증을 적용함.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제3보험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독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생명보험회사는 고연령층 가입이 가능하고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상품을 확대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감독당국은 데이터가 적고 불확실성이 큰 제3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시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의 최대 한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생명보험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되는 가운데 뚜렷한 신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생명보험산업은 FY2013 기저효과¹⁾로 인해 -8.0% 성장을 기록한 이후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수요 회복세는 크지 않으며, 당기순이익은 FY2011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 생명보험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종신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으로 이어지는 신상품 전략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산업의 성장을 이끌만한 새로운 상품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신규 시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신상품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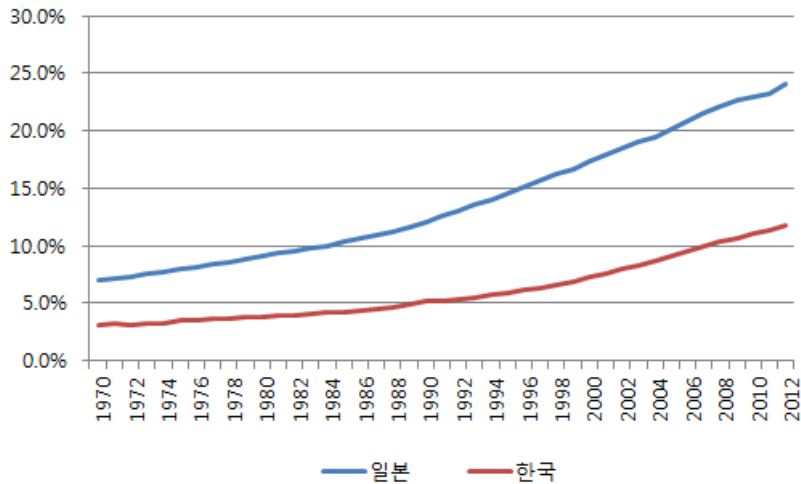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건강 및 질병보험 등 제3보험 분야 보험상품 수요 확대가 예상됨.
- 그러나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상품 개발은 데이터가 미비하고 미래 발생률 추세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전용 암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SI(Simplified Issue)보험 등을 통해 이러한 신수요에 최근에서야 대응하기 시작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고연령 보장 제3보험 시장 진입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보험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인구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은 197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상회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994년에는 14%를 상회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4.1%로 우리나라의 11.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1) FY20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세계개편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고성장을 기록함.

〈그림 1〉 일본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중 추이



주: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OECD.

- 일본은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질병 및 건강을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1년 일본 국내 보험회사의 단독 판매가 허용된 이후 2012년 개인보험 보유계약 연납화 보험료 중 2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함.
- 일본 보험회사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SI보험, 여성형 보험 등의 보장상품에 대해 높은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3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표 1〉 일본 개인보험 및 제3보험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
| 개인보험 | 4.7% | 1.9% | 4.6% | 4.7% |
| 제3보험 | 3.0% | 3.7% | 3.9% | 2.5% |
| 제3보험 비중 | 22.8% | 23.2% | 23.1% | 22.6% |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2. 일본 제3보험 상품 동향



■ 일본 제3보험 상품 중 의료보험, SI보험, 여성형 보험, 재해·상해 특약 보험 등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장내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제3보험 상품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²⁾

- 일본의 의료보험은 입원, 수술, 사망, 통원치료, 방사선치료, 고도장해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SI 보험 또한 입원, 수술, 사망, 방사선치료, 통원(특약) 등 우리와 유사한 보장내용을 보장함.
- 여성형 보험의 경우 자궁근종·난소기능장애·유산·임신험병증 등 여성에 특화된 질병을 주로 보장하며, 재해·상해 특약 보험은 사고로 인한 골절, 관절탈구, 힘줄파열 등 특정손상보험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당뇨, 중증고혈압성질환 등 6대 질병, 재해입원, 재해사망보험 등을 보장함.
- 일본 제3보험 상품은 우리나라 제3보험 상품과 보장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보험상품이 일본 상품을 참고하여 개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본 제3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 배당유무 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연령층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고연령에서의 보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질병보험의 경우 유아, 청년층 등 특정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보험도 존재하며 일부회사의 경우 가입연령을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70세 또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거의 모든 상품이 종신까지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이 무배당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SI보험도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은 가입시 검진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고지만을 취급함으로써 과거 병력이 있거나 고연령인 경우에도 가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2) 新日本保険新聞社(2012), 第三分野商品のすべて.

〈표 2〉 일본 주요 질병보험 상품 현황

| 보험회사 | 담보 | 가입연령 | 보장기간 |
|--------------|---------------------------|-------------|-------------------------------------|
| 메이지야스다 | 입원, 수술, 통원치료, 재해 | 12~70세 | 종신 |
| 부국생명 | 재해입원, 질병입원, 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 15~75세 | 종신 |
| 미즈이 | 부상질병입원 및 수술 등 상해 | 종신납: 30~75세 | 종신 |
| 지브롤터 | 입원, 수술, 고도장해 | 0~75세 | 정기형: 10년, 15년, 50세~80세 만기(5세 단위) |
| 소니 | 재해입원, 질병입원, 수술, 사망 | 3세~75세 | 종신 |
| 메트라이프 알리코 | 질병입원, 재해입원, 수술, 사망 | 만 3세~만 80세 | 종신 |
| 약사 | 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 0~75세 | 종신 |

자료: 新日本保險新聞社(2012), 第三分野商品のすべて.

- 여성형 보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입연령이나 보장기간이 까다로운 편이나 70세 이상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SI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상품은 종신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 및 건강보험 상품의 경우 고연령까지 보장 기간 확대 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분 갱신형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실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연령 보장 제3보험 상품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음.
 - 이들 상품은 보험료 갱신 시 연령의 자연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뿐만 아니라 발생률 증가 추세로도 보험료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연령층은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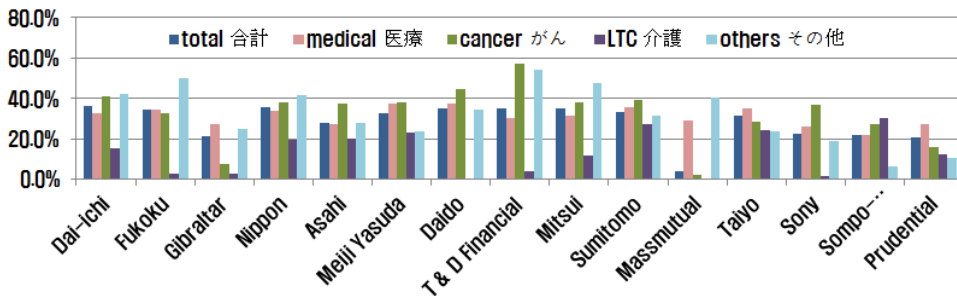
3. 일본 제3보험 상품관련 규정 및 제도

- 일본 보험회사들이 가입연령과 보장기간이 다양한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제3보험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암보

협, LTC보험 등 건강담보에서의 발생율도 매우 낮은 수준임.

- 2012년 일본 주요 5개 생명보험회사³⁾의 사업비차익은 3천 5백억 엔에 그친 반면 위험률차익은 1조 5천억 엔을 실현하여 위험률차익이 사업비차익에 비해 약 4.4배에 달하는 등 일본 생명보험 회사들은 위험률차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생명보험산업이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위험률에 대해 충분한 안전할증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 2011년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 종목별 발생률



주: 발생률 =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예정위험보험료 + 예정사업비)
 자료: 각 사 연차보고서.

■ 현재 일본은 안전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감독규제가 거의 없으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건전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품인가 시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보험업법에는 보험료 산출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감독지침을 통해 보험료가 타당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계산되도록 하고 있음.⁴⁾
- 일본은 1996년 신보험업법 제정을 통해 보험료가 자유화되었으며, 보험료 자유화 이후 현재까지 보험료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안전할증과 관련하여 부서행정 협의 정도에 그침.
-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독규정은 표준생명표(사망, 연금개시 후, 제3분야) 규정으로 각 보험회사는 자사요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표준생명표에 근거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표준생명표 수준에서 위험률을 결정함.

3) 제일생명, 스미토모, 아플라, 간포생명, 메이지야스다를 대상으로 조사함.

4) 일본 보험회사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 IV-5-1 (1) “保険料の算出方法については 十分性や公平性等を考慮して 合理的かつ妥当なものとなっているか”.

- 일본 감독당국은 상품인가 시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아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험요율을 점검하며, 충분한 안전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함.
 - 안전할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감독당국과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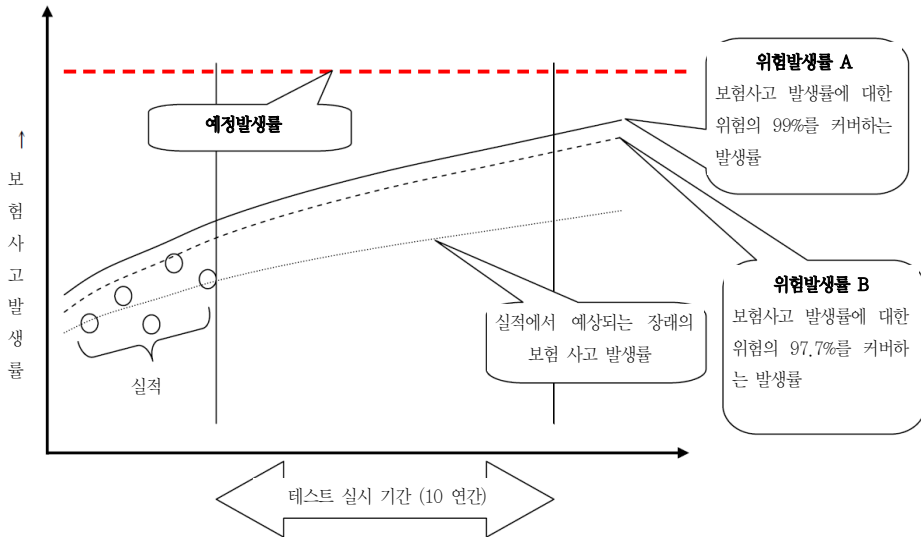
■ 한편 2006년 일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 등 질병 및 건강을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 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함.

- 일본 보험감독당국은 제3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 감독청·대장성 고시 제 22호(헤세이 12년 6월 23일)”를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부채 타당성 테스트를 도입함.
- 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 등 질병이나 상해를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는 2001년 부터 일본 국내 보험회사의 단독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고령화로 인해 보험수요가 사망보장에서 질병 상해 보장으로 변화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보유계약이 급증함.
 - 2004년 제3분야 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전체 보유계약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확대됨.
- 제3보험 분야는 상품내용이 다양하고 관련 데이터가 충분치 않으며 종신보장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품이지만 2006년 이전까지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발생률의 사후검증은 각 사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었음.

■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는 매년 실시되며, 예정발생률이 현재 발생률 추세를 반영한 향후 10년간 발생률의 VaR 99% 수준을 상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출시 안전할증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음.

-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회사 실적치를 바탕으로 한 현재 발생률에 추세를 감안하여 예상되는 장래 보험사고 발생률을 계산한 후, 10년 기간 동안 예정발생률이 장래 보험사고 발생률의 VaR 99%를 하회할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VaR 99%에 해당하는 발생률을 A라 하고 VaR 97.7%에 해당하는 발생률을 B라 할 경우 예정발생률 P가 발생률 A를 상회하는 경우 추가 준비금은 없으며, P가 A와 B 사이인 경우 A-P를 상한으로, P가 B보다 작을 경우 A-B를 상한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함.

〈그림 3〉 일본 제3보험의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 예시



자료: 金融監督庁・大蔵省告示第22号(平成12年6月23日).

- 스트레스 테스트는 매년 보유계약에 대해 실시되지만 보험료 산출 시 예정발생률을 발생률 A 수준 이하로 할 경우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시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보수적인 안전할증을 통해 확보된 사차익은 대부분 보험회사 수익으로 직결되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유배당 계약을 통한 계약자 배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유배당보험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배당 보험을 판매하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배당비율은 20%까지 낮게 설정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경우 최근 배당상품 출시 움직임이 있으나 이차 배당만을 실시하고 사차배당은 하지 않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짐.
 -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계약자 배당이 90%였으나 이후 80%로 하향조정된 후 2002년에는 “20%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됨.
 - 상호회사 유배당계약의 계약자 배당률을 낮게 조정한 이유는 상호회사의 경우 자본 부족으로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유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일본은 1990년대 이차역마진으로 다수의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 때문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직결되는 수익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의 없음.

4. 시사점



- 보험회사의 저성장·저수익 구조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보험수요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고연령층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기간도 장기이면서 비갱신형인 제3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과 달리 일본 보험회사들은 고연령까지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에서 충분한 위험률 차익을 확보하고 있음.
 - 일본 보험회사들이 제3보험 상품에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위험률에 대한 규제가 없고 상품개발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고령화로 인해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제3보험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감독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데이터가 적고 불확실성이 큰 제3보험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시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의 최대 한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안전할증 등 보험료율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제3보험의 경우 발생률 추세를 감안하고 보수적인 책임준비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보험료 산출에 있어 상당한 안전할증을 허용하고 있음.
 - 배당과 관련해서도 상호회사만이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이 20%까지 낮게 적용되는 등 사차익 중심으로 얻어진 수익의 대부분을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연령층이 가입 가능하고 고연령까지 보장 가능한 제3보험 상품을 확대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보험회사들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이 가입 가능하고 고연령까지 보장 가능한 건강 및 질병 보험 등 제3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함.
 -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3보험 상품 유형인 갱신행 상품보다는 비갱신행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고연령 도달 시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보험회사의 제3보험 상품 확대는 공사협력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임. [kiri](#)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전성주 연구위원, 박선영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 최근 정부는 내수보완과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을 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로 확대하고 민간 역모기지 상품가입자가 공적보증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을 출시하는 방안을 발표함.
 - 이와 함께, 김재천 신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
 - 60세 이상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평균 자산액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9.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택연금과 같은 실물자산 유동화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노인인구 소득빈곤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을 의미함.
 -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의 대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공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각 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됨.
 -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초 연금지급일에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로 부과하고 이후 매월 보증잔액에 대해 연리 0.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부과하고 있음.
 - 2007년 출시된 공적보증 주택연금은 2013년 말 현재 누적 가입건수 16,127건, 보증공급액 잔액 22조 278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공급액으로 인한 주택금융공사의 부담, 고가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불가, 일부 은행들에 치우친 주택연금 공급실적 등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음.

- 초기보증료를 크게 낮춘 미국의 HECM Saver상품이나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을 연계시킨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 주택연금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가입자의 주택가격 제한 완화, 초기보증료를 낮춘 별도의 주택연금 상품 출시, 보험회사와 연계한 주택연금 상품 개발, 대출금리 마진의 현실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내수보완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10. 8)에 따르면 정부는 60세 이상 노년층이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함.¹⁾
 - 주택금융공사의 현행 주택연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 비거주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개선된 방안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외에도 민간 역모기지 상품 가입자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교형 주택연금을 출시하는 등(2014년 12월 예정) 주택연금 상품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10월 29일 취임한 김재천 신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경영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힘.

- 현재 주택연금 지급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공함에 따른 초기보증료로 주택가격의 2%를 부과하고 매월 보증 잔액에 대해 연리 0.5%의 보증료를 부과하고 있음.
-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는 한편 가입자의 연금지급총액에 가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있으며 중도해약시 돌려 받을 수 없음.
- 이번 발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하여 초기보증료를 낮추는 대신 연간 보증료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힘.

■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은 내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심각한 소득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소득 빈곤율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47.2%로 OECD 평균인 20.4%에 비해 2배 이상 높음.²⁾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10. 8),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더욱 큰 문제는 OECD 국가들 대부분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이 2007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소득 빈곤율 비율은 추세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2007년 44.6% → 2010년 47.2%).
- 60세 이상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평균 자산액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9.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과 같은 실물자산 유동화는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201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규모는 3억 2,587만 원으로 이 중 부동산 자산은 2억 5,773만 원, 거주주택 가치는 1억 3,805만 원으로 조사됨.
-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의 현황과 제도를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연금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 및 현황



가. 주택연금 상품구조와 공적보증 제도

-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을 의미함.
 -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의 대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차지하고 있음.
 - 공적보증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 소유자(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부부 기준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2) 소득빈곤율은 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 대출 한도는 5억 원이며 이 중 수시인출금 설정 한도는 대출 한도의 50%임.

■ 공적보증이 들어간 주택연금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공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각 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됨.

-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보증약정체결과 해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함.
- 연금 지급에 따른 대출 집행은 각 금융기관에서 수행함.

〈그림 1〉 공적보증 주택연금 대출 과정



-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초 연금지급일에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로 부과하고 이후 매월 보증 잔액에 대해 연리 0.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대출 잔액에 가산함.
- 연금 지급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10~30년의 일정기간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음.
 -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목돈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출한도 설정 시 월지급금은 줄어듦.
- 또한, 월지급금을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 뿐만 아니라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 증가하는 정률증가형, 3%씩 감소하는 정률감소형, 그리고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하는 전후후박형 등 다양한 월지급금 지급유형이 존재함.

- 연금지급총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음.
 - 주택처분 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보증보험제도는 대출금융기관 파산 시 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주택 처분가격이 대출상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함.
 - 주택연금 상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대출상품과 연금 보험 상품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임.
 - 일반적인 모기지 상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목돈으로 지급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상품을 상환하는데 반해,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지급액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로 축적되며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담보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임.
 - 공적보증보험이 연계된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연금 상환 시 주택의 처분 가격이 대출금 총액보다 높으면 그 잔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지만, 대출금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출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상환시기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간이 종신인 경우 대출금 총액이 가입 당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액을 넘어설 경우 보증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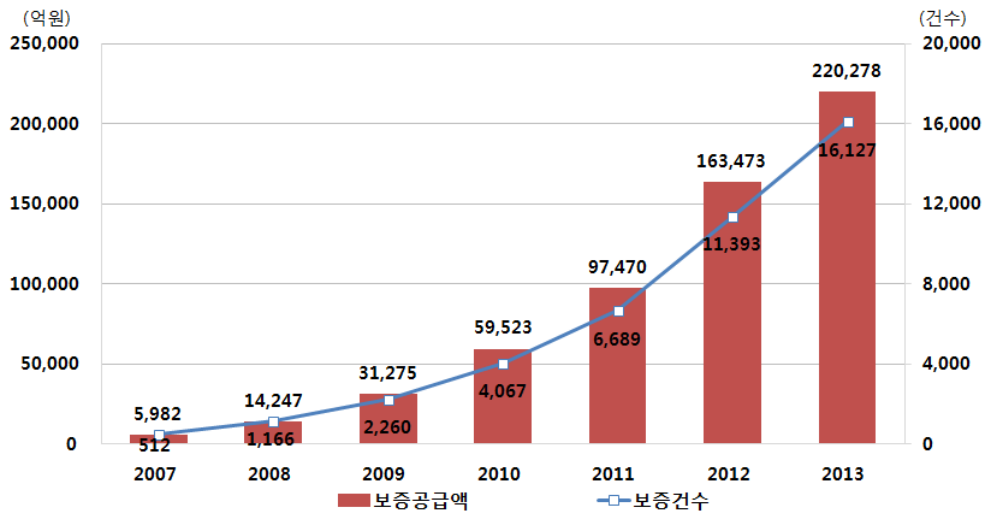
나.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 현황

-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3년 말 현재 누적 가입건수는 16,127건, 보증공급액 잔액은 22조 278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기준에서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시 부과 비용의 면제, 대출약정 인지세 50% 인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수수료 2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입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 황재훈(2011)에 따르면, 2009년 4월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2011년 4월까지 2년동안 신규 가입자의 13.1%에 해당하는 493명이 주택연금을 추가로 이용하게 되었고

2009년 3월 대출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10.1%에 해당하는 389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음.³⁾

- 또한, 2008년 10월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의 범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7.4%에 해당하는 309명이 주택연금에 추가로 가입함.

〈그림 2〉 주택연금 누적 가입규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2014년 10월 말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이 없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등에서 출시되고 있음.

- 대상연령과 주택형태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에 비해 제약이 없는 편이며 대출기간은 30년 이내로 확정되어 있음.
- 공적보증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금리가 3개월 CD금리에 1.1%의 마진을 더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첫 3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5년마다 적용되는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음.
- 민간 주택연금 상품의 경우 주택가격이나 연금지급에 대한 보증이 없음.
- 그러나, 공적보증 주택연금에 비해 민간 주택연금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3) 황재훈(2011),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택금융월보 2011년 9월호.

-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도 2012년 말 기준으로 303건, 255억 원 규모의 공급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민은행은 2012년 말 20건, 5억 원 규모의 역모기지 상품 공급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⁴⁾

〈표 1〉 공적보증 주택연금과 민간 주택연금 비교

| 구분 | 주택금융공사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외환은행 |
|------|--------------|--|-----------------------------------|--|
| 상품명 | 주택연금 | 미래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 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 해피니어 모기지론 |
| 출시 | 2007. 7. 12 | 2014. 8. 26 | 2008. 9. 29 | 2011. 8. 8 |
| 대상 | 60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만 45세 이상~ 80세 미만 |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
| 대상주택 | 9억 원 이하 |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제한 없음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제외) |
| 대출기간 | 사망 시까지 | 1년~30년 | 10년~30년 | 10년~30년 |
| 대출금리 | CD+1.1% | 첫 3년 고정 (1년: 연5.6%, 2년: 연6.1%, 3년: 연6.2%), 3년 후 신규 COFIX+2.0% 또는 잔액 COFIX+2.1% | 5년 고정금리 (*14. 10. 27 기준 3.73%) | 3년 또는 5년 고정금리, (금융채(AAA) 혹은 COFIX 등 기준금리+가산금리) 이후에는 3개월 혹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
| 보증료 | 초기 및 연보증료 | 보증 없음 | 보증 없음 | 보증 없음 |

■ 주택연금 시장의 대부분을 공적보증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연금 시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주택연금 가입자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3년 말 현재 22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보증공급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령층의 경우 노후 소득이 충분치 않을 때에도 공적보증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
- 현재 공적보증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과 흥국생명, 교보생명 등 2개 보험회사가 있으나, 대부분의 실적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들에 몰려 있으며 보험회사의 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임.

4) 파이낸셜뉴스(2014. 5. 14) 참조.

3. 해외 주요국의 주택연금 제도 운용 현황



가.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 공적보증 주택연금 제도의 벤치마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적보증제도와 주택연금 자산의 유동화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미국의 주택연금 제도는 1989년 정부가 개발한 공적보증 역모기지(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 상품이 도입되면서 활성화되었으며 HECM 상품이 전체 역모기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HECM 프로그램에 속한 역모기지에 대해서는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이 차입자와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리스크를 경감시켜주는 공적 보증을 제공함.

- FHA는 주택연금 손실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 제공의 대가로 차입자로부터 모기지 보증 보험료(Mortgage Insurance Premium; MIP)를 받고 있으며 보험료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음.

- 또한, FHA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대출 전 사전상담제를 의무화하고,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변동한도(Cap)를 정해 놓았으며, 소비자의 대출 채무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가격을 넘지 않도록 비소구대출(non-recourse loan)을 적용함.

■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와 유사한 HECM Standard 상품 이외에도 최초 모기지 보험료를 크게 인하시킨 HECM Saver 상품을 통해 대출비용을 크게 낮춘 상품을 출시하였음.

● HECM Standard는 최초 모기지 보험료로 주택 평가금액의 2%를 부과하고 월별 모기지 보증보험료를 연 1.25%로 부과하고 있으며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 2012년 금리 기준으로 주택 평가금액의 62~77% 수준임.

● HECM Saver는 기존 상품인 HECM Standard에 비해 최초 모기지 보험료를 0.01%로 크게 낮춘 대신에 최대 대출가능금액을 2012년 금리 기준으로 주택 평가금액의 51~61%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낮은 대출비용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두 상품 모두 62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나 공적보증의 최대 청구가능한도는 62만 5,500달러로 제한하고 있음.

〈표 2〉 미국 공적보증 주택연금 상품 비교

| 명 칭 | 특 징 |
|---------------|--|
| HECM Standar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함 •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해 FHA 정부 보증 • 지역제한 없음 • HECM의 보증재원은 GIF(Growth Investment Fund)로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손금 발생 시 연방정부 예산으로 보조금 지원 • 대출금융기관이 아닌 독립된 제 3자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 의무화 • 최초 모기지보험료는 주택가격 평가금액의 2% 부과 • 월별 모기지보험료는 매월 연리 1.25% 부과 •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012년 금리 기준으로 주택 평가금액의 62~77% 수준 |
| HECM Sav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0월 도입 • 기존 Standard 상품보다 최초 가입비용이 저렴한 대신 대출한도 축소 • 최초 모기지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여 주택가격 평가금액의 0.01% 부과 • 월별 모기지보험료는 매월 연리 1.25% 부과 •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012년 금리 기준으로 주택 평가금액의 51~61% 수준 |

자료: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012), "Reverse Mortgage Report".

나. 영국

■ 영국에서는 민간금융시장에서 일찍부터 주택지분을 유동화하는 다양한 주택지분유동화 상품(Equity Release Product)이 발달되어 왔음.

-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차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평생주택담보대출(Lifetime Mortgage)과 가입 시 차입자가 일부 지분 혹은 주택 전체를 자산관리회사(Reversion Company)에 매각하는 한편 집세없이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는 주택매각방식(Home Reversion Plan)으로 나뉨.
- 1980년대 영국의 역모기지 시장은 주택매각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가산액 증가와 더불어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항에 의해 역모기지 차입자의 조기 변제의무가 발생하고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출금 회수 불능이나 소송 등에 의해 손실이 증가하였음.
- 이후 1991년 Equity Release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Safe Home Income Plans(SHIP)과 Equity Release Council을 만들어 적절한 대출심사, 소비자 카운슬링, 상품 설명 의무화 등 주택지분유동화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올바른 정보 제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영국의 주택연금 시장에는 공적보증이 없는 대신 SHIP이 승인한 평생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 대

대출금이 주택매각 가격 이상을 넘지 않도록 “No negative equity guarantee”가 제공되며 대출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표 3〉 영국의 주택연금 운영 현황 및 특징

| 명칭 | 개발 및 운영주체 | 특징 |
|----------------------------------|-----------|---|
| 평생주택담보대출 (Life Time Mortgage) | 보험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55세 이상 • 차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망시 주택을 매각해 대출 원리금 상환 • 소유권을 유지하되 만기시 주택 매각 이후 대출금을 갚고 난 나머지 부분은 상속자 유산 • 수명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불리함 • 대출기관은 채권자 • 대출금 인출방식에 따라 lump-sum lifetime mortgage와 drawdown lifetime mortgage가 존재함 |
| 주택매각방식 (Home Reversion) | 보험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65세 이상 • 일부지분 또는 주택 매각 방식으로 대출과는 차이 • 주택 매각시 대출기관은 지분만큼 매각대금을 환수 • 대출기관은 주주 • 만기시 대출금은 매각대금에 대출기관의 지분투자 만큼으로 확정지분투자자 애초부터 확정적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질수록 차입자에게 유리함 |

자료: 1) 강길부,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p. 9~17 재정리함.
 2) 김안나 외(2007), 『저소득층 자산활용 노후소득보장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p. 32~51, 재정리함.
 3) Money Advice Service, “Equity Release Schemes: Raising money from your home”, p. 8~9 재정리함.

■ 영국에서는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Home Equity Release Club”에 가입해 평생주택담보대출(Lifetime Mortgage)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인 참여기관으로는 Aviva, Bridgewater, Hodge Lifetime, Just Retirement, More 2 Life, New Life, Partnership, Retirement Plus and Stonehaven 등이 있음.
- 보험회사들은 주택연금 상품에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을 연계하여 판매하고 있음.⁵⁾
 - Aviva의 “Lifetime mortgage + Lifestyle flexible option” 상품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최소 7만 5,000 파운드 이상인 55세 노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이외에도 1만 파운드 이내의 소규모 대출을 받고 미래 위험시 인출 가능한 잔고계좌(reserve facility)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의 최종 판매가격의 일정부분을 상속하도록 상속보증 옵션도 부여하고 있으며 간병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음.

5) 박선영·권오경(2014),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보험연구원.

4. 정책적 시사점



-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은 가입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 밖에도 초기 보증보험료를 완화한 상품의 출시나 주택가격 제한 완화 등 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신임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발표는 현재 주택가격의 2%인 초기보증료를 인하하는 대신 연보증료를 올리는 방안이므로 전체적인 보증공급액을 줄이거나 대출비용을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미국 HECM Saver 상품과 같이 별도로 초기보증료를 크게 줄인 상품을 출시한다면 낮은 대출비용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이어 실질적인 가입자 확대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도 보증공급액을 줄임으로써 보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령층의 경우 현재 9억 원의 주택가격제한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 미국 HECM과 같이 주택 가격을 인정하는 한도만을 설정하고 월지급금을 제한한다면 이들에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음.

- 이외에도 영국의 예와 같이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주택연금 연계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민간 금융 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Aviva의 예와 같이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상속보증 옵션을 부여하거나 일부 월지급금을 간병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현재 3개월 CD금리 + 1.1% 마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금리를 현실화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연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품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현재 1.1%로 고정되어 있는 공적보증 주택연금의 금리마진은 대출 금융기관의 판매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미국의 경우 HECM 상품의 금리 마진을 정할 때 일반적인 모기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마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CFPB(2012)에 따르면 2.5%의 마진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민간 역모기지론 상품의 경우 마진을 2.0%~2.1%로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2%대의 마진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주택연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kiri](#)

3.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1.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 | 김석영 김해식 조재린 |
| 2.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 송윤아 |
| 3.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 영향 | 이기형 정인영 |
| 4.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 | 김해식 조재린 김혜란 |
| 5.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민영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 이상우 |
| 6. 부부 이혼시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 | 이상우 김동겸 |
| 7.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시급 | 송윤아 |
| 8.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제도개선의 향후 논의방향 | 송윤아 |
| 9.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과 검토 방향 | 이상우 |
| 10.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대한 소고 | 기승도 |
| 11.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 | 김경환 박정희 |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

김석영 연구위원, 김해식 연구위원, 조재린 연구위원

요약

-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 계획(RBC2)은 싱가포르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험회사에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여 금융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RBC제도 개편작업과 유사함.
 - 싱가포르는 2013년 IMF로부터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는 등 RBC제도 개편 계획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일본은 2011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2012년 IMF FSAP 평가에 대비하여 지급여력제도를 개편하거나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 과정은 금융감독당국이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유지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국제적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는 정책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RBC2”의 정책 방향과 논리적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시장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
 - 이에 따라 RBC 산출 관련 신뢰수준과 리스크상관관계는 물론 내부모형, 리스크마진 등 RBC 전반에 관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보험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임.
-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개적인 논의는 지급여력제도를 자국 보험시장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쟁점을 둘러싼 보험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함.
 - 이에 보험계리사회, 보험협회 등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RBC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함.
 -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볼 때, 새로운 RBC의 본격적인 시행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1. 검토배경



-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2012년 10월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위험기준자본금(RBC: Risk-based Capital, 이하 지급여력제도)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싱가포르에서도 현행 RBC제도를 개편하는 로드맵(RBC2)이 2012년 6월에 공표됨.¹⁾
 -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새로운 RBC제도(RBC2) 개편 작업을 추진 중임.
 - 한편, MAS는 RBC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구하고자 RBC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RBC2 Review”를 보험시장에 공표하고, 싱가포르 보험계리사회, 보험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싱가포르의 RBC2는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ystem Assessment Program) 적용에 대비해 EU Solvency II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국내 보험산업 상황과 유사함.
 - 아시아 주요 보험시장을 보면, 일본이 2012년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2013년에 FSAP 평가를 받았으며, 각국은 평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하거나 개편 계획을 발표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를 통해 국제적인 금융안정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IMF FSAP 평가를 통해 각국 금융부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금융허브로서 국제화된 보험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임.

- 본고는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산업 간의 RBC제도 개편을 둘러싼 쟁점과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Review on Risk-Based Capital Framework for Insurers in Singapore(“RBC2 Review”).

2. 싱가포르 RBC제도 현황과 개편 계획



■ 싱가포르는 RBC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싱가포르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평가하는 방식(Risk-Focused Approach)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함.
 - RBC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은 요구자본(Total Risk Requirement)에 대한 가용자본(Financial Resources)의 비율로 산출됨.
 -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금융당국은 조기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 이는 2011년에 도입된 국내 보험회사의 RBC체제와 유사한 형태임.

■ 싱가포르의 RBC제도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투자리스크, 집중리스크 등으로 나누어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으며, RBC제도로 측정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성적 감독으로 규제

- 싱가포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은 보험, 투자, 집중리스크에 대해 산출
 - 보험리스크(C1)는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리스크, 생명보험은 사망률, 질병률, 사업비, 해약율에 대한 리스크임.
 - 투자리스크(C2)는 보험회사 자산구성에 내재된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로서 주식, 부동산, 환율 등 시장에 노출된 다양한 리스크를 말함.
 - 집중리스크(C3)는 특정 자산 종류 혹은 특정 거래상대자에 자산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리스크로 감독규정(Insurance Regulation 2004)에 명시된 집중한도 초과 부분에 기초해서 산출됨.
- 현행 RBC제도에서 측정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정성적 감독을 통해 다루고 있으며, MAS는 보험법에 근거해서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을 쌓도록 명령할 수 있음.

■ 한편, MAS는 현행 RBC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감독체계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싱가포르의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유지가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음.

- MAS는 2011년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제시한 개정 국제보험감독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을 반영해서 RBC2를 발표함.

- MAS는 RBC2의 목적을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개입 수준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위험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위험민감도를 높이는 것임을 명시함.
- 또한 MAS는 현재의 위험중심접근법(risk-focused approach)을 계속 유지할 것이므로 RBC2가 현행 보험감독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MAS는 RBC제도 개편에 앞서 지급여력평가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한 제도 개편 방향과 2014년 시행 일정을 담은 “RBC2 Review”를 먼저 발표하여 보험산업의 의견을 수렴함.
 - RBC2의 주요 현안은 신뢰수준, 감독조치수준, 리스크 산출방법, 내부모형 등으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들임.
 - 각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개편 방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호한 내용이나 결론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

3. 싱가포르 RBC제도 개편(RBC2) 관련 논의



- MAS는 감독조치수준의 구분, 요구자본 산출 시 99.5%의 신뢰수준 적용과 리스크 상관관계 불허, 내부모형 도입, 6%의 요구자본비용을 적용한 리스크마진 산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BC2 Review를 공표함.
- MAS는 RBC2에서 현행 감독조치수준(RBC비율 100%, 이하 PCR: Prescribed Capital Requirement) 이외에 최소요구자본(MCR: Minimum Capital Requirement)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제안함.
 - IAIS는 자본적정성에 대하여 두 단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두 단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함.
 - PCR은 1년 동안 신뢰구간 99.5%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해당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반 시 보험회사는 3개월 이내에 충분한 자본을 확충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상황에 따라 감독당국은 유연하게 이 기간을 운영할 것임을 제시함.
 - 한편 MCR은 1년 동안 신뢰구간 90%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해당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반 시 신계약 판매 중지, 영업권 철회 등이 취해지는 감독조치수준임.
- MAS는 요구자본 산출 시 상향된 신뢰수준(99.5%)과 평가기간 1년 기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한편, 리스크 상관관계는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함.
 - 이는 EU Solvency II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뢰수준 99.5%가 RBC2에 반영된 것임.
 - MAS는 싱가포르 보험시장에서 평상 시 및 위기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리스크 상관관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일부 리스크에 또는 모든 리스크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임.
 -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신뢰수준 및 평가기간은 표준모형과 일치하여야 하며, MAS의 승인 필요
 - MAS는 표준모형에 반하는 내부모형의 가정 및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임.
- 한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계산에는 자본비용(Cost of Capital) 6%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 EU Solvency II와 Swiss Solvency Test의 리스크마진 산출방식은 요구자본의 자본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본비용 6%를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싱가포르 보험계리사회(Singapore Actuarial Society) 등은 싱가포르 보험시장이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문제없이 견뎌냄으로써 현행 RBC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싱가포르 보험시장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특히, 싱가포르 계리사회는 회원들의 소속회사나 보험회사의 의견이 아닌 회원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명시하면서 적극적으로 RBC2 수정의견을 개진함.
- RBC2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뢰수준 상향(99.5%)과 리스크 상관관계 불허에 대해 신뢰수준 상향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리스크 상관관계 불허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함.
 - EU Solvency II의 계량영향평가(QIS5)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리스크 상관관계 허용으로 35%나 감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리스크 상관관계 불허와 신뢰수준 상향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상승 혹은 보험상품의 보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을 제시함.
- 또한, 내부모형에 대해서는 인가 절차가 불분명하고, 내부모형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경우 모든 보험회사에 강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전사적위험관리(ERM)와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및 지급 여력평가와 보고제도(ORSA)²⁾가 도입된 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리스크마진 산출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들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므로 자본비용방식을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특히 6%의 자본비용 수준은 EU Solvency II 등에서 채택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 보험시장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RBC2)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볼 때, MAS가 제시한 2014년 시행이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음.

2) MAS(2013), "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Insurers", Consultation Paper P002-2013.

- 싱가포르 시장 내에서는 국제적인 논의 방향을 좀 더 지켜봐야하며 RBC2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기에는 2012년 6월에 제시된 MAS의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 RBC2의 본격적인 시행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4. 시사점



■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은 싱가포르 지급여력제도가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RBC제도 개편작업과 유사함.

- 싱가포르가 RBC2를 통해서 2013년 IMF FSAP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는 등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유지에는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³⁾
- 일본은 2011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2012년에 IMF FSAP 평가에 대비하여 지급여력제도를 개편하거나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싱가포르의 RBC제도의 개편 과정을 살펴볼 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RBC 개편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유지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 논의는 국내 RBC제도 개편 논의와 비교하여 신뢰수준과 리스크상관관계는 물론 내부모형, 리스크마진 등 폭 넓은 쟁점사항을 보다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음.
 - 싱가포르는 정책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RBC제도의 개편 방향과 논리적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보험시장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
 - 이에 보험계리사회, 보험협회 등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RBC제도의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함. [kiri](#)

3) IMF(2013), "Singapore Financial System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13/325.

4) 최근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향후 2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국제금융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PwC(2013), "Global Private Banking and Wealth Management Survey 2013".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19대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안 20개 중 6개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률안이고,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를 신설한 형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과 사기적 보험계약의 무효화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하는 정부제안 상법안(2014.02.20 대안반영 폐기)이 국회에 접수되었음.
- 그러나 상기 일련의 입법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사후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보험회사의 책임과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및 지급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됨.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는 반면, 잠재적인 보험사기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할 책임을 보험회사에 부과하고 사기조사 및 지급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법률로서 정의·금지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무리한 조사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법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먼저, 보험사기에 취약한 보험계약 성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의 법제화에 대해 검토해야 함.
 - 둘째,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셋째,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금지 및 제재 규정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19대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안) 20개 중 6개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률안임.
- 뿐만 아니라, 김학용의원은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를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법안)을 대표발의하고¹⁾ 정부는 사기적 보험계약의 무효화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안)을 국회에 접수함.
- 이러한 일련의 입법노력의 결과, 2014년 1월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규정이 보험업법에 신설됨(보험업법 제102조의3).²⁾
 - 보험설계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가장하게 하거나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상술한 일련의 입법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사후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및 지급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함.

-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차원의 접근은 계약자 등 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계약인수심사에 집중될 수밖에 있는데, 기존 입법활동은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사후적 조치에만 집중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안들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입법화에 실패하고 답보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

1) 제347조의3(보험사기)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2조의2(예비, 음모) 제347조의3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본 조항은 2014년 1월 14일 신설되었으며, 2014년 7월 15일 시행될 예정임.

- 보험사기 정의규정을 신설한 정부제안 보험업법안(2008.12.18)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여 입법되지 못하였음.
 - 보험사기행위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명분을 더 갖게 될 것이며, 보험사기는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별도의 보험사기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음.
- 여러 차례 폐기되었던 보험사기 조사 및 처벌에 대한 법률안들이 큰 수정·보완 없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반복 접수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보험사기 입법노력의 현황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는 반면, 잠재적인 보험사기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할 책임을 보험회사에 부과하고 사기조사 및 지급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법률(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Act)로서 정의·금지함.

2.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과 한계



가. 입법노력

- 2006년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이후, 보험회사의 조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 처벌 등에 관한 입법노력이 이어졌음.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회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계약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함.
 -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계약자 등과의 쌍방관계에서 약관 규정을 근거로 계약자 등의 동의하에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³⁾

〈표 1〉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노력

| | 대표발의 | 개정안 내용 | 처리결과 |
|--------------------------------|-------------------------------------|---|--|
| 18대 국회 (2008 ~ 12) | 정부제안 보험업법안 (2008.12.18) | 보험사기 정의규정 신설 |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폐기 |
| | 신학용의원 보험업법안 (2009.02.12) |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규정 신설 |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
| | 공성진의원 보험업법안 (2009.03.16) | 보험사기 정의규정, 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근거규정, 자료요청권 신설 | |
| | 고승덕의원 보험업법안 (2010.01.06) |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규정과 보험예방원 설립 및 활동 근거 규정 신설 | |
| | 이성현의원 보험업법안 (2010.09.13) | 보험사기 벌칙규정 신설 | |
| | 공성진의원 형법안 (2012.03.16) | 보험사기죄 신설 | |
| | 공성진의원 특별경제가중처벌법안 (2012.03.16) | 상기 형법개정사항의 특경법 편입 | |
| 19대 국회 (2012 ~ 16) | 김기선의원 보험업법안 (2012.12.31) | 보험회사의 정보활용 범위 확대: 보험금 지급 시 계약자의 운전면허 효력이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정보 활용 | 대안반영 폐기: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 | 안민석의원 보험업법안 (2013.01.24) |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규정 신설 | |
| | 박대동의원 보험업법안 (2013.02.07) |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 |
| |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대안 (2013.12.19) |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 2014.01.14 공포 |
| | 정부제안 상법안 (2013.02.05) | 사기적 계약의 무효화,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 | 대안반영 폐기: 대안을 2014.02.20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 | 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 다음의 규정 신설: ① 보험사기 정의 및 벌칙, ② 국가, 금융위원회. | 위원회 심사 중 |

3)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리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표발의 | 개정안 내용 | 처리결과 |
|-----------------------------|--|----------|
| (2013.08.29)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업무, ③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의무, ④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의무, ⑤ 보험사기행위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⑥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및 보험금 반환 의무, ⑦ 보험사기 관련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 |
| 김학용의원 형법안 (2013.04.15) |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 신설 | 위원회 심사 중 |
| 조원진의원 보험업법안 (2013.12.23) | 금융위원회의 출석요구권 신설 | 위원회 심사 중 |

주: 1) 의원발의 법률안 심사진행단계는 다음과 같음: 접수-위원회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심의-정부이송-공포
2) 2014년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상법대안에서는 사기성 계약의 무효화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 조항이 삭제됨.

■ 둘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의 명문화, 출석요구권 신설,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 설치 등을 포함함.

-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권만으로는 보험사기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셋째,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법률안으로는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 신설을 주장한 형법안과 보험살인, 보험중상해, 보험상해치사,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주장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이 있음.

- 현재 보험사기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 즉 위법성인식 결여와 보험사기의 공익범죄적 성격 및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반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 신설 및 형벌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넷째,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가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정부제안 상법안(2013.02.05)이 국회에 제출되었음.⁴⁾

-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조항을 두거나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규정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함.
- 그러나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기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기지급 보험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상법안에서 보험계약이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되, 보험회사는 사기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계 및 미비점

■ 상술한 일련의 입법활동은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사후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고, 보험사기 예방차원의 접근 및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함.

-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차원의 접근은 보험계약성립요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인수심사에 집중되며,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함.

■ 구체적으로, 보험계약 성립 요건 및 절차의 보완과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함을 적발 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노력이 없음.

- 먼저, 피보험자의 생사에 아무런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즉,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얻게 되면 유효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⁵⁾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현행 입법태도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음.⁶⁾

4)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4년 2월 19일 정부제안 상법안(2013.02.05)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대안에서는 사기적 계약의 무효화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 조항이 삭제됨.

5)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자기 및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으로 구분됨.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은 수익자가 누구이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의미하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음.

6)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으로 보호받으려는 이익 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적 성격의 폐해를 상당부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의 초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절차는 보험사기에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이나 현황 파악 없이 보험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⁷⁾
- 또한, 느슨한 인수심사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사기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공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발의된 19대 국회 법률안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음.⁸⁾
 - 보험회사가 단기간 집중가입계약⁹⁾ 또는 월소득을 상회하는 과도한 보험료 납입계약 등 보험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계약을 여과없이 인수하여 보험사기로 귀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인수심사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지만, 그 구체성과 구속력이 미흡함.

■ 또한,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무리한 사기조사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와 제재 규정은 없음.

- 보험회사에 별다른 제한규정 없이 법률로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인정하는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2013.08.29)은 보험계약자 등 보호규정을 포함하지만,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침해나 권익침해 금지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제6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 수익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익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정의됨. 사망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송윤아(2011),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7)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송윤아(2011), 「살인 및 자살을 동반한 보험범죄 예방 방안」,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8) 18대 국회 고승덕의원(2010.01.06) 보험업법안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원칙에 대한 입법화를 처음 시도하였으나 입기만으로 폐지되었으며, 고승덕의원 보험업법안과 유사한 법률안(박대동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접수되었으나 동 법률안에서는 유사 조항이 누락됨.
 9)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38,511명(피보험자 기준)은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1998년 이후 계약 건)함.

3. 미국 사례: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¹⁰⁾



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후적 접근: 적발 및 처벌

- 미국은 보험사기를 적발 및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중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각 주에 주 보험사기국(Insurance Fraud Bureau)을 설치하여 소속 조사관에 경찰권을 부여함.
- 또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 목적인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 및 건강 정보의 공유를 허용하고 있고, 사적인 대화의 녹음, 비디오 감시, 사칭 및 위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적법한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조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접근: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존재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으로 함.
 -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함.¹¹⁾
 -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유형을 재산적 이익의 관계와 혈연이나 인척에 의한 가족관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조기사망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봄.
 - 재산적 이익의 관계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에, 기업은 그 기업의 핵심임원, 피고용인은 그 고용기간 동안 받을 급여액을 한도로 고용주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인정함.
 -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마다 약간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생명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님.

10)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송윤아(2012),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보호 방안』, 보험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11) 미국의 경우 영국처럼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계약체결의 성립요건이지 계약존속을 위한 요건은 아니므로 수익자를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음. 즉,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시 존재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존재하지 않아도 됨. 이러한 미국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규제(이익주의)는 생명보험의 영역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음.

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접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책임

■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보험회사가 피보험이익의 존재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결과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살인의 위험에 처하거나 상해 또는 살해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타인의 생명 및 상해 보험 계약의 계약심사에 대한 소송 등에서 미국 법원의 판단은 피보험자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또한, 피보험이익의 존재 이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인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계약 성립의 필수요건임.

■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계약자 및 수익자와 피보험자 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일지라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

- 보험회사가 피보험이익의 존재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결과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살인의 위험에 처하거나 상해 또는 살해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1957년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모든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수익자가 피보험이익이 없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보험자를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보험회사는 살인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라.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및 지급거절로부터 소비자 보호

■ 피보험자 및 청구권자는 불공정보상행위법, 그리고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 및 징벌적 손해 배상에 의해 보험회사 등의 무리한 사기조사로 인한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견제, 방지할 수 있음.

1) 불공정보상행위법

■ 미국 대부분의 주는 미국보험감독자협회(NAIC)가 제정한 불공정보상행위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동 모델법에서는 14가지 불공정 보상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 보상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 사고접수의 확인 통지 지연, 보험지급여부 통보 지연, 보험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에 대한 설명 부족,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위한 조사 부족, 지급 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 제기,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고조사,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화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위 등

■ 동 모델법에 따르면 주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가 관찰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청문회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면 벌금부과, 영업중지 또는 영업을 허가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¹²⁾

2)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 및 징벌적 손해배상

■ 보험회사가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 보험계약에는 계약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혜택을 받을 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이러한 계약의 의무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든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지만, 보험법의 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는 이 원리를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제기하는 소송의 원인으로만 보고 있음.

■ 보험회사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선의의무 위반행위는 묵시적인 계약상 의무의 위반 및 불법행위(bad faith tort)가 되며, 그로 인한 청구권자의 모든 손해가 보상될 수 있음.

- 그러한 손해에는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추가적인 손해(consequential damage)에 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함.
-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것이 전통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12)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Section 6.

■ 구체적으로, 판례 등을 통해 본 보험회사의 선의 및 공정거래의무 위반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청구권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보험계약약관 또는 청구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주는 행위¹³⁾
- 청구권자의 사고통보 후 사고접수 통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행위¹⁴⁾
- 청구권자가 손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지급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¹⁵⁾
- 보험회사의 책임이 자명한 보험금청구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행위
- 청구권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행위
-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행위¹⁶⁾
-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¹⁷⁾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후에 지급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의 제기
-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청구권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¹⁸⁾
-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화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위 등

13)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에 따라 손해사정인은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범위를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특히 피보험자가 그 범위를 모르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손해사정인이 피보험자의 무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선의 및 공정거래의무를 위반하는 것임(MFA Mutual Insurance Company v. Flint, Tenn. 1978).

14) 대부분의 주는 주법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함: "Failing to acknowledge and promptly upon communications regarding a claim arising under an insurance policy and failing to adopt and implement reasonable standards for the prompt investigation of claims constitute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15) 대부분의 주는 주법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함: "Failing to affirm or deny coverage, reserving any appropriate defense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aving completed its investigation related to a claim constitutes an unfair claim practice by an insurer."

16) 대부분의 주는 주법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함: "Failing to promptly provide a reasonable explanation of the basis in the insurance policy in relation to facts or applicable law for denial of a claim or for the compromise of a settlement constitutes an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

17) Egan v. Mutual of Omaha Ins. Co.(Cal., 1979), Frommoethelydo v. Fire Ins. Exch. (Cal., 1986), Mariscal v. Old Republic Life Insurance Co.(Cal., 1996).

18) 청구권자의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함(Unrah v. Truck Ins. Exch., Cal. 1972). 또한 법원은 보험사기 조사목적으로 청구권자를 감시 또는 미행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소송사유라고 판시함(Schultz v. Frankfort M. Acc & P.G.Ins.Co., Wis. 1913).

4. 결론 및 시사점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무리한 조사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법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보험사기는 처벌보다는 적발,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보험사기 조사는 소비자 권익(사생활, 개인정보 등)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험사기 조사 및 처벌에 대한 규정들을 보험회사가 남용할 가능성이나 소비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검토하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조정해야 함.

- 구체적으로, 먼저 보험사기에 취약한 보험계약 성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의 법제화에 대해 검토해야 함.
 - 무엇보다도, 피보험이익이 없는 타인의 생명·상해보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수요에 의해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는지, 그리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타인의 생명·상해보험계약 체결 및 수익자변경 절차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둘째,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통상, 보험회사는 인수심사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 도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신체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현재 건강상태, 흡연, 음주 등에 의한 위험을, 환경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직업, 부업, 취미, 운전, 여행 등에 의한 위험을, 도덕적 위험은 사행적 보험 가입, 고의적 보험사고 발생 등에 대한 위험을 의미함.
 - 인수심사 시 신체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적용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것으로 각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보험사기의 손실이 보험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계약자에게 일부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적용은 규제대상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18대 국회에서 고승덕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보험업법안 제102조의11(보험계약자등 보호) ① 을 수정, 보완한 법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승덕의원 보험업법안 제102조의11(보험계약자등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수입, 재산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은 2012년 금융감독원·보험협회·보험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작성한 계약인수 모범규준의 일부 내용과 유사함.

■ 셋째,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금지 및 제재 규정이 필요함.

-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로부터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권익침해사항을 법률에 열거하고 이를 위반하는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 영향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법무부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험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사위가 2012년에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된 4번의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법률안으로 1991년 12월 상법 보험편 개정 이후 23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임.
-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됨.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개정사항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 명시 및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임.
 - 보험환경 변화 반영을 위한 개정사항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 등임.
 - 끝으로 장애인과 유족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다수 수익자 존재시 생명보험회사의 책임범위 명확화, 피보험자의 생계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상품 개발, 판매방식, 언더라이팅을 비롯한 계약관리,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경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는 사전적으로 각 부문별로 해당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신규 보험상품 개발시 변경된 계약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제고를 위한 언더라이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판매채널의 경우 변경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및 새로 신설된 권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끝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매뉴얼 변경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법무부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상법 보험편(이하 “보험계약법”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법(1962년 1월 20일에 상법 제4편 보험편에 최초 규정)은 보험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는 과정을 겪어옴.
 - 보험계약법은 1991년 12월 상법 보험편이 개정된 이후 23년 만에 개정됨.
 - 이번 개정은 국회법사위가 2012년에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된 4번의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¹⁾을 통합하여 마련한 법률안임.
-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환경의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첫째,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둘째,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함.
 - 셋째,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함.
- 본고에서는 내년에 시행될 보험계약법의 개정내용이 보험상품개발, 언더라이팅을 비롯한 계약관리,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경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보고, 향후 시행에 대비해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1) 2012년 5월 30일 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안, 2012년 7월 4일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안, 2012년 8월 30일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안, 2013년 2월 5일 정부안.

2. 보험회사 공통적용 개정내용



가.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도입 및 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 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유무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복잡한 보험상품구조와 보험약관 내용을 파악하여 계약의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그 기간이 짧아 취소권을 행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²⁾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 취소권 행사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음(상법 제638조의3).

- 향후 보험회사는 증권교부의무에 추가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약관설명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모집중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설명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취소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완전판매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규정 신설

■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에서 보험대리상 등에 대한 권한 등이 불분명한 것을 보험대리상 등에 대한 권한을 계약법에 처음으로 도입하였음.

- 현행법에는 보험대리상 등 보험자의 보조자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행사한 청약 등의 의사표시나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21.

- 개정안은 보험대리상³⁾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⁴⁾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함(상법 제646조의2 신설).
- 위 규정은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즉,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다. 소멸시효의 연장

■ 개정안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소멸시효를 모두 1년 연장하였음.

- 먼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음(상법 제662조).
- 현행법상 소멸시효 기간은 외국의 입법례⁵⁾ 등에 비추어 비교적 단기여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모두의 이익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3) 법무부는 18대 개정안에서는 '보험대리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그러나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보험업법」 상의 '보험대리점'은 계약대리상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계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을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그것과 범위가 다름. 이에 「상법」상행위편에 '대리상' 규정이 존재하므로 '보험대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24.

4) 실무에서는 이른바 '보험설계사' 또는 '생활설계사' 등으로 불리고 있음.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25.

5) 독일의 경우 구 보험계약법 제1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법(BGB) 제195조의 일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종래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법으로 분리하면서 3년으로 연장함(일본 보험법 제95조). (법무부 제공,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36.

기대됨.⁶⁾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권 행사기간이 확대되기 때문에 상품담보위험과 면책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준비금의 적립규모와 적립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임.

라. 질병보험 규정 신설

■ 최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질병보험 등 제3보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보험계약법에 규정된 상해보험에 추가하여 질병보험을 신규로 규정하고 인보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상법 제 739조의2 및 제739조의3 신설).

- 현행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어 그 법적 규율에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질병보험을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나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함.

■ 동 개정안은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법적 분쟁⁷⁾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는 「상법」에는 규정이 없고, 「보험업법」 제4조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외에 제3보험업의 하나로 질병보험⁸⁾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법」의 보험통칙·인보험·상해보험에 관한 규정과 보험약관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는 실정임.⁹⁾

6)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37.

7) 최근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본인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공보험인 의료보험 외에 보험회사가 개발한 다양한 질병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

8) 질병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상해 이외에 입원·수술 등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 건강의 손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인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임.

9)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66.

3. 손해보험회사 관련 개정 내용



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

- 개정안은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상법 제682조).
 - 현행법은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고의가 아닌 사고일지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¹⁰⁾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역선택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제3자가 개입된 보험사고도 담보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상품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언더라이팅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나.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 개정안은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사실의 보험회사에게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배상청구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함(상법 제722조).
 - 현행법은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10) 대법원 판례는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행하여진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음.

■ 위 규정은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익과 보험자의 이익 간에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청구 사실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한 것은 손해부담의 형평상 타당한 내용으로 이해됨.¹¹⁾
- 또한,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법 제657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보험사고발생 통지를 이행한 경우에는 책임보험규정인 제722조에 따른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책임부담의 형평상 이해됨.¹²⁾

다.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

■ 개정안은 보증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상 적용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 배제 및 「민법」 상 보증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둠(상법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¹³⁾

- 현행법에는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¹⁴⁾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 및 보험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증보험의 성질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 보증보험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1)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46.

12) 사고발생통지로서 배상청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가혹할 수 있음.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46.

13)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6(적용 제외), 제726조의7(준용규정).

14) 「상법」에는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험업법」에서 손해보험상품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4. 생명보험회사 관련 개정내용



가.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

■ 개정안은 보험금의 분할지급이 인보험(人保險)의 공통적인 특질이라는 점에 착안해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 조항(상법 제727조 및 제730조)을 신설하였으며,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로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규정한 반면에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하였음(현행 상법 제735조 및 제735조 제2항).

- 이번 개정안은 보험금 분할지급이 사람의 사망, 생존,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인(人)보험과 주로 관련이 있으므로 인보험 통칙(제1절) 내에 분할지급 조항을 신설함.
-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은 보험계약관계라기 보다는 보험상품에 관한 것으로 보아 「상법」에서 모두 삭제하고,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망, 생존, 생사혼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이 보험금의 분할지급의 근거를 인보험 통칙으로 옮기면서 ‘연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분할지급되는 인보험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인구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부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나. 인지능력이 있는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 개정안은 심신박약자 본인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함(상법 제732조 단서 신설).

-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¹⁵⁾ 또는 심신박약자¹⁶⁾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이는 15세 미만자나 정신능력이 온전치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이나 보험범죄 등 도덕적

15)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즉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자신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자

16)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 즉 정신장애의 정도가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는 아니나 통상인보다 불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지는 경우. ‘심신미약자’라고도 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즉,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한다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임.

- 개정안은 인위적 사고 방지나 인권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이를 보완할 법적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봄.

■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생명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역선택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상품개발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계약체결시에 차단되도록 언더라이팅 기능강화가 수반될 필요성이 있음.

다.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

■ 개정안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음(상법 제732조 제2항).

- 현재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사고유발자를 제외한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위 규정은 보험수익자가 수인이고 그 중 일부의 고의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자의 책임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량한 유족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개정은 사고에 고의가 있는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고의사고와 관계 없는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것¹⁷⁾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할 때에 보다 정확하게 할 필

17)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60.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보험수익자의 일부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여 살해하였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을 알지 못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험보험료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시에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보험의 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라.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동의요건 도입

- 개정안은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신설하였음(상법 제735조의3제3항 신설).

-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음.

-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이익과 더불어 단체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은 종업원(단체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자신이 보험수익자로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업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단체의 구성원 및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됨.¹⁸⁾

5. 시행에 대비한 준비관련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이 2015년에 시행되는 경우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부합한 업무내용을 분석하여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보험상품 개발측면에서 준비사항을 보면 기존의 상품 운영이나 개발에 근본적인 변화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적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함.

18)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63.

- 설명의무위반시 계약취소권 연장과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금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허용 등으로 인해 향후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담보위험과 보험가입금액, 역선택 등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 보험계약법 개정안 시행 대비 준비업무

| 구분 | 개정안 내용 | 개정 유형 | 보험회사의 준비사항 | | | | |
|----------|--|----------|------------|-------|--------|-------|-------|
| | | | 상품 개발 | 판매 업무 | 언더 라이팅 | 손해 사정 | 계약 관리 |
| 모든 보험 회사 |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제638조의3) | 변경 | ◎ | ◎ | - | - | ◎ |
|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제646조의2) | 신설 | - | ◎ | - | - | ◎ |
| |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제662조) | 변경 | - | - | - | - | ◎ |
| | 질병보험 규정 신설(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 | 신설 | - | - | - | - | - |
| 손해 보험 회사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금지 (제682조) | 신설 | ◎ | - | - | ◎ | - |
|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제722조) | 변경 신설 | - | - | - | ◎ | ◎ |
| | 보증보험 규정(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 | 신설 | - | - | - | - | - |
| 생명 보험 회사 |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제727조 및 제730조, 현행 제735조 및 제735조의2 삭제) | 변경 | - | - | - | - | - |
|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제732조 단서 신설) | 변경 신설 | ◎ | ◎ | ◎ | ◎ | ◎ |
| | 다수수익자계약의 보험자 면책사유 구체화(제732조의2) | 변경 신설 | - | - | ◎ | ◎ | ◎ |
| |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제735조의3제3항) | 신설 | - | ◎ | ◎ | - | ◎ |

주: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는 준비가 필요함을, “-”는 준비와 관계없음을 의미함.

- 계약자의 취소기간 연장 및 대리상의 권한 등, 단체보험의 여건 명확화 등에 대해 판매채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보험약관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판매채널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정액형보험인 관계로 사고발생사실만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언더라이팅 기능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향후 심신박약자의 보험가입허용, 다수수익자 계약의 보험자 면책,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로 인해 언더라이팅이 강화가 필요함.
- 개정된 계약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매뉴얼을 변경하고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kiri](#)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

김해식 연구위원, 조재린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국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관한 평가기준은 수년 내에 시가평가를 수용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시행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급여력평가에도 반영될 것임.
 - 2018년 시행 예정인 새 보험회계기준(IFRS 4 phase 2)은 현재와 같은 책임준비금의 원가 유지 관행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함.
 - 2011년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원칙을 담은 국제보험감독원칙을 개정·공표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국내 보험감독이 국제보험감독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예정임.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자본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키며, 책임준비금의 평가 결과를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의 할인율은 국채수익률과 같은 무위험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책임준비금 재평가(부채적정성평가)와 비교할 때 시가평가가 시행되면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크게 증가할 것임.
 - 즉,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평가 시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보험회사 자본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게 됨.
- 따라서 새로운 회계규제와 지급여력규제의 시행 시기를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내외에 불과하므로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조기 대응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는 국내 보험산업에 익숙한 평가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회사의 운영위험 급증으로 이어질 것임.
 - 이에 계량영향평가를 통해서 계리 및 회계 인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시장 인프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보험감독원칙 모두 시가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적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국내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관한 평가기준은 수년 내에 시가평가를 수용하게 될 것임.
 - 2013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을 원가기준에서 시가(時價)기준으로 변경하는 제2차 초안을 공표하였으며, 향후 1년 이내에 초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국내 보험산업에도 빠르면 2018년부터 시가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11년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원칙을 담은 국제보험감독원칙을 개정·공표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에 이어 2018년에도 국내 보험감독이 국제보험감독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예정임.

-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분모인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평가기준 변화가 향후 지급여력규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함.
 -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부터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높이고 있으며 2015년까지 요구자본 강화 작업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가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결국 국제회계기준의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에 시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자본규제 변화는 시행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곧 다가올 미래이므로 보험회사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들 규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함.
 - 국제회계기준의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는 국내 보험회사의 자본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지급여력평가에 시가평가 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불가피함.
 - 감독 측면에서도 두 규제의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 변화가 보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에 관한 국제기준



가. IFRS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시행은 2018년 예상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보험부채(책임준비금)의 시가 평가에 관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 4 phase 2)의 등장임.

- 새 보험회계기준은 현재와 같은 책임준비금의 원가 유지 관행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함.
- 더구나 IFRS를 전면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준비금 시가평가가 단순히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임.

■ 물론 국내 지급여력평가체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책임준비금 시가평가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지급여력평가가 IFRS처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지급여력평가에서도 반드시 IFRS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IFRS와 국제보험감독 간에도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의 수렴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현재 국내 지급여력평가에서는 책임준비금의 재평가(부채적정성평가) 결과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2018년 IMF의 금융시장 안정성 평가

■ 그러나 국내 지급여력감독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¹⁾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 감독자에 제시하는 국제보험감독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 ICP)을 전면적으로 개정하

1)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보험시장의 국제화와 국내의 경제에서 보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감독관 간 상호 관심사, 현안 논의, 표준보험감독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창립회원(Charter Member)으로 참여하여 1999년 금융감독기구 통합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용어사전 참조.

여 2011년 서울 총회에서 이를 공표함.²⁾

- ICP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산·부채 평가(ICP 14), 자본 계층화(ICP 17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 강화(ICP 16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위험에 대응한 감독자 간 협력 강화(ICP 24,25,26)임.
- 특히, ICP 14는 보험감독자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통해 금융부문 안정성 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기준은 IAIS 등 국제감독자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감독원칙임.

- IMF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25개국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평가함.
- 이때, 주요평가기준 중 하나는 금융감독이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이며, 보험부문의 국제기준은 IAIS가 제시한 ICP임.

■ 지난 2012년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 FSAP 평가를 앞두고 RBC 강화 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FSAP 평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로드맵 시안을 발표함.³⁾

- FSAP 평가는 5년마다 이루어지므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국내 보험업 감독법규가 ICP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평가받을 예정임.⁴⁾

다. 다국적 보험그룹에 적용할 국제지급여력규제 구체화

■ 한편, IAIS는 전세계 주요 보험그룹(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 IAIG⁵⁾)에 적용할 공통 자본규제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2016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부터 동 기준을 시행할 계획임.

- IAIS는 2010년부터 “IAIG에 적용할 정량적 자본규제기준과 포괄적인 그룹감독의 틀(ComFrame:

2) 김해식·임준환(201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서울 총회 논의 결과와 의미」,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3) 금융감독원(2014),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시안)」.

4) 2013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등과 함께 IMF의 FSAP평가를 받은 바 있음.

5) IAIG는 ①3개 이상의 관할지역(국가 또는 주)에서 영업하고 있고, ②총 수입보험료의 10% 이상이 외국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③총 수입보험료 10억 불 이상에 50억 불 이상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약 50개의 보험그룹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IAIS(2013. 9),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The IAIS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ComFrame)”, p. 3.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함.

- IAIS는 2013년 대만 연차총회에서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ComFrame과 관련하여 2016년까지 정량적인 자본규제기준(ICS)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발표함.

■ 2019년부터 시행될 ICS는 다국적 보험그룹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향후 모든 보험회사의 자본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준거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가까운 미래에 국내 보험회사가 ICS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으나, 다국적 은행에서 일반 은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온 BIS 규제의 역사가 보험산업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수년 내에 전세계 모든 보험회사에는 공통 자본규제가 적용될 것이며, 이때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될 것이 요구될 것임.

3.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와 지급여력비율



가. 할인율에 민감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가치

■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규모는 금리 변동에 따라 그 증감 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보험상품은 계약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적립할 책임준비금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 수준에 따라서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높은 고정 금리를 약속한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가치는 할인율 수준에 따라 그 증가 폭이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음.

■ 더구나 보험회사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책임준비금)가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만기가 자산의 만기보다 길어서 금리가 하락하면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폭보다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더 크게 나타남.
- 결국 금리(할인율)가 하락하면 보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됨.

나. 책임준비금 평가와 지급여력평가 연계

■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현행 보험시장 및 금융시장 여건을 위험률과 할인율 등에 반영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것임.

- 책임준비금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할인율이므로 위험률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는 현행 금리 수준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하는 것임.
- 이때, 할인율은 국채수익률과 같은 무위험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책임준비금 재평가(부채적정성평가)와 비교할 때 시가평가가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크게 증가할 것임.

■ 부채적정성평가는 2018년에 시가평가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ICP와 ICS 논의로 보아 향후 수년 내에 국내 지급여력평가에도 시가평가가 반영될 것임.

- 현행 부채적정성평가는 시가평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평가기준이고, 현행 지급여력감독은 부채적정성평가 결과를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 체계가 책임준비금의 평가 결과를 즉각적으로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하게 된다면, 시가평가의 영향은 2012년 RBC 강화 계획의 영향을 초월할 것임.⁶⁾

4. 남은 5년, 경영상의 시행착오 최소화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는 국내 보험산업에 익숙한 평가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험회사의 운영위험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는 자본시장에 공표되는 일반(IFRS)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급여력평가 목적의 감독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줄 것임.
- 그러나 시가평가에 필요한 숙련된 계리 및 회계 인력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보험시장 내 충분한

6) 조재린·김해식·김석영(2014),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평가 관행이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부채평가기준의 변화가 보험회사에 상당한 운영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보험산업 현장의 계량영향평가를 통해서 계리 및 회계 인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시장 인프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가평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보험감독원칙 모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 회계기준제정자와 보험감독자는 제도적 인프라로서 시가평가에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가 국내 회계규제와 지급여력규제에 향후 수년 내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행 시기를 고려할 때 남은 기간은 5년 내외에 불과하므로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조기 대응을 통해 규제 시행에서 우려되는 운영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가 2011년 IFRS를 시행하는 데 대략 3.5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책임준비금 시가평가회계(IFRS 4 phase 2)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⁷⁾
- 지급여력평가에서도 반드시 IFRS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IFRS와 국제보험감독간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의 수렴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면 책임준비금 시가평가가 지급여력규제에 향후 수년 내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보험회사는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위험관리와 효율적 자본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kiri](#)

7) 2018년에는 IFRS 4 phase 2 외에 IFRS 9(금융상품회계)도 시행될 예정임.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민영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 2013년 국민건강보험의 흑자는 3조 6,44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8조 2,2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 건강보험 흑자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의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의료량의 변화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 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은 건당 급여비와 급여건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급여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건당 급여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최근 10년간 의료비지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비급여가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 함께 지급보험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흑자와 흑자분을 통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확대시킬 개연성이 있어 보임.
 - 국민건강보험의 건당 급여비 통제를 통한 흑자는 비급여부문으로 비용전가를 유발하여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지속적인 흑자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급여부문과 양의 상관관계로 발전해 온 비급여 시장을 더욱 확대시켜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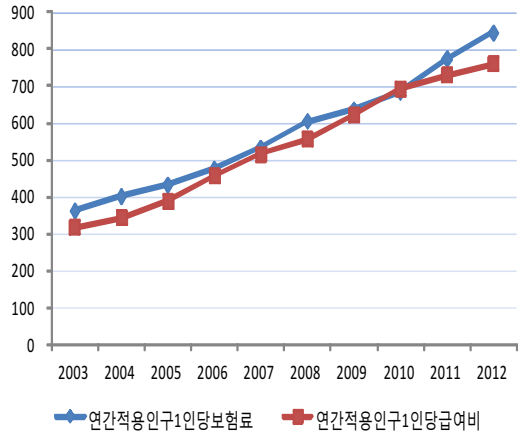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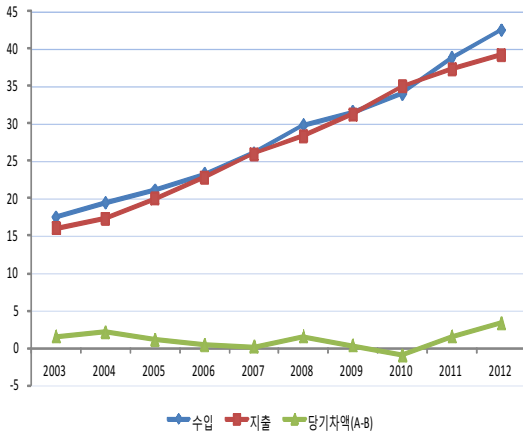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2013년 3조 6,44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 1조 2,994억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 원, 2012년 3조 157억 원, 2013년 3조 6,446억 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지속하여 누적적립금은 8조 2,2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그림 1〉 건강보험 재정 추이와 1인당 보험료와 급여비 변화

(단위: 조 원)

(단위: 천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3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은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2003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당기차액은 흑자를 보이고 있음.

● 단지 최근 흑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흑자 기조는 흑자 원인보다는 흑자분의 사용처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흑자 기조에 대한 원인으로 최근 계속되는 경기 둔화로 줄어든 의료서비스 수

요량을 지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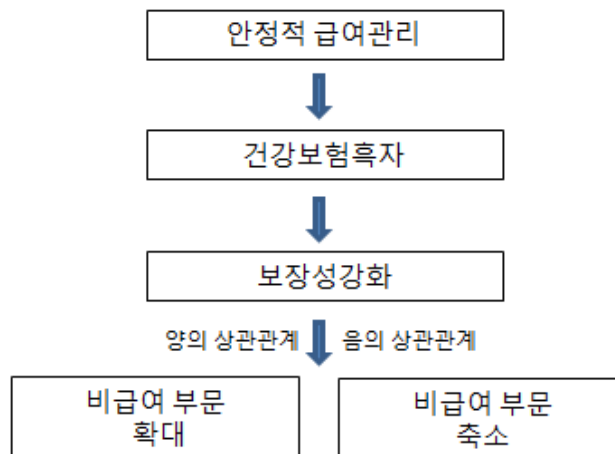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둔화를 건강보험 흑자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흑자분에 대하여 의료공급자측은 의료수가 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의료수요자측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본고는 건강보험 흑자 원인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분석해보고, 지속적인 흑자가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를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흑자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흑자 원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부문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면 비용이 비급여시장으로 전가되어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함.
- 민영의료건강보험의 누적흑자분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비급여 시장의 관계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시장이 받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문과 비급여부문이 음의 상관관계로 발달할 경우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부문을 축소시킬 수 있음.
 - 반면, 양의 상관관계로 발달할 경우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부문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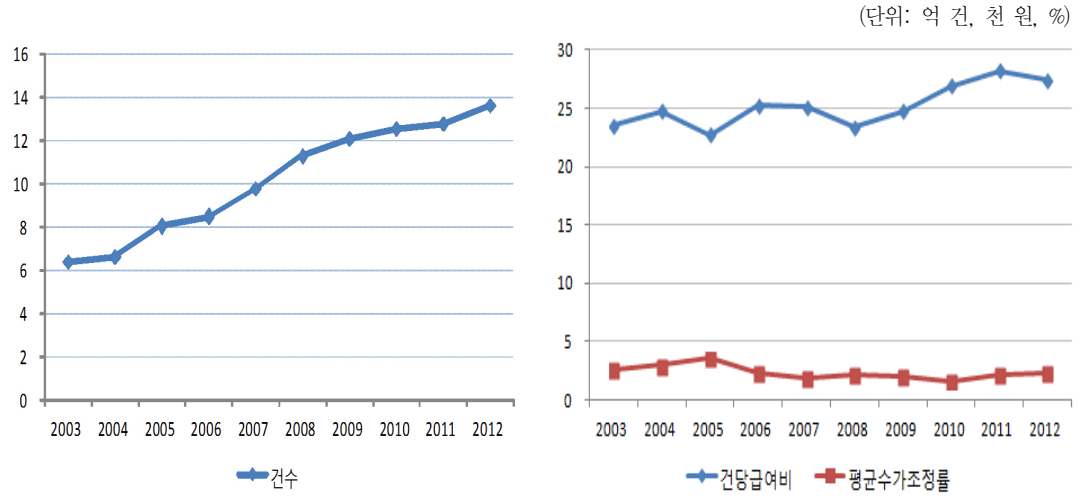
〈그림 2〉 건강보험 흑자의 비급여부문 파급효과



2. 국민건강보험의 흑자 원인

- 국민건강보험 수입 측면에서 보험료율이 계속 인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흑자 원인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지출 측면에서의 둔화세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이 필요함.
 - 지출은 단순화하면 건당 급여비×급여건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출 둔화세는 건당 급여비와 급여 건수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건수 둔화세가 지출둔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급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당 급여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평균수가 조정률과 건당 급여비는 명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평균수가 조정률이 높은 해에 건당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3〉 급여건수와 건당 급여비, 의료수가조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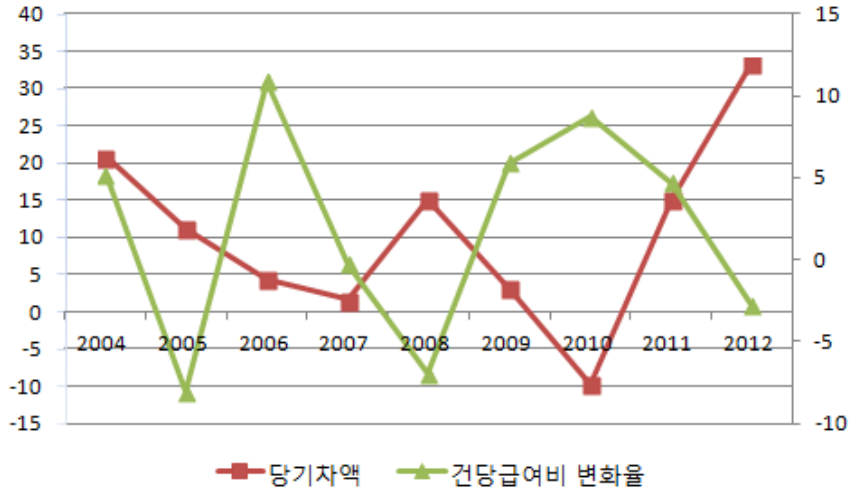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 지출 둔화세 원인은 급여건수보다는 건당 급여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건강보험의 당기차액(수입-비용)과 의료이용 건당 급여비 변화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당기차액과 건당 급여비 증가율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4〉 참조).
 - 만약 국민건강보험의 당기차액 흑자 흐름이 건당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 운영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그림 4〉 국민건강보험 당기차액과 건당 급여비 변화율 추이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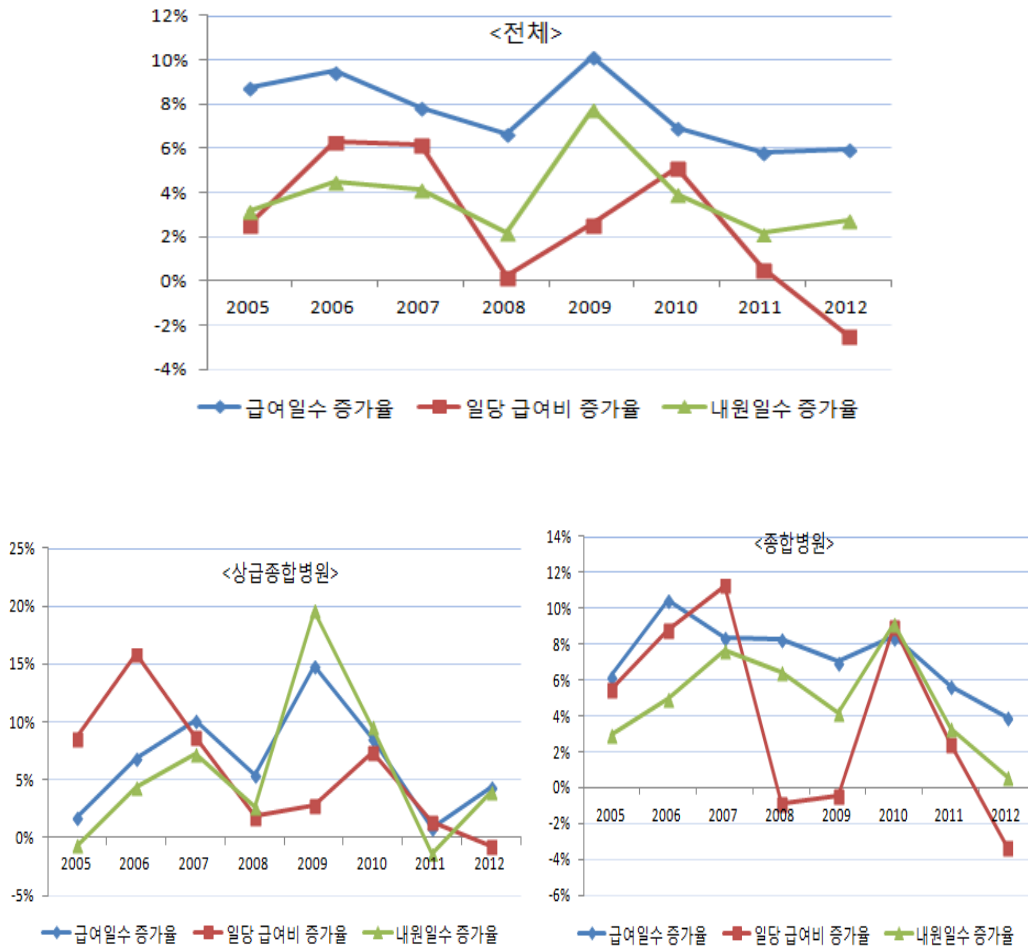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일당 급여비 증가율이 최근에 크게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급여비의 안정적 운영이 건강보험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함.

-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급여일수 증가율, 내원일수 증가율, 일당 급여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일당 급여비 증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급여일수 증가율과 내원일수 증가율이 최근에는 높아졌지만 일당 급여비 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 종합병원의 경우 요양기관 전체의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5〉 요양기관 종별 일당 급여비 증가율의 변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장성 강화 정책과 민영의료보험시장



■ 2005년부터 암을 비롯한 3개 중증질환 본인부담률 경감, 식대 급여화, 소아 입원 본인부담 면제,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하 등 일련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음.¹⁾

1) 권기현(201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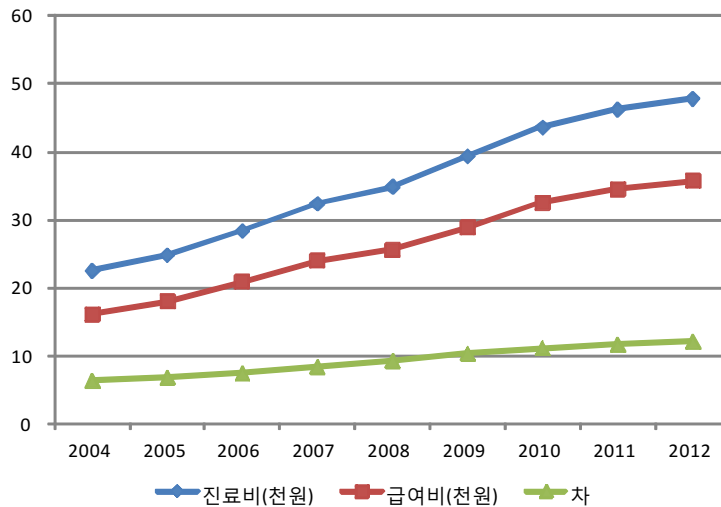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었는데, 특히 보장성 강화부분이 주목할 만함.
 - 2005년 9월 암 등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법정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었으며, 2009년 12월에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10%에서 5%로 다시 낮추었음.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그림 7>은 비급여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료비와 급여비의 차액이 점점 벌어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음.

<그림 7>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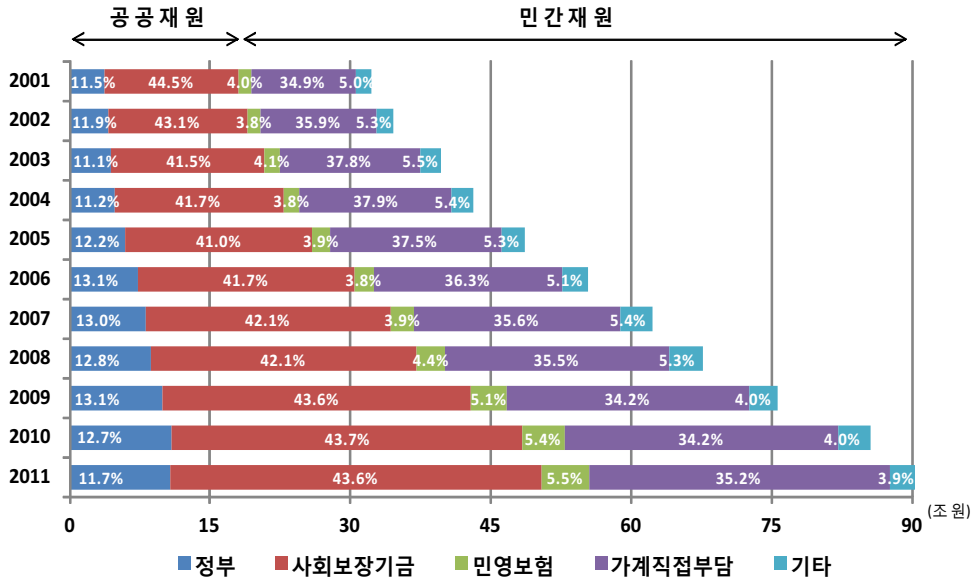


주: 진료비는 100% 본인부담금인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실제로 지급한 급여금액을 말함. 따라서 진료비와 급여비의 차이는 비급여 제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의료비를 대상으로 살펴보더라도 급여비와 가계 본인부담금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비급여가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8〉 급여와 비급여 규모의 변화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 함께 지급보험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그림 8〉은 보장성강화정책이 국민건강보험 건당 급여비 통제를 통한 흑자분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급여부문으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정책이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맺음말



- 최근의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의료량의 변화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 관리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은 건당 급여비와 급여건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의 추이를 판단한 결과 급여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건당 급여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흑자 기조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 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 건강보험 흑자분을 통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시행과 건강보험의 급여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급여부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가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증가시킬 수 있음. [kiri](#)



부부 이혼시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

이상우 수석연구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요약

- 대법원은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공개변론재판으로 선정하여 2014년 6월 중에 재판을 개최할 예정이며, 동 재판 결과는 향후 퇴직연금 및 특수직역연금과 관련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동 재판의 쟁점은 부부 일방(재직 중)의 미래에 수령할 퇴직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인데 2심 재판에서는 1990년대의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미래에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는 퇴직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기준을 이혼 당시 퇴직금 금액의 확정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할 수 없다는 것임.
 - 이에 따라 많은 이혼자들은 현재까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종전 대법원 입장은 이혼시 분할 청구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연금분할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동일재산에 대한 동일한 규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불공정성, 다양한 개선안 모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법원 인식, 퇴직(연)금제도의 근거법과 충돌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함.
 - 미국과 독일의 경우 금액의 확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음.
- 향후 선진국 수준의 여성 권리 개선, 공정한 재산분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분할제로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관련법에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혼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인 경우에 대한 향후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재산분할 비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동등한 분할비율을 적용하고, 재직 중 혼인기간에 대한 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수령할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지급 시점은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급여 수급시, 반대인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 성립시 또는 급여 수급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인출(이혼 성립시) 사유를 추가하고 압류신청권(급여 수급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혼 성립시 지급할 분할대상은 DB형의 경우 중도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퇴직 전 1개월치 평균임금에 대한 근무기간), DC형의 경우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잔액이 기준이 될 것임.
-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일시금 선택시 청구권자가 분할 받은 일시금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대법원은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관련 사건을 올해 첫 공개변론재판¹⁾으로 선정하여 2014년 6월 19일 재판을 개최²⁾할 예정임.

-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혼시 재직 중에 있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2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한 바 있음.
- 2심 재판은 남편인 B씨가 미래에 수령할 부인 A씨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대법원(1995, 1998)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 이러한 판례에 따라 부부 일방이 재직 중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 사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 공개변론재판이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03년 10월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가장 최근의 공개변론재판으로 통상임금(2013. 9. 5), 키코소송(2013. 7. 18) 등이 있음.

2) 파이낸셜뉴스(2014. 6. 2), “大法, 이혼시 퇴직금 분할 여부 TV공개변론 연다”.

- 반면, 대법원은 퇴직 후 이미 지급된 퇴직금(금액이 확정된)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퇴직급여 금액의 확정 여부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퇴직급여를 민법상 혼인기간중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퇴직금 청구권을 금액이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로 여성인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혼 증가³⁾ 등으로 최근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권리 주장이 크게 확산⁴⁾되고 있는 가운데 동 재판 판결은 향후 특수직역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퇴직급여의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하급심⁵⁾에서는 퇴직급여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대법원 입장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재산분할, 특히, 수령 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퇴직급여제도의 재산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민의 법률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재산분할제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재산분할 법적 근거와 분할연금제도 개요



가. 법적 근거

- 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도입함.
 - 즉, 혼인 전 또는 혼인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 부부 각각의 명의자가 관리, 사용, 수익(민법 제831조)”함으로써 명의자의 재산권을 인정함.⁶⁾

3) 2000년대 중반이후 이혼율이 정체되고 있으나 1970년 이후 지난 33년간 이혼이 약 9배 증가하고 2013년 115,300쌍이 이혼하여 유배우 이혼율이 4.7%(결혼한 부부 1천 명당 이혼건수)를 기록함.

4) 재산 50% 이상 분할 받은 여성 비율이 5.4%(1998)에서 22.5%(2012)로 증가함(송효진 외 1명(2014),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최근 판례분석』, 가족법연구 제28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5)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10986 판결 등.

6) 다만, 소유권자가 불분명하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봄(민법 제830조 제2항 관련).

- 그러나, 재산분할 관련 판례에서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 중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경우 어느 일방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 배우자의 잠재적인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음.⁷⁾⁸⁾

■ 또한, 우리나라는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민법 제839조 제1항)”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 재산분할제를 도입함.

- 다만, 민법은 재산분할시 당사자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⁹⁾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민법 제839조 제2항)” 명시함.¹⁰⁾
 - 따라서 부부 재산분할 범위는 당사자 쌍방이 협력한 재산이며, 재산분할 합의가 결렬될 경우 부부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요구됨.¹¹⁾
 - 다만, 그동안의 판례는 “장래에 확정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이것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¹²⁾”는 견해가 지배적임.

나.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제도 현황

■ 국민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제도의 도입 이후 여성계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분할제도를 제도화하고, 금액의 확정 또는 미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7) 대법원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를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8) 또한 가정법원의 민원상담 매뉴얼(2014)은 “①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소극)재산, ② 부부 각자 특유재산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그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부의 한쪽 또는 쌍방의 공유 재산”을 재산분할의 인정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9)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음(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10) 다만, 부부가 합의시 원치 않는 경우 특정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임(제839조의2).

11) 그러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 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1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차선자(2012)), 『이혼 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표 1>과 같은 수급 요건을 갖출 경우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다만, 법률에서 최소한의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5년 미만의 이혼 등의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과 청구권이 제한되는 등 연금분할 사각지대¹³⁾가 상존함.

<표 1> 분할연금 수급 요건 및 급여수준

| 근거법 | 수급 요건 | 급여 수준과 시효 |
|--------------------------|---|---|
|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음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②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③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④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연금분할 청구권은 ①~④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 |

■ 그러나, 현행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금, 퇴직연금의 관련 법률에는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특수직역연금 및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시 부부 일방에 재산분할을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재산분할에 있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13) 혼인 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수급연령인 61세 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함(신경림의원 보도자료 참조, 2013. 10. 21). 혼인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0~4년) 이혼건수가 2013년 전체에서 27.3%(통계청, 2014. 4. 22)를 차지하여 청구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3. 퇴직급여제도 재산분할 판례 평가와 시사점



가. 퇴직급여제도 재산분할의 판례

■ 우리나라 대법원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혼 당시 배우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대법원에서 통설적으로 적용됨.¹⁴⁾
- 반면, 대법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에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시하고 동 판례가 현재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¹⁵⁾
 -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¹⁶⁾

■ 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¹⁷⁾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립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음.

- 우선, 퇴직연금의 경우 본인의 노후생활보장적 의미를 지니는 급부이므로 부양적 분할¹⁸⁾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데 참고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임.
- 반대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이혼시 청산적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임.¹⁹⁾

14)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퇴직하여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 13판결).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 르3326, 3333 판결에서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5) 그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 1713·94므 1720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 213 판결).

16) 대법원은 일방의 배우자가 별거 직후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판결).

17) 법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제도를 넓은 개념의 퇴직연금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18)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부양의 필요성과 부양의무자 측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일시금 또는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보상을 말하며, 청산적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제 몫을 찾는 것을 말함(김용원 2009).

19) 황우여(1992), 『개정민법상의 이혼』, 인권과 정의.

〈표 2〉 이혼시 퇴직급여 재산분할 판례 요약

| 근거법 | 퇴직금 | 퇴직연금 (특수지역연금 포함) |
|--------------------------------------|---------|---------------------|
| 퇴직 후 수급권 발생으로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 재산분할 가능 | 재산분할 가능 |
|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으나 향후 수령할 연금이 남아 있는 경우 | - | 재산분할 불가 |
| 퇴직하지 않아 퇴직(연)금의 금액이 불확실 할 경우 | 재산분할 불가 | 재산분할 불가 |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oneclick.law.go.kr/CSP/Main.laf>)의 법원의 이혼관련 판례를 기초로 작성함.

■ 대부분의 법원은 이혼 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 청산적 재산분할을 통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²⁰⁾

-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의 경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²¹⁾”하도록 판시한 바 있음.
- 반면, 퇴직하였으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 경우 대법원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²²⁾”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이혼 당시 재직 중이므로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나. 기존 판례 평가

■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혼시 분할 청구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첫째, 퇴직(연)금이 후불임금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통설과 판례²³⁾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단순히 금액이 확정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일성격의 재산을 수령자 선택에 의해 재산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불공정성이 상존함.

20) 부산지방법원, 90드22064, 92노1226.

21) 대법원은 2006. 7. 13. 선고 2005 무1245 판결.

22) “원고가 변론종결일 당시(1996. 8. 23) 이미 수령한 1996. 8월분까지의 연금 합계 5,500여 만 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되, 향후 수령할 연금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르3251, 3268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무1533,1540 판결.

23) 우리나라의 법원은 퇴직급여의 성질에 대해 임금후불설을 통설로 하고 있음(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7529 판결).

- 이에 반해 주택 및 예금 등의 경우 이혼 성립시 가치로 청산하여 재산분할 하는 것이 가능
- 둘째, 연금 수령이 진행 중인 이혼의 경우에 향후 받을 연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 연금의 경우에도 분할연금 지급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지급 받도록 규정(국민연금법 제64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함.
- 셋째, 향후 수령할 연금가입자의 여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연금을 청산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다양한 지급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재산분할 청구권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가령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 수령 전 또는 수령 후 사망할 경우 이혼 당시를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한 재산분할 금액을 기준으로 탈퇴 또는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의 마련이 가능함.
- 넷째, 기존 법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미확정성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과 충돌할 개연성도 상존함.
 - 근퇴법은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전에 퇴직급부를 확정²⁴⁾하고 있어 급부를 분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함.²⁵⁾
 - 또한, 급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²⁶⁾에도 적립된 연금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청산하는 것이 가능함.

다. 시사점

■ ■ 이상과 같은 법원 판례에 따라 많은 재산분할 청구권자들은 이혼시 상대방의 퇴직급여 금액이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재산분할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990년 민법에서 재산분할제가 도입된 이후 이러한 이유로 이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되지 못한 퇴직급여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 불가는 이혼 후 주로 여성으로 대표되는 청구권자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부부 공동재산 중에서 퇴직급여 비중이 커 퇴직급여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는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4) 퇴직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로 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8조, 제15조).

25) 다만, 퇴직금의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금채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의 잔여재산에 대한 퇴직금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며, 임금채불보장제도를 통하여 3년간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음.

2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이 부담한 적립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가 운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질이 있음(법 제20조 관련).

4. 주요국 퇴직급여 재산분할 사례 및 특징



- 미국은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tirement Equity Act)을 제정하여 퇴직연금 관련법을 수정한 바 있음.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기 전일지라도 장래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를 환산하여 받는 방법 또는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연금을 분할하여 받는 방법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고 있음.
 - 법원은 대체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하여 균등 분할을 명하고 있으며, 적격연금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조기에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음.²⁷⁾
- 일본은 퇴직금 분할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장래 급부되는 연금에 관해서 청산 대상으로 보는 것과 부양 대상으로 보는 판결이 상존함.²⁸⁾
 - 일본 판례에서는 향후 정년퇴직하여 퇴직금 수령까지 9년 남은 배우자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일정기간 이내에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퇴직금의 경우에는 이를 청산적 재산배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²⁹⁾
- 독일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경우 연금분할은 이혼 당시 급여산식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고, 이 가운데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다만, 연금분할 의무자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업연금에 가입하게 될 경우 실제적인 분할은 향후 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가서 이루어지게 됨.
 - 만약 연금분할 의무자가 중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상대방 청구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는 사망당시 가입하고 있던 연금제도에서 지게 됨.³⁰⁾

27) 황신정(2012),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누어 받나?」, 월간 생명보험협회.

28) 동경고등재판소는 “정년퇴직까지 7년이 남아있으므로 퇴직일시가 불확실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미래에 지급받을 퇴직금에서도 지급받을 개연성이 높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함(東京高判平10·3·13). 또한,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도 향후 정년퇴직까지 9년이 남은 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혼인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함(名古屋高判平成12年12月20日).

29) 김용원(2008), 「이혼시 부부재산분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30) 이정우(2003),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5.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향



- **공정한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의 실질적 평등³¹⁾과 이혼여성의 자립기반 개선, 사회적 비용 경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퇴직급여의 재산분할제 도입이 필요함.**

- **첫째, 재산분할제 도입 이후 시대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극적인 재산분할제도로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1994년에 개인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법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미래에 재산권이 행사되는 연금상품 및 파생금융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추상적 법률로 인하여 이러한 무형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재산분할 분쟁 증가와 법률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퇴직급여 재산분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각각의 연금법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명시적인 재산분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재산분할은 근무연수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기여율을 적용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자에게 1/2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없고 공적연금과 퇴직급여 기능이 공존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 수급권 발생시점을 분할 지급시기로 하여 선택에 따라 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요구됨.
 - 분할지급의 주체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해당 연금공단이 연금분할 청구 접수 및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민간의 퇴직(연)금은 후불임금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특성을 반영하여 분할 지급시기를 미국과 독일처럼 이혼성립시 또는 퇴직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퇴직(연)금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부부 쌍방에게 안내와 기본적인 절차를 사전에 명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중요함.

31) 우리나라의 노인여성 빈곤율은 일본(24.7%)의 두 배에 달하는 47.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매일경제 2014. 3. 10).

- 다음으로 이혼성립 시점에 즉시 분할을 위해서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개념을 도입하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로 한정하여 퇴직(연)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요구됨.³²⁾
-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분할을 위해서는 현재 근퇴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연금 압류신청권³³⁾을 재산분할 시로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요구됨.
- 분할지급 주체는 기업에게 제3의 채무자로서 분할지급 권한을 부여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이 금융회사에게 지급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 넷째,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DB)형 및 확정기여(DC)형의 특성에 따른 재산분할 산출방법이 필요함.

- DB형 분할은 법률에 따라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혼 성립시점을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로 상정하여 지급해야할 급여액(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에 대한 근속연수)에 대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
- DC형 분할은 가입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여 운용된 현재까지의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음.
- DB·DC형에서 연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배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일시금 선택시 청구권자가 분할받은 일시금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32)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이 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임금채불보증기금에서 일정기간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잔여액에 대해서는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산분할 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3) 현재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4호)은 급여 및 퇴직금 등의 경우 채권자의 압류신청권(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허용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근퇴법(제7조 제1항에서는) 퇴직연금의 권리를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시급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타산업과 달리 금융산업은 시장참여자간 정보 및 교섭력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재보험은 기업간·국경간·전문적 거래라는 이유로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규제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함.
 - 특정 변수가 재보험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독당국이 재보험거래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
 - 일례로,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과 관련하여, 미국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보가 부족하여 (재)보험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후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를 대폭 개선한 바 있음.
- 원보험수익자 보호라는 재보험 감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경간·기업간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규제적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업무보고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감독수단이라 할 수 있음.
 - 각국에서 재보험을 감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 원보험 수익자(개인 및 기업)를 보호하는 것임.
 - 특히, 재보험은 계약의 유형 및 복잡성, 변동성, 거래의 지역적 범위, 현금흐름, 수재위험에 대한 정보의 질, 요율체계 측면에서 원보험과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원보험과 재보험간 상이한 규제적 접근을 요함.
 - 그러나, 재보험은 교섭력이 대등한 기업간 거래이고 국경간 거래라는 특수성이 있어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임.

■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가 재보험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는 물론 거래단계별 재보험시장의 규모·구조·행태·성과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상대방간 보고내용의 대조를 통한 보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의 구체성과 더불어 보고내용의 공개 범위 및 기준,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통제방법 등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보험회사는 지난 3월부터 모든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출재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나, 재보험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와 재보험시장의 규모·구조·행태·성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재보험서비스 수요국의 경우 공개원칙 하에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보고할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1. 검토배경



■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타산업과 달리 금융산업은 시장참여자간 정보 및 교섭력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금융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로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고 절대적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를 정부가 규제를 통해 통제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임.
- 따라서, 성공적인 규제완화정책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함.
 - 첫째,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되 규제(경제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제고해야 함.
 - 둘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및 교섭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거래당사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함.

■ 특히, 재보험은 기업간·국경간·전문적 거래라는 이유로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규제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¹⁾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함.

1)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송윤아·정인영(2012),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

■ 재보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은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건전성감독을 위한 규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것으로, 특정 변수가 재보험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독당국이 재보험거래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
- 일례로,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과 관련하여, 미국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보가 부족하여 (재)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후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를 대폭 개선한 바 있음.
 -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의 시장적인 요인은 보험회사의 성장위주의 경영전략과 (재)보험회사의 MGA(대리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감시 부족이며, 이는 지급이행능력이 부족한 재보험회사 선택과 언더라이팅 부실을 초래함.
 - 그러나, 감독당국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연쇄도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현황과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의 의의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함.

2.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 현황



■ 재보험거래에 대한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는 재보험회사에 대한 직접규제와 자국 소재 출재사를 통한 간접규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규제란 감독당국이 재보험회사의 진입, 가격, 영업행위, 건전성 등을 직접 규제하는 것임.
 - 허가조건,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자산운용규제, 부채관리규제,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영업행위, 검사, 경영공시, 보고
- 간접규제란 출재사의 재보험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재사를 규제하는 것임.

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 구체적으로, 출재사의 재보험자산 인정요건, 재보험관리모범규준, 보고 등을 통해 건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함.

■ 보험업법상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중 하나로 간주되어(동법 제4조) 재보험회사에 손해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책임준비금 면제요건,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권고,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등 출재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재보험회사를 간접적으로 규제함.

- 보험업법시행령은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회사에 출재한 경우 수재사가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하고 부적격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함.²⁾
 - 출재사에 적용되는 상기 재보험자산인정요건은 출재사로 하여금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한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재보험회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함.
-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에 의해 보험회사의 재보험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출시 직접 재보험거래 계약을 맺은 1차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0.8~6.0%의 위험계수가 적용함.
 - 이로써 보험회사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용등급이 보다 높은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유인이 있고, 이는 재보험회사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유인을 제공함.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재보험거래를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권고함.

■ 또한, (재)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 (재)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함.
 - 재보험거래 주요지표 요약(분기별), 보험종목별 재보험 수지차 현황(분기별), 보험종목별 재보험 손익현황(분기별, 국내/해외 구분), 계열보험회사와 재보험 출수재 현황(분기별), 재보험미수금 현황(분기별), 재보험회사별 출재현황(연도별), 특약재보험 출재현황(분기별)
- 특히,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사별 출재현황, 재보험미수금 현황, 특약재보험 출재현황 등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과거에는 수재사별 재보험료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주요거래선에 한해 수재사별 출재현황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지난 3월부터 모든 거래 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출재현황을 작성토록 함.

2)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2항~3항.

- 재보험회사별 출재현황은 수재회사(회사명, 소재지, 신용등급, 적격여부),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수입손해조사비, 출재손해액, 손해율, 출재보험수수료, 출재손익, 고정이하 순미수금 등을 포함함.

3. 재보험거래 업무보고, 왜 중요한가?



- 본 절에서는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적 접근의 당위성과 원보험과는 상이한 규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기술하며,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거래에 대해 규제적 접근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재보험거래에 대한 정교한 업무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감독수단인지를 역설함.

가.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적 접근의 당위성: 원보험 수익자 보호

- 각국에서 재보험을 감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 원보험 수익자(개인 및 기업)를 보호하는 것임.
 - 이외에도, 재보험시장에 언더라이팅 사이클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기능에 의존해서만은 재보험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독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있음.
 - 다시 말해, 재보험담보력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연성시장에서 재보험회사는 효율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위험자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보다는 시장의 수요·공급만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낮은 효율에 위험담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있음.
- 구체적으로, 재보험특약에 직접청구조항(cut-through clause)이 있을 경우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보험 수익자 입장에서는 유사시 재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중요함.
 - 상법은 제661조에서 재보험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³⁾ 제726조에서 책임보험규정의 재보험

3)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즉, 원보험회사는 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재보험회사의 재보험금의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에의 준용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에 관한 규정이 재보험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⁴⁾
- 장덕조(1999)는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고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재보험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원보험수익자와 재보험회사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보험계약서상 직접청구조항이 있는 경우임.

■ 또한, 재보험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경우 재보험금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원보험회사와 원보험 수익자(개인 및 기업) 등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A.M. Best에 따르면,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1969~2010년)의 3.7%, 그리고 생명·건강보험회사 파산(1976~2006)의 2.0%가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에 기인함.⁵⁾
- 일례로, 미국 손해보험회사인 Integrity Insurance Company(이하, Integrity)는 수재사인 Mission Insurance Company(이하, Mission)가 타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하자 출재사인 Integrity도 Mission으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였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으로 기록됨.

나. 원보험과 상이한 규제적 접근의 필요성

■ 재보험은 계약의 유형 및 복잡성, 변동성, 거래의 지역적 범위, 현금흐름, 수재위험에 대한 정보의 질, 효율체계 측면에서 원보험과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원보험과 재보험간 상이한 규제적 접근을 요함.

- EU는 원보험과는 다른 재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재보험감독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원보험과 다른 재보험의 성질을 위와 같이 제시한 바 있음.⁶⁾
 - EU의회는 회원국간 동일한 재보험규제, 그리고 원보험과는 다른 재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재보험감독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5년 재보험지침(Reinsurance Directive)을 승인하여 EU 회원국이 2007년 12월까지 동 지침을 자국법에 반영하도록 함.

4) 장덕조(1999), 「재보험에 있어 원보험수익자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6조의 검토」, 보험개발연구.

5) 송윤아(2013),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6) European Commission(2002), "Study into the Methodologies for Prudential Supervision of Reinsurance with a view to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an EU framework".

■ 구체적으로, 먼저 원보험은 손해보험의 대형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대체로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 재보험은 출재사의 특정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별계약이 일반적이며, 재보험회사는 원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재보험회사, 재재보험회사로부터 수재하기 때문에 위험의 구성이 원보험에 비해 훨씬 복잡함.

● 이는 재보험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함.

■ 둘째, 재보험은 원보험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음.

● 통상, 원보험은 익스포저가 비교적 작은 다수의 증권들로 구성된 반면 재보험은 누적손실에 노출되어 있고 대형손실의 가능성이 큼.

● 또한 재보험회사는 최종 위험인수자로서 원보험회사에 비해 보유율이 높은 편임.

■ 셋째, 원보험과 달리 재보험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국경간 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보험에 적용되는 국내기반 감독은 재보험에 적합하지 않음.

■ 넷째, 요율이 사전에 정해진 원보험계약과 달리 재보험계약에서는 이익수수료 또는 요율조정을 통해 재보험회사와 출재사가 위험뿐만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요율조정조건부 계약은 고정요율조건부 계약보다 리스크 익스포저가 더 낮은 경향이 있음.

■ 다섯째, 원보험과 달리 신용등급은 재보험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대부분의 국가가 원보험회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보험계약자, 특히 개인 계약자에게 원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계약체결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님.

● 반면, 거래상대방인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 출재사가 해당 출재보험료를 재보험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보험영업에서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중요한 요소임.

다.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적 접근의 한계와 업무보고의 의의

■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은 교섭력이 대등한 기업간 거래이고 국경간 거래라는 특수성이 있어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임.

● 재보험회사에 대한 직접규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국경간 거래라는 재보험의 성격상 소재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회사를 자국 감독기관이 직접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재보험거래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재보험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국재보험회사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조세 및 규제 도피처로 자본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또한, 출재사를 통한 간접규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사업비 및 계약자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⁷⁾
- 마지막으로, 재보험은 기업간 거래이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으로, 감독자원이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는 재보험거래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재보험거래에 대한 재보험회사와 원보험회사의 업무보고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즉 시장왜곡이 적은 사후감독수단이라 할 수 있음.⁸⁾

라. 미국사례를 통해 본 재보험거래 업무보고의 중요성

-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파산에 재보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자,⁹⁾ 손해보험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재보험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됨.¹⁰⁾
 -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 Mission과 Transit Casualty Company(이하, Transit)는 재보험금 회수에 실패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으로 기록됨.
 - Transit의 MGA¹¹⁾가 거래한 대부분의 재보험회사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나머지 재보험회사들은 Transit과 그것의 MGA의 언더라이팅 과실을 이유로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7)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바람: 송윤아(2013),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8)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tatement of Concepts는 보험회사의 업무보고의 목적 및 의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함: “The cornerstone of solvency measurement is financial reporting. Therefore, the regulator’s ability to effectively determine relative financial condition using financial statements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9) GAO(1990)보고서에 따르면 3대 파산과 관련된 미회수재보험금 규모는 100~2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1988년 미국 손해보험 순자산의 8~17%에 해당함.

10) “Failed Problems: Insurance Company Insolvencies”, Subcommittee on Oversight and Investigation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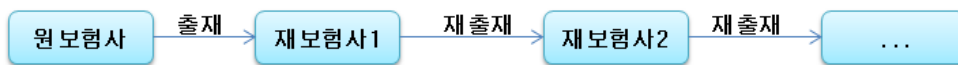
11) 재보험거래에는 3가지 유형의 중개인이 있음: reinsurance broker는 출재사의 대리인, reinsurance manager는 수재사의 대리인, managing general agent는 재보험회사로부터 원보험 언더라이팅 등 보험회사 고유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인임.

- 조사소위원회는 Transit의 파산은 부실한 언더라이팅, 재보험, MGA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감시 부족을 파산의 주요인으로 지적함(MGA는 거래규모에 따라 커미션을 받음).

- Mission이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하자 Mission에 출재한 Integrity도 Mission으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도산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으로 기록됨.

■ 당시 에너지상업 상임위(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의 조사소위원회는 재보험거래에 대한 정보의 한계로 인해 감독당국이 적시에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재보험체인을 통한 연쇄도산이 사전에 예방되지 못 하였다고 평가함.¹²⁾

〈그림 1〉 재보험체인



■ 따라서, 관련 상임위는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재무상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이용가능한 정보의 한계와 유형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가 대폭 개선됨.¹³⁾

- GAO는 당시 감독당국이 이용가능한 재보험거래에 대한 정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
 - 무엇보다도, 재보험을 인수하는 원보험회사가 원보험과 재보험 재무데이터를 재무제표에 합산해서 나타냄으로써 재보험이 원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둘째, 중개인을 통한 재보험거래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고 과거 보험회사 파산의 잠재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업무보고에는 재보험중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음.
 - 셋째, 과거 지급불능위험에 빠진 보험회사들의 사례를 보면 원보험회사가 자신의 위험이 어느 재보험회사에 재출재되는지 알지 못하고, 감독당국 역시 보험회사의 업무보고만으로는 재보험 체인을 파악하지 못함.¹⁴⁾
 - 넷째, 부적절한 내부통제로 인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재무정보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훼손됨.¹⁵⁾

12) GAO(1990), "State Reinsurance Oversight Increased but Problems Remain," GAO/GGD-90-82.

13) GAO(1990).

14)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지만,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 사례에서 보듯이 재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보험수익자인 원보험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5) 예를 들어, 1983년 Transit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450개 재보험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기간 1,700개의 재보험회사가 Transit으로부터 수재한 것으로 기록함.

- 미국은 재보험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거의 매해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 보고 양식(Annual Statement: Schedule F)을 수정함.

4. 결론 및 시사점



-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는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가 재보험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는 물론 거래 단계별 재보험시장의 규모·구조·행태·성과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거래상대방간 보고내용의 대조를 통한 보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업무보고양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거래내용을 Annual Statement 에 상세히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에도 공개됨.
 - 각 주에서 보험사업의 인가를 취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보험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제출해야 함.
 - 미국소재 보험회사의 경우 Schedule F(손해보험)와 Schedule S(생명 및 건강보험)를, 미국에 소재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경우 Form CR-F(손해보험)와 Form CR-S(생명 및 건강보험)를 작성·제출해야 함.
 - 2012년 기준 Schedule F는 거래상대방별로 출·수재현황, 원수보험료의 75% 이상을 출재한 계약, 담보 및 지급보증 정보, 분쟁중인 재보험금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함.
- 또한, 호주의 경우 보험회사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거래당사자별 재보험자산¹⁶⁾ 및 재보험익스포저¹⁷⁾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거래당사자별 재보험자산 보고서의 보고 항목: 거래상대방명, 거래상대방 그룹명, APRA 등급, 소재지, 그룹소재지, 담보 및 지급보증의 형태, 담보 및 지급보증 금액, 재보험금추정액 등을 작성해야 함.
 - 거래당사자별 재보험익스포저 보고서의 보고항목: 거래상대방명, 거래상대방 그룹명, APRA 등급, 소재지, 그룹소재지를 비롯하여 해당 거래당사자가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위험계수·보험집중위험계수·자산위험계수·자산집중위험계수·운영위험계수·요구자본 등

16) Reporting Standard GRS 460.0_G Reinsurance Assets by Counterparty.

17) Reporting Standard GRS 460.1 Exposure Analysis by Reinsurance Counterparty.

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동분 등을 작성해야 함.

- 보험회사는 거래상대방별 재보험금추정액의 합계가 총 재보험금추정액의 95% 이상이 되도록 거의 모든 거래상대방과의 재보험거래내용을 보고해야 함.
-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으로 함.

■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재보험서비스 수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거래에 대한 사후규제가 상당히 취약한 편인데, 재보험거래에 대한 투명성도 상당히 낮은 편임.

- 무엇보다도, 미국과 호주는 우리나라에 비해 재보험자산인정요건이 까다로운 편임.
 - 미국과 호주의 경우 보험회사가 출자에 대해 회계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수재사에 담보설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재보험계약이 특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재사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거나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계약조건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음.
- 둘째, 미국과 호주의 경우 재보험자산이 특정 거래상대방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구자본 산출시 집중리스크를 반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래상대방 집중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음.
- 셋째, 미국과 호주의 경우 공개원칙 하에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보고하도록 하고 업무보고의 목적이 건전성감독에 있음을 분명히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재보험거래내용을 거래상대방별로 작성하기 시작했으나, 기업의 경영공시 또는 금융통계포털을 통해 일부내용이 공개됨.

■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가 재보험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의 구체성과 더불어 보고내용의 공개 범위 및 기준,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통제방법 등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을 규제강화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규제 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조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kiri](#)

〈표 1〉 주요 재보험수요국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 비교

| 구분 | | 우리나라 | 미국 | 호주 |
|----------------------------------|---------|---|--|--|
| 시장 현황 | 출재 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손해보험: 55.7%(201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보험: 84.7%(200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물보험: 40.7%(2011년) |
| 재보험 자산 인정 요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재사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거나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재사의 신용도를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수재위험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담보를 설정해야 함 출재사 소재 주정부는 재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기간에 따라 재보험회사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지급불능약관과 중개자약관 삽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 시 호주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조건 출재사는 재보험특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placing slip을 확보하고 재보험특약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함 6개월 이내에 출재사와 모든 재보험회사의 서명과 날인이 기입된 특약서 내용을 확보해야 함 |
| 거래 상대방 리스크관련 자기자본 규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자본 산출시, 수재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0.8~6.0%의 위험계수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자본 산출시, 수재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계수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자본 산출시, 인가 재보험회사에 출재한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0~20%의 위험계수 적용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출재한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20~100%의 위험계수를 적용 재보험금 지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재사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00%의 위험계수를 적용 |
| 집중 리스크 규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보험거래 모범기준을 통한 권고: 구체성과 강제성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 특정 재보험회사에 출재하거나 특정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환급이 전년도 계약자잉여금의 50%를 초과한 경우 주정부에 통보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자본 산출시, 자산집중리스크(특정 자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노출도)를 고려함: 재보험회사의 담보설정여부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상이한 위험계수 적용 |
| 업무 보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별 재보험 거래내용 보고 일부 공개(금융통계포털 또는 경영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별 재보험거래내용 보고 공개일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별 재보험거래 내용 보고 공개일칙 |

주: 1) 상기 표에서는 미국과 호주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부를 열거했을 뿐, 이외에도 더 많은 규제가 있을 수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자산인정요건, 거래상대방리스크관련 자기자본규제, 집중리스크규제, 업무보고'는 위에 열거한 것이 전부임.

2) 미국 대부분의 주는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 이하 NAIC)의 재보험인정 모델법 및 규제(Credit for Reinsurance Model Act-Regulation)를 원안대로 또는 원안에 수정을 가하여 입법화하여 '재보험자산인정요건',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련 자기자본규제', '집중리스크규제'는 주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송윤아·정인영(2012),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송윤아(2013),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제도개선의 향후 논의방향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법규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보험업법에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정히 제재할 것임을 공표함.
 - 이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보험신뢰 제고 차원에서 제시된 정책으로,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함.

- 이와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도 신속·공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와 동 의무 위반 시 제재를 법규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
 - 영국의 경우, 불공정 보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가 이미 두텁게 형성된 가운데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손해'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를 시도함.
 - 즉, 법률위원회는 2006년부터 8년 동안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회담을 개최하였고, 신속·공정한 보험금지급의무와 위반 시 추가적 손해배상책임 부과를 규정한 보험계약법 초안을 2014년 7월 공개함.
 - 회담 참여자의 80% 이상이 상기 안에 찬성하였으나, 소송비용과 보험회사의 무리한 초과비용 발생가능성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있어, 동 이슈는 7월 17일 영국정부가 발의한 보험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 보험금 지급관련 법규의 한계와 주요국의 입법례 및 논의를 검토한 결과, 보험금 지급관련 법개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이로 인한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민원 및 소송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고려되어야 함.
 - 둘째, 금지 및 제재 대상 불공정 보상행위를 명료하게 정의함으로써 분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약정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신뢰제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라는 인식하에,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법규정화와 별개로 보험회사의 자체노력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법규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보험업법에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정히 제재할 것임을 공표함.¹⁾
 -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²⁾
 - 이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보험신뢰 제고 차원에서 제시된 정책으로,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 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함.³⁾

- 이와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도 신속·공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와 동 의무 위반 시 제재를 법규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⁴⁾
 - 영국 법률위원회는 8년간의 검토 끝에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 등에 관한 보험계약법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음.
 - 다만, 영국 정부는 법률위원회가 제안한 보험계약법 초안에서 보험금지급 지연 및 거절과 관련된 조항을 제외한 채, 7월 17일 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함.⁵⁾
 - 법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15 회기 내 국회통과를 위해 ‘보험금지급 지연 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는 정부발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음.

-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보험금 지급관련 법제의 한계와 영국·미국의 입법례 및 논의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보험금 지급 관련 법개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함.

1)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함: ① 보험권유 단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를 상품안내자료 등에 포함,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현황 정기공시 사항으로 반영, ③ 계약자 등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도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출처: 금융위원회 2014. 07. 15일자 보도자료,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2)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함(출처: 2014. 07. 24일자 보도자료 “보험사기 근절 대책”).

3) 미국 사례는 본고 3장을 참조 바람.

4)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2014, 07.

5) HL Bill 39(Insurance Bill),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809/ldbills/039/2009039.pdf>.

- 금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향후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영국의 경우, 불공정 보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가 이미 두텁게 형성된 가운데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손해’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검토의 의미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 방지를 위한 법규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임.

2. 보험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현황

■ 보험금 지급단계는 보험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임.

- 계약의 성립 및 실효,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등 모집과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표면화되어 다툼이 일어나는 지점 또한 보상단계임.

■ 면·부채 결정을 포함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은 2013년 상반기 기준 전체 민원의 약 37%로 가장 높음.

〈표 1〉 유형별 보험민원 현황

(단위: 건, %)

| 구 분 | 2012년 상반기 | | 2013년 상반기 | |
|-------------|-----------|------|-----------|------|
| | 건수 | 구성비 | 건수 | 구성비 |
| 보험금 산정 및 지급 | 5,092 | 26.9 | 5,702 | 26.9 |
| 보험모집 | 5,218 | 27.6 | 5,457 | 25.7 |
| 면책·부채 결정 | 1,611 | 8.5 | 2,069 | 9.7 |
| 계약의 성립 및 실효 | 1,650 | 8.7 | 1,933 | 9.1 |
|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 802 | 4.2 | 702 | 3.3 |
| 보험질서 | 396 | 2.1 | 428 | 2.0 |
| 기타 | 4,149 | 21.9 | 4,940 | 23.3 |
| 소계 | 18,918 | 100 | 21,231 | 100 |

자료: 금융감독원.

■ 또한, 보험회사의 ‘압박용 소송남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결과 손해보험회사의 소제기는 2012년 기준 428건으로 감소추세이나 타 금융권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

- 손해보험의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피해액 산정,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잦은 분쟁 및 소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되어 처리중인 사건도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압박용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음.
 -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을 줄이기 위해 소제기 현황 및 결과 공표 정례화,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 부과, 소송지원제도 확대, 부적절한 민사조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등이 시행됨.

나. 문제점

■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금지급 지연 및 거절,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 동원 등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법규가 미흡한 상황임.

■ 구체적으로, 상법과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신속한 보험금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이자지급 외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서류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음.
- 상법 제658조는 일정 기간 내 보험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⁶⁾
- 또한, 이진수(2012)에 따르면 보험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390조)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음.⁷⁾

6)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회사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상법 제658조).

7) 이진수(2012), 『보험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들의 의무 및 피보험이익에 관한 영국법 개정논의의 시사점』, 보험학회지, 제91집.

-
-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의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견가능성의 입증에 어려워 배상가능한 특별한 손해의 인정이 어려울 것임.

■ 또한, 보험금지급 지연 및 거절 외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할 수단이 미흡함.

- 청구권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보험계약약관 또는 청구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주는 행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부당한 협박 등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함.
- 미국의 경우, 상술한 행위에 대해 벌금, 영업중지 또는 영업허가 철회와 같은 제재가 가해짐.⁸⁾

3. 영국·미국의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제 및 동향



■ 본 절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보험금 지급관련 법규와 관련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

- 영국 법률위원회 주관 하에 2006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활발히 전개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법률위원회가 작성한 보험계약법 초안은 보험금 지급관련 법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검토의 의미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불공정 보상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음.

가. 영국

1) 보험금지급의무의 법규정화 논의 배경

■ 영국은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을 방지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음.⁹⁾

-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임.
- 둘째, 영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하, FCA)의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이하, ICOBS) 8.1.1은 보험사기의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신속, 공정한

8) 상세한 내용은 본고 3장을 참고하기 바람.

9)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Issue Paper 6: Damages for Late Payment and the Insurer's Duty of Good Faith, 2010.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¹⁰⁾

- 보험금 지급에 대해 FCA는 ICOBS 8.1.1에 보험회사가 비합리적으로 보험금청구를 지체 또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셋째, ICOBS 8.1.1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의 138D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¹¹⁾
- 넷째, 금융옴브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¹²⁾는 보험회사로 인해 그 소비자가 고통을 겪거나 불편(distress and inconvenience damages)을 겪는 경우 그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함.
-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 시 법정 이자(8%) 청구가능

■ 이처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두터운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 (consequential damages)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있음.¹³⁾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어 불합리한 보험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구제책은 없고 법정 이자(8%)만 청구가능
- 둘째, FCA는 ICOBS 8.1.1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를 공개할 수 있으나,¹⁴⁾ 이는 소비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무관함.
- 셋째, ICOBS 8.1.1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FSMA 2000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FSMA의 규정은 복잡하고 제한적이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넷째, 보험회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보험계약을 취소(avoid)함으로써 기납입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¹⁵⁾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음.

10) An insurer must: (1) handle claims promptly and fairly; (2) provide reasonable guidance to help a policyholder make a claim and appropriate information on its progress; (3) not unreasonably reject a claim (including by terminating or avoiding a policy); and (4) settle claims promptly once settlement terms are agreed.

11) A contravention by an authorized person of a rule made by the FCA is actionable at the suit of private person who suffers loss as a result of the contravention, subject to the defences and other incidents applying to actions for breach of statutory duty.

12) 금융옴브즈만은 법에 의해 구성된 독립기구로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 발생한 개별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금융옴브즈만이 내린 결정은 사실상의 법적 권한이 포함됨.

13) Law Commission(2010).

14)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S66.

15) Section 17 of Marine Insurance Act 1906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 마지막으로, FOS는 보험회사로 인해 그 소비자가 고통을 겪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 그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나, 이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적용됨.
 - FOS는 보험회사로 인한 소비자의 고통이나 불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부과
 - FOS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종업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연매출이 2백만 유로이상인 기업), 10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손해는 FOS를 통해 그 손해를 구제받을 수 없음.

■ 또한, 영국 법원은 보험회사의 가장 주된 의무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음.

- 즉, 영국 법원은 보험회사의 가장 주된 의무는 손해의 보상이라기보다는 손해발생의 방지이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당해 손해만큼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결국, Sprung v. Royal Insurance Ltd.(1997) 판결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의 배상책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¹⁶⁾

2) 보험계약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

■ 영국 법률위원회는 2006년부터 8년 동안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으며, 2014년 7월 보험계약법 초안을 공개함.

- 2006년부터 법률위원회는 기업보험계약자의 고지 및 통지 의무, 담보원칙(insurance warranty), 사기적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4가지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보험계약법 초안을 작성함.¹⁷⁾

■ 법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초안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와 위반 시 추가적 손해배상책임 부과를 법규정화할 것을 제안함.¹⁸⁾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chieved by the other party).

16) Sprung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의 공장을 재물보험에 가입함. Sprung의 재산과 공장은 기물파손자에 의해 손해를 입었고 보험회사는 반달리즘(vandalism)은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음. 4년여 동안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보험회사는 분쟁절차를 통해 결국 법정이자를 붙인 보험금을 지급함.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던 시기에 이미 그 손해로 인하여 Sprung은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손해는 법률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17)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A Joint 회담 Paper, 2011.

18)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2014 July.

- 즉, 보험회사는 유효한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결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합리적인 기간은 합리적인 손해사정 및 조사 기간 뿐 아니라 보험종류, 클레임의 규모 및 복잡성, 보험회사 통제 밖의 요인 등 제반환경을 고려
 -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 위반이 아님.
 - 또한 기업성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지연이 고의 또는 악의가 아닌 경우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회담 참여자의 80% 이상이 상기 안에 찬성하였으나, 소송남용과 보험회사의 무리한 초과비용 발생가능성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있음.

- 회담 참여자의 80% 이상이 불합리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는 일반 계약법상의 원칙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 그러나,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을 포함한 일부 이해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을 인정할 경우 소송 남용과 보험회사의 무제한 초과 비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요구자본 조건 재평가, 담보 및 요율구조 재평가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함.

나. 미국¹⁹⁾

■ 피보험자 및 청구권자는 불공정 보상행위법, 그리고 묵시적인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 및 징벌적 손해 배상에 의해 보험회사 등의 불합리한 지급행위를 견제, 방지함.

■ 구체적으로, 첫째 미국 대부분의 주는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이하, NAIC)가 제정한 불공정 보상행위 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²⁰⁾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19) 송윤아(2014),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20) <http://www.naic.org/store/free/MDL-900.pdf>.

-
- 동 모델법에서는 14가지 불공정 보상행위를 열거하고 있음.²¹⁾
 - 보상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 사고접수의 확인 통지 지연, 보험지급여부 통보 지연, 보험금 지급 지체 또는 거절에 대한 설명 부족,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위한 조사 부족, 지급 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 제기,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고조사,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회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위 등
 - 동 모델법에 따르면 주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가 관찰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a statement of charges)와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청문회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면 벌금부과, 영업중지 또는 영업을 허가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²²⁾

■ 둘째, 보험회사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선의의무 위반행위는 묵시적인 계약상 의무의 위반 및 불법행위(bad faith tort)가 되며, 그로 인한 청구권자의 모든 손해가 보상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 보상 대상 손해에는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함.
 -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것이 전통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1)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Section 4.

22)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Section 5~7.

4. 결론



- 보험금 지급관련 법규의 한계와 주요국의 입법례 및 논의를 검토한 결과, 보험금 지급관련 법개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이로 인한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민원 및 소송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고려되어야 함.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제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부 청구권자 또는 보험사기 행위자들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²³⁾

〈표 2〉 신속·공정한 보험금 지급의무 비교

| 구 분 | | 우리나라 | 영국 | 미국 |
|---------------|--------------|---------------------------------|---|---|
| 법규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의무 | 상법 제65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8.1.1 | 주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수정·보완) |
| | 불공정 보상행위 유형 | 없음 |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8.1.2에서 불합리한 보상에 대해 정의 | |
| 상기 법규 위반 시 벌칙 | | 법정이자 | 벌금 또는 위법행위 공개 FSMA 138D에 의거, 추가손실에 대한 제한적 손해배상책임 | 변상 및 청문회 청문회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경우, 벌금, 영업중지 또는 영업허가 철회 |
| 그 외 보험회사의 책임 | | 민법 제390조에 의한 추가손실의 배상, 활용 한계 존재 | 법정이자(지급지연시) 추가손실의 '제한적' 배상(FOS의 결정) 보험계약 취소(신의성실의무 위반) | 법정이자(지급지연시) 추가손실 배상(경제적 손해, 정신적 고통) 징벌적 손해배상(신의성실의무 위반) |

- 둘째, 금지 및 제재 대상 불공정 보상행위를 명료하게 정의함으로써 분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3) 유세중(2012),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민원제도 역선택 문제에 관한 실태 연구: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표 3〉 불공정 보상행위(악의적 보상행위) 예시

- 청구권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보험계약약관 또는 청구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주는 행위
- 청구권자의 사고통보 후 사고접수 통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행위
- 청구권자가 손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지급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 보험회사의 책임이 자명한 보험금청구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행위
- 청구권자에게 법률서비스(변호인이나 손해사정인)를 이용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행위
-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후에 지급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의 제기
-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청구권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책임보험에서 방어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화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위
- 손해배상을 위한 조사를 신속공정하게 하지 못해서 보상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
-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부당한 협박

■ 셋째,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제재는 자칫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 지연 및 거절, 압박용 소송제기,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등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영국의 보험금 지급 관련 개혁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병행하여 논의되었으며, 결국 후자는 정부가 발의한 보험법안에 포함됨.
- 또한, 미국의 경우도 보험회사에 폭넓은 조사권 및 정보접근성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법규정화 및 제재를 마련함.

■ 끝으로, 약정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신뢰제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라는 인식하에,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법규정화와 별개로 보험회사의 자체노력이 필요함. [kiri](#)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과 검토 방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외부에 연기금을 설치하여 연기금이 기업의 역할(금융회사 선정 및 급부자금 등)을 대신하게 하는 구조임.
 - 법적으로 독립된 연기금은 집행기구(이사장, 이사, 감사)와 노·사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기금위원회)를 통해 연기금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참여형 연금제도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 때문에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에 따라 더 많은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
-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성공한 사례이지만 기금형제도 자체가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기는 곤란함.
 - 호주 퇴직연금제도 성공(가입률 95%, 적립금 규모 세계 3위 등)은 퇴직연금이 호주(국민연금 부제)에 핵심적인 연금제도이고, 가입 강제화와 소득이 있는 전 국민(파트타임, 자영업)에게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가입자 편의를 위한 디폴트제도 도입과 정부 보조금 또는 강력한 세제혜택 등이 주요 요인임.
- 반면, 일본의 경우 연기금의 부실 금융회사 선정, 금융회사의 연기금 적립금 불법 운용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AU운용사의 연기금 대규모 사기사건(2012년)'으로 인해 기금형제도에서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임.
- 따라서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수탁자 책임과 수급권보호)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금형제도 도입시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기업규모를 검토하고 기금위원회 및 이사회, 집행기구(이사, 감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수탁자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최소 적립규제, 적기시정 조치, 예금자 보호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 수급권 보호 장치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가 제3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검토 필요
- 선진국의 성숙된 금융산업 환경과 달리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기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함.
 - 특히, 일본의 실패사례는 대리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는 일본의 부실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일본 기금형제도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선진국 수준의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등의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러한 안전장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추이를 보가며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2월에 시행된 이후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중소기업 가입이 저조하는 등 미진한 측면이 있음.

- 외형적으로는 시행 8년 만(2013년 말)에 약 470만 명이 가입하여 4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연금자산이 약 84.3조원 규모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중소기업 가입이 저조하고,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 참여도가 낮으며,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되어 운용상품 선택폭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사적연금 활성화 TF(KDI·KLI·KCMI 등) 공동 연구진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2014. 8. 13)'에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

-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계약형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현행 계약형제도에서 기금형 요소를 도입하고 연금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함.
- 그러나, 세미나 토론회에서는 근로자 대표(한국노총)와 경영자 대표(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이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정부는 정책세미나의 제안 내용과 부처 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임.¹⁾
- 다만, 언론 등은 현재 기금형제도 도입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한 정부안으로 보도하고 있음.²⁾

■ 이에 본고는 기금형제도가 현행 계약형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기금형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배구조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최근 해외사례로 주목 받고 있는 호주가 과연 성공적인 기금형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인지를

1) 기획재정 보도해명자료(2014. 8. 17).

2) 동아일보(2014. 8. 18), 「퇴직연금 가입 中 50%에 보조금 준다」, 파이낸셜뉴스(2014. 8. 21), 「퇴직연금 5,000만 원 포함 개인 예금 1억까지 보호」 등.

살펴보고, 반대로 기금형제도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 후생연금기금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이와 관련 우리 원은 보고서³⁾ 등에서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음.

2. 계약형과 기금형제도 의의와 특징 비교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의의

■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연금 적립금 소유자(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이하 ‘연금 소유자’)에게 연금이 약속대로 지급되도록 연금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말함(OECD 2004; 류건식 외 2013).

- 즉,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 급여지급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한 일련의 시스템을 말함.
- OECD는 퇴직연금 지배구조에 대해 연금자산을 누가 소유하고 소유한 연금자산을 누구에게 위탁하는가에 따라 크게 계약형과 기금형의 법적인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Fiona Stewart 외, 2008).
-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수탁자(연금 소유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좋은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연금제도 운영관리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임(Keith P. Ambachtsheer, 2007).

■ 좋은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또 다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상충과 이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에서도 연금 소유자(위탁자)와 수탁자(금융회사 등) 간에도 서로 추구하는 이익과 목적 차이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경우 고유계정과 혼합되지 않게 운용되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게 운용회사의 자사상품 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과도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동일상품에 대한 가입자·사업자 간 차별적 금리 제시, 부당 수수료 부가 등의 불건전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류건식 외(2013, 1),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3-2.
 이상우(2013, 11), 「계약형 퇴직연금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지배구조 개선방향」, 『주간이슈』, 제260호,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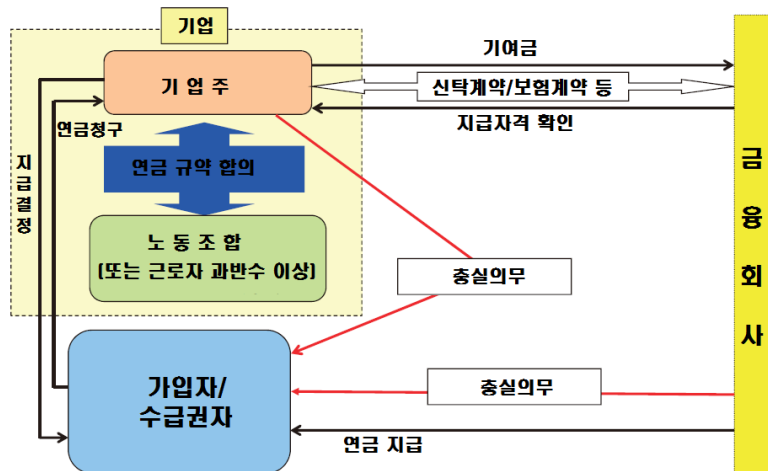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합의 절차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이익에 따라 기업 주도로 퇴직연금제도가 설계되고 금융회사가 선정될 개연성이 높음.

나.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비교

■ 계약형제도는 한마디로 기업이 금융회사와 1:1로 계약한다는 의미임(그림 1) 참조.

- 즉, 기업주는 근로자와 합의절차를 거쳐 연금사업자 선정과 연금규약(연금계약서)을 확정하고, 연금 관련 전체 업무(운영관리업, 자산관리업, 상품제공업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함.
- 이때 기업주는 연금관련 전체 업무를 일괄 위탁하거나 부분 위탁할 수 있으나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음.⁴⁾
- 금융회사는 연금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기록관리, 운용상품제공 등의 경우 외부 전문회사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따라서, 계약형제도는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과 위탁업무의 재위탁 등으로 연금소유자와 수탁자,⁵⁾ 수탁자와 수탁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계약형(DB형) 지배구조



자료: 田川勝久(2014. 6), 한국연금학회 국제세미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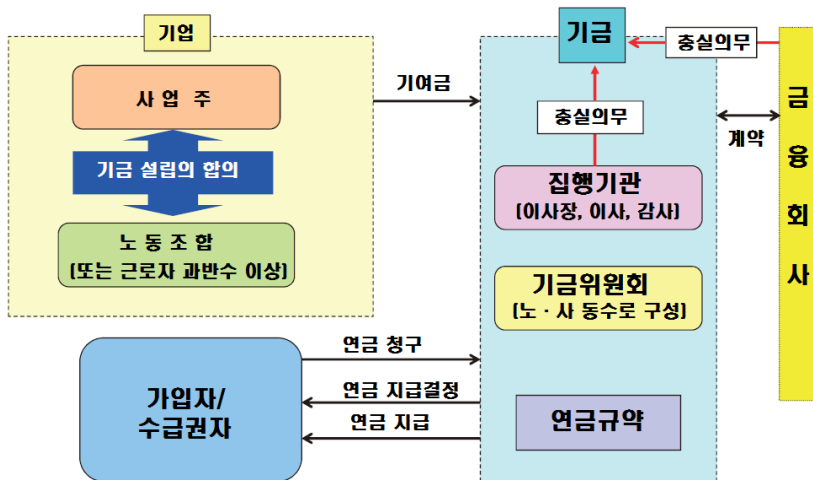
4) 이 경우 수탁자산에 대해 통제할 권한이 있는 운영관리업자가 자산관리업을 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절한 지휘 통제가 어려워 양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대두됨.

5) 수탁자에는 운용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상품제공회사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의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급여를 기업이 보관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기업도 넓은 의미로 수탁자에 포함되기도 함.

■ 반면, 기금형제도는 기업이 외부에 연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구조를 말함(그림 2) 참조).

- 계약형제도에서 기업은 연금구약을 작성하고 퇴직연금제도 종류와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기업은 기여금 부담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연금관련 역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독립된 연기금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 연기금은 독립된 법인으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 등에서는 기업내 이사회가 연기금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 이때 연기금은 기업주 역할⁶⁾과 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⁷⁾ 일부까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그림 2〉 기금형(DB형) 지배구조



자료: 田川勝久(2014 .6), 한국연금학회 국제세미나 자료.

- 기업의 기여금은 연기금에게 납입되며, 연기금은 기금운영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구와 기금위원회⁸⁾를 설치할 수 있음.
- 또한 연기금은 운영관리업무 일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외부 금융회사 또는 전문회사에 일괄 위탁계약, 부분 위탁계약 방식으로 아웃소싱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산관리업무만 위탁할 수도 있음.

6) 금융회사 선정 및 계약, 제도 선택, 연금규약 제정, 적립금 운용전략 수립 및 지시, 연금 지급결정 등임.

7) 운용관리업무는 제도 컨설팅 및 설계업무, 기록관리(Record Keeping)업무, 부담금 계산업무, 교육관리,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 신규 및 탈퇴 접수, 연금급부 지급 등임.

8) 기금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출하고 기업주가 임명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노·사 동일한 비율로 구성됨.

- 따라서, 기금형제도에서도 연기금(집행기구, 기금위원회)과 다양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상품제공회사 등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함에 따라 계약형제도보다 이해상충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다. 기금형제도 평가

- 기금형제도는 가입자가 연기금 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참여형 지배구조임.
 - 가입자 의사가 상대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고 연기금 내에 집행기구, 기금위원회, 내부감사 설치에 따라 연금관리업무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1〉 기금형(DB형) 지배구조

| 구 분 | 계약형 | 기금형 |
|-----------|-----------------------------|-----------------------|
| 연금관리형태 | 금융회사에 일괄위탁 | 독립적인 연기금 설치 |
| 관리 및 운용주체 | 금융회사 (운영기관, 관리기관) | 연기금 운용의 외부위탁 |
| 연금의 주요결정 | 계약 (경영자주도) | 기금위원회 (노·사 동수) |
| 근로자 참여 | DB는 형식적 참여, DC는 근로자 직접투자 | 노·사가 기금위원회 구성원 선출 |
| 운용 감독 | 금융기관이 대상 | 개별연금기금감독 |
| 운용 감독 | 한국, 일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 일본 |

자료: 류건식 외(2013)에서 일부 수정.

- 그러나 기금형제도는 연기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에 따른 제도 복잡성과 이해력 부족, 높은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연기금과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연기금 운영비용, 금융회사(운영·자산관리기관 분리 운영) 비용, 연기금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마련 등의 관련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연기금은 기업과 분리되어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립 재산제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적립금 운용손실 등으로 연금재정이 부실할 경우 연기금과 가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 기금위원회 구성원들이 가입자와 기업주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이나 연금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Keith P. Ambachtsheer, 2007).

3. 해외 사례



가. 호주

- 호주는 미흡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가 자본시장 발전에도 영향을 줌.
 - 호주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공적연금 부재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2년 종전 임의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 가입을 의무화한 확정기여(DC)형 기금형제도를 도입함.
- 호주 퇴직연금제도는 시행 20년만에 연금자산이 약 1.4조억 달러(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로 성장하고 가입률도 1987년 40%에서 2012년 95%를 상회하는 등 성공적인 퇴직연금제도 모델로 평가됨.
 - 또한, 호주는 연기금 가입시 가입자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서 설립한 퇴직연금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업, 산업 및 금융기관이 설립한 기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호주 퇴직연금제도가 이처럼 발전한 것은 기금형제도 도입보다는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즉, 호주는 국민연금 부재로 퇴직연금제도가 거의 핵심적인 연금제도이고, 퇴직연금 강제화, 소득이 있는 국민(비정규직 및 파트타임, 자영업 등)에게 가입자격 확대, 임금인상분의 퇴직연금 적립, 기본펀드(default fund)⁹⁾의 도입, 보조금 또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주요 요인임.¹⁰⁾
 - 특히, 호주의 경우 저 소득자(연간 37,000호주달러 이하)에게 기여금의 15%(연간한도 500호주달러)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단계에서 기여금에 대해 최저세율(15%)을 과세(일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8%)하며, 60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9) 투자경험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투자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default상품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운용되는 상품임.

10) 류건식·이상우(2013. 2), 「호주의 퇴직연금 세계개혁과 시사점」, 『주간이슈』, 제220호, 보험연구원.

나. 일본

■ 일본 퇴직급여제도는 우리나라와 함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지만 대표적인 기금형제도 실패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 일본은 1960년대 계약형과 기금형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는 병행 방식의 대표적인 국가임.
- 또한 일본은 기존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2012년 종료) 외에 2001년 퇴직연금 개혁에 따라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계약형 또는 기금형 확정급부 기업연금, 확정기여형연금)가 도입됨.
-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은 두 가지 형태의 기금형제도와 다양한 계약형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음.
- 일본은 퇴직연금 개혁 이후 기존 후생연금기금에서 새로운 기금형 확정급부 기업연금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기금형제도가 계약형제도보다 수익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연도에서 기금형제도가 계약형제도보다 수익률이 다소 높았으나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계약형제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기금형제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하락하였음.

〈표 2〉 일본 계약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추이

|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계약형 | n.d | n.d | 4.15 | 16.50 | 4.36 | -9.10 | -15.81 | 12.40 | -0.36 |
| 기금형 | -12.46 | 16.17 | 4.74 | 21.08 | 4.62 | -12.03 | -19.81 | 13.26 | -0.16 |

주: 1) 2002~2008년 계약형의 경우 확정급부기업연금, 기금형의 경우 후생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

2) 2009~2010년 확정급부기업연금 계약형 및 기금형 운용수익률.

자료: 企業年金聯合會(各年度), 資産運用實態調査結果.

■ 일본이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는 이유는 금융회사의 연기금 대규모 사기사건에 따라 연금 가입자가 큰 손실을 입으면서 기금형제도에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대리인 문제 등이 나타났기 때문임.

- 사건의 발단이 된 후생연금기금은 1966년 퇴직연금제도에 공적연금의 일부 기능을 부가(공적 노령연금 일부분을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후생연금기금은 1990년대 말까지 가입자 1천 2백만 명과 53조 엔의 연금자산을 보유한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로 발전해 왔음.

- 그러나, 후생연금기금은 1990년대 말 거품경제 붕괴 이후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누적된 운용손실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금자산 재평가와 퇴직급여채무 급증 등으로 연금금 재정부실을 만회해야하는 투자환경에 직면하게 됨.

■ 이러한 환경 하에서 연금금 운용회사가 유치한 연금자산을 불법으로 운용하여 큰 손실을 입히는 'AIJ 연금금 사기사건(이하 'AIJ사건')이 2012년에 금융당국에 의해 발각됨.

- AIJ는 연금금 전문 대형 운용회사로서 연금금 운용사 선정을 위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허위로 운용수익률을 공시 또는 광고를 하고 고금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확장함.
- 이후 AIJ운용은 유치한 수탁자금을 수탁자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 자산 등에 불법운영하여 매년 큰 폭의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운용보고서를 개별 연금금에 제공하는 등 이른바 폰지사기(Ponzi scheme)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함.

■ 결국 금융청이 2012년에 사기사건을 적발하였는데 연금금 수탁자금(약 2천억 엔) 90% 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84개 연금금에 가입된 88만 명의 가입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일본에서 AIJ사건은 연금금 가입자 대부분이 택시 및 버스회사, 백화점에 종사하는 영세한 연금금으로 이루어져 저소득계층들이 연금금의 손실로 연금금이 해산 또는 파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으로 이슈로 받아들임.
- 일본 사례는 연금금의 방만하고 안이한 운영, 연금금의 비전문성, 연금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결여, 제3자 감시인 역할 미흡, 운용회사 고금리 제공 및 기만 영업, 운용보고서 등 자료 조작, 연금금 자산 불법적 전용 또는 운용, 연금금과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감독 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4. 기금형제도의 검토과제



■ 현행 계약형제도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해상충과 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작용 방지장치 도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업 비용부담

- 기금형제도 도입시 기금위원회 설치와 수탁자 전문지식 교육 등으로 많은 운영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와 같은 기업의 비용부담은 자칫 퇴직연금가입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의 비용부담이 퇴직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형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형 제도를 모든 기업에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무력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수탁자 책임 규제

- 기금형의 경우 기금위원회 및 이사회 등에 대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수탁자 책임이 보다 요구되므로 관련 규정 정비가 요구됨.
 - 기업, 연기금(집행기구, 기금위원회),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상품제공기관, 제3자감사인, 투자자문회사, 제도 컨설팅업자 등 수탁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요구됨.
- 수탁자별로 신의 성실의무(duty of prudence),¹¹⁾ 충실의무(duty of loyalty),¹²⁾ 분산투자 의무, 법령준수 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이 체계적으로 명시될 필요
 - 기금형제도를 도입한 미국 ELISA법(퇴직연금 관련법)과 영국 연금법은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연기금 운용에 따른 수탁자 책임을 강화함.
- 따라서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탁자 책임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검토가 철저히 요구됨.

■ 수급권 보호 장치

- 기금형 제도에서는 연기금이 운용 책임을 직접 지시하기 때문에 연기금 부실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됨.
- 미국 및 일본 등은 연기금의 대규모 운용손실과 연기금 파산으로부터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금 지급보증제도 등과 같은 수급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11) 신중인(Prudent Person)으로서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12)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것.

- 우리나라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채권자 우선변제 제도 등과 같은 협의의 수급권 보호 장치만 존재
- 따라서 최소 적립규제,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전적 수급권보호 장치와 더불어 예금자보호제도,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등과 같은 사후적 수급권 보호 장치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감시기능 체계

- 기금형의 경우 계약형제도보다 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 등이 제3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검토 필요
- 즉,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리사 및 공인회계사 선임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거나 정부차원에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함.
 - 현재 분산된 감독 기능을 개선하고 감독당국이 개별 기금별로 감독하기 위한 통합감독기구 등 효율적 퇴직연금 감독기구 마련을 요구

5. 시사점



- 기금형제도는 연기금 내부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가입자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선진화되고 참여형 퇴직연금제도인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독립적인 연기금 설치와 기금위원회 및 집행기구 구성, 다양한 연금사업자와 컨설팅 및 투자자문회사 등의 관여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구성으로 더 많은 이해상충과 이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선진국의 성숙된 금융산업 환경과 달리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환경 하에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할 것임.
- 특히, 일본 연기금 대규모 사기사건은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등에 대한 일본의 부실한 대응이 가입자 연금 삭감과 기금형제도 폐지 등과 같은 퇴직연금제도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러한 일본의 실패사례를 반면 교사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 성숙도와 연금 가입자 및 이해관계자

인식 수준에 맞추어 보다 안전한 퇴직연금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선진국 수준의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등의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러한 안전장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추이를 보가며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kiri**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대한 소고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 자동차보험 보상원리는 크게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 “피보험이익 원리” 및 “실손보상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동 3가지 운영원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소송을 선호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는 변호사비용 증가, 지급보험금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 증가 원인이 될 것임.
 - 과실비율결정이 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작성된 과실상계도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동 방식이 모든 사고 상황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당사자들은 빈번하게 과실비율에 불만 표시
 - 과실여부에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차대차 충돌사고로 과실비율이 100%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당사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고가차 운전자와 저가차 운전자의 충돌사고에서 저가차 운전자가 고가차의 수리비가 과도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시로 사회문제화 됨.
 - 피해차량의 수리부품을 해당차량의 연식에 부합한 부품이 아닌 신차 부품을 제공하는 것, 대차를 하지 않는 피해차 운전자에게 대차료의 20%를 지급하는 규정과 고가 외제차에 동일차종으로 대차해주도록 하는 규정은 피보험이익(또는 실손보상)원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현 운영원리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원리로서 무과실책임원리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물배상 요율체계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안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피해차량의 연식에 해당하는 부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가 특약을 구입하는 경우에 신차 부품으로 수리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대차료 지급기준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대차하지 않은 경우 대차료의 20%를 지급하는 규정의 효과를 점검한 후 그 제도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대물배상 대차료의 지급기준 중 동일차종 기준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념이 변화된 현재 시점에도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 검토배경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에 따라 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받아야 했음.
 -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민법의 과실책임원리 하에서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 자배법이 제정되고, 가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입증책임의 전환)으로써 자동차보험 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안전망의 지위가 부여됨.
 - 자배법의 주요 보상원리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입증책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민법과 차이가 있음.
 - 자동차보험 보상원리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 이외에 피보험이익 원리, 실손보상원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원리들은 자배법, 민법 및 상법에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 실행방법은 자동차보험 약관 등에 기술되어 있음.

- 자동차보험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보험 보상원리는 잘 작동되어 왔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영원리 현실화 과정 중 새로운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와 그 구현 내용을 살펴보고, 동 운영원리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함.

2. 자동차보험 보상원리



가. 자동차보험 보상원리

■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는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민법 750조¹⁾, 상법 726조의2²⁾,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³⁾”, “피보험이익 원리(상법 제668조⁴⁾)” 그리고 “실손보상원리(손해에 대한 보상, 상법 제665조)”로 운영됨.

-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는 사고당사자간의 과실정도(책임정도성) 규명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부담(책임의 상대방성)에 의해 구현됨.
- “피보험이익⁵⁾ 원리”는 상법 제668조에 명시된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법언에 따라 보험계약의 필수적 요소임.⁶⁾
- “실손보상원리”는 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에서 피해자(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원리⁷⁾임.

1) 민법에서 법률 근거

민법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음.

2) 상법에서 법률 근거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음.

3) 지배법 제3조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케 하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음.

4) 상법 제668조에서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

5) 피보험이익

- 김성문(2010, p. 216)에 따르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이익을 의미하며, 피보험이익 개념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의 5가지를 언급하고 있음.

- 첫째,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둘째, 보험자 책임범위를 결정하기 위함
- 셋째, 도박보험 및 초과보험 등의 방지를 위함
- 넷째, 보험계약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함
- 다섯째, 보험가액의 평가, 제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 장덕조(2011, p. 202)에 따르면 “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는 말과 같이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중심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함.

- 이진수(2014, p. 117)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은 손해보험에 특유한 것으로서 인보험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중요한 구별기준이라고 함.

6) 김성문(2010), p. 216.

7) 실손보상원리에 대한 근거들

- 상법 제665조에 따르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임.

- 상법 제667조(상실이익등의 불산입)에 따르면,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고 시점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
- 이들 원리들은 피보험이익을 한도(보험가액)로 계약한 보험금액⁸⁾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작동하고 있음.

나. 자동차보험 보상원리 구현 내용(자동차보험 담보내용)

-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는 대인배상¹, 대인배상² 및 대물배상 담보로 구현되어 있으며, 사람이 사상된 경우에는 대인배상으로 그리고 물건(자동차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물배상으로 가해자의 과실비율 만큼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함.

-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가 적용되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는 자동차보험 보상절차상 자동차 사고시 불법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 지를 밝히는 노력 및 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과실비율)를 결정해야 하는 등 과실비율 산정과정이 필요함.
- 과실비율 때문에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보험으로 분류되고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차량보험으로 분류됨.

-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모든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 원리” 및 “실손 보상원리”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 지급됨.

-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면, 상실수익액 산정에서 사고당시 현실소득을 기준으로 실손금액을 결정(피보험이익의 원리)하고 부상시 치료비는 실제 치료금액을 지급(실손보상원리)함.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상해보험이므로 상해보험의 특성에 따라 정액보험금(사망 등)과 실손부분(부상 및 후유장애 치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도 실제 수리비 등이 지급되며, 실제 지급금액 한도는 피보험이익 원리에 따라 결정됨.

-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의 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박기억(2003, p. 121)에 따르면, 손해보험은 보험금의 지급방식이 손해의 보상인 것을 징표로 하고 있다고 함.

8)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사고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정액이고 손해보험에서는 보장금액의 한도에 해당함.

■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원리가 작동되는 아래의 예를 보면, 불법행위에 따른 과실책임 원리, 피보험이익 원리 및 실손보상원리는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음.⁹⁾

- (예를 들면), 차대차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 한도 내(피보험이익 원리)와 지급한도(가입한도) 내에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을 산정(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하고 피해보험자는 상대방의 피해금액(실제 손해액)을 자신이 가입한 배상담보로 자신의 과실비율 만큼 지급해주면서 타인의 과실비율에 해당 하는 만큼 상대방의 배상담보로부터 지급받는데(과실책임원리), 만일 본인의 과실비율이 100%여서 피보험자가 타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자신의 치료비 및 수리비를 보상(피보험이익 및 실손보상의 원리)받을 수 있음.

3.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의 운용상 문제점



■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와 그 원리가 반영된 자동차보험 담보라는 양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필수적인 장치로 작동되고 있지만 그 보상원리가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함.

가.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 측면

■ 현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주의 원리 하에서 운영 되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제도는 사회가 소송을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될수록 소송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 원인으로 작용함.

- 소송 증가는 변호사비용 증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 금액 증가로 이어짐.
- 불법행위로 인한 과실책임 원리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금과 이로 인한 가입자 부담(자동차 보험료)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자동차보험에 무과실책임 원리를 도입 하였음.

9)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 피보험이익 및 실손보상원리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곳곳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운영되고 있음. 법률조항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 민법, 상법 및 자배법 등에 해당 원리가 선언되어 있고, 해당 원리가 구체화된 법률 조항 중 하나는 보험자 대위권(상법 681조) 등이 있음. 약관내용 측면에서는 표준약관의 지급기준 세부 내용에 그 원리가 구체화되어 있음. 본 자료에서는 3가지 운영원리가 구체화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 사항에 국한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검토함.

■ 차대차 충돌사고에서 과실비율이 100%¹⁰⁾인 사고당사자 또는 차량단독사고자가 임의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 당사자가 자동차보험으로 부상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차량 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현재와 같이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이 100%가 되지 않는 상황¹¹⁾ 하에서 경제적 손실자(사고 가해자 및 사고피해자 포함)의 손실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¹²⁾
- 사회 전체 측면에서 볼 때 차량피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감내할 수 있지만 피해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¹³⁾임.

■ 지금까지 사고당사자들(가해자 및 피해자) 반응을 보면, 최종 결정된 과실비율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향을 보임.

- 과실비율결정은 보험회사들이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 즉 과실상계도표(도로교통법, 판례를 규정용 근거)¹⁴⁾에 따라 이루어짐.
 -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결정되는 과실비율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결정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법원이 주어진 정보 하에서 나름대로 합리적 판결을 내린 결과라고 인정됨.
- 그러나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태생적 불완전성 그리고 법원 판결 유형이 모든 사건에 완벽하게 부합되도록 적용될 수 없는 점¹⁵⁾ 때문에 개별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과실 비율이 사고의 실제적 진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음.

10) 보험개발원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차대차 충돌사고에서 대물배상사고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100%인 경우는 전체의 약 75%임.

11)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4월 말 현재 기준)에 따르면 자기신체사고 담보 가입률(개인용 및 업무용 일반물건 기준)에 따르면 임의담보 가입률은 91.2%이고 자기차량손해담보(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동일 기준) 가입률은 64.2%임.

12) 사고 당사자가 자기신체사고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완결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임.

13) 동 주장의 근거는 첫째, ‘과실책임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당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사회가 치료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둘째, ‘과실책임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현실적 상황 하에서도 과실책임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된 사실을 사고 당사자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과실비율 100%를 사고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임.

14) “과실상계도표 작성방법”: 도로교통법, 판례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이 작성하며, 판례결과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마다 변경함.

15) 법원 판결은 보편적 개념이지만 실제 그 판결을 적용하는 상황은 구체적이므로 양자 간에는 근본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자동차 운전자들은 스스로 “블랙박스” 등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등(자동차 운전자의 추가비용 발생) 지구 노력을 하고 있음.
-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만,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장치도 완벽한 실제적 진실을 보여준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과실비율 확인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손해사정사)으로 인한 비용 발생

- 할인할증률 등급 적용(사고당사자의 보험료 결정에서 이해관계 발생), 보험회사들 사이의 보험금 정산(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 산정 필요)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사고 현장에 출동해야 함에 따라 여러 관련된 부수비용이 발생함.

■ 고가차 운전자와 저가차 운전자의 충돌 사고시 저가차 운전자의 불만 제기

- 동일한 과실비율이라 하더라도 고가차 운전자의 수리비 또는 상실수익액 등이 저가차 운전자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므로 저가차 운전자가 이러한 방식의 보험처리는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큼.
- 특히, 국산차가 외제차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외제차의 높은 수리비에 대한 불만제기가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그 사례들 중 하나임.

〈표 1〉 외제차 수리비관련 공정성 문제제기 신문기사(2014. 7. 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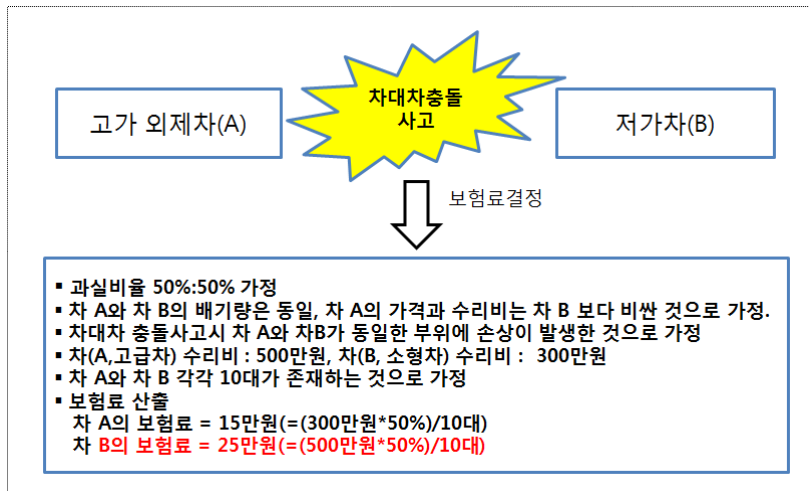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에 이르는 주된 요인은 높은 부품 가격 때문이다. 수입차의 평균 부품 가격은 국산차의 4.7배였다. 보험개발원은 “공임(인건비)과 도장 비용은 외제차가 국산차의 각각 2배와 2.3배 수준인데 부품 가격은 5배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 차대차 충돌 사고시 저가차 운전자의 보험료가 고가차 운전자보다 더 높을 개연성이 큼(보험료 산출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만 운영원리상 배상책임사고에서 저가차의 보험료가 더 높게 산출될 가능성이 큼).

- 저가차 소유자(B)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대물배상)으로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에 투입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가차 소유자의 차량수리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차 소유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현상이 불가피함(아래 그림 참조).
 - 저가차 소유자(B)가 고가 외제차 소유자(A)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500만 원

- 저가차 소유자(B)가 고가 외제차 소유자(A)에게 지급받아야 하는 보험금: 300만 원
- 저가차 소유자(B)의 보험료: 25만 원
- 고가차 외제차 소유자(A)의 보험료: 15만 원

〈그림 1〉 대물배상 사고시 보험료 결정과정 예시



주: 동 예시는 과실책임 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결정의 관계를 보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사용된 고가 외제차의 보험금 대비 저가차의 보험금 비율, 자동차대수 구성비 등은 실제 자동차보험 상황과 다름.

나. 피보험이익 또는 실손보상원리측면

■ 피보험이익(또는 실손보상)에 근거하여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지급기준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지급기준의 현실 적용과정에서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상존함.

● 대차료 지급기준, 자동차 수리시 사용되는 부품을 신차기준 부품으로 하는 등이 그 예이며, 보장금액이 피보험이익을 초과하거나 실제 손실액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모럴해저드를 유발,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자동차 수리부품 측면을 보면, 피해 차량 연식에 해당하는 부품(피보험이익의 원리)으로 수리해 주어야 하지만 신차 부품으로 수리해 주는 현재 관행은 수리시에 모럴해저드를 유도할 수 있음.

● 피보험이익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자동차 안전성 훼손 문제와 신차 부품으로 수리를 원하는 소비자(또는 피해자) 니즈 때문에 신차 부품을 기준으로 수리비가 지급되는 현 관행(제

도)이 정착된 것으로 보임.

- 중고부품 신뢰성 부족, 자동차 안전에 중요한 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 줌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사고 가능성 등, 피보험이익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피보험이익 원리에 부합되지 않게 신차부품으로 수리해주는 관행에는 피해자가 편승수리를 하도록 유도할 개연성이 있는 등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존재함.

■ 자동차 대차료 산정 측면에서 보면,

- 우선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요금의 2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현 표준약관 규정은 실제 대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손보상원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대체 자동차 종류를 피해자 자신이 타던 차와 동일한 차종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자동차 사용에 대한 개념이 소유가치에서 활용(또는 이용)가치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유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에도 적합한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고가차(외제차 포함)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대차료 지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의 기저에는 대차료 산정기준을 소유가치 기준으로 정한 현행 표준약관 기준이 있다고 생각됨.

4. 시사점



- 현 불법행위로 인한 과실책임주의 원리가 현 상황에 적합한지 아니면 무과실 책임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실책임 원리와 무과실책임 원리를 병행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변화로 소송증가와 그로 인한 국민의 자동차보험 비용 부담 증가 문제, 사고당사자(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치료문제, 과실비율에 대한 불신 문제 등의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무과실책임원리”는 미국, 캐나다의 일부(퀘벡¹⁶⁾) 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16) Stephen D.Sugarman(1998), p. 302.

운영원리인데, 캐나다(퀘벡)와 뉴질랜드¹⁷⁾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원리이지만 미국¹⁸⁾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 불법행위에 따른 과실책임주의 원리로 인해 저가차 운전자가 더 많은 대물배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물배상 보험료 산출방법을 차량가액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 방식은 지급된 보험금과 보험료의 관계가 정(+)의 상관관계가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보험금과 보험료 불일치 때문에 제기된 불공정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는 안으로 생각됨.
- 다만, 대물배상담보의 보험료 결정방식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해당 가입 차종으로부터 실제 지급된 보험금과 동 방식으로 산출된 보험료가 일치하는 지 여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음.
 - 이처럼 보험금 지급(과실책임 기준)과 보험료 결정(자기책임기준, 또는 No-Fault System 원리)의 불일치가 발생하지만, 이 방식은 법률제도 변경 없이 현 대물배상담보 운영제도(과실책임주의)와 시대의 변화된 요구(No-Fault System) 불일치를 효율산출방법(기술적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수리 부품에 피보험이익(또는 실손보상) 원리 적용 부분
 - 자동차 사고시 피해차량 수리부품 중 차량 안정성과 상관관계가 낮은 부품 및 정부의 부품 신뢰성 기준을 통과한 부품에 한하여 실손보상원리에 따라 중고부품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피해자가 신차 부품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신차 부품 공급 특약(가칭)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대물배상 대차료 지급기준과 관련된 부분
 - 우선, 대차료 지급방법 중에서 실제 자동차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차료 요금의 일정부분(20%)을 지급하는 것은 피보험이익 원리와 실손보상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대차료 지급시 동일차종 기준에 대한 해석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kiri](#)

17) 장덕조(2006), p. 196.

18) 미국에서 무과실책임 자동차보험제도가 성공하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순수 무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음.

〈참고문헌〉

- 김성문(2010), 『피보험이익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p. 215~240.
- 박기억(2003),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법조 제559, p. 121.
- 손해보험협회(201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집』.
- 이진수(2014), 『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1호, pp. 113~138.
- 장덕조(2006), 『인신손해에 대한 무과실보상과 자동차보험-뉴질랜드제도의 평가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제25권 제3호), pp. 195~220.
- _____ (2011), 『보험법』, 삼지원.
- Stephen D.Sugarman(1998), “Quebec’s Comprehensive Auto No-Fault Scheme and the Failure of Any of the United States to Follow”, Cahiers du Droit, p. 302~333.
- 국회(<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

김경환 수석연구원, 박정희 선임연구원

요약

- 최근 정부는 공제사업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 신설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정안에 따르면 공제업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공제의 소관 부처장 등에게 공제운영에 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 부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따르도록 함.
- 본고에서는 공제사업에 대한 현황과 규제·감독상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제사업 감독강화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찰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함.
- 현재 우리나라의 공제사업은 92개이며, 공제사업을 관리하는 소관부처의 감독 여력이 극히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전무하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공제사업의 경우 생·손보간 겸영뿐만 아니라 은행업무와도 겸영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에 취약성이 높고 위기 상황 시 리스크 전이가 쉬워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
- 한편, 금융산업은 세계적인 환경변화 추세를 따라 감독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보험산업도 보험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
 - 미국, 유럽 등에서는 보험 기능을 갖는 사업은 그 영위주체에 관계없이 보험감독당국에서 일괄하여 민영 생보사와 동일하게 감독하는 등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음.
-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과 동일한 규제·감독을 적용하는 것은 전세계에 공통된 모습이며, 우리나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보험업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공제기관은 전체 현황조차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무허가 공제가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태임.
 - 보험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법률 및 감독기준이 적용되고, 감독비용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결과가 초래
 - 대부분의 공제기관이 금융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같이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의 수수방관 자세로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이와 더불어 EU상공회의소, 美상공회의소 및 외국사 등이 공제사업의 불공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상존

1. 검토배경



- 최근 정부는 공제사업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제업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의 소관 부처장 등에게 공제운영에 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관 부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따르도록 함.
 - 이는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는 공제조합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대하여 공제사업 주무 부처는 감독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시각¹⁾과 금융위원회의 권한 확대는 의욕 과잉²⁾이며, 공제회로서는 상전만 더 생기는 것³⁾이라는 시각으로 나뉘어 있음.

-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시도는 최근의 일만이 아니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임.
 - 그러나 그간 실제 규제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공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해소가 쉽지 않았기 때문임.
 - 특히,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 시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의지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일부 공제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청회가 중도에 무산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철회한 사례도 있음.

- 본고에서는 공제사업에 대한 현황과 규제·감독상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제사업 감독강화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찰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함.

1) 중앙일보(2014), 「금융감독 사각지대, 공제회」, 2014. 10. 24(금) B10면 경제.

2) 한국경제(2014a), 「공제회에 대한 금융위 검사 확대, 의욕과잉 아닌가」, 2014. 10. 20, <http://www.hankyung.com>.

3) 한국경제(2014b), 「공제회 “상전 더 생기나” 당혹」, 2014. 10. 20(월) A01면 종합.

2. 공제사업 개요 및 현황



가. 공제사업 개요

■ 공제사업이란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관 개별 법령에 따라 영위되는 보험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사보험(類似保險)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 공제(共濟)란 ‘함께 나눈다’라는 뜻으로 과거 두레나 향약 같은 우리의 상부상조 정신이 담겨 있음.
-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공제료를 부담하고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험업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
 - 즉, 공제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각출금을 부담하고 경제적 재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는 집단적 위험분산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본질을 같이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존 판례와 「상법개정안」도 공제계약에 대해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보험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현대 생활에서 보험의 원리에 따라 단체를 운용하는 현상은 공제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사회 일반인이 이러한 단체 또는 그 운영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어,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이러한 계약들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임.⁴⁾
- 다만,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리주의 보험사업이 번성하면서 공제는 민영보험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조합원 상호구제 방안으로 발달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음.⁵⁾

나. 공제기관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기관은 모두 9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⁶⁾, 이들은 그 기능에 따라 보험형 공제와 상호부조형 공제로 구분될 수 있음.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편] 검토보고』, 2013. 6, pp. 38~40.

5) 홍성화(2008),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 119.

6) 본고에서는 개별 법령상의 공제사업근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공제조직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제조직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형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공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제를 말하며, 그 특성상 보험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공제임.
 - 보험형 공제는 다시 조합원이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형 공제(조합공제)’,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까지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공제(일반공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아래 운영되는 ‘정책성 공제’로 세분할 수 있음.
- 상호부조형 공제는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산업별로 특정 산업종사자들의 복지나 사망·퇴직 급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를 의미하며, 단순한 상호회와는 구분됨.
- 한편, 공제는 특별법상에 설립근거가 있는 공제와 특별법이 아닌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공제로 구분할 수도 있음.
 - 특별법상 공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법상의 근거 없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의 단체가 공제사업을 ‘업(業)’으로서 행할 경우에는 「보험업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큼.

〈표 1〉 우리나라 공제 현황

| 구 분 | | 공제상품 | 공제조직 |
|-----------------------|----------|-------------------------------|---|
| 보 험 형 공 제 | 일반 공제 | 생명·손해, 제3공제 (3) |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
| | 조합 공제 | 보증, 배상책임 (3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인중개사배상책임공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의료사고배상책임공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상호보증공제조합, 대한건축사협회공제조합,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사)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사)한국유탄유공업협회,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콘텐츠공제조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LPG산업협회 |
| | | 손해공제 (보증, 배상책임 포함) (27) | 자본재공제조합,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조선공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건설감리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사)한국LPG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경비협회, 레저안전공제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문화재수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버스공제조합, 산림재해공제, 대한대리운전공제조합, 한국양묘협회 |

| 구 분 | | 공제상품 | 공제조직 |
|-------------|-----------|--------------------------|---|
| | | 손해공제, 제3공제 (13) |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자원봉사공제회, 학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재)스포츠안전재단, 외식업공제회 |
| | | 생명공제, 제3공제 (1) | 한국교직원공제회 |
| | 정책성 공제 | 퇴직금, 복지급여 (6) |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원도사회복지인공제회 |
| 상호부조형 공제 | | 사망·퇴직급여, 복지급여 (12) | <특별법>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 한국관세사회, 담배인삼공제회, 세우회, 철도공제조합, 대한의사복지공제회, 교정공제회, 한국언론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

■ 우리나라 현행 92개 공제 중에서 상호부조형 공제 12개를 제외한 80개 공제를 공제사업 시행 연대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대폭 증가(47개 공제 신설)한 것으로 나타남.

-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재물공제나 배상책임공제를 중심으로 한 공제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산업보증제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제조직이 다수 설립됨.
-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이후에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공제종목도 일반손해공제 및 단체상해공제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1998년 이후에는 정책성 공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회보장적 성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급부 보장이라는 정책적 배려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표 2> 연대별·공제유형별 공제사업 신설 추이

| 구 분 | ~1950's | 1960's | 1970's | 1980's | 1990's | 2000's | 2010's |
|---------|---------|--------|--------|--------|--------|--------|--------|
| 일반공제 | 1(1) | 1(2) | - (2) | 1(3) | 1(4) | - (4) | -1(3) |
| 조합공제 | 1(1) | 4(5) | 2(7) | 11(18) | 13(31) | 28(59) | 12(71) |
| 정책성공제 | - | - | - | - | 1(1) | 3(4) | 2(6) |
| 상호부조형공제 | 1(1) | 1(2) | 2(4) | 4(8) | - (8) | 2(10) | 2(12) |

주: 괄호안의 수치는 누적치임.

■ 공제사업을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17개, 환경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11개, 교육과학기술부 5개, 공정거래위원회 4개 등 특정부처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

- 특히,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제사업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 신설된 것으로서, 동 부서들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일부를 공제사업을 통해 마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에는 주유소공제사업, 의약품공제조합 등이 공제사업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표 3〉 주무부처별 공제사업 현황

| 주무부서 | 공제사업 | 연도 | 공제종류 |
|-------------|--------------|------|----------------------------------|
| 강원도 | 강원도사회복지인공제 | 2007 | 연금공제, 복지공제 |
| 경기도 | 경기도사회복지공제 | 2010 | 연금공제(적립형공제), 복지공제 |
| 공정위 | 직접판매공제 | 2002 | 손해공제(소비자피해보상) |
| | 특수판매공제 | 2003 | 손해공제(소비자피해보상) |
| | 상조보증공제 | 2010 | 손해공제(배상책임, 보증) |
| | 상조공제 | 2010 | 손해공제(배상책임, 보증) |
| 교과부 | 학원안전공제회 | 2006 | 손해공제(배상책임), 제3공제(상해) |
| | 학교안전공제 | 2009 | 요양, 간병, 장해, 유족, 장의, 배상책임공제 |
| | 학교교육안전공제 | 2012 | 배상책임공제, 여행자공제, 스키공제 |
| 국토부 | 골재협회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건설감리공제 | 2009 | 손해공제(배상책임, 보증), 제3공제(재해상해보상) |
| | 건축사공제 | 2011 | 손해공제(보증, 배상책임) |
| | 전국렌터카공제 | 2013 | 자동차보험 |
| 고용노동부 | 전국고용서비스공제 | 2007 | 손해공제(보증) |
| 복지부 | 의사복지공제 | 2005 | 영유아:배상책임담보, 상해담보, 종사자:사망, 장해, 상해 |
| | 어린이집안전공제 | 2009 | 영유아:배상책임담보, 상해담보, 종사자:사망, 장해, 상해 |
| | 한국사회복지공제 | 2012 | 손해공제(배상책임) 제3공제(상해) |
| 산업통산 자원부 | 한국LPG가스판매중앙회 | 2002 | 손해공제(배상책임), 제3공제(상해) |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2002 | 배상책임공제 |
| | 전기산업진흥공제 | 2002 | 배상책임공제 |
| | 한국LPG산업협회공제 | 2006 | 영업배상책임, 상해, 화재공제 |
| | 노란우산공제 | 2007 | 퇴직금, 사망, 노령공제 |
| | 중소기업보증공제 | 2012 | 손해공제(보증) |
| 행안부 | 소방산업공제 | 2008 | 손해공제(근재, 배상책임, 보증) |
| | 자원봉사공제 | 2009 | 제3공제(봉사활동 중 상해, 질병), 손해(피해자배상) |
| 환경부 | 건설폐기물공제 | 2000 | 손해공제(보증) |
| | 산업폐자원공제 | 2000 | 손해공제(보증) |
| | 의료폐기물처리공제 | 2001 | 손해공제(보증) |
| | 금속캔자원재활용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주무부서 | 공제사업 | 연도 | 공제종류 |
|------|-------------|------|----------|
| | 전지재활용사업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타이어재활용사업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페트병자원순환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발포스티렌재활용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한국조명재활용협회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종이팩자원순환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윤활유재활용사업공제 | 2003 | 손해공제(보증) |
| | 유리병재활용사업공제 | 2004 | 손해공제(보증) |

다. 공제기관 규제 현황

■ 금융산업은 세계적인 환경변화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국제기구나 주요국의 선진제도를 적시에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보험산업도 보험업법령이나 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공제사업의 경우 해당 개별법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개별법이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상법」과는 달리 공제사업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일반공제를 필두로 한 18개 공제기관들은 설립근거법에 「보험업법」 적용제외 조항을 둠으로 명시적으로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그 외에 대부분의 공제들은 주무부서의 행정지도와 지휘·감독을 받음에 따라 「보험업법」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

■ 공제기관은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기초하여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도 별도의 허가를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주체는 공제사업의 허가를 내린 주무부서가 담당하나, 일부 대형 공제를 제외하고는 감독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공제조합 정관에는 목적과 명칭,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출자 1계좌 금액과 출자 방법, 자산 및 회계,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 처리 등을 기재하고 있음.
- 공제상품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외부기관의 상품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뿐만 아니라 예정기초율(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이나 현금흐름방식의 개념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음.
- 상품개발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보험권의 보험상품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임.
- 대부분의 공제기관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 경영실태평가제도, 적기시정조치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가 불비함.
- 더불어 공제기관은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미비하여 보험회사에 비해 재무구조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함.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로써 일부 공제기관은 조직내부에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공시제도는 대부분 실시되지 않고 있음.

3. 공제사업 규제·감독상 문제점



가. 소관부처 감독 여력 및 전문성 부족

- 공제사업 규제·감독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문제점은 공제사업을 관리하는 소관부처 감독 여력이 극히 부족하고, 공제사업(보험업)에 대한 전문지식도 전무하다는 것임.
- 최근 공제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제사업에 대한 규제·감독권은 각 주무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개별 부처 과 수준에서 소수 인원에 의해 공제에 대한 감독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함.
 - 즉, 소수 인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 전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갖고 있기 어렵고, 더구나 정책업무와 검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로 대표되는 정책, 감독 및 검사업무가 분화되어 수행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세분화하여 인력 및 조직을 갖춘다면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도 대형 보험회사와 비슷한 일반공제 조차도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감독규정을 최근어야 보험업 수준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
- 안행부 새마을금고지원단의 감사 인력⁷⁾과 자동차공제인 6개 육운공제의 국토부 담당직원⁸⁾은 각각 3명에 불과하며, 수협공제의 경우에도 과장 1인과 사무관 1인이 수협중앙회 공제분사 본체 및 500여 개의 점소를 대상으로 정책업무, 감독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⁹⁾

나. 재무건전성 등 관리·감독체계 미흡

■ 공제사업은 생·손보간 경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은행업무와도 경영되고 있어 보험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가 취약함.

- 이러한 사업구조의 경우, 비용효율성은 높을 수 있으나, 위기 시 리스크 전이가 쉽게 이루어져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은 건전성 규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주무부처 감독이 충분치 못하여 부실경영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전문인력 및 관리시스템이 부족하고 체계적 위험관리에 대한 규제·감독 부재로 조합원 및 피공제자의 피해 가능성이 큼.
 - 공제사업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준비금 또는 부채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수적이거나, 현재 국내 공제회 중 상당수가 필요 준비금 개념 자체를 정확히 반영하거나 산출하지 못하고, 단기적 지불금 규모만을 감안하는 수준임.
 - 해운조합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제요율을 정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을 대부업 자금으로 운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⁰⁾
 - 경찰공제회는 급여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3%p나 높아 회원에게 지급할 적립금이 줄고 이를 보전하는 것이 역부족인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¹¹⁾

7) 아시아투데이(2014), “[금융치외법권을 없애라]②새마을금고 공제”, 2014. 3. 27, <http://www.asiatoday.co.kr>.

8) 교통신문(2014), “손해배상평가원 설립 추진에 업계 반발”, 2014. 4. 8, <http://www.gyotongn.com>.

9)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 7, p. 118.

10) 아시아투데이(2014), “대부업도 제 멋대로 운영하는 감독사각 해운조합”, 2014. 5. 7, <http://www.asiatoday.co.kr>

11) 서울경제(2013), “8개 공제회 높은 이자율 내려라’ … 구조조정 칼 뺐다”, 2013. 11. 5, <http://economy.hankooki.com>.

- 이와는 달리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정기(또는 부정기) 검사를 받고 있음.

다. 공제가입자 보호장치의 미흡

■ 공제계약 관련 분쟁발생 시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큼.

- 일부 대형공제의 경우 기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공제금 지급에 관한 분쟁발생 시 공제기관 측에 유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그나마 대부분의 공제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분쟁을 처리하는 실정임.
- 민영보험회사의 경우 민원 발생시 민원인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한편, 일반공제나 일부 대규모 공제는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여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제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부재

4. 공제사업 규제 관련 해외사례



■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민영보험과 동일한 법적 규제와 감독권이 행사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에서는 보험 기능을 갖는 사업은 그 영위주체(보험사, 공제조합 등)에 관계없이 보험 감독당국에서 일괄하여 감독
- 사업허가, 모집활동, 재산운용, 책임준비금 등의 부문에 대해 사전, 사후적인 감독이 민영 생보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음.
- 우체국 보험의 경우 일본은 우정대신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대만은 주무 부처인 통신부가 아니라 재정부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함.

■ (미국) 공제나 협동조합의 보험사업은 본질적으로 민영 보험사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보험업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

-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는 주 보험감독청이 행사하고 있는데 책임준비금 규제, 분리계정 운영, 자산운영 규제, 공시 등에 있어서도 민영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
 - 미국의 비영리 보험조직으로는 우애조합, 리스크교환조합, 자선기부연금, 복수고용주복지후생제도, 리스크보유단체 등이 있으며, 이들 보험조직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각 주의 보험법 및 공제조합법, 비영리회사법, 내국세법 등임.
- 우선 각 주 차원에서는 보험법과 공제보험법이 공제조직을 규율할 수 있음.
 - 예컨대, 텍사스 주 보험법상의 보험회사의 범주에는 리스크교환조합, 우애조합이 포함되어 규제를 받고 콜로라도 주의 경우 비영리회사법 공제를 규율

■ (영국) 1982년 공제조합법에 의해 공제의 보험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장기보험, 손해보험, 비보험에 대해 경영을 금지함.

- 공제에 대한 감독은 재무성이 구성하는 공제조합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지급여력 등의 건전성 감독과 검사 실시
 -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장기보험은 매년, 손해보험은 3년에 1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임점검사는 보험회사와 동일
- 금융감독 기능 통합을 위해 2001년 공제에 대한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청에 이관
 - 2001년 10월에 사회적 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관리 및 여러 부문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8개의 작업단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살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
 -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 성공전략’을 공표,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법 제정, 재정지원, 우수 사회적기업체 표창 등을 지원

■ (일본) 국내 보험환경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공제에 대한 감독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에 「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허용하여 2008년부터 근거법 없는 공제를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함.

- 일본에서는 협동조합의 공제사업과 공제회의 공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제라는 명칭 하에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국공제농협조합연합회,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생

활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대규모 공제를 중심으로 발달함.

- 일본경제의 버블기인 1990년대 후반에 무인가공제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 공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게 됨.

● 공제가 「보험업법」의 소액단기보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보험업에 해당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음.

- 한편 2008년에는 기존의 상법 ‘보험편’을 분리하여 보험법을 제정,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제계약 등을 포함시켜 보험계약 일반이라고 함에 따라 보험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이 가능해짐.

5. 공제사업 감독강화 필요성



■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과 동일한 규제·감독을 적용하는 것은 전세계에 공통되는 추세로서, 우리나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보험업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사업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역사적 요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음.¹²⁾

● 그러나 이제는 공제사업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첫 단계로서 공제사업의 규제·감독체계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제사업 감독위원회는 가장 큰 필요성으로는 감독사각지대 등 실질적 감독 미흡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제사업과 보험업 간의 불공정성, 공제기관 부실 시 해당 산업의 파탄 및 국가재정 소요 가능성,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 등을 들 수 있음.

가. 공제사업에 대한 실질적 감독 미흡

■ 이미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전국교수공제회 사건 이외에도, 2014년 한해에만 해도 다수의 공제기관 관련 사건들이 끊임없이 신문제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바, 이는 공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12) 김정주(2013), p. 3.

- 한국교직원공제회 배임 사건¹³⁾, 군인공제회 뇌물 사건¹⁴⁾, 건설폐기물공제조합 지원금 전용 사건¹⁵⁾,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실 자산운용 사건¹⁶⁾, 상조공제의 부실 담보금 사건¹⁷⁾, 세월호 사건 이후 나타난 해운조합 관련 사건 등이 그것임.
- 공제가 감독부실로 파산하게 될 경우, 동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사들은 동일 산업에 있는 기업들로서 공제 담보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산업 전체가 공멸하는 사태까지도 이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공제기관의 현황조차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공제가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보호에도 공백이 우려되는 상태임.

- 이는 공제사업 허가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감독도 공제기관에 따라 해당 부처의 담당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 특히, 무허가 공제의 경우는 부처 간 감독 공백에 따른 관리소홀로 보여지며, 그에 따라 관련 업계 및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이를 통합적 관리체계하에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규제·감독 다원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불공정성 심화

■ 보험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법률 및 감독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감독비용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함.

-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방식·기준도 공제기관별 소관 법령에 따라 상이하여 통일된 감독기준이 부재
- 이에 따라 감독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보험·공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감독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상존함.
 -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유럽,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 기능을 갖는 사업은 그 영위주체(보험사, 공제조합 등)에 관계없이 보험감독당국에서 일괄하여 감독하고 있음.

13) 아시아경제(2014), “檢, ‘10억 배임’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전 투자팀장 기소”, 2014. 8. 21, <http://view.asiae.co.kr>.

14) 동아일보(2014), “사기혐의도 눈감는 ‘軍피아’ 군인공제회”, 2014. 7. 28 A12면3단.

15) 국제뉴스(2014), “건설폐기물공제조합 지원금 개인용도 전용 논란?”, 2014. 6. 16, <http://www.gukjenews.com>.

16) 매일경제(2013), “공제회 운용의 충격적 실상”, 2013. 10. 16 A25면3단.

17) 아시아투데이(2014), “상조업 공제조합 부실 운영”, 2014. 10. 20, <http://www.asiatoday.co.kr>.

- 공제에 대한 규제·감독이 보험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양자 간에 규제차익이 발생하거나 경쟁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다. 공제기관 부실로 인한 해당 산업 파탄 및 국가재정 소요 가능성

- 최근 들어 세계는 빠른 금융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 대부분의 공제기관은 재무건전성 악화 같은 금융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어오고 있음.
- 매일경제신문이 2013년 주요 27개 공제기관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총자산은 412조 원으로 국민연금(430조 원)과 비슷하지만 자산운용 관리체계, 운용성과, 투자 포트폴리오 등에서는 많은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¹⁸⁾
 - 대부분 운용수익률은 보장수익률에 못 미쳤고,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27곳 중 16곳이 낙제점을 받았음.

- 공제기관이 감독소홀로 부실화될 경우, 해당 구성원(개인 또는 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제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소비자에게 약정된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당해 공제기관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음.
 -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 가입회원 9,643명 중 14.4%에 불과한 1,395명만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음.¹⁹⁾
 -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적었음에도 소관부처가 이를 방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일부 공제기관의 경우에는 공제기관 부실 시 국고지원 등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때도 있어 공제기관 부실화의 피해는 전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
 - 교직원·군인·경찰·지방행정공제회 등 8대 공제회는 결손이 났을 때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18) 매일경제(2014), “[사설] 정부는 공제회 감독, 결손지원제 확 뜯어고치길”, 2014. 7. 7, <http://news.mk.co.kr>.

19) 신아일보(2014), “[2014 국정감사] 상조업 공제조합은 ‘부실덩어리?’”, 2014. 10. 21, <http://www.shinailbo.co.kr>.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선진금융기법들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 등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

- EU상공회의소, 美상공회의소 및 외국사 등이 공제사업의 불공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상존함.

-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조합 등은 동일 창구를 통해 은행·보험의 겸업 및 생·손보 겸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세제혜택이 존재하여 타 금융회사와의 가격 및 시장경쟁에서도 앞서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외국보험사의 지속적 애로사항 표출
- 이에 2013년 5월 9일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유사보험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금융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우체국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보험업과 동일한 규제·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12. 3. 15. 발효) 및 한·EU FTA(11. 7. 1. 발효) 협정서의 주요 골자는 보험서비스 규제로 인한 협동조합 판매 보험에의 경쟁상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임. [kiri](#)

〈표 4〉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관련 FTA 주요 내용

[한·EU FTA(2011. 7. 1. 발효): 부속서 7-라(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 7. 보험 서비스에 관한 규정으로 경쟁상의 우위 제공 금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
- 8. 발효 후 3년 이내에 3대 공제의 보험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위원회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

[한·미 FTA(2012. 3. 15. 발효): 부속서 13-나(구체적 약속)]

◆ 제6절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인한 경쟁상의 혜택 제공 금지
-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동일한 규범을 적용
- 금융위원회가 규제감독권 행사: 최소한 3년 이내에 지급능력사안이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

4. 거시금융 및 기타

- | | |
|---------------------------------------|---------|
| 1.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 | 동향분석실 |
| 2. 미국 MMF 규제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
| 3. 복합점포 활성화의 득과 실 | 전용식 황진태 |
| 4. 중국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혁 (C-ROSS) 영향과 전망 | 김해식 이경아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

동향분석실

요약

- 1990년 이후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과 고평가된 환율, 그리고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음.
-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시작됨에 따라 특히 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Fragile 5)로 평가됨.
-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과 Fragile 5 간의 경제 펀더멘털을 비교한 결과 총외채/외환보유액을 제외하고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은 경제 펀더멘털 취약에 근거함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Fragile 5 외환위기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의 경우 악화되고 있는 경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낮게(통화가치 고평가)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충격에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Fragile 5의 경우 환율이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음.
 - 둘째, 과거와 달리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예측가능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과 Fragile 5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외채 비중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수출 기업의 환위험 헤지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문제가 없음.
-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시기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및 이의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거시금융 및 기타

1. 검토배경



■ 2008년 미 연준(Fed)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2013년 5월부터 양적완화정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부터 양적완화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함.

- 미 연준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자 2008년 11월부터 3차에 걸쳐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함.
- 2013년 5월 버냉키 당시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정책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2013년 12월 미 연준은 2014년 1월부터 양적완화(자산매입) 규모를 월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결정함.
- 또한 2014년 1월 미 연준은 2월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다시 6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추가 축소하기로 결정함.

■ 1990년 이후¹⁾ 미 연준이 1994년, 1999년, 2004년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시기 일부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 본 고에서 외환위기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외채상환이 어려워지는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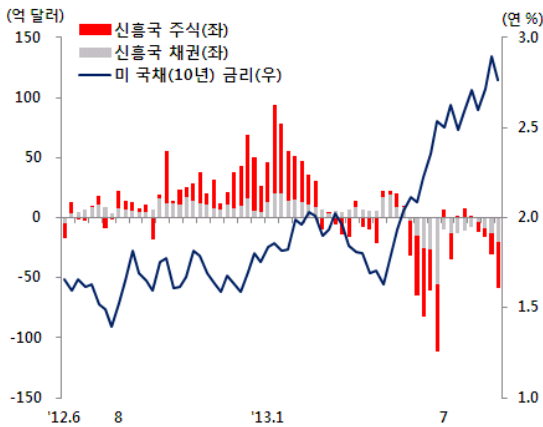
- 미 연준은 1994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책금리를 3.0%에서 6.0%로 인상하였으며, 이 시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함.
 - 1997년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5.25%에서 5.5%로 인상하였고, 이 시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한국 등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는데, 금리 인상폭이 매우 작아 외환위기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음.
 - 오히려 1994년부터 1995년 동안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들 국가의 외환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미 연준은 자산가격 거품을 우려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정책금리를 4.75%에서 6.5%로 인상하였으며, 이 당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함.
- 미 연준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정책금리를 1.0%에서 5.25%로 인상하였으나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에 선제적으로 시그널을 보냈고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신흥국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았음.

1)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1982년 멕시코와 브라질이 외환위기를 경험한 사례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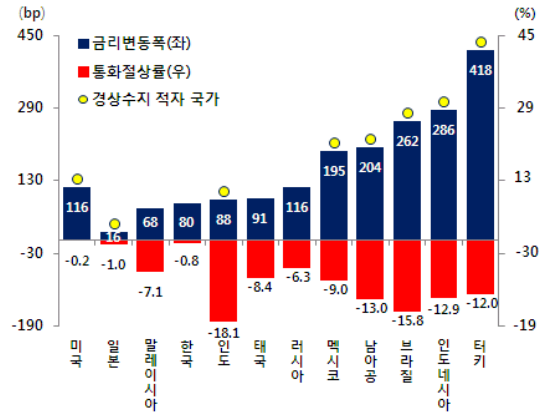
■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축소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금융시장 모두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신흥국 중 특히 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5개국(Fragile 5)의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가능성 시사만으로도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급등하였고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었는데, 특히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의 금리 및 환율이 크게 상승(통화가치 하락)하였음(〈그림 1〉과 〈그림 2〉 참조).

〈그림 1〉 신흥국 자금 유출입 추이



〈그림 2〉 신흥국의 금리 및 통화절상을 추이



자료: 한국은행(2013).

● 이 당시 인도, 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 중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로 인해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Fragile 5)로 평가되고 있음.

- Fragile 5의 환율은 양적완화정책 축소 논의가 시작된 2013년 5월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2014년 2월 3일 기준으로 통화가치가 2013년 초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였음.
- Fragile 5의 주가지수의 경우에도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시사된 2013년 5월과 양적완화정책 축소 가능성이 크게 부각된 8월 사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2014년 들어서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음.
- Fragile 5의 국채수익률도 2013년 5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시작된 2014년 1월부터 일부 국가들은 상승세가 가속화됨.

- 본고는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와 Fragile 5의 경제 펀더멘털을 비교하여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함.
-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한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함.

2.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 사례



- 1990년대 들어 외환위기를 경험한 신흥국가는 우리나라(1997년)를 비롯하여 멕시코(1994년)²⁾, 아르헨티나(1994년, 2001년), 태국(1997년), 인도네시아(1997년), 러시아(1997년), 브라질(1999년) 등이 대표적임.
- 이들 국가의 경우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짐에 따라 외채상황이 어려워지고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음.
- 외환위기 발생 전에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제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 이들 국가의 외환위기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와 위기의 전염(Contagion)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빈번함.
- 멕시코의 해외자본유입 촉진정책, 태국의 자본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정책, 인도네시아의 관리변동환율제도에 따른 민간부문의 취약한 환위험 헤지, 체제 전환 이후 러시아 금융기관의 외채 차입에 의한 단기수익 추구 등에 기인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가 외환위기를 초래하였음.
- 멕시코, 브라질의 경우 미국의 정책금리인상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러시아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인한 대외신뢰도 저하가 자본유출을 확대하여 외환위기를 발생시켰음.
-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우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도 자본유출을 확대시켜 외환위기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됨.

2) 멕시코는 1982년과 1987년에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음. 주된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포퓰리즘에 의한 재정 적자 확대, 환율 고평가 등으로 1994년 외환위기 원인과 동일함.

〈표 1〉 외환위기 원인 비교

| 국가 | 발생 시기 | 경제정책 | 경제펀더멘탈 | 정치/사회 상황 | 환경 요인 |
|-------|-------|---|--|----------------------------------|----------------------------|
| 멕시코 | 1994 | 해외자본 유입을 위한 페소화 고평가정책 | 경상수지 적자, 재정건전성 악화로 자본유출 |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 불안 | 94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
| 아르헨티나 | 1994 | 90년대 초반 성장세 지속 노동법개정, 사회보장 축소 공기업 민영화 | 경상수지 적자 지속과 대외채무 증가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실업 증가 | 멕시코 외환위기 발생의 영향 |
| | 2001 |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적자 | - | - |
| 인도네시아 | 1997 | 97년 이전까지 관리변동환율제 유지 | 관리변동환율제로 인한 환위험 헤지 미비 외채과다 및 민간부문의 외화표시 채무 과다 | - | 94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
| 태국 | 1997 | 자본유입 촉진을 위한 고정환율제 유지 | 바트화 고평가 92년 자본자유화 이후 해외자본의 주식/부동산 시장 유입 자산가격 거품 및 과잉투자 | - | 94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
| 러시아 | 1997 | 95년부터 긴축정책으로 루블화가치 안정 루블화가치 안정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 | 경기둔화 재정적자 확대 대외부채 증가 | 소련에서 러시아로의 체제 전환 |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신뢰도 저하 |
| 브라질 | 1999 | 브래디플랜으로 대외채무 탕감/ 만기연장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긴축정책 전환과 경기위축 |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 | 높은 실업률 수준에서 사회보장법 개혁으로 정치적 불안 고조 | 아시아 외환위기 99.6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

주: 자세한 내용은 〈별첨〉 1990년대 금융위기 사례 참조.

■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펀더멘탈, 특히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외채가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외화유동성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임.

● 이들 국가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평균 4%에 달하였고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총외채 규모도 평균 6배 수준을 보임.

〈표 2〉 외환위기 경험국들의 위기 발생 1년 전의 경제 펀더멘털 비교

| 구 분 | 멕시코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인도네시아 | 태국 | 러시아 | 평균 |
|--------------|-------|-------|-------|-------|-------|-------|-------|
| GDP성장률(%) | 2.62 | -0.79 | 0.04 | 7.80 | 5.90 | 1.40 | 2.83 |
| 소비자물가상승률(%) | 9.76 | -0.94 | 3.20 | 8.40 | 5.80 | 14.80 | 6.84 |
| 재정수지/GDP(%) | | | | -1.16 | -2.75 | | -1.96 |
| 경상수지/GDP(%) | -4.59 | -3.15 | -3.94 | -3.20 | -7.90 | 0.00 | -3.80 |
| 총외채/외환보유액(배) | 5.20 | 5.85 | 5.68 | 7.07 | 2.99 | 10.28 | 6.18 |
| 단기외채/총외채(%) | 28 | 19 | 12 | 25 | 42 | 5 | 22 |

자료: IMF, World Bank.

- 구매력까지 고려한 실질실효환율 추이를 보더라도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오히려 낮아지는(실질통화가치 상승) 모습을 보였고, 외환위기 발생 직전부터 급등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 환율 움직임이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라 위기 발생 직전까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심화되었음.
 - 펀더멘털과의 괴리로 인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 대외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음.

〈그림 3〉 외환위기 경험국 실질실효환율 추이



주: BIS에서 발표한 실질실효환율의 역수를 2010년 평균이 100이 되도록 지수화함.
 자료: BIS, 보험연구원.

3. Fragile 5의 펀더멘탈과 비교



- 현재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에 따라 외환위기 가능성이 우려되는 Fragile 5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는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임.
-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수준이 3.8% 정도인데 반해 터키, 남아공, 인도의 경우 동 수준을 초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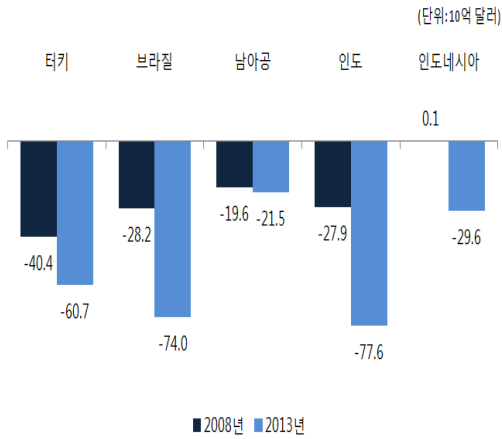
〈표 3〉 Fragile 5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최근 2개년 평균)

| 구 분 | 경험국 평균 | 터키 | 브라질 | 남아공 | 인도 | 인도네시아 | 한국 |
|--------------|--------|-------|-------|-------|-------|-------|------|
| GDP성장률(%) | 2.83 | 3.00 | 1.70 | 2.27 | 3.52 | 5.76 | 2.40 |
| 소비자물가상승률(%) | 6.84 | 8.30 | 5.88 | 5.75 | 10.66 | 5.76 | 1.75 |
| 재정수지/GDP(%) | -1.96 | -1.94 | -2.83 | -4.86 | -8.22 | -1.92 | 1.65 |
| 경상수지/GDP(%) | -3.80 | -6.72 | -2.89 | -6.17 | -4.60 | -3.08 | 4.21 |
| 총외채/외환보유액(배) | 6.18 | 3.64 | 1.17 | 2.91 | 1.32 | 2.23 | 1.28 |
| 단기외채/총외채(%) | 22 | 28 | 9 | 19 | 24 | 17 | 33 |

자료: IMF, World Bank,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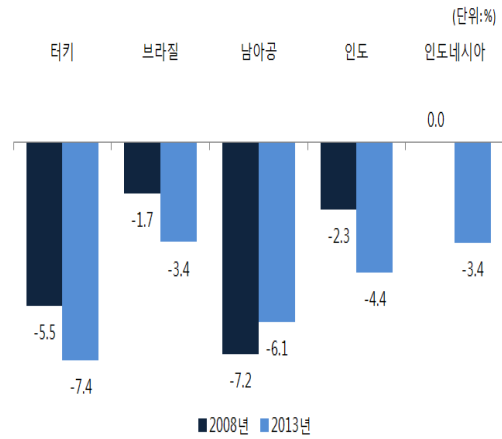
-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들 5개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8년에 비해 확대되었음.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의 경우 남아공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확대되었으며, 남아공도 6%를 초과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4〉 경상수지 적자규모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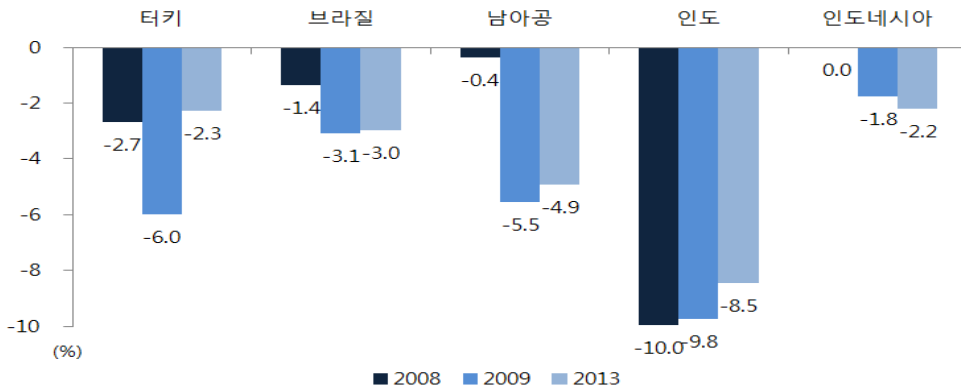
〈그림 5〉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



자료: IMF.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된 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남아공과 인도의 경우 4.9%, 8.5%로 5개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6〉 Fragile 5의 GDP 대비 재정수지



- 대외채무는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터키의 경우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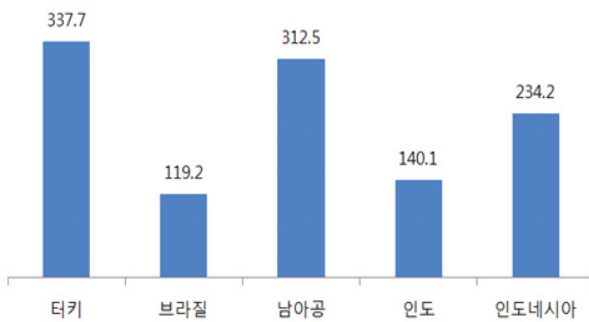
- 외환위기 경험국의 총외채/외환보유액은 위기발생 직전년도에 6배를 초과하였으나 Fragile 5의 경우 터키와 남아공만이 3배를 넘어섰음.

- 총외채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외환위기 경험국 평균이 22%인데 터키와 인도가 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단기외채/외환보유액의 경우 터키가 100%를 초과하고 있어 이들 국가 중 외화유동성 충격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임.

〈그림 7〉 5개 신흥국 총외채/외환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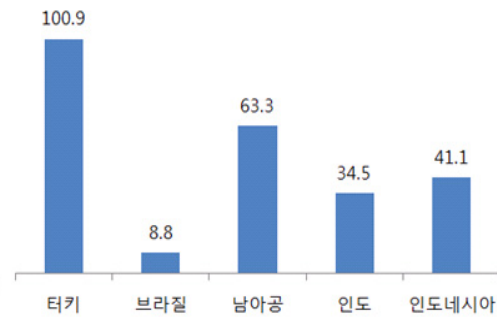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orld Bank.

〈그림 8〉 5개 신흥국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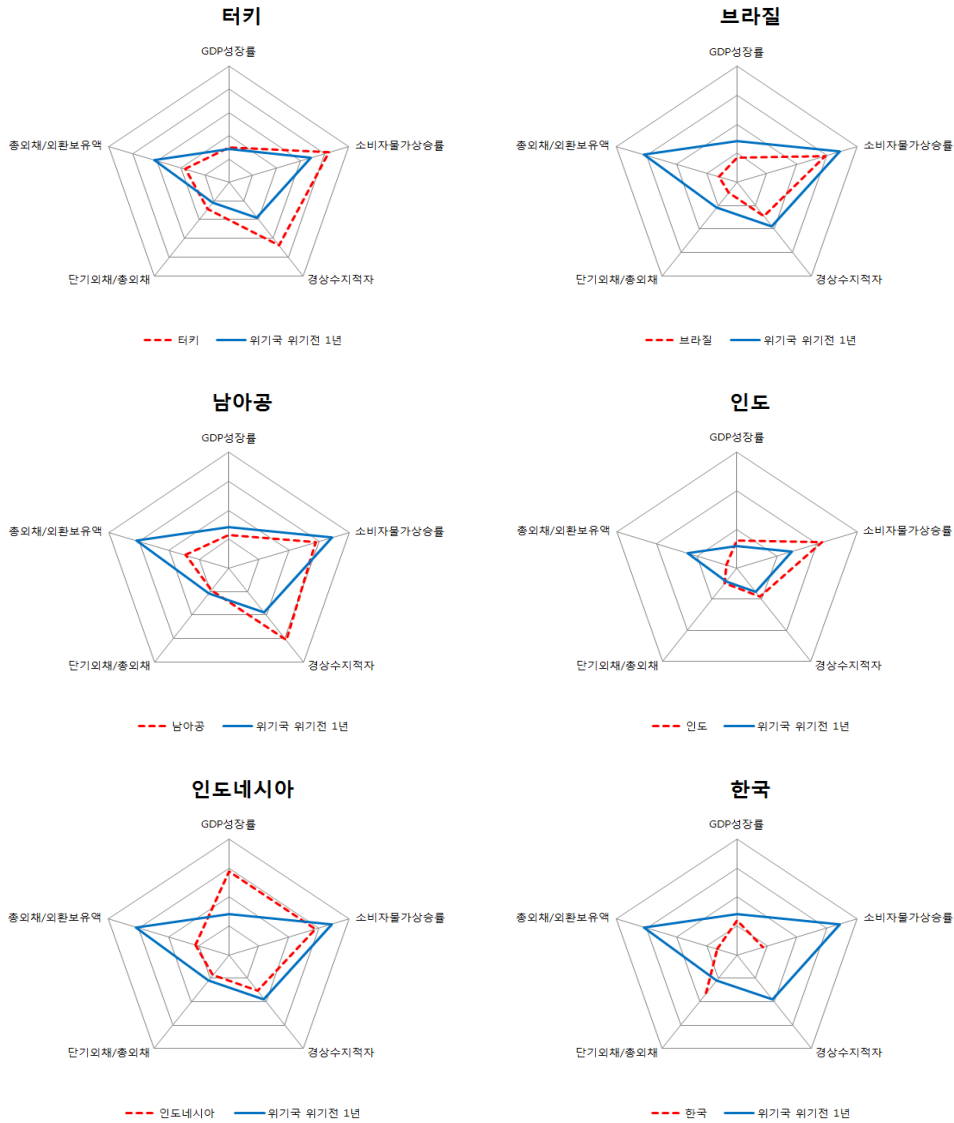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 이러한 모습은 Fragile 5개국 각국과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과의 비교에서 잘 나타남.

- 〈그림 9〉에서 실선은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의 위기 발생 1년전 경제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으며, 점선은 Fragile 5의 2년 평균 펀더멘털임.

〈그림 9〉 Fragile 5개국 및 우리나라와 과거 금융위기 경험국과의 비교



■ 터키 경제의 펀더멘털은 경제성장률과 총외채/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보다 취약한 상태임.

- 브라질은 경제성장률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보다 펀더멘털이 양호함.
- 남아공은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
- 인도는 경제성장률은 양호하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단기외채 비중, 경상수지 적자 비중 등에서 펀더

멘털이 좋지 않음.

- 인도네시아는 모든 부분에서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보다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과 단기외채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에 비해 매우 양호함.
 - 우리나라는 Fragile 5와 달리 경상수지가 막대한 흑자를 보이고 있어서 <그림 9>에서 경상수지 적자 비중 부분 표시가 빠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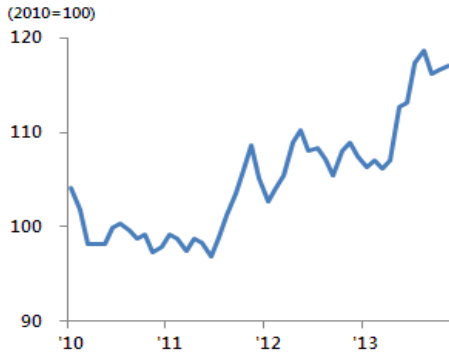
■ 이처럼 Fragile 5 경제의 펀더멘털은 외환위기 경험국의 외환위기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외환보유액 대비 총외채는 양호하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은 경상수지 적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과거 금융위기 경험국가와는 달리 Fragile 5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의 움직임이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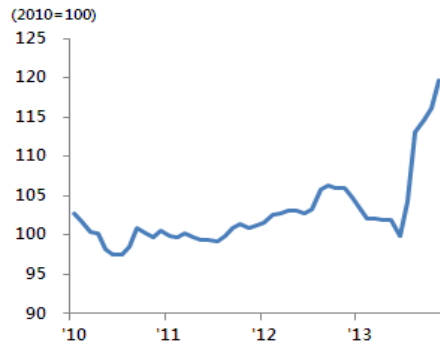
-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외환위기 발생 직전까지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평가되어 있었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락하던 Fragile 5의 실질실효환율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부각되기 훨씬 이전인 2011년을 전후하여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환됨.
 - 이는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이 환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과 비교해 볼 때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에 따라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보임.

〈그림 10〉 Fragile 5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그림 10-1〉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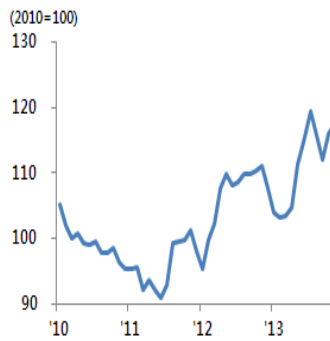
〈그림 10-2〉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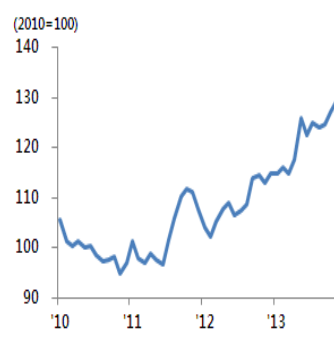
〈그림 10-3〉 터키



〈그림 10-4〉 브라질



〈그림 10-5〉 남아프리카공화국



주: BIS에서 발표한 실질실효환율의 역수를 2010년 평균이 100이 되도록 지수화함.
 자료: BIS, 보험연구원.

■ 현재 이들 국가는 금리를 인상하여 자본유출에 대응하고 있는데, 경제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터키가 5.5%p 인상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4〉 Fragile 5의 금리인상 추이

| 구 분 | 터키 | 브라질 | 남아공 | 인도 | 인도네시아 |
|---------------|------------------|-----------------|-----------------|------------------|-----------------|
| 금리인상시기 | 2014. 1월 | 2013. 9월 | 2014. 1. 29 | 2014. 1월 | 2013. 9월 |
| 인상폭 (현재수준) | 5.5%p (10.0%) | 0.5%p (9.0%) | 0.5%p (5.5%) | 0.25%p (8.0%) | 0.5%p (7.5%) |

4. 시사점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Fragile 5 경제의 펀더멘털과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위기 발생 1년전의 펀더멘털을 비교한 결과 총외채/외환보유액을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은 펀더멘털 취약에 근거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이 더욱 악화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 이들 국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도록 환율정책을 가져가는 한편, 금리 인상을 통해 자본유입 유인을 높이고,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 등으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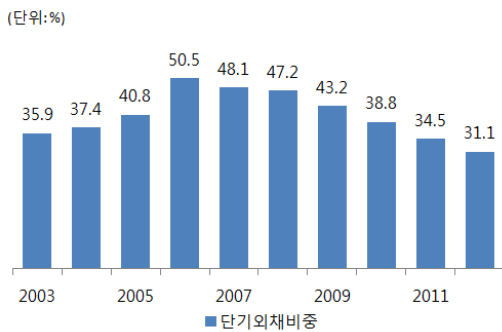
- 그러나 Fragile 5의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Fragile 5의 경우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해짐에 따라 통화 가치가 하락해 왔기 때문에 투기적 공격 등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의 경우 통화가치를 위기 발생 직전까지 높게 유지함으로써 투기적 공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음.
 - 둘째, 미국의 통화정책의 경우 과거에는 시장이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시장과의 소통 등으로 시그널을 주는 등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에 대비할 수 있음.
 - 2004년에서 2006년간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4.25%p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 이렇다할 충격이 없었음.
 - 엘렌 신임 미 연준 의장도 양적완화정책 축소에도 초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언급함.
 - IMF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에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펀더멘털은 상당히 양호하고 Fragile 5와의 교역량도 크지 않아 이들 금융시장 불안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반응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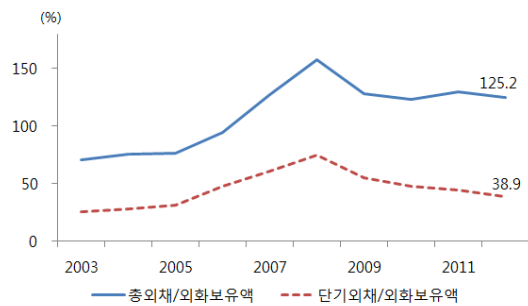
- Fragile 5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편이나 단기외채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단기외채도 대부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에 대해 금융기관이 단기차입에 의해 현물환을 매도하는 등 환위험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님.

〈그림 11〉 한국 단기외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한국 외환보유액 대비 총외채/단기외채 비율



자료: 한국은행.

- 2013년 브라질과의 교역량은 우리나라 교역량의 1.4%에 불과하고 인도네시아 2.3%, 인도 1.6%로 매우 미미함.
- 1990년대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주가 및 원화가치는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이후부터 미국의 긴축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미치지 못하였음.
 - 2004년 이후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 시기에 우리나라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절상되었음.
 - 미국 역시 장기채권 수익률이 정책금리 인상(4.25%p)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미 연준의 경우 시장의 소통 확대로 인해 통화정책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음.

〈표 5〉 정책금리 인상기 및 미국 국채수익률 급등기의 한국과 미국의 금융지표 변동

| 시 기 | 원인 | 미국 | | | 한국 | | |
|-------------------------|--------------------------|-----------------------------|-----------|--------------|-----------------------------|-----------|---------------|
| | | 국채 ¹⁾ 수익률(bp) | 주가 (%) | 달러 인덱스(%) | 국채 ¹⁾ 수익률(bp) | 주가 (%) | 원/달러 환율(%) |
| 1994.2.4~ 1995.2.1 | 정책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 | 179 | -0.62 | -9.27 | - | -4.03 | -2.97 |
| 1997.3.1~ 1997.3.30 | 정책금리 인상 (일본 엔화 약세) | 36 | -1.99 | -0.21 | - | -1.38 | 4.03 |
| 1999.6.30~ 2000.5.16 | 정책금리 인상 | 64 | -0.33 | 8.23 | - | -15.43 | -3.86 |
| 2001.11.1~ 2002.4.1 |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01. 11) | 119 | 11.86 | 2.81 | 150 | 60.97 | 2.20 |
| 2004.6.30~ 2006.6.29 | 정책금리 인상 | 51 | 7.47 | -3.90 | 69 | 62.19 | -16.62 |
| 2013.5.2~ 2013.12.31 | 미국 재정 불안 QE3 조기종료 우려 | 140 | 11.77 | -2.66 | 43 | 2.77 | -4.70 |

주: 1) 미국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 기준, 한국은 3년 만기 국채 금리 기준. 한국의 경우,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0년 8월 부터 제공되어 이전의 국채금리 변동은 생략함.

2) 정책금리 인상 시기의 경우 정책금리 인상일 전일의 국채수익률, 주가, 환율과 마지막 정책금리 인상일의 국채수익률, 주가, 환율을 비교함.

자료: Bloomberg.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계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주체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대될 수 있어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kiri](#)

별첨: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의 사례



- 멕시코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포퓰리즘에 의한 재정 건전성 악화 등 펀더멘탈이 부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폐소화의 고평가 정책을 유지하였는데, 대통령 선거 이전의 정치적 불안 고조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1994년 해외자본 유입이 중단되어 외환위기가 발생함.
 - 1994년 멕시코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6%까지 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 적자와 저조한 저축률에 의한 자금 부족을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대규모 해외차입을 통해 보전함.
 - 치아파스 주의 농민반란과 제도혁명당(PRI)의 대통령 후보 꼴로시오가 암살되는 등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
 - 미 연준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정책금리를 3%에서 6%로 크게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신흥국들의 금리도 경쟁적으로 상승하여 멕시코에 유입되었던 해외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함.

- 현재 사실상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1994년과 2001년 1994년의 멕시코와 같은 이유로 외환위기가 발생함.
 - 1990년대 초반 메넴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개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등 경제가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에 의한 대외채무가 증가하고 멕시코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어 1994년 외환위기가 발생함.
 - 메넴 정권은 노동법을 개정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공기업을 민영화 하거나 외국에 매각함.
 - 이러한 노력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지만 대외채무의 증가, 폐소화 고평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 펀더멘탈이 악화됨.
 - 공기업의 매각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불안이 심화되었고 경제성장률이 1992년을 정점으로 둔화됨.
 -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가 남미 국가로 확산되면서 아르헨티나도 자본이 유출되는 등 위기가 발생함.
 - 197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외채부담이 감소하지 않았고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취약한 펀더멘탈로 인해 2001년 외환위기가 재발함.

- 아르헨티나의 경우 외채 상환일정 조정 및 단기차입을 통해 외환위기에 대응함에 따라 외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방만한 재정운영 등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확대되었고 교역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경상수지 적자 문제도 지속됨.

■ 1997년 태국의 외환위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식 및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해외자본과 바트화의 고평가로 인해 발생함.

- 1992년 정치적 안정기에 들어선 태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자본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해외자본 유입을 위한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함.
 - 태국에 유입된 외국자본은 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격 거품과 부동산 과잉투자가 발생함.
 - 이를 우려한 태국정부는 1994년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1995년 긴축적 금융정책을 실시함.
- 1996년 경기 둔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관련 회사의 파산과 부동산 대출관련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됨.
 - 이 시기에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던 해외자본 유입도 199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 경제의 펀더멘탈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로 인해 바트화가 고평가되었다고 인식됨에 따라 바트화에 대한 공격적인 투매가 발생하였고 외환위기가 발생함.

■ 1997년 태국의 외환위기가 전이되며 인도네시아 역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민간 발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환위험 해지였음.

- 인도네시아는 1997년 이전까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였고 매년 루피아화를 3~4% 평가절하함에 따라 환율 고평가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음.
 - 루피아화에 대한 평가절하는 관리변동환율제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위험이 예상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은행, 기업 등 민간부문은 외화표시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환위험을 해지를 하지 않았음.
 - 당시 인도네시아의 민간부문은 국내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낮은 외화표시 채무 보유 유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외채 규모도 상당하였음.
- 그러나 태국의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함에 따라 민간부문이 외화표시 채

무에 대한 환위험을 헤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달러화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루피아 환율이 급등함.

■ 러시아의 외환위기는 대외적으로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아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재정 건전성 악화, 경직된 환율시스템 등의 문제로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함.

- 러시아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의 급진적인 개혁을 실행하였고, 국제기구와 서방세계의 자문을 수용하여 1995년부터 긴축정책을 통해 루블화 가치를 안정시켰으나 이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었고 재정적자가 확대되었으며 대외부채가 증가함.
 - 루블화의 안정에 따라 러시아가 발행한 채권의 높은 수익률 때문에 해외 투기성 자금이 러시아로 대규모 유입됨.
 - 또한 당시 러시아 국내 은행들은 이자율이 낮은 단기 해외자본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었음.
- 태국의 외환위기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신흥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러시아 주가가 폭락하고 해외자본이 급격히 유출됨.
- 러시아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서방 세계의 지원이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미국식 모델과 긴축 재정 정책을 강요한 측면도 러시아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임.
 - 러시아 대외부채의 대부분이 구소련으로부터 승계된 것을 고려할 때 체제전환을 맞이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금융지원이 부족하였음.

■ 브라질은 1999년 막대한 대외채무와 GDP의 7%가 넘는 재정적자 등 경제의 펀더멘탈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갈등이 결합되어 외환위기가 발생함.

- 1980년대 초반 중남미 금융위기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브래디 플랜(Brady Plan)에 의해 브라질의 대외채무가 상당부분 탕감되었고, 만기가 연장되었으나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채가 누적되어 왔음.
 - 브라질 총외채는 1995년 GNI 대비 21.2%였으나 1999년 43.1%로 크게 증가함.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긴축정책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었고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보장법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국민과 야당의 반발이 야기됨.
- 브라질 경제의 과도한 외채규모와 재정적자와 더불어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주식 및 외환시장이 급격히 동요하며 금융위기가 발생함.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도 브라질의 외환위기에 영향을 미침.



미국 MMF 규제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 2014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 규제 권고안에 따라 Money Market Fund(이하 MMF) 규제 개혁안을 최종 승인함.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MMF가 금융위기 전염 경로로 작용하고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였다고 보고 금융위기 재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MMF 규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음(2012년 10월).
 - 동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①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 평가 방식을 현행의 고정(stable or fixed NAV) 방식에서 변동(floating NAV) 방식으로 전환, ② 금융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환매 수수료(redemption fee) 부과 및 환매 유예(redemption gate)에 관한 재량권 부여 등임.

- 우리나라도 국제 규제 권고안에 따라 MMF 규제 강화 조치를 2013년 10월에 단행한 바 있음.
 - MMF 규제 개정 주요 내용은 ①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또는 듀레이션) 한도 축소, ② 유동성 자산 비율 직접 규제 등임.

- 미국 MMF 규제 개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MMF 평가 방식을 현행 고정순자산가치 방식에서 변동순자산가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규제 개혁은 대량환매사태(펀드런) 발생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은 대량환매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유동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MMF 대량환매사태가 제한된 범위에서의 장부가격 보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대량환매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함.
 - 따라서 MMF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2014년 7월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부터 추진해 온 Money Market Fund(이하 MMF) 규제 개혁안을 통과시켰음.¹⁾
 - MMF는 주로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조달하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임.
 - 동 규제 개혁안의 목표는 투자자들의 대량환매요청(펀드런) 유인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있음.

- 이에 앞서 2012년 10월 국제증권감독기구(이하 IOSCO)²⁾는 MMF 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취약성 해소를 위해 7개 분야에 걸친 15개의 규제 권고안을 제시함.
 - G20 정상회의(프랑스 칸, 2011년 10월)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³⁾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shadow banking⁴⁾ 시스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5개 부분⁵⁾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인 MMF 규제 권고안 제시를 IOSCO에게 위임함.

- 이러한 MMF 규제 강화 조치는 MMF가 금융위기 전염 경로로 작용하고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책당국자의 인식에 따른 것임.
 -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MMF의 대량환매사태에 의해 확산되면서 미국 단기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기능이 마비되었음.

- 한편, 우리나라도 국제 규제 권고안에 따라 2013년 11월 MMF 규제 개혁 조치를 시행하였음.⁶⁾
 - 동 개정안은 미국의 MMF 규제 개혁 조치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목표(MMF를 통한 금융위기 전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을 보임.

1) SEC(2014, 7, 23), Release No. 33-9616, Money Market Fund Reform; Amendments to Form PF.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3) Financial Stability Board.

4) Shadow banking이란 규제영역 밖에 있는 신용중개 활동을 지칭함.

5) ①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 ② MMF 관련 규제, ③ 유동화 관련 규제, ④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관련 규제, ⑤ 기타 shadow banking 기관 관련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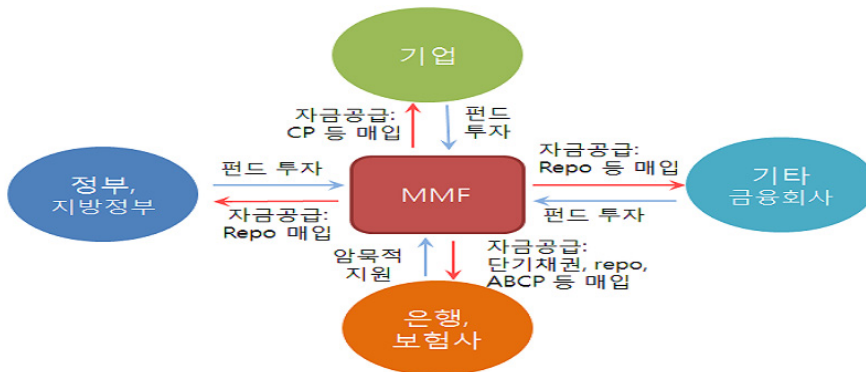
6) 금융위원회는 2012년 10월 「단기 자산운용상품 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MMF 규제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을 발표함. 이후 MMF 규제 개혁 조치로 2013년 10월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었고, 동 개정안이 2013년 11월부터 시행됨.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에 단행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MMF 규제 개혁을 상호 비교해 보고, 이로부터 미국 MMF 규제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MMF 규제 개혁의 배경

- MMF는 주로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조달하여 단기채권, CP⁷⁾, CD⁸⁾, 콜론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그림 1) 참조.
 - 수시입출금이 가능⁹⁾하고 단기간 예치해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음.
 - 단기금융시장 중에서 대표적인 여유자금 운용수단인 동시에 자금조달수단임.

〈그림 1〉 MMF 시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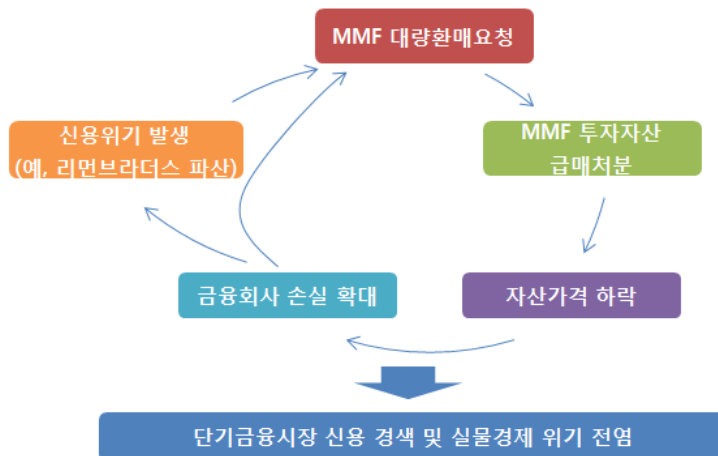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13. 1), 국제증권감독기구의 MMF에 대한 규제 권고안.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MMF가 금융위기 전염 경로로 작용하여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였음 (〈그림 2〉 참조).

7) CP(Commercial Paper)는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된 어음형식의 단기 채권임.
 8) CD(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임.
 9)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가격제도(익일 거래제도)를 채택함. 다시 말해서, 펀드를 매수하거나 환매(해지)할 때 투자자의 매수, 환매 신청 이후에 산출된 기준가격(매수 및 환매 신청일의 다음날)을 적용하여 매수, 환매를 함.

- 금융위기 이전 MMF는 신용도와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만 편입되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빠르게 성장하였음.
 -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창출하므로 MMF 순자산가치가 액면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¹⁰⁾
- 하지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신용위기 발생¹¹⁾ → MMF 대량환매요청¹²⁾ → MMF 투자자산 혈값 매각 → 자산가격 하락 및 금융회사 손실확대 과정¹³⁾을 통해 금융위기가 전염
- 당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이하 연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염되는 것을 우려해 긴급지원제도¹⁴⁾를 도입

〈그림 2〉 MMF를 통한 금융위기의 전염 경로



■ 이후 IOSCO는 MMF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에 걸친 15개의 규제 권고안을 제시하였음(〈표 1〉 참조).

10) 자세한 설명은 3장(미국 MMF 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 참고.

11)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동 사의 CP를 보유했던 거대 MMF인 Reserve Primary Fund의 순자산가치가 액면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

12) 다른 기업 CP에 대한 지급불능 우려가 확산되면서 MMF 투자자들은 대량으로 자금인출을 요청.

13) CP, CD 등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이에 따라 MMF의 자산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의 경색을 초래.

14) 미 재무부는 MMF Guarantee(원금상환보장)조치를, 미 연준은 Money Market Investor Funding(유동성 공급)조치를 각각 취하였음.

〈표 1〉 IOSCO의 MMF 규제 권고안

| 대분류 | 규제 권고안 |
|-----------------------|---|
| 일반 | ① 집합투자기구 규제체계 내에서 MMF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함 ② MMF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과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야 함 ③ 규제당국은 MMF와 유사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나 증권에 대해 엄밀히 모니터링해야 함 |
| 가치평가 | ④ MMF의 투자 포트폴리오 평가는 공정가치(fair value)를 바탕으로 해야 함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 방식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함 ⑤ MMF 가치평가 방식은 제3의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함 |
| 유동성 관리 | ⑥ MMF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설정해야 함 ⑦ MMF는 환매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급매처분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함 ⑧ MMF는 정기적으로 적절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⑨ MMF는 예외적 시장상황과 심각한 환매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함 |
| 고정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채택한 MMF | ⑩ 고정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MMF의 경우, 대량환매 및 선환매 이득효과 등의 위험을 완화하고, 동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내재화해야 함 변동순자산가치 평가방식(Floating Net Asset Value)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고정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safeguard)를 도입하여 펀드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시키고 대량환매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함 |
| 신용등급의 사용 | ⑪ MMF는 외부 신용등급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내부 신용 위험 평가 능력을 강화해야 함 ⑫ 감독기관은 신용평가기관이 MMF에 대한 신용평가방법을 더욱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규제해야 함 |
| 투자자 공시 | ⑬ MMF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함 ⑭ MMF는 가치평가와 관련된 관행과 위키시 적용 가능한 조치들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함 |
| Repo와 관련된 관행 | ⑮ 규제당국은 필요시 MMF의 Repo 시장 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자료: IOSCO(2012, 10), Policy Recommendations for Money Market Funds.

3. 미국 MMF 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



■ 최근 승인된 미국 MMF 규제 개혁은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하는 MMF 제도 및 관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개혁 조치를 도입¹⁵⁾

15)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2년간 유예함.

-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¹⁶⁾ 평가 방식을 현행의 고정(stable or fixed NAV) 방식에서 변동(floating NAV) 방식으로 전환
- 금융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환매 수수료(redemption fee) 부과 및 환매 유예(redemption gate)에 관한 재량권 부여

가. 변동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으로 전환¹⁷⁾

■ 개혁 이전의 MMF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인 고정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선환매자 이득 효과(first mover advantage)를 제공하여 대량환매사태 발생 유인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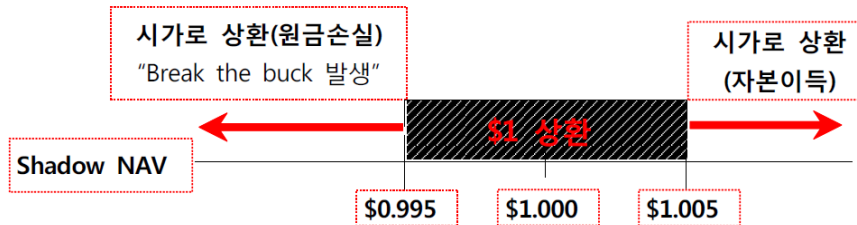
- MMF 설정 시 순자산가치를 장부가격인 1달러로 정하지만 환매 요청 시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1달러를 보장하기 때문에 선환매자 이득 효과가 존재(〈그림 3〉 참조)
 - 환매요청 시 순자산가치는 시가평가된 순자산가치(Shadow NAV)와 장부가격으로 평가된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에 의해 결정됨.
 - 예컨대 괴리가 0.5% 미만일 경우(Shadow NAV가 0.995달러~1.005달러)는 투자원금(1달러, 장부가격)을 상환¹⁸⁾해주며, 0.5% 이상 하락한 경우(Break the bucket)에만 시가평가된 순자산가치로 상환해줌.
 - 따라서 MMF 펀드의 손실이 자산의 0.5% (0.995달러) 이내일 경우, 투자자 환매 요청 시 펀드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주당 1달러를 환매해주기 때문에 먼저 환매할수록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짐.
 - 하지만, 이처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매가 늘어날수록 펀드의 실제 가치가 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남아 있는 투자자의 손실은 증대됨.
- 또한, 환매요청 시 MMF의 투자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매각하여 환매해 주기 때문에 고정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은 유동성과 관련된 선환매자 이득 효과를 제공
 - 시장 불안 시 먼저 환매를 요청한 고객들은 장부가격으로 평가된 순자산가치로 상환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들은 점차 비유동성 자산만 남게 되어 큰 손실을 봄.
- 따라서, MMF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불안 시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환매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는 대량환매요청을 유도함.

16) 펀드의 순자산 가치는 고객이 가입한 펀드에서 비용을 제외한 자산을 주수로 나눈 순수한 자산 가치를 말하며 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임.

17) 기관투자자펀드(국채전용펀드는 제외)만 해당되고 개인투자자펀드(retail fund)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18) 이 때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득은 펀드로 귀속됨.

〈그림 3〉 고정순자산가치 평가방식



자료: 한국은행(2013. 1), 국제증권감독기구의 MMF에 대한 규제 권고안.

■ 또한, 고정순자산가치 평가제도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MMF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인 1달러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로 하여금 MMF가 안전자산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함.

- MMF는 은행 예금과 달리 자기자본규제나 예금보험제도에 적용이 되지 않고, 금리, 신용, 유동성 위험으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MMF 투자자들은 MMF의 실제 노출된 위험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게 되고, 이는 금융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환매요청 시 시가평가된 순자산가치로 상환해 주는 제도인 변동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량환매사태 발생 유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음.

나.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매 수수료(redemption fee) 부과 및 환매 유예(redemption gate) 조치 도입

■ MMF 이사회¹⁹⁾는 일정 조건하에서 펀드 수수료 부과 및 환매 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MMF 중간유동성자산²⁰⁾ 가치가 총자산의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 환매 요청 시 투자자에게 최대 2%의 유동성 수수료(liquidity fee)를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동 조건하에서 투자자 환매 요청 시 10일 이내의 일시적 환매 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9) 뮤추얼 펀드의 경우, 펀드 이사회가 펀드 투자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

20) 현금, 미국채무부증권(국채), 잔존만기가 60일 이하인 기타 정부증권, 5일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함.

■ 위와 같은 조치는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 선환매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선환매자 이득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MMF로부터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음.

● MMF 주간유동성자산 가치가 총자산의 30% 이상인 구간에서 선환매자 이득 효과가 존재

다. 규제 개혁의 기대 효과

■ 미국 MMF 규제 개혁의 기대 효과로 MMF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자금이탈로 인한 MMF 시장 위축이라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있음.

● 선환매자 이득 효과를 완화시킴으로써 대량환매요청을 사전에 방지하여 MMF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함.

● 기관투자자 MMF (국채전용펀드는 제외) 자금이 국채전용 MMF 또는 단기국채시장으로 이동하여 MMF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CP 수요가 감소하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는 반면 미 단기국채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4. 우리나라 MMF 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



■ 우리나라는 MMF 규제 강화를 위해 2013년 10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²¹⁾하였고, 동 개정안이 2013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MMF는 1996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지칭되고 있음.

● 2014년 7월말 현재 기준 MMF 순자산총액은 약 81조원으로 전체 펀드 시장의 22.5%를 차지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또는 듀레이션) 한도 축소, ② 유동성 자산 비율 직접 규제 등임.²²⁾

21) 규정 개정 전 금융위원회는 2012년 10월 ‘단기 자산운용상품 현황 및 정책방향’ 통해 MMF 규제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을 발표함.

22) 그 밖에 MMT(Money Market Trust), MMW(Money Market Wrap) 등 MMF 유사상품과 MMF간의 규제 차이 완화 등이 있음.

가.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또는 듀레이션) 한도 축소

■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또는 듀레이션) 한도를 90일에서 75일로 15일 단축

- 가중평균잔존만기란 포트폴리오(주로, 채권으로 구성)에 투자된 원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으로, 해당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임.²³⁾
- MMF는 금리 변동에 대해 자산 가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 따라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한 이자율위험 노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한도를 75일로 단축함.

나. 유동성 자산 비율 직접 규제

■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 자산은 10%, 잔존만기 7영업일 이내 자산은 30%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금융당국이 MMF의 유동성 자산 비율을 직접적으로 규제

- 자산 만기 규제를 통해 유동성 위험을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유동성 위기 시 대량환매요청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
- 따라서 잔존만기가 짧은 유동성 자산 비율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대량환매요청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

다. 미국과 우리나라 MMF 규제 개혁의 비교 및 평가

■ 최근 단행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MMF 규제 개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양국 모두 MMF를 통한 금융위기 전염 방지에 목표를 두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선환매자 이득 효과 완화 등을 통해 대량환매사태 유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환매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유동성 관리에 초점을 둬.

■ 또한,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은 과거에 있었던 미국 MMF 규제 개혁과 흡사한 측면이 많음.

- 2010년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MMF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제를 개선²⁴⁾

23) 가중평균잔존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큼.

24) 2010년 1월 27일 SEC는 MMF Rule 2a-7 수정을 승인.

-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MMF 가중평균잔존만기 한도 단축, 유동성 자산 비율 규제, 비우량 증권 투자 비율 축소,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정보 공시 강화 등이 있음.
 - 일간유동성자산²⁵⁾은 총자산의 10%, 주간유동성자산은 총자산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
 -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한도를 90일에서 60일로 30일 단축 등
-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량환매사태 유인을 사전적으로 완화하기에 다소 미흡함에 따라 MMF 규제를 강화함.

■ 한편, 우리나라의 MMF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MMF가 금융위기 전염 경로로 작용하여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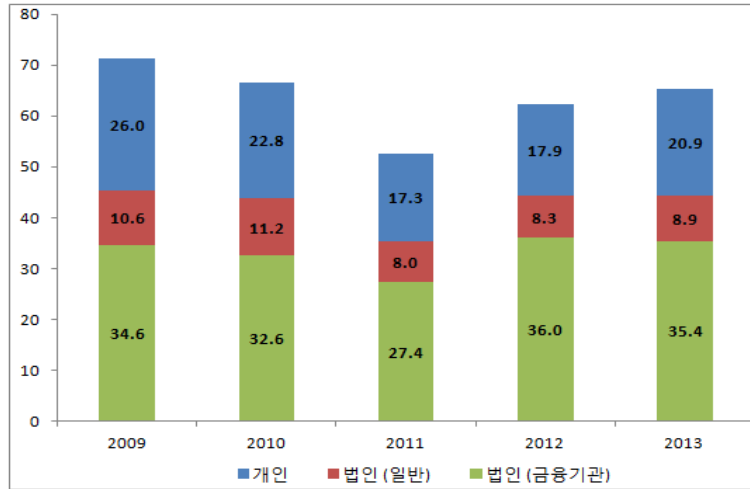
- 국내 MMF 시장에서 금융기관이 최대 투자자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대량환매사태가 일어남.
 - 미국은 2013년 말 현재 금융기관에서 유입된 자금이 전체 MMF 시장에서 약 23%를 차지²⁶⁾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 54%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국내 MMF의 투자자산으로 CP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CP는 MMF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비교적 위험자산에 속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임.
 -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량환매사태를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CP 시장 채널을 통해 금융위기가 증폭되었음.
 - 미국은 2013년 말 현재 전체 MMF 투자자산 중 CP는 약 13% 차지²⁷⁾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30.6%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MMF 대량환매사태 유인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25) 일간유동성자산은 현금, 미국재무부증권(국채), 또는 하루 이내에 만기가 도달하여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임. 주간유동성 자산에 대한 설명은 각주 17 참조.
 26) 자료: FRB, flow of funds.
 27) CP를 포함한 신용시장상품은 전체 MMF 투자자산 중 약 60%를 차지함(자료: FRB, flow of funds).

〈그림 4〉 고객유형별 MMF 판매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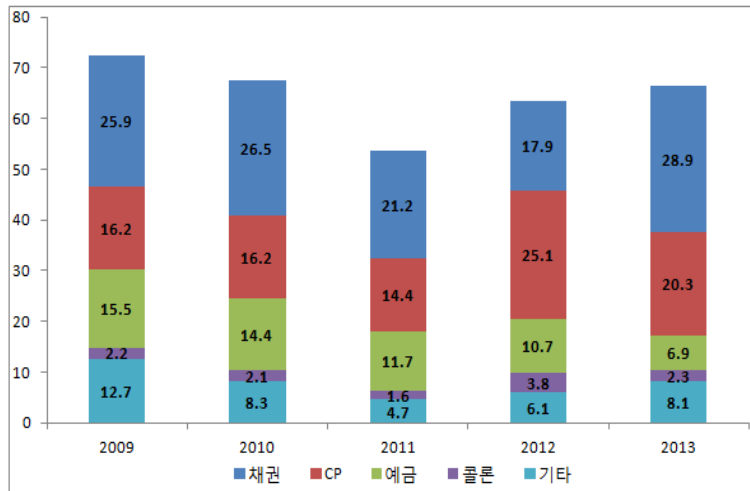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5〉 MMF 투자자산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5.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MMF 대량환매사태 유인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규제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MMF의 대량환매사태를 통해 금융위기가 전염되어 결과적으로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을 야기하고 실물경제에까지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존재함.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MMF 관련 규제는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대량환매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선환매자 이득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량환매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MMF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을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IOSCO의 MMF 규제 권고안을 바탕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장부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괴리(장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0.5%를 초과할 경우 시가평가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MMF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을 변동형으로 전환할 경우, MMF가 안전자산이라는 투자자의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고 선환매자 이득 효과를 경감하여 사전적으로 대량환매사태 발생 유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남.
- 또한, 펀드매니저는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MMF 투자 자산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됨.
- MMF의 CP 수요가 감소하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CP 대신 전자단기사채 편입 등으로 국내 단기금융시장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음.
 - MMF 투자자는 자산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과 함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 등 발행조건과 유통과정이 보다 투명한 자산으로 MMF 투자 자산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kiri](#)



복합점포 활성화의 득과 실

전용식 연구위원, 황진태 연구위원

요약

- 201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판매채널 확대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계열사 간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계열사 간 복합점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함.
 -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비이자 수익 제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후생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판매채널 관련 정책의 일관성, 금융산업의 경쟁,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영업행위 리스크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책적 측면과 경쟁 측면에서 논란은 은행중심 금융그룹이 설립하는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회사의 입점 영점이 허용될 경우에 제기될 수 있음.
 - 계열 보험회사의 복합점포 입점 영점이 허용된다면 계열사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 영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방카슈랑스 제도는 소비자후생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제판분리를 위한 정책 중 하나였으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반대로 제판결합으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은행 중심 금융그룹, 비은행 금융그룹, 중소형 증권·보험회사들 간에 고객 수, 점포 수,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교차판매(cross-selling)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복합점포 활성화가 금융그룹의 교차판매(Cross-Selling) 확대로 이어질 경우 고객 편의와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음.
 - 금융그룹의 교차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인 자문서비스 활성화, 영업점 임직원의 인센티브 제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영국 금융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비이자 수익 제고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차판매 확대는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 보험산업의 경우, 25% 방카를 규제 회피 가능성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속성 보험계약 및 판매자의 소속, 책임, 권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 가중 등의 우려도 있음.
- 금번 금융위원회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금융산업의 경쟁,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금번 복합점포의 긍정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금융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201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함.¹⁾

- 현행 복합점포는 금융 업종별로 사무공간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어 은행·증권 상담을 동시에 받기 위해 복합점포를 찾더라도 별도 창구에서 은행 직원과 증권 직원을 따로 만나는 등의 불편이 있음.
 - 현행 규제는 지주회사의 고객정보 공유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 간에 정보 차단벽(Chinese Wall)을 두고 있음.²⁾
- 금번 규제개혁의 배경은 이러한 정보공유 규제로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 개혁방안으로는 계열사 간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을 비롯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점포 내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고객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공유를 허용할 방침임.
- 또한, 금융위원회는 동 방안의 적용범위를 비롯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업권별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임.
 - 해당 적용범위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비은행 금융그룹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될 예정임.

■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 금융산업의 공정경쟁, 그리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복합점포 활성화는 금융그룹의 교차판매 유인을 제고하여 고객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³⁾
 - 영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Conduct Risk)를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1) 201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함.

2) 동 규제의 내용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4항, 시행령 제27조제9항, 감독규정 제24조<별표 1-6>에 규정되어 있음. 주요 내용은 ① 사무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② 칸막이를 통해 영업직원 간 직접적 왕래를 금하며, ③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임.

3) 본고에서 교차판매(Cross-Selling)는 복수의 금융상품(Multiple Products)을 동일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함.

-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시장 안정성(Stabil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특히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방카슈랑스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복합점포의 현황과 문제점



- 금융지주회사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은행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이 복합점포를 설립하여 교차판매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사무공간의 물리적 구분, 자회사간 업무위탁 금지,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금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영업직원간의 직접 왕래를 물리적 제한을 통해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고객은 은행, 증권업 등과 관련 해서 동시에 상담받을 수 없음.
 - 현재 금융지주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점포는 영업점 내에 계열사 영업점이 입점해 개별 영업을 하는 형태인 지점내 지점(Branch In Branch) 형태와 동일 계열 은행과 증권회사 영업점이 동일 건물 내에서 개별적으로 영업하는 형태(Branch With Branch)임.
 -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약 30개 내외의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계획이고, 일부 대형 보험회사도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불필요한 공간 구분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업무상 비효율성이 상존한다는 평가임.
- 방카슈랑스,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은행의 일반 지점에서도 보험·펀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교차판매(Cross-Selling)가 가능하나 실적이 미미함.
 - 2010년 국내 대형은행의 활동 고객 1인당 보유 교차판매 상품개수는 4.3개로 미국 웰스파고의 6.2개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고객 1인당 위험조정 영업수익 중 비이자수익 비중은 23% 수준으로 미국 상업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 3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교차판매 성과가 낮은 원인으로 자문서비스보다는 상품판매 중심의 교차판매 전략, 제한적인 고객 정보 공유, 영업점 직원들의 인센티브 제도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웰스파고는 모든 금융상품을 은행, 캐피탈, 증권, 보험사 구분 없이 한 은행 지점에서 구

입 가능하도록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통해 교차판매 기회를 상시 발굴하고 있음.

- 일본의 금융지주회사들도 복합점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즈호 그룹의 경우 은행 고객을 통해 파생된 증권, 신탁은행 이익이 FY2013 기준으로 250억 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⁴⁾

■ 이번 금융위원회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창출 효과 제고를 통해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이미 은행 지점에서 펀드와 방카슈랑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 그러나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일관성, 업권간 경쟁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3.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 관련 이슈



가. 정책의 일관성

■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방안에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 입점 영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의 복합점포 입점 영업이 허용될 경우, 기존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난 7월 발표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는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의 입점 영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에 한해서 25% 방카를 등 판매규제를 적용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⁵⁾
- 보험회사 입점 영업 시 25% 방카를을 비롯해 판매인원 및 취급상품 제한 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함.⁶⁾

4) 하나금융 포커스(2014. 8. 31),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과 대응방향”.

5) 서울경제(2014. 9. 15), “금융복합점포 방카 25%를 풀리나”.

■ **방카슈랑스 제도가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은 오히려 제판결합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제판분리에 대한 효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GA와 방카슈랑스 채널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비전속 채널 제도에 대한 논의 등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옴.
- 금번 복합점포 활성화는 금융회사가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제판결합의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나. 경쟁

■ **복합점포 활성화는 계좌이동제 도입, 유동성 규제 등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의 고객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은행은 이자수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비이자수의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제한적인 성장가능성으로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비용절감과 효율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 2016년 시행 예정인 계좌이동제와 바젤 III 중 유동성규제가 2015년 이후 시행될 경우 소매예금의 은행 수익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계좌이동제는 개인고객이 은행 주거래 계좌를 타은행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은행이 자동으로 타은행으로 이전해주는 제도로, 예금자의 은행 계좌 이동에 따른 비용을 줄여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됨.⁷⁾
 - 유동성규제가 2015년 이후 적용될 경우 은행의 소매예금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장기자금 유치가 유동성비율 완화에 기여할 것임.

■ **금융그룹 계열 은행의 고객 경쟁은 비은행 금융그룹 계열 및 중소형 보험, 증권회사의 마케팅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금융산업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 활성화를 위해 고객의 동의 시, 고객정보를 계열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은행중심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6) 방카슈랑스 제도는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취지는 금융산업 선진화와 함께 고객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에 있음. 또한, 동 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하는 은행에 비이자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속채널 기반이 약한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전국적 은행 점포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7) 금융위원회(2013. 11. 27),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 비은행 금융그룹 계열 증권, 보험회사들의 개인정보 공유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임.
- 은행 중심 금융그룹, 비은행 금융그룹, 중소형 증권·보험회사들 간에 고객 수, 점포 수,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판매(cross-selling)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금융회사의 조직,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

■ 또한, 언론보도와 같이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회사 입점이 허용된다면 계열사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에 따라 경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 영업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보험업법 제100조)을 두고 있으며, 해당 보험업 감독규정(제4-39조제4항제1호가목)을 통해 보험회사의 금융회사 내 입점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과거에도 보험회사의 금융회사 내 입점 영업을 방카슈랑스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기 때문임.

〈보험업 감독규정 제4-39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④ 법 제100조제4항, 영 제40조제9항 및 제10항, 제4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지행위
 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

- 특히, 계열사 간 공동상담실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과 제휴를 맺고 있는 타 보험회사의 상품 대신 계열사 상품에 대한 권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이는 결국 당초 25% 방카를 통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전속성 확보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그 결과 전속채널이 약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계열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방카슈랑스에 대한 종속 정도가 강해질 개연성이 큼.
 - 또한, 이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

■ 은행중심 금융그룹의 비이자 수익 제고와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전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교차판매 확대는 불완전판매 확산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 영국의 Financial Conduct Agency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고객에 대한 교차판매 확대는 임직원에 대한 유인방안 확대와 병행되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⁸⁾
- 불완전판매는 영업행위 리스크를 확대하여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보험산업에서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

- 전술한 바와 같이 비전속성을 강조한 25% 방카를 규제 회피 가능성으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제 25% 방카를 규제해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구조적으로 특정 보험회사(예, 계열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에만 집중할 수 없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25% 방카률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경우 계열사 상품 판매를 위해서라도 은행은 타 보험회사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할 유인을 가짐.
 -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통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비전속성으로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한편, 계열 금융회사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구속성 보험계약(‘끼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가입자 중 23.3%가 ‘끼기’ 경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또한, 공동상담실 운영 시 고객에 대한 종합적 자문과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 판매자의 참석도 허용될 경우 해당 판매자의 소속, 책임, 권한에 대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자(예,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및 고지의무 수령권을 가

8) Retail Conduct Risk Outlook 2012, Financial Service Association.

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판매자의 소속,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가지는데(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보험이 포함된 공동상담실에서 이러한 설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임.

4. 시사점



- 금번 금융위원회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함.
 - 복합점포는 도입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영업행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여러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 입점 여부는 보험업 감독규정과 상충될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 활성화라는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음.⁹⁾
- 금융산업 경쟁 측면에서 비은행 금융그룹이나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지역별로 널리 분포해 있는 은행점포는 그 영업적 특성상 점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판매효과가 상당히 커 보험시장의 판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소형 보험·증권회사는 고객관계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의 취지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취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복합점포 활성화는 소비자에게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는 비이자 수익 제고,

9) 보험업 감독규정에 있는 보험회사의 금융회사 내 입점 금지 조항은 과거 방카슈랑스 규제 조항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금조달 비용 절감,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교차판매의 문제점인 자문서비스 활성화, 영업점 임직원의 인센티브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복합점포 활성화의 정책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
 -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영국의 금융서비스위원회(FSA) 등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무분별한 교차판매 확대는 오히려 불완전판매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영업행위 관련 리스크를 높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kiqi**



중국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혁 (C-ROSS) 영향과 전망

김해식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원

요약

- 중국 보험산업은 대내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경제성장률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맞는 지급여력제도 도입이라는 압력에 직면하여 2014년 재무건전성규제 개혁안(C-ROSS: 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을 발표함.
 - 2012년 이후 중국 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이 8% 이하의 한 자릿수로 하락했으며, 더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이 어려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산업구조 재편이 논의 중임.
 - 2011년 IMF는 중국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자본력이 빈약함을 지적하고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C-ROSS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이면서 신흥시장인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단일 감독제도를 표방하고 있음.
 - 중국은 부족한 감독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간 규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 전역의 모든 보험회사에 C-ROSS를 적용하기로 함.
 - 자본 확충이 보험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보험시장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C-ROSS는 자본 확충보다 위험관리를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를 강조함.
- C-ROSS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며, 제도 정착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임.
 -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나,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과 보유 자본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하여 자본 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 그러나 감독자원을 포함한 보험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C-ROSS가 빠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C-ROSS는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보험회사의 자산 및 상품구성의 변화를 초래할 것임.
 - 시장진입 활성화와 함께 자본부담이 큰 보험회사의 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 또한, 상품 및 자산구성에서는 보장성 상품이 늘어나고 안전자산 비중도 늘어날 것임.

1. 검토배경



-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하락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축을 재건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함.
 - 중국은 2012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8% 이하에 머무르면서,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이 어려운 새로운 국면(新常态)에 들어섰다고 평가
 -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의 투자의존형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¹⁾

- 중국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산업재편 요구와 국제감독기준 준수 압력에 직면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수립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재무건전성규제 개혁안(C-ROSS: 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을 발표함.
 - 중국 보험산업에서는 외형 위주 성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체질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개혁 추진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여 재무건전성규제 강화 필요성도 높아짐.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평가를 통해 중기개혁과제로서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규제를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건전성규제 개혁을 추진하게 됨.

- 본고는 중국 보험산업의 환경 변화 맥락에서 C-ROSS가 담고 있는 자본규제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장·단기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중국 보험산업은 안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개혁이 필요한 상황 이고, 밖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건전성규제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
 - 유럽 Solvency II나 미국 RBC에서 관찰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 중국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 맥락에서 C-ROSS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한국은행(2014), 『주요 신흥국의 구조개혁과제와 정책대응』, 국제경제리뷰, 2014-29.

2. 중국 보험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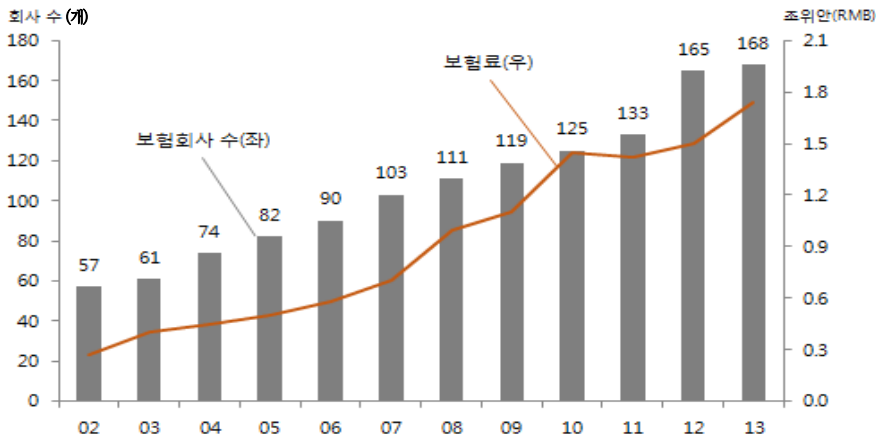


가. 보험료 규모 세계 4위의 보험시장

■ 지난 10년간 연평균 15.4%의 명목 GDP 성장률에 힘입어 중국 보험시장은 연평균 19%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4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함.

● 2013년 기준 중국 보험산업의 자산 규모는 8.3조 위안이고 보험료 규모는 1.7조 위안임.²⁾

〈그림 1〉 보험료 규모 및 보험회사 수 추이



자료: Wu, L.(2014), "The C-ROSS Solvency System and Actuarial Valuation in China", EAAC, Taipei Taiwan.

■ 전체 보험회사 수는 168개사로 한 해 평균 10개사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모두에서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CR3)이 50%를 넘고 있음.

● 2013년 기준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 53.7%, 손해보험 64.8%임.

●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 수는 전체의 30%를 차지하지만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 5.6%, 손해보험 1.3%에 불과함.³⁾

2) 보험료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 5위, 손해보험 3위 규모. Swiss Re(2014), "World Insurance in 2013: Steering Towards Recovery", Sigma, 3/2014.

3) Dagon Europe Credit Rating(2014), "China's Insurance Market Overview: Characteristics,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Foreign Insurers".

나. 열악한 수익성과 지급능력 개선 필요성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분 없이 지난 10년 간 대다수 보험회사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당기순익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⁴⁾

- 상위사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형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시장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사의 경우 수익성은 양호한 편이나, 빠른 매출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자본이 충분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

〈표 1〉 중국 보험회사의 규모별 경영성과(2009)

| 구 분 | | 영업ROA | 합산비율 | ROE |
|------------------|----------|-------|--------|--------|
| 생명보험 | 상위 10개사 | 6.3% | - | 18.4% |
| | 차상위 10개사 | -1.1% | - | -11.4% |
| | 나머지 | -2.6% | - | -11.4% |
| 손해보험 (전업사 제외) | 상위 10개사 | - | 101.7% | 11.4% |
| | 차상위 10개사 | - | 117.7% | -5.9% |
| | 나머지 | - | 122.0% | -5.3% |

주: 영업ROA = 영업이익 / 기중자산

자료: IMF(2011),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11/321에서 재인용.

■ 중국 보험감독위원회(CIRC: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는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을 위해 보험료, 자산운용,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개혁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중국 보험시장에서는 현재 자동차보험료 단일요율(tariffs)을 포함한 가격규제와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시장 진입통로를 제공하는 개혁조치가 제시되고 있음.
 - 그동안 손해보험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50% 투자 상한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
 - 최근 인수합병 개혁안을 통해 동일 종목 내 복수 보험회사 소유를 허용하고,⁵⁾ 상하이 자유무역 지대에서는 건강보험에 100% 지분투자를 허용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용인함과 동시에 부실한 보험회사의 퇴출 통로를 마련함.

4) IMF(2011),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11/321.

5) 이소양(2014), 「중국의 보험회사 M&A 규제완화 및 시사점」, 글로벌이슈, 281, 보험연구원.

-
- 다른 한편으로 CIRC는 보험료, 자산운용, 시장진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의 지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재무건전성규제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

다. 보험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

■ 대외적으로 중국 보험산업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규제가 국제기준이 권고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와 비교하여 단순한 위험반영과 재량적 감독에 대한 개선 요구에 직면⁶⁾

- 2011년 IMF는 중국 보험산업에 대해 단기 개선과제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제도, 중기 개선과제로서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의 개선을 제시함.
- 현재 중국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선순위채권자보다 후순위여서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다른 한편으로, 지급여력비율 10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가 영업을 지속하는 현상이 흔하게 관찰되고 있고, 규제 해석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감독도 포괄적이어서 규제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대내적으로 중국 경제는 과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경제성장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뉴노멀에 진입하면서 중국 정부는 보험산업에도 자본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음.⁷⁾

- 2012년 이후 한 자릿수 실질 GDP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처럼 외부요인이나 정책 대응 실패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성장잠재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성장 촉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 속도 둔화도 불가피하여 보험료 성장에 기대던 양적 성장에 가려져 있던 열악한 수익성과 부족한 자본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할 것임.

6) IMF(2011) 전계서.

7) 이철용(2014), 『신창타이 중국경제』,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3. 제2세대 재무건전성규제 개혁: C-ROSS



가. 전국 단일의 중국식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 CIRC는 2014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C-ROSS 세부 시행안을 발표함.

- IMF 평가 직후인 2012년 CIRC는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제시한 국제보험감독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을 반영하는 지급여력제도 개혁프로젝트(C-ROSS)를 추진
- 2013년 CIRC는 ① 국제보험감독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에 따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수립, ② 중국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 ③ 중국 보험시장의 특성 반영이라는 C-ROSS의 세 가지 설계 원칙을 제시함.

■ C-ROSS는 중국 전역의 모든 보험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지급여력제도임.

- 2011년 IMF는 제1세대 EU식 지급여력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한 바 있고 감독자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 CIRC는 C-ROSS의 적용 범위를 중국 전역의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일감독체계(single supervision)를 유지함으로써 제한적인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적 차이에 따르는 감독재량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C-ROSS는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 보험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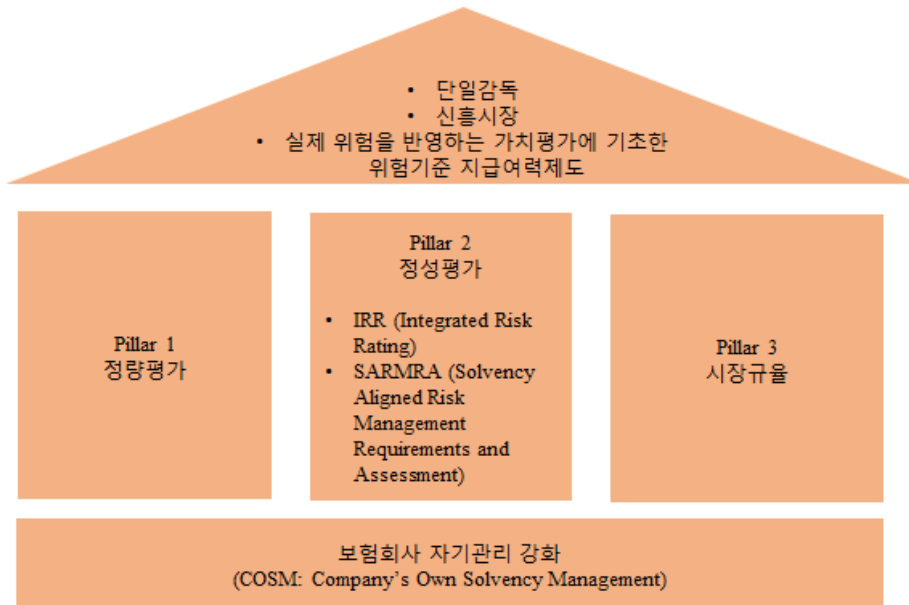
- 세계 4위의 보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침투율은 3.0%, 보험밀도는 1인당 201달러(USD)에 불과하고 제한적인 상품으로 구성되어 선진보험시장과 큰 격차를 보임.⁸⁾
 - 생명보험의 70%는 5년 만기 일시납 저축성상품, 손해보험의 70%는 자동차보험임.⁹⁾
- 위험보장 욕구가 높아진 중산층 등장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성장률이 매우 높아 보험료 성장을 자본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8) 선진시장의 경우 보험침투율 5~10%, 보험밀도 3000~6000달러(USD) 수준임. SwissRe(2014) 전게서.

9) JP Morgan(2013), "China Insurance", Asia-Pacific Equity Research.

- 이에 따라 CIRC는 보험회사가 자본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C-ROSS를 추진한다는 신흥시장 원칙을 제시
 - 다만, 보험료나 자산, 영업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형사일수록 정성평가를 엄격하게 적용

〈그림 2〉 3-pillar 구조의 제2세대 지급여력제도 C-ROSS



자료: Yulong, Z. (2014), "China's C-ROSS: A New Solvency System Down the Road", The Actuary Magazine, 11(1), Society of Actu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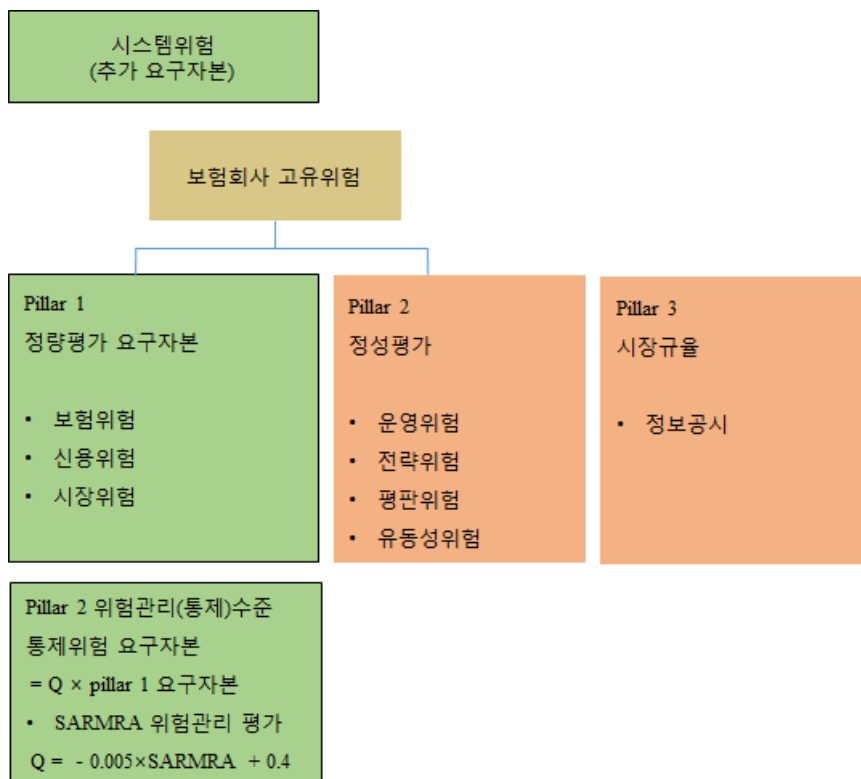
나. 분산효과와 위험관리수준을 반영한 지급여력비율

■ C-ROSS는 위험 간 분산효과와 위험관리수준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산출함.

- 계량화가 가능한 위험(보험, 시장, 신용위험)만을 평가하여 최소요구자본을 산출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운영, 전략, 평판, 유동성위험)은 Pillar 2의 정성평가 대상으로 함.
 - Pillar 1의 계량화가 가능한 위험의 요구자본 산출에서는 위험 간 분산효과를 반영함.
 - 계량화가 어려운 운영위험 등은 Pillar 1의 요구자본 산출에서 배제

- 또한 보험회사가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통제위험)을 Pillar 2의 위험관리평가(SARMRA)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반영함.
 - C-ROSS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관리 측면에서 위험통제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요구자본을 보험회사에 요구함.
 - 이는 보험료나 요구자본의 일정 비율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다른 지급여력제도와 외형상으로 유사하나, 위험관리 평가와 연계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이가 있음.

〈그림 3〉 C-ROSS의 평가대상 위험과 요구자본 산출



주: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요구자본 산출 대상인 정량평가, 통제위험, 시스템위험임.
 자료: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2014), "The Future of China's Insurance Regulation".

- C-ROSS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가용자본이 Pillar 1 최소요구자본과 Pillar 2 SARMRA 통제위험 최소요구자본을 합한 총계보다 많아야 지급여력이 있다고 평가
 - 이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로 지정된 경우 요구자본에 5%를 추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함.

■ C-ROSS는 중소형 보험회사에는 지급여력비율 충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대형 보험회사에는 C-ROSS의 전면 수용을 장려하고 있으나¹⁰⁾ 복잡한 내부모형을 장려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음.

- C-ROSS에서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함.
 - 이는 보험회사가 자본 및 위험관리에 관한 C-ROSS 요구수준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
- 특히, C-ROSS가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위험관리조직과 지배구조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임.
 - 그동안 중국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조직은 범규준수 및 보고 기능에 한정되었음.
 - C-ROSS는 모든 보험회사에 CIRC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위험관리담당임원(CRO) 설치 의무화함.
 - 또한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공식적인 위험관리기능, 내부감사 설치가 요구됨.
- 그러나 C-ROSS는 보험회사에 내부모형을 장려하거나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

■ C-ROSS의 감독당국이 지급여력비율 결과에 따라 감독조치하거나 Pillar 2의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과 지급여력비율을 통합한 IRR 등급평가에 따라서 감독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재량을 줄이고 보험 회사 부실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첫째, Pillar 1 계량위험과 Pillar 2 통제위험을 대상으로 한 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회사는 신규영업 중지, 배당제한, 구조조정 및 퇴출 등의 감독조치를 받게 됨.
- 둘째, Pillar 2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의 평가까지 통합한 IRR 등급에 따른 감독조치는 시장진입, 상품 및 자산운용, 현장검사에 대해 IRR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
 - Pillar 2의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의 평가는 미미, 주의, 중대, 심각으로 정성평가
 - 지급여력비율 충족 정도와 정성평가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를 A~D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감독

10) Oliver Wyman(2014), "C-ROSS: Preparation for Solvency II with Chinese Characteristic".

4. C-ROSS의 영향과 전망



- C-ROSS의 도입으로 중국 보험시장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를 갖추면서도 자국 경제와 보험시장의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임.
 - CIRC는 빠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감독자원을 포함한 보험산업의 인프라 부족으로 C-ROSS가 정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C-ROSS가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혁을 진행한다고 천명한 만큼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이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점과 인수합병과 가격규제 완화 등 다양한 보험시장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은 활발한 구조조정과 함께 상품 및 자산구성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중소형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및 자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진입 규제 완화와 더불어 활발한 구조조정을 예상할 수 있음.
 - 대형 보험회사는 분산효과와 위험관리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전업사나 중소형사는 자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임.
 - EU식 지급여력제도에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 보험산업에서도 보장성상품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보험시장은 가격규제 등으로 인한 보험영업의 취약한 수익성을 고위험 투자수익으로 보전하는 상황이어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반영으로 안전자산 비중이 늘어날 것임.
 - 현재의 저축성 위주 상품구성은 C-ROSS로 전환 시 요구자본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가격규제 완화와 더불어 보험료 산출과 언더라이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C-ROSS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보험회사의 해외재보험 활용을 억제할 것이라는 것임.
 - 자연재해위험이 추가되는 등 보험회사의 재보험 활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 해외재보험에 대한 위험계수가 국내재보험 위험계수에 비해 매우 높아서 중국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kiri](#)

kiri Weekly 이슈 모음집 2014

발행일 | 2015년 2월

발행인 | 강 호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